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sss and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머리말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개입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예방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이들이 10대 중후반 비행청소년에 비해 수적으로 적으며, 비행 심각성도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비행을 시작한 경우 발달단계나 환경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부정적 환경이나 영향을 차단할 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경험이 이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복지적 측면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처우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저연령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연구에 자문해 주신 경찰, 법원, 법무부 관계자 분들과 지역사회 실무가 분들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처우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신 소년들과 보호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파악 및 개선방

ii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공동연구로 참여해 주신 김혜경 교수님, 주현경 교수님, 배상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연구에 참여해 준 조병철 조사연구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해 주고, 자료를 잘 정리해 준 덕분에 귀중한 자료가 연구에 잘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조사에 참여해 준 엄신혜 인턴연구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전영실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전영실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방법 15

가. 통계자료분석 15

나. 전문가자문 16

다. 심층면접조사 22

제2장 전영실

저연령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관련 논의 29

제3장 전영실

저연령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47

제1절 개관 49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개관 49

2. 저연령 비행소년 현황 50

가. 경찰단계의 저연령소년 현황 50

iv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저연령소년 현황	53
제2절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55
1.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	55
가. 인지	55
나. 조사	56
다. 처우	61
라. 경찰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68
2. 법원단계에서 처우실태	72
가. 인지	72
나. 조사	74
다. 임시조치	87
라. 심리	91
마. 법원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92
3. 처분	97
가. 심리불개시	97
나. 불처분	97
다. 보호처분	98
라. 처분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126
제3절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36
1.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136
가. 경찰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136
나. 법원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138
다. 처분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139
2.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40
가. 통합지원	140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142
다. 학교에서의 지원	144
라. 위탁보호	145
마. 상담 지원 등	147
바. 정신건강 지원	148
제4절 소결	150

제4장 김혜경·주현경·배상균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157

제1절 미국 159

1. 개관 159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62
 - 가. 개관 162
 - 나. 경찰단계 163
 - 다. 법원단계 164
 - 라. 지위비행자에 대한 처우 실태 168
 - 마. 형사사법절차에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개입 169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70
 -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170
 -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71
4. 소결 187

제2절 영국 189

1. 개관 189
 - 가. 소년형사사법에 대한 이해 189
 - 나. 10세 미만의 범죄아동의 사법처우 191
 - 다.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범죄아동의 사법처우 192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93
 - 가. 개관 193
 - 나. 경찰단계 194
 - 다. 검찰단계 195
 - 라. 법원단계 198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00
 -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00
 -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03
4. 소결 215

제3절 독일 217

1. 개관 217

가. 전반적인 소년범 처우 이념	217
나. 독일에서 형사미성년자 및 저연령 비행소년의 개념 논의	219
다. 저연령 비행소년의 비행 동향 등	219
라. 소년범 형사절차 개관	221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224
가. 경찰 단계	224
나. 검찰 단계	232
다. 법원단계	233
라. 소결	236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38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38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39
4. 소결	251
제4절 스웨덴	252
1. 개관	252
가. 전반적인 소년범에 대한 처우 이념	252
나. 소년범 형사절차 개관	254
다. 스웨덴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255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257
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처우 실태	257
나. 사법기관의 처우	260
3. 저연령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61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61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62
4. 소결	265
제5절 일본	266
1. 일본의 소년사법 이념 및 소년범 개관	267
가. 일본 소년사법의 이념	267
나. 일본 소년법의 목적	268
다. 대상소년	268
라. 가정법원의 사건접수	269
마. 가정법원의 조사	269
바. 심 판	271

사. 보호처분 273
 아. 추측보도의 금지 274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및 처우실태 274
 가. 소년법 등에 의한 저연령소년에 대한 절차 및 처우실태 ··· 274
 나. 아동복지법 281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84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84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85
 4. 소 결 290

제5장 전영실

정책제언 293

제1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295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95
 가. 경찰단계 295
 나. 법원단계 301
 다. 처분단계 304
 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312
 제2절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소년 지원방안 316

참고문헌 319

Abstract 341

표 차례

〈표 1-1〉 자문대상	16
〈표 1-2〉 경찰 자문내용	18
〈표 1-3〉 소년조사관 자문내용	19
〈표 1-4〉 판사 자문내용	20
〈표 1-5〉 보호관찰관 자문내용	21
〈표 1-6〉 심층면접대상자(저연령)	23
〈표 1-7〉 심층면접대상자(청소년)	24
〈표 1-8〉 심층면접내용(저연령소년 및 청소년)	25
〈표 1-9〉 심층면접내용(보호자)	26
〈표 3-1〉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50
〈표 3-2〉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	51
〈표 3-3〉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의 비행유형별 분포	53
〈표 3-4〉 보호소년 연령별 분포	54
〈표 3-5〉 소년보호처분시 연령별 분포	54
〈표 3-6〉 저연령소년 분류심사원 위탁현황	89
〈표 3-7〉 1호 보호처분 현황 (2015년~2019년)	99
〈표 3-8〉 10세~12세 보호관찰 접수현황(2007~2020년)	105
〈표 3-9〉 보호관찰 대상 초등학생 현황	106
〈표 4-1〉 소년법원 혼합형 선고 및 형사법원배제 최소연령, 2015	166
〈표 4-2〉 2017년 지위비행 유형별 위반자수	169
〈표 4-3〉 기소결정시 고려사항	197
〈표 4-4〉 영국 청소년법원 선고종류 및 연령기준	199
〈표 4-5〉 재판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200
〈표 4-6〉 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	202
〈표 4-7〉 MST 핵심원칙	214
〈표 4-8〉 독일 소년범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절차적 대응	222
〈표 4-9〉 독일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 및 사회부조법 적용	223
〈표 4-10〉 독일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사법절차 흐름도	238
〈표 4-11〉 사회법전 제8권에 따른 지원, 상담, 양육원조 실태	247
〈표 4-12〉 일본 저연령소년(촉법소년) 형법범 죄종별 검거 및 보도(補導) 인원	276



그림 차례

[그림 3-1] 소년부에 송치된 저연령소년 추세	52
[그림 4-1] 다중연계시스템을 포함한 MST 치료기법	212
[그림 4-2] 독일의 아동 형사범죄 발생추이	220
[그림 4-3] 일본식 가정법원선주의의(家庭法院先議主義)	277
[그림 4-4] 일본식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의(兒童福祉機關先議主義)	278
[그림 4-5] 비행소년에 관한 처우현황(2018년 기준)	280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 법원, 보호처분 등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들의 재비행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공식통계 자료를 통하여 저연령 비행소년의 추세 및 처우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단계에서의 자료를 통하여 소년부에 송치되는 저연령 소년의 추세를 살펴 보았다. 또한 법원통계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현황 및 추세를 살펴 보았으며, 법무부 내부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둘째, 경찰, 법원단계(판사, 소년조사관, 꿈키움센터 실무자, 분류심사원 실무자), 처분단계(보호관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년원 교사)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셋째,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의 형사사법접촉 경험 및 이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조사대상자는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사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해서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접촉 경험(경찰 접촉 혹은 처분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 청소년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환경조사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사는 주로 개인적 특성(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일수록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행성예측조사는 본인과 보호자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내용이고, 문항수가 많다는 점으로 인해 저연령소년이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따라서는 단축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문항수만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이해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조사방법을 보면, 보호자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연령소년의 조사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보호자 이외의 외부자원이 참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중고생 연령대와 같이 진행하거나 개인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중에는 저연령소년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연령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외부 전문가 개입을 통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관계회복과 재비행 예방을 위한 것이며, 보호자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셋째, 경찰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과 보호자 대부분은 경찰이 잘 대해 주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는 경찰이 무섭게 말해서 아이가 위축되고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 대한 저연령 소년의 태도를 보면, 무서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는데, 이는 경찰의 태도와 관계없이 경찰에 처음 접촉하는 경우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이들 입장에서 경찰조사가 두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해력이나 어휘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우들이 있었고 비행성예측조사를 경험한 소년의 경우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저연령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선택, 조사내용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연령소년들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움이 된 경우를 보면 2명이 같이 받았으며(거의 개별적), 필요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별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로는 처분전교육과 소년조사관 교육, 전문가진단 및 상담조사, 꿈키움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등이 있다. 이 중 처분전 교육과 소년조사관 조사는 소년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저연령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처분전 교육은 불처분이나 1호처분이 예상되는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년사법절차 및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으로 소년사법에 대해 알고, 보호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후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조사관 조사도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분야 전공자인 소년조사관이 아이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게 조사하고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처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조사관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조사관 조사를 받는 저연령 소년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이는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지능, 발달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조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12회기로 이루어지며, 저연령소년의 경우 상담을 통한 성행개선을 위해서 활용하였다. 현재 소년법상 수강명령이 12세 이상이라서 저연령소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이 강한 상담조사를 통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는 3일간 이루어지며, 센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운영하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소에서의 결정전 조사는 판사에 따라 활용하기도 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과 달리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환경적 요인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소년 조사관 인력, 전문가 자원 발굴 및 연계 어려움, 비용문제 등이 있어서 저연령소년 중 일부만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임시조치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류심사원에 안 보내려고 하지만 주거불안정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일정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통하여 상세한 진단 및 이에 기반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해당 기간 동안에 교육을 통한 태도나 행동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자유제한, 거주지와 거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다른 연령대 청소년과의 분리수용이 아닌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류심사원 이외에 쉼터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임시로 위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법원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 및 보호자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들이 소년조사관 조사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년조사관이 관심을 가져주고, 잘 얘기해 주고, 단어를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다만 청소년기가 아닌 초등학생 아이의 심리와 그 나이 또래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좋은 점을 꼽은 경우는 한 사례였으며, 이 경우 인성교육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밖의 경우는 자유박탈, 규칙적 생활, 긴 위탁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저연령시기나 청소년기에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 형들과의 만남,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외부와의 단절,

규칙적 생활, 다른 위탁생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분류심사원에 처음 위탁되는 경우도 적응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류심사원에서의 아이들 발달수준 및 특성에 맞는 교육과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연령소년의 보호자 중에도 재판시에 겁이 났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저연령시기에 재판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재판받을 때 무서웠다고 하였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 재판이 반복될 때에는 무섭지 않았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당시 처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호자들도 처분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분류심사원을 다녀온 경우, 주변에 비행친구나 선배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볼 때 저연령소년 재판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특히 신병불인수 처분)이 많이 부과되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사안이 경미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있는 경우 보호자위탁을 하며, 어릴수록 보호자가 믿을 만하면 1호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는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신병인수위탁의 경우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신병인수위탁을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다고 하였다(شط터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함).

둘째, 수강명령의 경우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판사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 접근,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집행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셋째, 보호관찰의 경우 만12세 이하 대상자는 2016년 이후로 100명대를 보이고

6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있으며, 이 연구의 조사시점(2020년 8월)에 초등학생만을 파악했을 때는 19명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별도 지침이 있지는 않다. 다만 실무가대상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있어서 저연령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선택, 개인의 일상생활 질문(중고생 연령대는 친구 등에 대한 질문 포함), 보호자와 보다 많은 대화 등의 특징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 출석시 보호자동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아이파악 및 안전을 위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현장출장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면담기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처분에 대해서 보면, 6호처분 위탁을 받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있는 초등학생은 27명이었다(2019년말 기준). 아동보호치료시설 실무가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별도 방 배치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교과교육의 경우 개인별 학력수준에 맞게 반을 배치한다고 하였다. 한편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과 연령에 적합한 대안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섯째, 소년원 처분과 관련해서 보면,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저연령소년(초등학생)은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4명이었다. 실무가 자문에 의하면, 의료재활소년원은 지능을 기준으로 분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저연령소년에 대한 분리 교육, 그리고 이들의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8-10호 처분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8호처분 대상자는 2명, 9호와 10호는 각각 3명, 1명이었다. 여기서의 통계자료는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 연령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연령소년이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소년원 송치되는 저연령소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설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

여섯째, 보호자교육에 대해서 보면, 불처분이나 1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전 교육을 통해 보호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밖의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

기관에서 보호자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어릴수록 보호자교육명령을 많이 내린다고 하였다.

일곱째, 처분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들은 처분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다만 어린 시기에 행동에 대한 결과(처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상처를 받은 경우 등도 있었다. 보호자교육에 대해서는 양육방법, 아이에 대한 이해 등에서 도움이 되지만,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에 대해서 보면, 경찰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제조사, 선도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기관에 연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원단계에서는 조사과정(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에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임시조치할 수 있는 자원 등을 발굴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처분단계에서는 1호처분시 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자원 활용, 수강명령 집행시 지역사회 기관 발굴 및 활용, 보호관찰시 특별범죄예방위원이나 상담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와 관련해서 보면, 드림스타트(취약계층 만12세 이하 대상)와 청소년안정망(9-24세)을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취약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로 지원대상이 되며, 후자의 경우 저연령소년보다는 청소년 중심의 기관연계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의 위탁보호와 정신건강 지원,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 정책제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도구의

8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개발, 저연령소년의 발달적 특성 평가 및 이를 위한 전문가 연계, 저연령소년의 어휘력과 이해력을 고려한 비행성예측조사표 개발, 학대피해 여부에 대한 필수적 파악 및 개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처우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저연령소년(피해나 가해에 관계없이) 특성을 고려한 대응매뉴얼 개발,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대상 선도프로그램 및 상담활성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연계, 경찰대상 교육 및 훈련, 경찰과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연계 및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의 처우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조사와 관련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조사 활용, 처분전 교육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소년조사관 교육 및 인력확충, 전문가 사례회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처우와 관련해서는 임시조치가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복지적 관점에서 재판단계에서의 보조인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분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1호처분 중 보호자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보호력이 약한 저연령소년을 위해 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위탁자원 적극적 발굴 및 연계, 둘째, 수강명령 연령 하한 조정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기교육, 셋째, 저연령소년의 특성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보호관찰 방법 개발, 넷째, 6호시설 소규모화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위탁, 다섯째, 개별 보호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특화시킨 다양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 외에도 경찰, 법원, 처분단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았다.

제 1 장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서 론

전 영 실

제1절 | 연구목적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개입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예방에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이 만12세에서 만10세로 낮춰졌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10대 중후반 비행청소년에 비해 수적으로 적으며¹⁾, 비행 심각성도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일찍 비행을 시작한 경우 취약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며²⁾,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비행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발달단계나 환경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부정적 환경이나 영향을 차단할 능력도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경험이 이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1) 저연령비행소년 현황은 제3장 제1절 참조.

2) 분류심사를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만12세 이전에 처음 비행을 시작한 소년은 만13세 이후에 처음 비행을 시작한 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가정환경과 인성, 직업능력, 학교 생활 등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한영선·김성곤·서석교, 저연령 비행청소년 처우 모형 개발 연구-촉법소년의 개별처우를 중심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9, 34면).

1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이들의 발달단계 특성 및 복합적인 필요 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복지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진단, 치료, 필요에 대한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법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비행에 대한 책임, 처벌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³⁾ 전자의 경우 비행원인이 비행소년의 통제 밖에 있는 특성·가족특성 등-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행소년 개인의 자유의지나 선택에 의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본다.⁴⁾ 저연령소년의 경우 심리사회적 미성숙함으로 취약요인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요보호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년사법에 있어서 특히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비행소년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복지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처우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 법원, 보호처분 등 각 단계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경찰과 법원 단계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인지와 조사, 처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운영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도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자원역량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3) Young, S., Greer, B., and Church, R., Juvenile Delinquency, Welfare, Justice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A Global Perspective, BJSych Bulletin 41(1), 2017, p.22.

4) Richards, K., What makes Juvenile Offenders Different from Adult Offenders?,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409,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1, p.5.

다음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 최소연령이 낮은 편이어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처우현황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형사책임 최소연령이 각각 14, 15세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고, 복지적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저연령소년에 대한 개입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어서 일본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실태분석과 주요 국가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첫째, 형사사법체계 각 단계에서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연령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저연령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먼저 저연령소년의 범위는 초등학교 연령대에 한정하고자 한다. 2015년-2019년까지 경찰에서 소년부에 송치되는 촉법소년 중 만10-12세의 비율을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3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13세가 60%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처분시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중 10-12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⁵⁾ 즉 형사사법절차에 포함되는

14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 연령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으며, 그 비율도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만12세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초등학생의 비율은 더 낮은 것이다. 이렇듯 전체 소년 혹은 촉법소년 중 저연령소년의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초등학생 비행의 경우 청소년기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행으로 인한 후유증도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특성을 고려한 보다 민감한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UN에서는 청소년(youth)을 15-24세로 정의하며,⁶⁾ 아동비행자(child delinquents)는 비행을 행한 13세 미만 아동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다.⁷⁾ 그리고 12세 이하의 경우 형사책임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⁸⁾ 또한 우리나라에서 학령기의 경우 주로 초등학생, 청소년기의 경우 주로 중고등학생이므로 초등학교 시기를 아동기로, 중고등학교시기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⁹⁾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한다면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아동비행자로 볼 수 있는 집단이면서 형사책임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단, 학령기로는 중고등학생 시기와 구분되는 아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저연령소년 중 초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형사사법절차는 경찰, 법원, 처분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단계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처우’에는 처분뿐만 아니라 조사도 포함하고자 한다. 조사

5) 이에 대한 수치들은 제3장 제1절에 제시하였다.

6) Young, S. et al., op. cit., 2017, p.21.

7) 아동비행자(13세미만)에 대한 연구로 Forsyth, C. J., Asmus, G., Forsyth, Y. A., Stokes, B. R., and Mayne, M., Child Delinquents: Examining the Market for Criminal Futures, *Deviant Behavior* 32(5), 2011, pp.441-450이 있음(Young, S. et al., op. cit., 2017, p.21에서 재인용).

8) Weijers, I.,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Continental Europe has a Solid Rational Base, *Northern Ireland Legal Quarterly* 67, 2016, p.310. 참고로 이 저자의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서 15세 이하의 경우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있어서 미성숙하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적정 연령은 14, 15세라고 보고 있다(ibid., p.310).

9) 배화옥, 아동과 복지, 서울: 신정출판사, 2010(배화옥·강지영,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6(1), 2016, 9면에서 재인용).

를 포함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을 보이는 소년의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소년법 제1조). 이렇게 볼 때 소년의 환경조정, 품행교정을 위해서는 소년과 환경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체계에서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처분 뿐만 아니라 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통계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비행소년의 추세 및 처우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식통계 및 각 기관 내부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찰단계에서 소년부에 송치되는 저연령 비행소년(만 10-12세)의 연도별 인원을 파악해 보았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전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지만(소년법 제4조) 실무상 혼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자료에는 소년부에 송치된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만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자료를 통하여 저연령 비행소년의 추세를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경찰 자료를 이용하여 촉법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별 비행유형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법원 통계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현황 및 추세를 살펴보았다. 셋째, 법무부 내부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초점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이지만, 이들 통계자료에서는 주로 연령별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만10-12세 소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만 초등학생을 구분해서 파악 가능한 경우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연령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 단계(일반 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 법원단계(판사, 소년조사관, 꿈키움센터 실무가, 분류심사원 실무가), 처분단계(보호관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년원 교사)별로 실무가 대상 자문을 받았다. 이들 실무가를 대상으로 각 단계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실무가들을 대상으로도 자문을 받아서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내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자문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자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FGI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자문대상이 된 실무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 <표 1-1> 자문대상

구분	대상	비고
경찰(9명)	경찰1	
	경찰2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3	
	경찰4	
	경찰5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6	
	경찰7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8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9	학교전담경찰관(SPO)
소년조사관(5명)	소년조사관1	
	소년조사관2	
	소년조사관3	
	소년조사관4	
	소년조사관5	
판사(4명)	판사1	
	판사2	
	판사3	
	판사4	

구분	대상	비고
꿈키움센터(1명)	꿈키움센터 실무가	
분류심사원(1명)	분류심사원 실무가	
6호 시설	6호 시설 실무가1	
	6호 시설 실무가2	
보호관찰소(13명)	보호관찰관1	초등학생 담당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2	
	보호관찰관3	
	보호관찰관4	
	보호관찰관5	
	보호관찰관6	
	보호관찰관7	
	보호관찰관8	
	보호관찰관9	
	보호관찰관10	
	보호관찰관11	
	보호관찰관12	
	보호관찰관13	
소년원(3곳)	소년원(4명)1	집단 인터뷰(FGI)
	소년원(4명)2	
	소년원(3명)3	
지역사회기관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집단 인터뷰(FGI)

주요 자문대상별로 자문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먼저 경찰 자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경찰의 자문내용은 일반소년과 저연령소년에 대한 인지경로와 조사, 경찰단계 처우프로그램(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포함),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경찰단계의 처우와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혹은 저연령소년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경찰단계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저연령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표 1-2〉** 경찰 자문내용

구분		면담내용
인지경로		• 일반적인 비행소년 및 저연령 소년인지경로
조사	조사주체	• 일반적인 비행과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
	조사내용	• 환경조사서 내용 및 적절성 • 비행성예측조사(전문가참여제) 내용 및 대상자 선정기준, 적절성 등 • 저연령대상 조사시 고려사항
	조사방법	• 보호자동반 및 귀가시 보호자 동행 등 • 조사장소 • 조사시 설명
처우		• 선도프로그램(일반/저연령) • 회복적경찰활동(일반/저연령) •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일반/저연령) • 지역사회 자원연계
처리		• 소년부송치(일반/저연령)
저연령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처우에서 보완사항		• 저연령소년 대상 환경조사서나 비행성예측자료표 개발필요성 • 조사시 보호자 이외의 동석자 필요성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전문가 개입 • 저연령소년 대상 선도프로그램 개발 • 저연령소년 조사 등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의견 등
효과적 처우방안		• 저연령 비행소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처우방안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소년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소년조사관은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 및 외부 자원발굴과 연계, 외부와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¹⁰⁾ 소년조사관에 대한 자문내용은 소년조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처분전 교육¹¹⁾과 소년조사관 조사, 전문가진단/상담의 운영 및 이러한 조사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활용현황, 기타 법무부 기관에서의 조사 활용현황, 소년조사관의 역할 인식 및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0) 송현중·노혜련, 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0호, 2012, 322면.

11) 소년조사관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처분전 교육은 교육이 주가 되지만, 처분전 교육을 하는 동안에 소년과 보호자 태도를 파악하여 처분에 반영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처분전 교육 조사명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시켰다.

▶▶ <표 1-3> 소년조사관 자문내용

구분		면담내용	
조사	처분 전 교육	교육목적	• 처분전 교육의 목적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저연령소년 및 부모) 및 대상자 특성 • 저연령소년에 대한 활용 정도
		교육내용	• 처분전 교육의 내용 • 교육대상(저연령소년 및 부모)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소년 조사관조사	조사목적	• 조사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 • 경찰조사와의 차이
		조사대상자 특성	• 소년조사관 조사를 하는 경우 대상소년 특성 • 저연령소년에 대한 소년조사관 조사 활용정도/효과
		조사내용	•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내용(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시 주요 파악내용) • 경찰조사와의 중복성
		조사방법	• 조사대상(소년 및 보호자 등)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 및 면담기술 •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고려사항
	전문가 진단 및 상담	조사목적	• 전문가진단 및 상담조사의 목적
		조사대상자 특성	• 전문가진단 및 상담조사 연계시 고려사항 및 연계되는 저연령소년 특성
		조사내용 및 방법, 담당자	• 전문가진단 및 상담의 내용 • 전문가진단 및 상담 회기와 기간 • 전문가진단 및 상담 자원 • 저연령소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상담 운영현황
	기관조사	법무부 기관에서의 상담조사	•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 • 분류심사원에서의 상담조사 • 저연령소년에 대한 상담조사연계 정도
	기타		• 화해권고 • 기타 처분 전 조치들 • 법원단계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기관 연계 • 소년조사관 역할 인식 • 소년조사관 전문성 및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의견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내용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판사들을 대상으로는 첫째,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인지 및 소년부에 오는 저연령소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조사의 활용도 및 개선방안,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셋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시조치, 보호처분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넷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저연령소년의 재비행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처우 개선방

20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 <표 1-4> 판사 자문내용

구분		면담내용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부에 통고, 송치되는 경찰, 학교, 복지시설 장 등의 대략적인 송치비율 • 소년부에 오는 저연령소년의 특성 및 비행특성
조사	경찰조사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조사자료(환경조사서, 비행성예측자료표 등)의 의미, 활용도, 개선방안
	법원단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소년 심리에서 보조, 지원의 필요성, 적절한 자격과 역할 •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 전 교육의 방법 및 효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소년조사관의 역할 및 효과적 소년조사관 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저연령소년관련) • 저연령소년에 대한 전문가진단 및 상담, 꿈키움센터,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 등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 •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시 활용도(장단점), 개선방안
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저연령소년에 대한 임시조치의 이유 및 활용정도 - 저연령소년에 대한 임시조치(분류심사원)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연령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원 이외의 임시조치 위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소년에 대한 심리시 고려사항 • 저연령소년에 대한 심리불개시할 때의 고려사항 •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처분시 고려사항 - 처분결정시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설명내용
저연령 대상 소년보호처분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등 감호위탁(모니터링) - 위탁보호위원 매칭 - 신병인수위탁 활용 및 위탁기관 • 수강명령 •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보호자교육명령 • 저연령소년에 대한 각 처분 활용정도 및 효과적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저연령소년 처우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소년 특성을 고려한 조사 개선방안 •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사회 인프라구축 등 • 시설 내분 이후 돌아갈 곳이 없거나 돌아갈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저연령소년에 대한 파악 및 관리 등에 대한 의견 •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외에 필요한 처우 •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필요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의견 등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한 자문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연구에서 자문을 받은 보호관찰관 대부분은 자문 시점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운영내용 및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시 고려사항, 보호관찰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 및 역할 인식,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훈련과 정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저연령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 <표 1-5> 보호관찰관 자문내용

구분	면담내용
보호관찰대상 저연령소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대상자 소년의 특성 • 저연령 시기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의 특성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소년의 처분 및 특별준수사항이나 부가처분 • 보호관찰소 출석빈도 및 회당 면담시간 • 보호관찰내용 • 보호자와의 접촉빈도 및 면담 • 지역사회 자원연계 여부 및 내용
저연령소년 보호관찰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파악내용 및 질문방법 • 보호자 동반출석 및 보호자 대상 면담 • 보호관찰소 출석과 현장방문의 상대적 빈도 및 저연령소년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 중고생 연령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접촉제한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보호관찰담당자로서의 인식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소년 보호관찰을 위한 조사자료의 활용도 및 개선방안 • 역할인식 • 저연령소년 보호관찰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필요성
저연령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활용 포함

이 외에 꿈키움센터와 분류심사원 실무자, 6호시설 종사자, 소년원 교사, 지역사회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는 각각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¹²⁾

12) 여기에 해당하는 자문내용은 제3장의 각 처우 부분에서 소개하였다.

다. 심층면접조사

1) 심층면접 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소년의 형사사법접촉 경험 및 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접촉 경험(경찰 접촉 혹은 처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조사대상자는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사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해서였다. 따라서 저연령소년 중 경찰접촉만으로 종료된 경우, 심리불개시나 불처분된 경우, 보호관찰 이외의 다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는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저연령 시기에 형사사법접촉경험이 있지만 이후 재비행을 하지 않은 사례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조사가 가능한 대상자들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 접촉 및 이에 대한 태도 등에 파악해 보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가)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심층면접조사는 먼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시점인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생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앞서도 제시하였듯이 통계자료의 경우 연령별로 파악가능하기 때문에 만12세에는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12세 이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 보호관찰소에 대해서 초등학교생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한 후 연구 및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호자와 소년이 조사에 동의한 경우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연령 심층면접대상자는 총 13명이었으며, 보호자는 12명이었다(보호자 중 동의하지 않은 1명 제외). 저연령소년 조사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초등학교 생시기에 경찰과 접촉하고 재판을 받은 중학생 4명도 포함하였다(이들의 경우 처분 기간 중 중학생이 됨). 한편 성별로는 남자만 포함되었는데, 여자 인원이 극히 적고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자만 대상으로 하였다.

▶▶ <표 1-6> 심층면접대상자(저연령)

연번	대상자	성별	나이	보호자	비고
1	저연령1	남	13세	저연령1보호자	초등
2	저연령2	남	12세	저연령2보호자	초등
3	저연령3	남	13세	저연령3보호자	초등
4	저연령4	남	13세	저연령4보호자	초등
5	저연령5	남	14세	저연령5보호자	중등
6	저연령6	남	13세	저연령6보호자	초등
7	저연령7	남	13세	저연령7보호자	초등
8	저연령8	남	13세	저연령8보호자	초등
9	저연령9	남	12세	저연령9보호자	초등
10	저연령10	남	13세		초등
11	저연령11	남	14세	저연령11보호자	중등
12	저연령12	남	14세	저연령12보호자	중등
13	저연령13	남	14세	저연령13보호자	중등

나) 청소년 및 보호자

다음으로 저연령 시기에 경찰과 접촉하거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을 보면 먼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기관 접촉이 있었던 보호관찰대상자를 파악한 후,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소년원의 경우는 2개 소년원에서 저연령 시기에 형사사법접촉이 있거나 처분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파악한 후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접대상 소년원생의 보호자 중 면접조사에 동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심층면접대상이 된 청소년은 보호관찰대상자 6명과 소년원생 10명 등 총 1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5명이었다. 면접대상이 된 보호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 5명과 소년원생 보호자 2명 등 총 7명이었다.

» **〈표 1-7〉 심층면접대상자(청소년)**

연번	대상자	성별	나이	현재 처분	보호자
1	청소년1	여	15세	보호관찰	청소년1보호자
2	청소년2	남	17세	보호관찰	청소년2보호자
3	청소년3	남	14세	보호관찰	청소년3보호자
4	청소년4	남	17세	보호관찰	청소년4보호자
5	청소년5	남	14세	보호관찰	청소년5보호자
6	청소년6	남	20세	보호관찰	
7	청소년7	남	17세	소년원	
8	청소년8	남	15세	소년원	
9	청소년9	남	15세	소년원	
10	청소년10	남	15세	소년원	
11	청소년11	남	17세	소년원	
12	청소년12	남	18세	소년원	청소년12보호자
13	청소년13	여	16세	소년원	
14	청소년14	여	15세	소년원	
15	청소년15	여	14세	소년원	
16	청소년16	여	17세	소년원	청소년16보호자

2) 심층면접 내용

가) 저연령소년 및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저연령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은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가족구조-가족구조의 변화시기 포함, 가족관계, 부모양육 특성), 아동기 경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둘째, 저연령 시기에는 학교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적응정도 및 무단결석 여부와 시기, 학교를 통한 자원연계 및 이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셋째, 경찰과 법원단계에서의 처우에 대한 태도, 처분에 대한 태도 및 처분의 영향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넷째, 비행중단 혹은 건전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서 청소년의 경우는 저연령 시기와 현재를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혹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아동기 경험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가능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파악하여 아동기와 비교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가 답하기 불편해 하는 내용(형사사법접촉 경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표 1-8> 심층면접내용(저연령소년 및 청소년)

항목	세부항목	아동	청소년	비고		
1. 개인특성	1-1 성별	○	○	정책대안을 위한 기초자료		
	1-2 연령	○	○			
	1-3 가족특성	보호자, 가족관계, 부모양육			○ ○	
	1-4 아동기 경험	아동기 학대나 방임 피해			○ ○	
		또래나 선후배로부터의 피해			○ ○	
		부모 이혼이나 별거, 가정폭력 목격 등			○ ○	
1-5 심리적 특성	자존감, 우울, 자기통제력, 정신적 문제 등		○ ○			
2. 학교	2-1 학교적응 및 무단결석 여부와 시기	○	○	학교연계 파악 등		
	2-2 학교를 통한 자원연계 경험 및 이에 대한 태도	○	○			
3. 형사사법 기관 접촉	3-1 형사사법기관 접촉 시기		○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처우 현황 파악 등	
	3-2 경찰 접촉	경찰서 갈 때의 동행(혼자/경찰/보호자/기타)	○	○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을 때 상황 - 조사받을 때 동석자(혼자/보호자/기타) - 경찰의 태도 및 느낌(두려움, 위축, 분노 등)		○		○
		전문가참여제 참여여부 및 이에 대한 태도 선도프로그램 참여여부 및 이에 대한 태도		○		○
	3-3 법원접촉	법원에서 받은 조사 - 처분전 교육/소년조사관조사/전문가진단 및 상담/꿈키움센터 상담조사/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여부 - 조사내용 및 조사에 대한 태도		○		○
		임시조치 - 위탁기간 - 위탁결정시 태도 - 위탁기간에 대한 태도(긍정/부정)		○		○
3-4 처분	보호처분 종류		○	○		
	자신 받은 처분에 대한 태도 처분의 영향(긍정/부정)		○	○		
4. 필요사항	4-1 저연령시기 비행중단 및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필요했던) 내용		○	○	정책대안을 위한 기초자료	
	4-2 현재 비행중단 및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내용		-	○		
	4-3 초기 비행이후 비행의 지속에 영향을 준 요인		-	○		

나) 보호자 심층면접내용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은 저연령소년 및 청소년 심층면접조사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자녀와 가족관련 내용, 자녀의 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보호자교육포함) 및 이에 대한 의견, 자녀의 비행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자녀 및 가족에 대한) 등이었다. 저연령소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과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응답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문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표 1-9> 심층면접내용(보호자)

항목	세부항목	저연령 소년 보호자	청소년 보호자
자녀 관련	성격	○	○
	학교생활(적응과 무단결석, 학교자원연계 등)	○	○
	문제행동(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싸움, 절도 등) 양상 및 원인	○	○
	친구관계	○	○
	피해경험	○	○
가족 관련	가족구조 및 영향	○	○
	가족관계	○	○
	자녀와의 동거 유무	○	○
	경제적 상황	○	○
	보호자특성(우울, 분노, 알콜문제 등)	○	○
	보호자양육특성(학대, 방임, 관심, 지지, 자녀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및 양육 어려움	○	○
	자녀문제가 있을 때 주변(기관이나 사람) 도움받는 정도	○	○
기타 가족특성	○	○	
자녀 형사사법 접촉에 대한 의견	형사사법 접촉내용 (자녀접촉 및 처분, 보호자 교육 등) 및 이에 대한 의견	○	○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 경험 및 이에 대한 의견(자녀나 보호자 상담, 교육, 위탁보호위원, 보호관찰시 범죄예방위원, 기타 연계)	○	○
	형사사법 접촉의 영향(자녀 및 보호자에 대한)	○	○
필요한 지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	○
	보호자(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	○

이상의 심층면접조사는 경찰 및 법원단계, 처분에 대해 소년과 보호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과 가족특성 등의 경우는 정책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생 보호자 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저연령시기 비행원인 및 학교에서의 처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 2 장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저연령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관련 논의

전 영 실

제2장

저연령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관련 논의

여기서는 기존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기타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내에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다.¹³⁾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처우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법체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비행의 다양한 원인, 아동발달관련 정보, 소수민족 아동 및 여자소년에 대한 관심, 청소년 문화 트렌드, 집단의 역동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된다.¹⁴⁾

둘째,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유엔지침(리야드 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iyadh Guidelines)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아동기부터 인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로운 발달을 돕기 위한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리야드 지침 제2조).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리야드 지침 9조(g)). 이는 다기관 협력을 통하여 초기 아동기부터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이 비행예방에서 우선적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사법체계에서도 다기관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1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2007, p.24(<http://www.refworld.org/docid/4670fca12.html>, 검색일: 2020.6.30.).

14) Ibid., p.25.

여 먼저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전문화된 조직, 서비스 간에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조치들이 효과적이라면 사법체계 외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⁵⁾ 소년사법체계에 아동보호 등을 위한 복지적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소년사법과의 연계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¹⁶⁾

참고로 많은 국가에서 비-정부 조직이 소년비행예방 및 소년사법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년사법정책의 실행에서 이러한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다.¹⁷⁾ 선진 국가에서 파트너십 접근은 최근에 발전한 범죄예방 접근법이다. 범죄는 원인 및 효과 모두에 있어서 다국면적이어서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접근은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¹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 ‘여러 직종 전문가’(cross-professional)가 참여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사회복지 담당자, 아동 심리학자, 보건 전문가 및 경찰이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포괄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며, 이는 아동복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⁹⁾²⁰⁾

15) Andersson, S. National Report of Sweden in the Project “Keeping Youth Away from Crime - Searching for the Best European Practices” Swedish Perspective - April 2014”, p.26 (<http://www.oijj.org/en/keeping-youth-away-from-crime-results>, 검색일: 2020. 6. 27.).

16) 김성돈·강지명,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외의 관계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2, 74면.

1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25.

18) Crawford, A.,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Politics”, Policies and Practices, Longman, Harlow, 1998(Andersson, S., op. cit., pp.23-24에서 재인용).

19) O'Brien, P., Juvenile Justice Done Wrong, and How to Do It Right (<https://obriensolicitors.com.au/juvenile-justice-done-wrong-done-right-scandinavia/>, 검색일: 2020.6.20.).

20)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스웨덴의 15세 미만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는 아동복지위원회가 주관하며, 이 위원회는 빈민구제 위원회, 성직자, 교사, 의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은 여성, 1960년 이래로 한 명은 법 전문가를 포함한다. Janson, Carl-Gunnar, “Youth Justice in Sweden,” Chicago Journals 2004, p.397(Persson, M. Caught in the middle? - Young offenders in the Swedish and German Juvenile Criminal Justice Systems, Lund University, 2017, p.97. 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연령 비행소년의 조화로운 발달과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 내의 기관 간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후자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항상 아동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통합의 필요성을 보다 중하게 다루어야 한다.²¹⁾ 영국의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는 아동 범법자에 대해 먼저 아동으로 보고 다음으로 범법자로 보고자 한다.²²⁾ 이러한 전략하에 2020/21년의 계획 중 하나는 아동의 목소리를 위원회 업무(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²³⁾ 이는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82년 사회복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아동의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소년범법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²⁴⁾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은 낙인 짓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²⁵⁾ 참고로 유엔에서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는 18세 미만을 ‘법과 갈등 속에 있는 아동’(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²⁶⁾ 이는 소년에 대한 낙인을 지양하고, 재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으로 보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낙인이 아닌 재통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연령일수록 복지적 필요를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된다. 발달과학은

2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20.

22)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Business Plan 2020/21, p.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84764/YJB_Business_Plan_2020-21.pdf, 검색일: 2020.10.7.).

23) Ibid., p.5.

24) Hollander, A. and Tärnfalk, M., Juvenile Crime and the Justice System in Sweden, 2017.2.26., p.9(<https://lawexplores.com/juvenile-crime-and-the-justice-system-in-sweden/>, 검색일: 2020.11.17)

25) Fionda, Julia., Devils and Angels - Youth policy and Youth Crime. Oxford: Hart Publishing, 2005, p.39(Persson, M., op. cit., p.89에서 재인용).

26) Young, S., et al., op. cit., p.22.

소년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소년범법자에게 타당하면서도 재범을 줄일 수 있는 소년사법정책의 틀(framework)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²⁷⁾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은 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대해야 하며, 판사도 소년에 대한 처분 시 과학적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법에 있어서 발달적으로 적절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년 및 이들의 발달관련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소년사법체계 모든 부분에서 필요할 것이다.²⁸⁾ 여기에는 제재의 발달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²⁹⁾

참고로 Newton과 Bussey(2012)는 호주 시드니에서 초등학교 5학년 179명과 고등학교 8학년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전체 452명), 양 집단에서 대부분은 범죄행위에 대한 옳고 그른 것을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있더라도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면에서의 발달상 차이로 인해 비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³¹⁾ 이는 발달적 특성이 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사법체계에서 발달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조사와 관련하여 먼저 소년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구현되어야 한다.³²⁾ 이와 관련하여 아동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면 지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소년사법체계 모든 과정에서 유용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³³⁾

아동이 소년사법절차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담당하는

27) Scott, E. S., Children are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s and Justice Policy,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11(1): 2013, p.103.

28) Monahan, K. C., Steinberg, L., and Piquero, A. R., Juvenile Justice Policy and Practi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44(1), 2015, p.607.

29) Scott, E.S., op. cit., p.105.

30) Newton, N. C. and Bussey, K., The Age of Reason: An Examin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Involved in Delinquent Behaviour, 2012, p.4.(<https://bpspsychub.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1111/j.2044-8333.2010.02004.x>, 검색일: 2020.11.1.).

31) Ibid., p.11.

3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p.5-6.

33) Ibid., p.18.

사람이 아동의 언어, 정신적 성숙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³⁴⁾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 조사자와 검사는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조사하기 전에 이들의 지적 능력, 성숙도, 어휘력, 기억력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³⁵⁾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동심리학자 등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³⁶⁾ 또한 아동과 청소년(피해자, 혐의자, 증인)에 대한 조사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³⁷⁾

다음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³⁸⁾ 스웨덴의 경우 18세 미만 예비조사(수사)에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동석하도록 되어 있다.³⁹⁾

마지막으로 조사를 통하여 소년의 개별적 필요에 부응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소년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처음 접하는 경찰단계에서 개별면접과 상담 조사를 통한 개별적 수요를 평가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된다.⁴⁰⁾ 또한 이에 기반한 적시 상담 및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⁴¹⁾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특히 언어발달이나 이해력 수준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연령소년의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 위축감 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연령 소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경우 적시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개별화가 필요할 수 있다. 아동의 복지와 최선의

34) Papadodimitraki, Y.,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ACR)-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Profile Sweden, Centre for Youth & Criminal Justice, 2016.3, p.3 (<https://cycj.org.uk/wp-content/uploads/2016/03/MACR-International-Profile-Sweden.pdf>, 검색일: 2020. 4. 1).

35) Ibid.

36) Ibid.

37) Ibid.

38) Ibid.

39) Ibid.

40) 최정규·강정은·김수정·박보희·전미아·정병수·현소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 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312면.

41) 앞의 책, 312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처우방안, 개별화된 처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이는 개별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재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⁴²⁾ 유럽의 경우를 보면, 소년사법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공통적인 것은 다이버전(중재, 피해자-가해자 화해, 가족집단회합 등) 확대였다.⁴³⁾

형사정책은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아동의 복지에 적합하고, 비행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보호, 지도, 감시, 카운셀링, 보호관찰, 가정위탁(foster care),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⁴⁴⁾ 이와 더불어 연령에 맞는 지원, 시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⁴⁵⁾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가 범죄를 행한 청소년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이루어졌으나 2007년 이후로는 하나의 독립된 법적 처분이 되었다.⁴⁶⁾ 이는 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처분의 종류가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지역사회내 지원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저연령 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Lochman 등은 청소년기 이전의 공격적 아동(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처능력 프로그램(coping power program)을 집단/개별로 제공하고 1년 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부모보고에 의한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내재화된 문제행동 모두 감소하였지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보

42) Papadodimitraki, Y., op. cit., p.2.

43) Dünkel, F., 'Juvenile Justice Systems in Europe-Reform Developments between Justice, Welfare and 'New Punitiveness'', *Kriminologijos Studijos*, 10, 2014, p.6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1040931_Juvenile_Justice_Systems_in_Europe_-_Reform_developments_between_justice_welfare_and_%27new_punitiveness%271, 검색일: 2020.10.10).

4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9.

45) 소년의 연령에 적절한 서비스, 시설, 전문인력의 부족은 소년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된다(Young, S., et al., op. cit., p.26).

46) Holmberg, S., "Pafoljder for unga -ett system med tva svarforenliga principer,"(Nordisk Tidsskrift for Kriminalvidenskab 2007: 444-6), p.445(Persson, M., op. cit., p.103에서 재인용).

고).⁴⁷⁾ 나이가 어릴수록 개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별화된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많은 저연령소년의 경우 복합적 필요를 가진 피해자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와 사법 모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⁴⁸⁾ 즉, 저연령소년의 필요에 부응한 개입요소들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와 사법모델의 균형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저연령소년의 비행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에 관련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의 질을 낮출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 역할을 향상시킬 경우 자녀의 비행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⁵⁰⁾ 또 다른 한편으로 Jackson 등은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이 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속적으로 식량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통제수준이 낮으며, 초기 비행수준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¹⁾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량 불안정은 3세, 5세의 낮은 자기통제와 관련되었으며, 3세, 5세 시점의 식량 불안정은 9-10세의 비행과 관련되었다.⁵²⁾ 낮은 자기통제는 일시적 식량불안정과 지속적 식량불안정의 초기비행에 대한 영향을 일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이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가정의 식량 불안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원이 문제행동, 조기 비행, 아동발달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성을 감소시키는

47) Lochman, J. E., Dishion, T. J., Powell, N. P., Boxmeyer, C. L., Qu, L., and Sallee, M., Evidence-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for Preadolescent Aggressive Children: One-year Outcomes Following Randomization to Group versus Individual Delive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3(4), 2015, pp.728-735.

48) Young, S., et al., op. cit., p.21.

49)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Piotrowska, P. J., Stride, C. B., Croft, S. E., and Rowe, R., Socioeconomic Status and Antisocial Behaviour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5, 2015, pp.47-55).

50) Berti, C., and Pivetti, M., Childhood Economic Disadvantage and Antisocial Behavior: Intervening factors and pathway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7, 2019, p.124.

51) Jackson, D. B., Newsome, J., Vaughn, M. G., and Johnson, K. R., Considering the Role of Food Insecurity in Low Self-control and Early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6, 2018, p.134

52) Ibid.

53) Ibid.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⁵⁴⁾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비행예방을 위해서 빈곤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폭력노출, 학대피해 경험 등이 저연령소년의 비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피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하여 복지적 측면에서의 피해 치유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학대 피해,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 학대피해와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 가정 내와 가정밖에서의 피해 등이 비행과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예의 노출, 학대와 방임이 비행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민영과 박현선(2017)은 초등학생 2,3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학대와 방임, 빈곤이 초등학생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대와 방임이 빈곤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⁵⁾ 이 외에도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학대와 방임피해가 이후 비행에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⁵⁶⁾

한편, 직접적인 학대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도 초등학생의 비행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uan 등은 출생 후 3년 동안의 부부 폭력에 대한 노출이 5, 9세 자녀의 공격성(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공격성)에 관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⁵⁷⁾ 또한 5세 아동의 공격성에는 애착(3세 시점의 애착으로 부모가 보고)이 부부 폭력에 대한 노출(출생 후 3년 동안)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반면 9세의 경우에는 부부폭력에 대한 노출과 자녀 공격성 간의 관계가 부모-자녀 애착(9세 시점의 자녀보고)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즉 출생

54) Ibid., p.136.

55) 송민영·박현선,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2017, 195-215면. 참고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아동발달 단계별로 학대피해를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와 언어 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가장 비율이 높으며, 방임은 후기아동기(초등학교 고학년)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일/중복학대 모두 포함할 경우).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방임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배화옥·강지영, 앞의 책, 5-29면).

56) 임선아, 아동학대 피해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015, 85-108면.

57) Juan, Shao-Chiu., Washington, H. M., and Kurlychek, M. C., Breaking the Intergenerational Cycle: Partner Violence, Child-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5(5-6), 2017, pp.1158-1181.

58) Ibid.

후 3년 동안의 파트너폭력은 애착에 부적(-) 영향을 주고, 애착은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이는 출생 후 초기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이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은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Huang 등도 1세, 3세 시점에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폭력에 대한 노출이 9세 시점의 비행과 관련되며, 방임 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⁶¹⁾

이상의 연구들은 가정폭력에의 노출 및 학대피해 경험이 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가정폭력 노출 및 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참고로 초등학생 대상 피해와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로부터의 피해를 다루는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속하는 연구를 보면, Holfeld와 Leadbeater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사이버피해, 전통적 피해(신체적, 관계적 피해)가 내면화된 징후(internalizing symptoms, 불안, 쉽게 우는 것, 두통이나 복통, 불행하거나 우울해 보이는 것), 공격적 행동(발로 차기, 물기 또는 다른 아동 때리기와 다른 아동과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⁶²⁾ 연구결과를 보면 소년의 경우에만 관계적 피해가 공격적 행동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³⁾ 즉 앞에서 살펴본 가정폭력에의 노출, 학대와 방임 피해 등이 비행과 관련되는 것에 비해 또래로부터의 피해가 비행에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에서도 크게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학대피해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위의 복합적 필요 중 하나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필요하다.

59) Ibid.

60) Ibid.

61) Huang, Chien-Chung, Vikse, J. H., Lu, S. and Yi, S., Children's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Early Delinquency,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ume 30, 2015, pp.953-965.

62) Holfeld, B., and Leadbeater, B. J., The Interrelated Effects of Traditional and Cybervictimization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Symptom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64(2), 2018, pp.220-247.

63) Ibid.

이는 저연령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관련 연구를 보면, 김은주는 초등학교 3,1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불안, 스트레스, 게임중독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⁶⁴⁾ 특히 불안이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는 게임중독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자아존중감에는 정신건강요인 중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전신현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과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⁶⁷⁾ 연구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학교적응이 비행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도 초등학교에서만 유의미하였는데, 이 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⁷⁰⁾ 이정미 등은 초등학교 5, 6학년 511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부모, 친구, 학업, 교사관련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는데⁷¹⁾ 정서조절능력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²⁾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정신적, 정서적 측면이 비행예방을 위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년사법체계에 접촉하게 되는 소년들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Burke 등은 소년사법체계에 처음 오게 된 10-15세 소년소녀 75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지원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⁷³⁾ 이들의 84%는 아프리카계 미국흑인이었으며, 12%

64) 김은주, 초등학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인터넷게임중독이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 초등교육연구 28(3), 2015, 110면.

65) 앞의 글, 111-112면.

66) 앞의 글.

67) 전신현, 학교적응의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초, 중, 고 세학년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7, 2019, 73-97면.

68) 앞의 글, 89면.

69) 앞의 글.

70) 앞의 글, 90-91면.

71) 이정미·이지연·장진이, 초등학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2012, 99면.

72) 앞의 글, 104면.

73) Burke, J. D., Mulvey, E. P., and Schubert, C. A.,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는 백인이었다.⁷⁴⁾ 이들은 연구시점 이전 일 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며, 정신지체 진단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도 없었다.⁷⁵⁾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발달상의 제약도 없었다.⁷⁶⁾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品行장애, 우울, 불안, 약물사용 및 기타 아동정신병리 등을 파악해 보았으며, 조사대상자 중 74%는 적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⁷⁷⁾ 여기서의 조사대상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제시하였다.⁷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처우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에서 처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⁷⁹⁾

아홉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중고생 연령대에 비해 가족적 요인과 비행의 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개입영역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윤우석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특성(애착, 감독), 부부불화 및 학대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⁸⁰⁾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and Service Use among First-tim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2), 2015, p.3775.

74) Ibid., p.3775.

75) Ibid., p.3776.

76) Ibid.

77) Ibid., p.3777.

78) Ibid., p.3779.

79) 영국의 경우 정신 장애가 있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아동은 형사사법체계로부터 정신 건강 서비스로 다이버전될 수 있다. 이러한 다이버전팀의 유용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Taylor, C.,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2016 Ministry of Justice. London,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OST Note Number 577, 2018.6, p.4(https://dera.ioe.ac.uk/31884/1/POST-PN-0577_Redacted.pdf, 검색일: 2020.10.10.)에서 재인용).

80) 윤우석, 초등학생 비행에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행위의 차별적 영향-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한국범죄심리연구* 6(1), 2010, 194면.

것을 보여주었다.⁸¹⁾ 기광도도 초등학생 대상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기 통제력을 통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초등학생 대상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특성이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⁸²⁾ Singh 등도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아동의 비행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가족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며, 자녀는 가정에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본개념을 배우는 것이다.⁸³⁾ 또한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이며, 깨진 가정, 한부모 가정, 별거 가정, 부부 불화, 부부간 신뢰 결여 등은 자녀 비행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⁴⁾ 반면, 부모와 자녀의 저녁식사, 부모의 숙제 체크 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⁸⁵⁾ 이들은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비행 감소에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⁸⁶⁾ 이 연구 역시 부모의 감독(숙제체크),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저녁식사)이 아동의 비행예방에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부모역할이 자녀의 반사회적 성향을 통제하는 발달과정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⁷⁾

다음으로 부모의 역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황성현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위비행과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생에 비해 가족요인이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스트레스는 초등학생의 지위비행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⁸⁸⁾

Lucero 등은 취약가족 및 아동복지 연구(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새로운 부모와 자녀 코호트를 추적하는 전국적인 패널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81) 앞의 글, 195-197면.

82) 기광도,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1, 20면.

83) Singh, A., and Kiran, U. V., Effect of Single Parent Family on Child Delinq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3(9), 2014, p.867.

84) Ibid.

85) Ibid.

86) Ibid.

87) Buck, K. A., and Dix, T., Parenting and Naturally Occurring Declines in the Antisocial Behavio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Process Model.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6(3), 2014, pp.257-277.

88) 황성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0호, 2012, 23-43면.

가족과 학교요인이 초기 비행(9세 시점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활용한 자료는 미국 20개 대도시 75개 병원에서 처음 출산한 부모 4,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후 자녀가 1, 3, 5, 9세일 때 조사를 한 것이다. 이들은 자녀가 9세일 때 부모와 자녀의 자기보고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은 2,824명이었으며,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역할 스트레스(정적)와 학교소속감(부적)이 초기 비행(사람이나 자동차에 돌이나 병 던지는 행위, 고의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마리화나 흡연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인 부모역할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기술, 지원체계(자녀등학교, 방과후 활동지원) 등의 전략과 기술이 아동, 가족, 학교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⁹⁰⁾ 또한 위험에 처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학교 소속감을 키워주고,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⁹¹⁾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특히 저연령소년의 비행에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연령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애착이 초등학생의 비행 등에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신재현과 김상운은 초등학교 5-6학년 1,133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교사, 친구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애착이 지위, 도피비행(무단결석, 가출) 및 재산비행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²⁾ 교사에착은 지위, 폭력비행에만 관련되었으며, 친구애착은 모든 비행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⁹³⁾ 이러한 연구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다른 사람과의 애착보다 비행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손보영 등도 초등학교 4학년 남녀 2,3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⁹⁴⁾ 부모의 애정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에 모두 유의

89) Lucero, J. L., Barrett, C., and Jensen, H.,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School Factors Related to Early Delinquency, *Children & Schools* 37(3), 2015, pp.165-173.

90) Ibid.

91) Ibid.

92) 신재현·김상운, 초등학교 학생의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2015, 227-235면.

93) 앞의 글, 233면.

94)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⁹⁵⁾ 즉, 초기 청소년기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부모의 애정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⁹⁶⁾ 또한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가 아동(초등학교4-6학년)과 청소년(중학교1-3학년) 모두에서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⁹⁷⁾

이러한 연구들은 저연령 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부모와의 애착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가족개입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한다면 가정에 대한 개입이 저연령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소년사법에서 가정에 대한 개입은 부모교육훈련, 가족치료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교육훈련은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반사회적 행동을 파악하고, 적절한 양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애착 강화를 통한 가족관계 개선, 문제 해결, 가족갈등 등과 관련하여 부모대처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⁹⁸⁾ 이러한 부모훈련프로그램은 특히 저연령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⁹⁹⁾ 이는 자녀가 어린 시기에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문제행동 예방뿐만 아니라 긍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가족치료는 부모와 자녀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가족역학을 다루게 되며, 임상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¹⁰⁰⁾ 가족치료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부모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¹⁰¹⁾

향-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 155면.

95) 앞의 글, 160-161면.

96) 앞의 글, 163면.

97) 조은정,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2014, 103-126면.

98) Savignac, J., Families, Youth and Delinquency: The State of Knowledge, and Family-based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Research Report: 2009-1,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re(NCPC), 2009, p.12(<https://www.publicsafety.gc.ca/cnt/rsrscs/pblctns/fmls-yth-dlnqnc/fmls-yth-dlnqnc-eng.pdf>, 검색일: 2020.10.14).

99)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7-9세, 3-14세, 10-18세 자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Ibid., pp.13-14).

100) Ibid., p.14.

101) Ibid.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방식 등에 대한 교육, 부모-자녀 관계 개선 등을 위한 가족치료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째, 자유를 박탈하는 처우는 최후수단으로 가능한 단기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⁰²⁾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통신 및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족 방문을 위해서는 아동을 가능한 거주지와 가까운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¹⁰³⁾ 저연령소년일수록 가족과의 관계 유지나 가정에서의 생활이 보다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시설수용은 최후수단으로 가능한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연령소년이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특히 가족관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및 처우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저연령소년의 필요 및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조직(인력) 및 기관연계, 재통합 지향, 소년의 발달단계 고려 및 소년이 모든 절차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별화 및 다양화, 필요에 부응한 개입, 가족에 대한 개입,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치료 등이 중요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10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21.

103) Ibid., p.23.

제 3 장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저연령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전 영 실

제3장

저연령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제1절 | 개관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개관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이 만12세-14세 미만에서 만10세-14세 미만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즉 촉법소년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춰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의 조치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소년법 제1조)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도 조기개입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 소년법개정으로 보호처분도 7호→10호로 다양해졌으며(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자교육명령을 도입해서 가족에 대한 개입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였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로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및 법원조사와 재판,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어 있으며, 법원에서는 조사와 전문가진단 및 상담 등(필요한 경우 임시조치)을 통해 소년 및 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은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형사사법절차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자원이 존재하고, 전문적 역량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소년법이 개정되기 전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현황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저연령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저연령 비행소년 현황

가. 경찰단계의 저연령소년 현황

경찰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인원을 보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¹⁰⁴⁾ 구체적 수치를 보면, 2015년의 경우 6,551명에서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7,364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9년에는 다시 8,61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기서의 촉법소년은 만10세-14세 미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저연령소년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표 3-1>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촉법	6,551	6,576	7,533	7,364	8,615

출처: 소병훈의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 28,283건, 2020.9.29.
(<https://blog.naver.com/sotongsa/222102877307>, 검색일: 2020.11.4.).

촉법소년의 연령별로 소년부 송치인원을 파악해 보면 <표 3-2>와 같다. 최근 5년간의 수치를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60%대로 가장 많으며, 12세의 비율은 20%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10-11세의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대

104) 참고로 경찰실무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소년부에 송치되는 범죄소년의 현황을 문의한 결과 같은 기간 범죄소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를 나타내고 있다. 10-12세까지의 비율을 보면, 2015년 32.5%에서 2016년 38.5%, 2017년 38.4%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4.2%였다. 촉법소년 중 10-12세의 인원을 보면 2015년에 2,128명에서 2016년에는 2,534명, 2017년에는 2,896명, 2018년에는 2,521명, 2019년에는 2,945명으로 나타났다. 10세의 인원을 보면 2015년에 269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9년에는 472명에 이르고 있다. 11세의 경우도 2015년 542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9년에는 726명에 이르고 있다. 12세는 2015년 1,317명에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1,747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10-12세가 촉법소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30%대를 나타냈다. 12세의 경우 중학생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연령소년의 인원 및 비율은 더 낮을 것이다.

▶▶ <표 3-2>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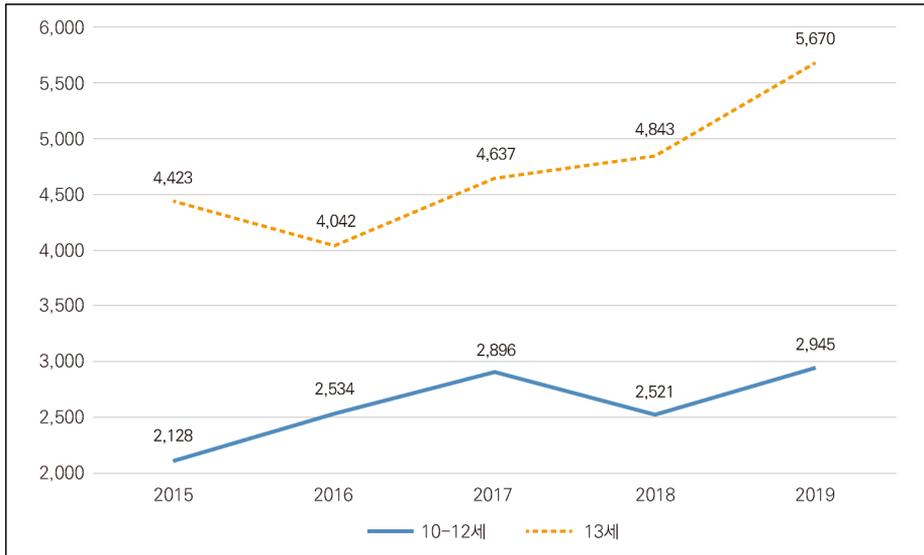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저연령				13세
		소계	10세	11세	12세	
2015	6,551(100)	2,128(32.5)	269(4.1)	542(8.3)	1,317(20.1)	4,423(67.5)
2016	6,576(100)	2,534(38.5)	352(5.4)	678(10.3)	1,504(22.9)	4,042(61.5)
2017	7,533(100)	2,896(38.4)	501(6.7)	792(10.5)	1,603(21.3)	4,637(61.6)
2018	7,364(100)	2,521(34.2)	383(5.2)	630(8.6)	1,508(20.5)	4,843(65.8)
2019	8,615(100)	2,945(34.2)	472(5.5)	726(8.4)	1,747(20.3)	5,670(65.8)

출처: 소병훈의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 28,283건, 2020.9.29.
(<https://blog.naver.com/sotongsa/222102877307>, 검색일: 2020.11.4.).

앞에서 살펴본 소년부에 송치된 저연령소년(10-12세)의 추세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 조금 감소하였지만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의 경우는 2015년에서 2016년에 조금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1] 소년부에 송치된 저연령소년 추세



다음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비행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비행유형을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절도의 비율이 50%대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폭력으로 연도에 관계없이 20%대이며, 최근에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비행유형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경찰에서 소년부에 송치되는 촉법소년 중 상당수는 절도로 송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⁵⁾

105) 참고로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죄명별 분포를 보면, 2019년의 경우 총 36,576명 중에서 절도가 12,941명(35.4%), 폭력(폭처법과 폭행, 상해)이 7,456명(20.4%) 등이었다(소년보호 사건 죄명별 접수현황에는 연령별 자료가 없음). 즉, 촉법소년에 비해 절도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3-3>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의 비행유형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총계	강력범					절도	폭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2015	6,551 (100)	373 (5.7)	1 (0.0)	5 (0.1)	311 (4.7)	50 (0.8)	3,759 (57.4)	1,399 (21.4)	1,026 (15.7)
2016	6,576 (100)	434 (6.6)	0 (0.0)	6 (0.1)	391 (5.9)	37 (0.6)	3,665 (55.7)	1,335 (20.3)	1,142 (17.4)
2017	7,533 (100)	447 (5.9)	0 (0.0)	8 (0.1)	383 (5.1)	56 (0.7)	4,073 (54.1)	1,766 (23.4)	1,247 (16.6)
2018	7,364 (100)	450 (6.1)	3 (0.0)	7 (0.1)	410 (5.6)	30 (0.4)	3,801 (51.6)	1,763 (23.9)	1,350 (18.3)
2019	8,615 (100)	397 (4.6)	1 (0.0)	7 (0.1)	357 (4.1)	32 (0.4)	4,536 (52.7)	2,148 (24.9)	1,534 (17.8)

출처: 소병훈의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 28,283건, 2020.9.29.
(<https://blog.naver.com/sotongsa/222102877307>, 검색일: 2020.11.4.)

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저연령소년 현황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 이상-18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최근에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14세 이상-16세 미만이 대체로 20%대(2019년에는 30.6%)를 나타내고 있다. 18세와 14세 미만은 각각 10%대를 나타내고 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인원은 2015년 3,016명에서 2016년에는 2,85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19년의 경우 3,827명). 14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 중 촉법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촉법소년 인원 자체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어린 소년의 비행예방 및 조기개입 등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4> 보호소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6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2015	25,911(100)	3,016(11.6)	7,166(27.7)	10,925(42.2)	4,804(18.5)
2016	23,526(100)	2,858(12.1)	6,054(25.7)	10,434(44.4)	4,180(17.8)
2017	24,383(100)	3,365(13.8)	6,086(25.0)	10,467(42.9)	4,465(18.3)
2018	24,494(100)	3,483(14.2)	7,043(28.8)	9,701(39.6)	4,267(17.4)
2019	24,131(100)	3,827(15.9)	7,393(30.6)	8,917(37.0)	3,994(16.5)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734면.

다음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현황을 저연령소년(10-12세 미만) 여부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10-12세 인원을 보면, 2015년 820명에서 2017년에 1,17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943명에 이르고 있다. 저연령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 3.2%에서 2017년 4.8%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서 2019년에는 3.9%에 이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경찰자료에서는 소년부에 송치되는 저연령소년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처분을 받는 대상자 인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2세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인원이 더 적을 것이다. 한편 13세 이상 소년보호처분 인원은 2015년에 25,091명에서 2016년에 22,56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2만3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시 연령이 13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96.8%에서 이후 2017년까지는 감소하여서 2017년에 95.2%였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서 2019년에는 96.1%에 이르고 있다.

▶▶ <표 3-5> 소년보호처분시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계	저연령				13세 이상
		소계	10세	11세	12세	
2015	25,911(100)	820(3.2)	57(0.2)	213(0.8)	550(2.1)	25,091(96.8)
2016	23,526(100)	961(4.1)	74(0.3)	247(1.0)	640(2.7)	22,565(95.9)
2017	24,383(100)	1,173(4.8)	154(0.6)	271(1.1)	748(3.1)	23,210(95.2)
2018	24,494(100)	1,019(4.2)	95(0.4)	230(0.9)	694(2.8)	23,475(95.8)
2019	24,131(100)	943(3.9)	71(0.3)	205(0.8)	667(2.8)	23,188(96.1)

출처: 법원행정처(2016), 2016 사법연감, 1004면,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1040면, 법원행정처(2018), 2018 사법연감, 1038면, 법원행정처(2019), 2019 사법연감, 1066면,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1074면.

제2절 |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

가. 인지

1) 일반적인 인지경로

일반적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인지는 학교, 피해자신고, 지역주민의 신고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비행예방활동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지역주민의 우범소년 신고 등으로 인지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년사건을 접수한 경우 여성청소년기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제2항). 경찰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타 수사부서, 지구대 등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여청계에 공문형식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경찰9).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인지경로

저연령 비행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로로 인지될 수 있는데, 특히 저연령소년의 경우 동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하는 경우 주민에게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의 자문대상이 된 경찰들은 저연령소년의 경우 절도가 많으며 이는 피해자신고로 많이 인지하게 된다고 하였다(경찰2, 5).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사이버상 따돌림, 괴롭힘 등이 많으며, 이는 교사, 친구, 보호자 신고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경찰8). 요즘은 117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신고가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하고 현장중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경찰8).¹⁰⁶⁾

106)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교육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ID를 알려 주면 자해 충동 등의 위기 청소년이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경찰8).

나. 조사

1) 조사주체

가) 일반적인 조사

소년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의 여청계가 담당하고 있다. 규모가 큰 경찰서의 경우 우범소년에 대한 조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며, 그 밖의 소년에 대한 조사는 여청계 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은 117신고사건, 학교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이 인지하는 사건(학생 면담 등을 통해 인지)에 대해 조사를 담당한다고 한다(경찰9).

또 다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규모가 작은 경찰서에서는 여청계 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모두 비행소년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다(경찰8).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도 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어휘력, 이해력 등이 낮을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에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등의 자격이 있는 경찰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내용

가) 일반적인 조사내용

(1) 환경조사

경찰의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환경조사서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환경조사는 비행의 원인, 동기, 성격, 태도,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소년업무규칙 제17조, 범죄수사규칙 제209조 제1항). 소년환경조사서 양식을 보면 이름, 나이, 국적, 직업, 연락처, 학력, 주소, 생활정도, 혼인관계, 종교,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우의견을 작성하는 란이 있다(소년업무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환경조사의 목적을 보면, 소년의 환경 및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에 필요한 심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범죄수사규칙 제12장 특칙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제207조 제2항). 결국 경찰단계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활용가능한 자료를 축적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조사서의 경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소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담당경찰관 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 자체의 구체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¹⁰⁷⁾ 이와 관련하여 경찰실무가에 의하면, 범죄환경조사를 할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의해 작성하다보니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경찰3).

(2) 비행성예측조사

경찰단계의 또 다른 조사로 비행성예측조사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업무규칙 제23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소년 및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함). 여기서 전문가는 범죄심리사 등 청소년비행연구 및 선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다(소년업무규칙 제24조).

비행성예측조사는 전문가인 범죄심리사가 가정, 학교 환경 등 비행촉발요인, 공격성·반사회성 등 인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비행성예측조사에는 이러한 조사내용 외에 이에 대한 인성검사 소견, 면담태도, 종합소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소년업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005년에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 간 협약체결로 비행성예측조사를 하는 전문가 참여제 운영 경찰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¹⁰⁸⁾ 최근 5년간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한 비율을 보면, 2015년 12.9%, 2016년 20.1%, 2017년 16.3%, 2018년 15.8%, 2019년 16.4%(전체 66,204명 중 10,847명 대상)였다.¹⁰⁹⁾ 즉 5년간 전문가 참여제의 비율을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10%대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

107) 신동주,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자료집, 2019.1.11., 대한변호사협회, 2019, 56면.

108) 김향곤,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자료집, 2019.1.11., 대한변호사협회, 2019, 80면.

109)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135면.

면,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비행횟수가 잦은 소년들에 대하여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다(경찰9).

전문가가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면(소년업무규칙 제25조 제1항), 이는 선도프로그램 결정이나 법원 송치시 비행소년 처우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소년업무규칙 제25조 제2항).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비행성예측조사자료는 법원 단계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원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방향을 정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고 하였다(판사1). 또한 부모의 태도, 가족관계 등 주관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아이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판사3). 이에 반해 비행성예측조사 활용 및 작성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즉, 비행성예측조사 활용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조사의 결론도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상담필요, 교육필요, 불량교우 단절 등)와 상당히 자세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판사2).¹¹⁰⁾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내용

(1) 환경조사

저연령 소년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환경조사서와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조사서의 재비행위험성 평가의 경우 생계담당자, 결손가정, 교육수준, 무단결석, 교우관계, 가출경험, 조발비행(14세 미만 우범행위와 촉법행위 각각 13점, 16점)과 관련된 점수를 통해 비행위험성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소년업무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러한 환경조사서는 저연령비행소년의 재비행위험성 평가에는 부족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연령일수록 가족 특성 등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비행위험성 평가항목의 경우 주로 개인적 특성(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의 특성 및 비행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0) 참고로 범죄심리사가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작성하는 자료의 경우 경찰, 법원 단계에서 의미있는 참고자료이지만, 범죄심리사 역량이나 전문성 편차로 인해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최수정,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315면).

(2) 비행성예측조사

다음으로 비행성예측조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경찰5). 또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하면 비행성예측조사의 경우 문항수도 많고, 선도프로그램을 하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경찰9). 반면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하면 초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문가 참여제를 권유하며, 보호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법원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한다고 하였다(경찰8). 여기서의 자문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성예측조사 활용은 담당경찰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심리사와의 자문을 통해 조사내용을 보면 비행성예측조사는 총 344문항이며, 단축형은 1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문항수를 줄인 단축형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축형 조사지의 경우 동일한 항목에서 문항수만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실무가도 비행성예측조사의 문항이 많고 질문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경찰4). 또 다른 경찰실무가도 저연령소년대상 평가도구는 중학생용에서 문항수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경찰1).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성예측조사의 질문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세심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연령소년대상 전문가참여제에 대한 경찰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라도 의무화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경찰1)과 이 조사가 수사관이나 경찰관한테 도움이 되지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의견(경찰5)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성예측조사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조사방법

가) 일반적인 조사방법

먼저 경찰단계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선입견,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소년업무규칙 제18조 1), 폭언 등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소년업무규칙 제18조 2)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조사장소와 관련해서는 학교, 직장 등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것은 피하되 소년이나 보호자가 요청시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소년업무규칙 제18조 4). 범죄수사규칙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범죄수사규칙 제208조).

조사시 동석자와 관련해서 보면, 경찰에서는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복리상 부적당할 경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소년업무규칙 제16조/범죄수사규칙 제211조 제1항). 이렇듯 경찰의 규칙에 의하면 보호자 연락만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시 보호자가 동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방법

실무가들과의 자문을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시 동석자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 소년에 대한 경찰 조사시 대부분은 보호자가 동석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소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¹¹¹⁾ 즉, 보호자가 있을 때 진술을 꺼리는 경우에는 저연령 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이 동석하기도 한다(경찰8).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10-12세)의 경우 누가,

111)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었던 소년과 보호자도 경찰조사시 보호자와 동행하였으며, 대부분은 보호자와 같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다. 다만 일부의 경우 보호자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은 경우들이 있었다.

무엇을, 어디서, 언제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¹¹²⁾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조사시 이해를 돕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하여 보호자나 외부자원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장소와 관련해서 보면, 경찰서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 요청장소 등이 가능하지만, 경찰실무가나 저연령 시기에 경찰 접촉이 있었던 소년 및 보호자 면접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아이들 조사는 진술녹화실에서 진행되며(경찰1), 소년이 원할 경우에는 진술녹음을 한다고 하였다(경찰8).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의 조사는 아이들이 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오게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실무가도 있었다(경찰9).

마지막으로 조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저연령 소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아동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피해에 관계없이 아동진술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경찰1).

다. 처우

1) 선도프로그램

가) 일반적인 선도프로그램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비행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하에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소년업무규칙 제31조 제1항). 선도프로그램은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찰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소년업무규칙 제31조 제2항). 선도프로그램은 비행소년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년이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하고 있다(소년업무규칙 제32조).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성교육, 심리치료, 봉사활동

112) Portland State University, Early Adolescence(10-12 years old) Developmental Milestones, p.2(<http://www.cwpsalem.pdx.edu/assets/early1.pdf>, 검색일: 2020.8.31.).

등으로 구성되며(소년업무규칙 제33조 제1항), 프로그램 대상자의 연령이나 최종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소년업무규칙 제33조 제2항).

선도프로그램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사랑의 교실)은 청소년전문기관 연계로 청소년상담사 등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이다. 둘째, 치유 선도프로그램(마음나눔교실)은 신경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에 의해 진행되는 자기통제, 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다. 셋째, 경찰선도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은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시스템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회복적 접근으로 진행하는 것이다.¹¹³⁾ 자체선도 프로그램의 경우 경찰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회 5시간씩 2차로 나누어 1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심리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¹¹⁴⁾ 학교전담경찰관의 자문에 의하면, 경찰선도프로그램은 범죄심리사가 5-6시간 교육, 경찰이 4시간 동안 사과 편지작성, 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한다(경찰9). 한 경찰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치유선도프로그램은 폭력, 절도비행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폭력/공격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경찰1).

이러한 선도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사서류에 결과보고서나 수료증을 첨부해서 사법처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¹⁵⁾ 경찰실무가에 의하면, 이전에는 사랑의 교실 수료 후 수료증을 주는 것에 그쳤으나 지금은 결과통보서에 참여 기간, 과정 등을 기재하여 관인이나 선생님 도장을 찍게 하고 있다(경찰1). 즉 이전에 비해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공식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문대상인 학교전담경찰관은 실제 판결문에 ‘선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경찰8). 이는 재판에서 선도프로그램 참여가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먼저 저연령소년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살펴보면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113)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137면.

참고로 2019년의 경우를 보면 전문기관 연계프로그램은 18,929명, 경찰선도프로그램은 6,815명, 치유선도프로그램은 196명이 연계되었다(경찰청, 앞의 책, 137면).

114) 김지연 외, 앞의 책, 2018, 70면.

115)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138면.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저연령소년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의 경우 촉법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선도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¹¹⁶⁾ 이와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별로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경찰9). 둘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 선도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자녀가 어린 경우 경찰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도프로그램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경찰5). 이러한 이유들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은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중고생과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경찰4,8). 둘째, 촉법소년의 경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개인상담으로 진행한다는 경우도 있다(경찰1). 이러한 개인상담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경찰1). 이와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은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서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의 저연령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경찰9). 셋째, 선도프로그램 중 자체선도프로그램의 경우는 초등학교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 학생들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범죄심리사와 경찰이 함께 진행하며, 지방은 상담사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경찰1).

마지막으로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의 슬픔 등에 대해 느끼게 하는 것, 미술치료,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경찰8). 또한 한 경찰서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학생 멘토링을 포함시켰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경찰5). 그리고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안이 있지만, 이보다는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경찰5).

116)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51면.

2) 회복적 경찰활동

가) 일반적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에서는 2019년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다.¹¹⁷⁾ 경찰의 경우 소년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으로 소년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적절할 수 있다.¹¹⁸⁾

회복적 경찰활동은 당사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민간 전문가 주재로 진행(경찰관 참여),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자(가족 등)가 참여하여 피해회복, 관계개선,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결과는 법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훈방 조치될 수도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절차를 보면, 사건선정(지역경찰,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발굴하여 전담부서에 연계)→예비검토(학교전담경찰관 등 전담부서 담당자와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이 함께 사안 검토 후 회복적 대화모임 여부 결정)→회복적 대화(전문기관)→결과반영(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송치, 경미사안은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및 훈방 등으로 처리)으로 이루어진다.¹¹⁹⁾

2019년에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을 한 결과, 95개 사건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84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한 가·피해자 모두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청에서는 2020년 4월 20일부터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¹²⁰⁾ 2020년 하반기의 경우 142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¹²¹⁾

117) 김향곤, 앞의 글, 84-85면.

118) 앞의 글, 83-84면.

119) 경찰청 홈페이지,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회복적 경찰활동 및 제도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2.jsp>, 검색일: 2020.10.3.).

120)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2020년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130개 경찰서)-경찰서와 전문기관간 1:1 협업체계 구축, 협력치안 구현-, 2020.4.17.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0420085932697&q_tab=&q_searchKeyTy=lngtCn___1002&q_searchVal=%ED%9A%8C%EB%B3%B5%EC%A0%81%20%EA%B2%BD%EC%B0%B0%ED%99%9C%EB%8F%99&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검색일: 2020.10.3.).

121) 경찰청 홈페이지,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회복적 경찰활동 및 제도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회복적 경찰활동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연령소년일수록 낙인을 지양하고, 재통합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저연령소년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실무가와외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 소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용하려고 한다(경찰9).

서울의 한 경찰서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만난 후 최종적으로 같이 만나는데 여기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얘기하며, 가해자는 행동의 원인 및 책임, 향후 다짐 등을 얘기하게 된다. 그리고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전문기관이 약속이행 형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며, 경찰에서는 이 약속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경찰서의 경우 우선적으로 초등학생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호자 참여여부는 참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초등학생 사례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 참여가 많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유리한 판결을 위한 목적보다는 관계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경찰9).

3)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가) 일반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학위·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소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전문성이 있는 경찰관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소년업무규칙 제13조).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위원), 학교와 경찰서간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소년범죄 등 정보수집, 가·피해청소년 선도·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소년업무규칙 제14조).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6월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¹²²⁾, 2019년을 기준으로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2.jsp>, 검색일: 2020.10.3.).

로 1,138명에 이르고 있다.¹²³⁾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현황 파악 및 117홍보 등 학교폭력 대응방법을 알려주고, 117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나 수사팀 연계, 면담이나 교육 등의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와 Hot-line 구축,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정보공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가해자 대상 선도프로그램 회부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¹²⁴⁾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전문가 참여제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를 선도제도로 본다고 하였다(경찰9). 또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하면, 예방교육과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경찰8).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은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 혹은 경찰에서 강조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며, 비행유형별로는 성비행, 사이버 범죄 등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비행과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다(경찰8).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매뉴얼상 고소, 학폭위, 우범소년 등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다(경찰8). 즉 지역 내 위기소년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하여 재비행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 저연령소년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중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저연령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경찰5,8). 이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경찰5,8).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위기 청소년 선도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취약한 저연령 비행소년의 파악 및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경찰5).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하면, 수사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아이를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서 파악한 후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접 데려가거나 의뢰한다. 또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 중 추가적으로 더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년안전망에 속한 기관에 연계를 한다고 하였다(경찰5).

122) 경찰청, 2019 경찰백서, 2019, 154면.

123)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130면.

124) 앞의 책, 131면.

이 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도 중요할 수 있다. 경찰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어릴수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의 열의나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높다고 하였다(경찰4).

4) 소년부송치

가) 일반적인 소년부 송치

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2항). 그리고 소년사건 송치시에는 송치서에 주거, 성명, 생년월일, 행위개요 및 가정상황을 적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송치하게 된다(소년법 제5조). 경찰서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양식을 보면, 비행소년(이름,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주거, 학교), 보호자(이름 및 관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등), 비행사건명, 발각원인, 동행여부, 증거품 등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비행사실(일시, 장소, 동기, 방법, 피해액 등) 및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

경찰실무가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시 서류는 소년보호사건송치서, 소년환경조사서, 진술서, 비행성예측자료표(전문가 참여시), 선도프로그램 결과통보서(프로그램 참여시) 등이다(경찰1).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우범소년조사는 비행처리결과보고, 범죄소년은 수사결과 보고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또한 반성을 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시 소년이 참여한 프로그램, 소년의 특성(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반성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여 보내고 있다(경찰8).

나) 저연령소년의 소년부 송치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하면, 실무상 소년부 송치시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에 대해서 사건이 법원으로 가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알려 주고 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불처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는 지침도 있다고 하였다(경찰9). 또다른 경찰관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반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불처

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경찰1).

라. 경찰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연령소년과 저연령시기에 경찰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보았다. 조사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에 접촉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가 대부분이었으며(저연령1,3,4,5,8,10,11), 이외에 CCTV(저연령2,6), 학교신고(저연령7,12) 등이 있었다.¹²⁵⁾ 사례7의 경우는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에서 경찰에 의뢰한 경우였다.

한편, 저연령시기에 경찰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면, 가출 신고가 되어서 경찰과 처음 접촉한 경우들이 있었다(청소년6,12,13,15). 또한 피해자 신고(청소년10, 12), CCTV(청소년9,15), 주민신고(청소년6,7) 등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현재 저연령소년의 경우는 피해자부모의 신고가 대부분인 반면, 저연령시기에 경찰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출로 경찰서에 처음 접촉한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이른 시기에 비행을 시작해서 지속된 경우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저연령시기에 지위비행으로 경찰에 접촉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경찰조사시 보호자 동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조사시 모두 보호자와 동반했다고 하였다.¹²⁶⁾ 이와 관련해서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화낼까봐 두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저연령2). 조사횟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경찰이 보호자와 통화하고, 소년만 조사한 경우도 있었다(저연령2). 또한 보호자와 동반하지만, 조사시에는 저연령소년 혼자만 따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저연령4보호자).

청소년의 경우도 경찰을 만날 때에는 대부분 보호자와 같이 가거나 먼저 가서 보호

125) 면접대상자 중 한 사례는 학교통고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았다(사례9).

126) 면접대상자들이 지구대와 경찰서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는 혼용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함께 귀가하였다고 하였다. 즉, 지구대에서 간단하게 작성할 때는 혼자서 한 후 보호자가 오기도 하였다(청소년6,8,10,11,12,14).

경찰조사시 보호자동반에 대한 의견을 보면, 초등학교 시기에든 혼자 조사받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는 보호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보면 자신을 안 좋아할 것 같고, 혼나고 맞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청소년9). 이와 유사하게 다른 사례도 보호자 앞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보호자가 조사 중간에 자신을 나무라기도 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혼자 조사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보호자보다는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청소년14).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저연령시기에 경찰접촉을 한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서 가거나 보호자가 연락을 받고 오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조사받거나, 보호자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경찰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저연령1보호자), 잘 해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저연령3,5,10,11,12, 저연령5보호자). 저연령소년의 보호자들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한 보호자의 경우 보통은 착한 경찰이 많았으며, 경찰이 잘 알려주고 조언도 해 주었다고 하였다(저연령2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도 경찰이 자신에게 아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얘기해 주고, 아이를 감싸주어서 고마웠다고 하였다(저연령12보호자). 반면 경찰이 딱딱하고 무섭게 말해서 아이가 말을 잘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저연령7보호자).

청소년들의 저연령시기 경험에 대해 알아보면, 경찰이 무섭게 대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청소년1,6,7,9,12,13). 여기에 속하는 사례들은 저연령시기에 잦은 비행경험이 있었던 경우들이다. 반면, 경찰이 잘 대해 주었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잦은 비행으로 경찰과 자주 접촉해서 경찰이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한 경우(청소년8), 경찰과 자주 접촉해서 맛있는 것을 사 주기도 한 경우(청소년9) 등이 있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해서 경찰이 위로해 주거나(청소년3보호자),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등(청소년8) 보호자에게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 대한 태도가 시기별로 다르다는 응답들도 있었다(청소년10,11,14). 한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파출소에 갔을 때에는 경찰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1때도 비행으로 경찰서 여청계에 갔으며, 자신이 어려서 약하게 대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15세부터는 좀 더 엄격하게 대한 것 같다고 하였다(청소년10). 또 다른 사례도 초등학교 시기에는 경찰이 잘해주었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경찰이 딱딱하게 대했다고 하였다(청소년11). 이외에도 초등학교 시기에는 경찰이 상담처럼 조사했는데, 중학교 시기에는 경찰이 무섭게 대했다는 경우도 있었다(청소년14).

여기서의 면접결과를 보면,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저연령소년과 보호자 대부분은 경찰이 잘 대해 주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경찰이 무섭게 대해서 아이가 위축되고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 경찰이 무섭게 대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저연령시기 잦은 비행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태도가 시기별로 달랐다고 느낀 사례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저연령시기에 보다 잘 대해 주었으며, 중학교 시기이후에는 더 엄격하고 무서워졌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연령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비행경력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찰을 접한 소년의 태도를 보면, 저연령 소년의 경우 무서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저연령4,7보호자, 저연령 5,8,11).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호기심으로 비행을 했다고 말하자 경찰이 무섭게 대응해서 아이가 그 이후 말을 잘 못했다고 하였다(참고로 학교에서 연계한 상담선생님의 경우 부드러워서 아이가 말을 잘 했다고 함). 이 보호자의 경우 자신도 처음 겪는 것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였다. 다만 경찰이 한 말을 아이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역할 등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보호자는 경찰조사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저연령7보호자). 또다른 보호자도 아이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친 후) 경찰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하였다(저연령4보호자). 이는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경찰접촉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찰서에 처음 가게 되어서 무서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저연령8,11). 한편, 보호자가 경찰서에 가기전에 아이에게 설명해 주고 안정감을 갖게 한 후 경찰서에 동행한 경우도 있었다(저연령11보호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저연령11보호자).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서 가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저연령 10의 경우만 무섭지 않았다고 하였음).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면, 청소년들 역시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 때 무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청소년3,7,9,16). 초등학생 시기에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교도소에 갈까봐 무서웠다는 사례(청소년9), 경찰접촉이 있는 이후에도 경찰서 가는 것은 무서웠다는 사례(청소년7) 등이 있었다. 반면 경찰을 만나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별 생각이나 느낌이 없었던 경우(청소년1,2,3), 보호자와 같이 가서 무섭지 않았다는 경우(청소년13), 가출하고 무서운 형과 아저씨들을 많이 만나봐서 경찰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는 경우(청소년12) 등이 있었다. 한편 지구대와 경찰서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지구대에 여러 번 갔고, 이후 초등학교 6학년때 경찰서로 갔는데, 지구대와 달리 경찰서에서는 무서웠다고 하였다(청소년9).

여기서의 면접조사결과들을 보면, 경찰과의 접촉에 대한 의견을 말한 저연령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경찰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형사사법기관과 접촉이 없었던 어린 소년들의 경우 경찰이 잘해 주더라도 무섭거나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다. 또한 보호자 중에도 아이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하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저연령 시기에 경찰을 접했을 때 무서웠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연령소년에 대한 경찰조사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원연계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며 경찰이 어려운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다(저연령1,3,8). 청소년의 경우는 저연령 시기 경찰 말을 조금 이해했다는 사례(청소년9), 경찰에게 이해 안 되는 단어를 물어보았다는 사례(청소년12), 경찰이 쉽게 말해 주었다는 사례(청소년13)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비행성예측조사를 경험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 한 사례의 경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복잡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다 마쳤다고 하였다(저연령5). 또 다른 면접대상자도 문항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였는데 어렵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다만

어려운 단어 밑에 뜻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저연령11).

여기서의 면접조사결과를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조사, 경찰과의 대화에서 어휘력, 이해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성 예측조사의 경우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선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저연령소년들은 모두 3일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움이 안되었다는 사례도 있고(저연령2,3),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저연령11). 후자의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중학생 1명과 같이 받았는데, 진로도 알려주고, 그림그리기를 하는 등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저연령11). 보호자 역시 상담을 받았으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양육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센터에서 다른 기관정보도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저연령11보호자).

선도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의 경우 개별상담에 가깝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개별상담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법원단계에서 처우실태

가. 인지

1) 소년보호사건 접수경로

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이외에도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도 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그러나 소년부에 접수되는 사건 중 대부분은 경찰로부터 송치된다. 보호자, 학교, 복지시설 장 등에 의한 통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참고로 공식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36,576명 중 통고처분에 의한 경우는 444명(1.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고처분 비율은 2010년 0.1%에서 2019년 1.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⁷⁾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통고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학교에서의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통고 비율이 낮다고 한다(판사1).

2) 저연령소년 사건 접수경로

가) 저연령소년 접수경로

소년부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거의 100% 경찰송치에 의해 접수된다고 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통고이지만 경찰을 통해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학교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직접적으로 통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판사1). 통고처분이 별로 없는 이유는 학교나 시설에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한다(판사2). 일반 비행소년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소년의 경우도 주로 경찰을 통해 접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법원에 오는 저연령소년의 특성

연구 자문을 해 준 소년부 판사 및 소년조사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소년부에 오는 저연령 소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즉, 저연령일수록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고 하였다. 사소한 물건 하나 훔치는 것부터 초등학교생이 하기 어려운 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생의 경우 피해자신고에 의한 사례가 많으며, CCTV 등으로 인해 사소한 것으로도 법원에 많이 오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우범소년의 소년부 송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초6부터 중3까지가 많으며, 여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판사1).

또 다른 판사의 경우도 초등학교생의 비행은 절도, 폭행이 많으며 과자, 화장품, 우유 훔치기 등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한 경우부터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다양하다고 하였다(판사3).

저연령 소년의 가정환경도 다양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도 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력과 경제적 수준이 양호한 환경에서 잘 몰라서 비행을 행한 아이들이 있는

127)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 2020, 734면.

데,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 주의를 주고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 된다고 보았다. 또 다른 유형은 보호력이 약하고, 숨어있는 비행이 많은 아이들인데,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는 경찰에서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봐주다가 누적이 되어서 오는 사례들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판사4). 또 다른 판사도 경미한 일회성 비행의 경우에는 가정문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이는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회성으로 해 본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빈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공포체험이라고 생각).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미한 절도-자전거 절도, 편의점 절도 등-나 경미한 폭행 등을 행한 소년이 많으며,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반면 도벽이 의심되는 절도사건의 경우 가정문제(방임 등)나 소년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였다(판사2).

소년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저연령소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절도 등의 경우 보호력이 없는 편이며, 학폭위사건의 경우는 보호력도 뛰어나고 아이의 어휘력도 괜찮은 편이라고 하였다(소년조사관1).

판사나 소년조사관과의 자문을 통해서 법원에 오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미한 일회성 비행으로부터 누적된 절도 등 횡수나 비행유형 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보호력 등의 문제가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가정문제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의 처우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나. 조사

1) 법원 조사개관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비행관련 내용(비행사실 및 원인, 비행이후 상황과 비행전력), 소년과 보호자 특성(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간 관계, 소년의 친구관계 및 가정환경 등), 소년 비행화 경위 및 보호자 보호상황과 향후 보호능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 위험성, 소년의 심신상태 등이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또한 조사 및 심리를 위해 소년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

업가·교육자,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소년법 제12조).

경찰조사와의 차이를 보면, 경찰조사의 경우 비행사실, 재비행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법원에서의 조사는 사건내용에 관계없이 환경(부모, 학교 등), 성행,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년조사관 자문에 의하면, 법원조사에서는 소년의 내적 부분(ADHD, 큰 트라우마, 왕따피해 등), 외적 환경(교우관계, 부모관계 등)을 파악한다(소년조사관1,2,3).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소년조사관1,2,3).

2) 처분전 교육

가) 처분전 교육대상

10-12세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자신의 현재, 미래 행동을 이끌 가치와 신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사고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이다.¹²⁸⁾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와 신념,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처분전 교육은 1호 처분 등이 예상되는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내용에는 소년보호처분 소개, 소년의 발달 특성, 소년과 보호자 간 바람직한 상호작용 등이 있으며, 교육직후 소년과 보호자가 소감문, 생활계획을 작성하고 바로 재판에 출석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다.¹²⁹⁾ 이 연구에서 자문을 해 준 판사와 소년조사관도 처분전 교육에서는 청소년특성, 소년사법절차,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기간에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였다(판사2, 소년조사관1). 처분전 교육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판사2, 소년조사관1,4,5)이다.

1호 처분의 경우 법정에서 간단한 훈계로 심리가 종결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약하고, 보호자들도 보호처분 결정후 소년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128) Portland State University, op., cit., p.1.

129) 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46면. 참고로 인천가정법원의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재판기일과 관계없이 조사기일을 정해서 교육을 하며, 보호소년과 보호자 스스로가 2주 동안 수행할 과제를 정하게 하고 과제 이행여부를 본 후 심리개시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신한미,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보호 재판절차 개선방안, 2018, 법원행정처 내부자료, 24면).

점을 고려하여 소년조사관의 처분전 교육을 통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¹³⁰⁾ 처분전 교육을 통하여 1호 처분도 보호처분의 종류임을 강조하고,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며,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¹³¹⁾

소년부 판사 및 소년조사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실무상 불처분 혹은 1호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저연령, 비행경력이 없는 경우,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단순 절도, 단순폭행 등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주로 처분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판사2,3,4, 소년조사관1,2,3,4).

소년조사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처분전 교육은 초등학교생부터 중1까지가 적합하며(소년조사관1), 주로 초등학교생에게 많이 내린다고 하였다(판사2, 소년조사관1,4). 다만 경찰단계에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처분전 교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판사2, 소년조사관1).

나) 처분전 교육내용 및 평가

처분전 교육은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참여자가 많은 경우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집단별 3-4팀이 적절하다.¹³²⁾ 처분전 교육의 과정을 보면,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비행유형을 가진 아이 8-10명(보호자 합하면 16-20명)을 대상으로 교육(1시간 10분)을 하고 소감문을 작성(20분)하게 한다. 이후 일반적으로 당일 재판이 진행된다. 처분전 교육은 소년조사관이 담당한다(소년조사관4).

처분전 교육에 참여한 태도, 아이와 보호자가 느낀 점을 듣고 판사가 최종 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판사3). 처분전 교육 태도 등을 보고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소년조사관이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판사가 추가적인 조사명령, 혹은 다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소년조사관4).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교육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회성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처분전 교육을 받고 난 후 대부분 재범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판사2).

소년조사관의 처분전 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면, 저연령소년, 초범, 경미한 경우이면

130) 안문희, 앞의 책, 46면.

131)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운영실무, 2014, 91면.

132) 안문희, 앞의 책, 46면.

서 불처분이나 1호처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재판당일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집단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이후 자녀양육, 아이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는데, 첫째, 소년과 보호자 각각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조사관의 업무량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 및 보호자 각각에게 필요한 교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¹³³⁾ 둘째, 처분전 교육이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의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 교육이 길거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소년조사관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처분전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캠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소년조사관1). 처분전에 가족캠프를 할 경우 만족도도 높고 비행성행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소년조사관2).

3) 소년조사관 조사

가) 조사기준

판사들을 대상으로 소년조사관 조사명령시 고려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자문내용을 보면,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년조사관 조사를 한다는 의견(판사4),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호자의 가치관이 불안하거나 아이의 상태가 특별한 경우(호기심이나 단순 충동을 벗어난 비행) 소년조사관 조사를 실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판사1). 이와 유사하게 소년이 우울증,品行장애, 폭력성이 있거나 가정문제, 재범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에 소년조사관 조사를 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판사3).

참고로 부산가정법원 자료를 통하여 소년조사관 조사를 하게 되는 기준을 보면, 나이가 비교적 어린 학생으로 이전 처분 경험이 없고, 비행내용이 상습적이지 않은 절도나 경미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등이라고 한다.¹³⁴⁾

133) 안문희, 앞의 책, 67면.

134) 부산가정법원, 앞의 책, 14면.

소년조사관들도 심리적 문제 등 상담이 필요하거나 보호력이 좋지 않은 경우, 성비행 등의 경우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소년조사관1,2,3).

이러한 소년조사관 조사는 저연령일수록 대상이 될 수 있다(판사1, 판사4).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복지적 기능에 해당되며,¹³⁵⁾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조사관에 의한 촉법소년 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다.¹³⁶⁾

나) 조사대상

소년조사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저연령일수록 보호자 위주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법원에서의 조사는 교육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어린 아동일수록 보호자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보호자가 보호력이 낮거나 잘 얘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교사에게 연락하며 생활기록부도 참고하게 된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있다(소년조사관3).

다) 조사방법

소년조사관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방법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를 보고 필요하면 간단한 테스트를 하게 된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조사관 조사가 많은 편이다(판사1).

소년조사관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제시해 보면, 먼저 아이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법원에 오면 위축되어서 편하게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보호자와 먼저 면담하고, 그 사이 아이는 보호자와 조사관의 대화소리도 간접적으로 듣고 마음을 편하게 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생활패턴, 노는 문화, 주변 친구 등에 대해 질문하며, 구조화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고지하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그러나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예, 아니오 등의 답변), 회피적인 경우, 어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경우에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이의 연령대에

135) 안문희, 앞의 책, 166면.

136)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19(2), 2008, 85면.

맞게 질문해서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이가 어린 경우 감정카드 등을 사용하여 조사를 하기도 하며(소년조사관4), 관찰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소년조사관3). 이 외에 심리적·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를 의뢰하고 간이 MMPI 등을 직접 검사하기도 하며(조사결과는 보호자에게 설명)(소년조사관3), 아이조사가 어려운 경우(지적 장애, 경계성 장애 등)에는 주변 선생님, 가족, 주변 어른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다(소년조사관4).

다음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이와 소년사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이 양육 시 고민, 비행이후 고민, 아이에 대한 관심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동안 아이를 면담한다. 이후 아이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보호자를 조사한다. 보호자와는 재판전까지 고쳐야 할 부분, 아이 양육계획, 보호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같이 얘기한다(소년조사관2). 이는 소년조사관 조사가 주로 저연령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자대상 조사에서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저연령소년, 초범인 경우 부모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소년조사관5). 이와 유사하게 다른 소년조사관도 조사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2시간 교육 중 30분정도). 이는 일반적인 교육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의사항, 구체적인 하루 일과 코칭 등이 해당된다. 교육과 더불어 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하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귀가시간 정하기, 게임시간 정하기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부가한다(소년조사관2).

소년조사관 조사에서 보호자의 태도를 보면,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 방어적인 편이라고 한다(소년조사관1).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의 목적 등을 설명하면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라고 한다(소년조사관2).

소년조사관의 조사소요시간은 조사관에 따라 다르며 짧은 경우 1시간-1시간 30분, 긴 경우는 2시간-2시간 30분이다(소년조사관2).

라) 조사종료

소년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소년심판규칙

제12조 제1항), 보고 전후로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2조 제2항). 또한 소년조사관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자는 정신건강보건센터, 아이는 Wee센터 등에 연계되기도 한다(소년조사관4).

마) 소년조사관 평가

소년조사관 조사는 주로 저연령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관 조사의 장점은 첫째, 조사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판사1,3). 소년조사관의 경우 아동, 심리상담을 전공한 경우가 많아서 저연령 대상 조사가 적절할 수 있다(소년조사관1). 또한 조사관은 저연령소년과 대화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조사관의 경우 법원에서 연계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연계를 할 수 있다(판사1,3).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인력부족은 한계로 작용한다. 참고로 소년조사관 인원은 총 60명이며, 서울 등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조사와 겸임을 하고 있다.¹³⁷⁾ 이러한 인력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년조사관 조사를 통한 저연령소년의 파악 및 보호자교육과 상담, 이를 통한 자원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모두 소년조사관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환경을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저연령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1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한 사건에 조사관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한다. 다만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조사관 확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판사2).

한편 소년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역할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기존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소년조사와 외부전문가 및 기관의 발굴, 연계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⁸⁾ 연구자문을 해 준 소년조사관의 의견을 보면, 엄마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견(소년조사관 1,2), 조력자로 생각하며, 사건으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는 의견(소년조사

137)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 2020, 180면.

138) 송현종·노혜련, 앞의 글, 322면.

관2), 보호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은 소년 분류역할(보호력, 정신문제, 상담필요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소년조사관3)이 있었다. 또한 조사, 외부기관 연계 활용, 외부기관 발굴, 프로그램 부가 정보, 캠프운영, 교육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도 하였다(소년조사관4).

소년조사관 조사의 경우 전문성 있는 조사관이 저연령소년의 발달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처우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기관 발굴 및 자원연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소년을 파악하고 자원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때 보호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가 진단 및 상담

가) 전문가진단 및 상담

(1) 조사대상

소년 조사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절이 안되는 소년(ADHD 등), 트라우마가 있거나 왕따 피해경험이 있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소년조사관2). 이 외에 정신과적 질환, 지능의심, 발달 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소년조사관3), 우울감, 자살사고,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심사례, 지적장애 등)(소년조사관1)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지능, 발달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진단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전문가진단 및 상담은 진단을 위해서 하거나 혹은 처분 대체(12세미만에 대한 상담 및 교육)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판사1).

이와 유사하게 부산가정법원 자료를 보면,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은 ①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등, ADHD나品行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나 음란물 지속적 시청의 영향으로 성폭력을 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약물을 흡입하는 경우 ② 12세 미만으로 수강명령이 불가능하지만 성행개선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¹³⁹⁾

(2) 조사방법

진단은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며, 상담은 최대 4개월, 16회기까지 가능하고, 진단과 상담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소년조사관1,3). 전문가진단 및 상담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정해진 기간은 아님) 동안 초진, 심리검사, 결과상담 등이 포함된다. 이 때 보호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가 권하는 약물치료도 받는 경우가 있다(소년조사관3). 이 과정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면 불처분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7호처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소년조사관1). 소년부 판사에 의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부과하거나 비행성이 큰 경우 7호처분을 내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경우에는 단체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7호처분은 가급적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판사2).

나) 상담조사

(1) 상담조사 개요

상담조사는 소년이 법원이 위촉한 심리상담 전문가와 일정기간 동안 상담을 받고, 소년조사관이 이를 점검하여 처분의견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심리상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소년과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¹⁴⁰⁾ 이 기간 동안 상담 및 조사 뿐 아니라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¹⁴¹⁾

상담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심리상담 전문가가 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해서 소년의 변화를 이끌고 조사관이 이를 점검하여 처분의견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또는 전문가진단과 병행하기도 하고, 전문가진단과 별개의 조사절차로 이루어지기도 한다.¹⁴²⁾

139) 부산가정법원, 앞의 책, 15면.

140) 최선경, 소년보호사건의 새로운 절차에서 조사관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회(2011.3.28.), 9-10면(안문희, 앞의 책, 42면에서 재인용).

141) 김지연 외, 앞의 책, 74면.

실무상 상담조사는 일반적으로 12회기로 진행되며, 상담센터, 정신과 부설 상담센터 등에서 일대일로 상담을 받게 한다(소년조사관3).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상담조사

저연령소년을 중심으로 상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무상 12세 미만의 경우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이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된다.¹⁴²⁾ 상담조사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소년의 연령이 어리고 사안이 무거운 경우, 보호자 인식이 부족한 경우, 개선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다. 상담조사는 교육목적이 강한 편이라서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소년조사관3). 다른 소년조사관도 대상자가 어리고 보호자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 상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조사시 보호자 상담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뢰기관에 보호자 상담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였다(소년조사관2).

이러한 상담조사는 상담전문가를 연결시키는게 중요한데,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경우 진단,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와 매칭하게 된다. 이외에 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지를 잘해주거나 지역연계를 잘 해 주는 상담전문가, 부모교육을 잘해 주는 전문가 등과 매칭하게 된다(소년조사관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가를 통해서 상담조사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개인상담을 하고 이후 부모상담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하며, 지능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능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단 이러한 검사는 아이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6회기 후 법원에 중간보고를 하며, 12회기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단, 아이가 동기가 있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상담을 지속하게 된다.

상담은 1회당 50-60분(50분의 경우 아이 40분, 보호자 10분)정도 이루어진다(소년조사관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가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1회당 50분 정도 상담하며, 놀이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다(언어적인 것은 한계가 있음). 실무가에 의하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할 때 12회기는 짧다고 보았다. 라포형성 등에도 시간이 필요하여(그동안 괜찮은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

142) 신한미, 앞의 글, 25면.

143) 앞의 글, 23면.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상담조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상담(필요시 보호자 상담 병행)을 통하여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다. 또한 상담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연령비행소년 중 보호력이 약한 가정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법원연계를 통한 상담과 교육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판사3). 다만 전문가 상담조사를 위해서는 예산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판사1).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비행소년 상담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소년조사관3).

5)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

꿈키움센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에 따른 대안교육(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 보호자교육, 체험교육, 가족캠프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¹⁴⁴⁾

가) 저연령 대상자 특성

꿈키움센터 상담조사를 담당했던 실무가와와의 자문을 통해서 상담조사를 받는 초등학생의 특성을 보면, 비행전력이 거의 없으며, 비행도 초기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폭력으로 위탁된 학생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면담 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나) 저연령소년 상담조사 내용

꿈키움센터 상담조사를 담당했던 실무가와와의 자문을 통해 저연령소년에 대한 상담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꿈키움센터에서의 심리검사는 특수지능적성검사, 특수인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두 집단검사이다.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지능검사는

144)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업무현황, 내부자료, 2020.6.

특수지능적성검사가 아닌 아동용지능검사(개별검사)를 활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초등학생 면담 시 비행 동기와 사건 이후부터 교육을 받게 되기까지 느끼고 생각한 점, 현재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담을 한다고 한다.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이다. 상담조사 기간이 통상 3-5일이므로 짧은 기간 동안 학생의 개선 가능성을 확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처분 의견이나 지도 필요사항 작성 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상담조사시 ADHD,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강사 등이 정보를 공유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다. 상담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상담센터 등을 소개해 주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유하고 있다.

센터에서의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을 보면, 폭력예방·역할극·예절교육 등 비행예방과 체험·사례 위주의 인성교육으로 편성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보호자의 자녀 지도·보호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학생 간 관계개선을 위해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교실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상호이해, 소통 등을 주제로 가족헌법 만들기, 역할극 등으로 운영된다. 상담조사는 보호처분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하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어 교육에 집중하는 편이며, 교육효과도 높다고 한다.

상담조사가 종료되면 법원에서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한다.¹⁴⁵⁾

꿈키움센터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족캠프 등도 저연령소년에게 효과적이다(소년조사관5).

6)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의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145) 법원소년부에서 상담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요청한 영역에 대해서만 상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꿈키움센터나 분류심사원에서의 상담조사 모두 마찬가지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또한 법원소년부에서 상담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소년의 진로지도와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이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2항).

품행, 경력 및 가정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이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판사가 결정전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처분의견을 제시한다. 판사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보호관찰소까지의 거리, 낙인효과, 비행친구 접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결정전 조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는 주로 범죄 소년 초기(중2-3)에 활용한다고 하였다(판사1). 또 다른 판사의 경우 저연령소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면 주로 조사관 조사를 활용하지만, 조사관 인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도 활용한다고 하였다(판사3). 그러나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많이 활용한다는 경우도 있었다(판사2). 이 경우에는 조사관 인력부족도 작용하지만,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의 질이 매우 좋아서 아이의 지적 능력이 낮아 보이거나 상습도벽이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 보호능력이 매우 약해 보일 때 결정전 조사를 보낸다고 하였다(판사2).

이러한 의견들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는 판사들에 따라 활용에 있어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 화해권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 제1항). 또한 화해를 위하여 화해권고위원을 위촉, 지정하게 된다(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회복 및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동 규칙 제26조의5). 또한 화해권고가 불성립되더라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제28조의8 제2항).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낙인을 지양하고 사회재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화해권고를 통한 재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자문대상 판사도 화해권고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며, 일반 민사조정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다고 하였다(판사4). 다만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8) 기타 처분전 조치

이 외에도 법원에서 처분 이전에 봉사나 문화체험, 교육 등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처분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봉사, 가족 연극체험 등을 실시하고, 소년조사관이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다(소년조사관5).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경과를 고려해서 판사가 처분(혹은 불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판사4).

다. 임시조치

소년법상 임시조치는 분류심사원 위탁, 개인 및 시설위탁/병원 및 요양소 위탁 등이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류심사원 위탁 이외의 임시조치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 일반적인 위탁처우

임시조치 중 가장 주된 방법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분류심사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위탁 및 유치소년은 구획된 장소에 수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이다.

분류심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분류심사원의 임무)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분류심사시 심리학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 판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문제나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 대상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가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첫째, 남성과 여성, 둘째,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에 대해서는 분리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이외에 연령에 따른 분리수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한 처우과정을 보면 신입자교육(1주 30시간 이내, 심리적 안정 및 새로운 환경 적응을 돕고, 적절한 분류심사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며, 다음은 기본교육(인성교육 20시간, 정신교육 및 체육 4시간, 분류심사 6시간)이 1주간 최소 30시간 이루어진다. 기본교육은 2주간 60시간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⁴⁶⁾

참고로 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분류심사위탁 의뢰의 판단 기준은 ‘처분경력’(64.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재범가능성’(47.1%), ‘보호력 및 가정환경’(23.5%) 등의 순이었다.¹⁴⁷⁾ 즉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소년은 처분경력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호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가) 저연령소년의 위탁현황

아래의 표를 통해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저연령소년 추세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매년 20명-50명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통계는 만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1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저연령소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탁소년 중 만 12세 이하의 비율이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류심사원 위탁시 판단기준이 처분경력, 재범가능성, 보호력 문제 등이 라고 볼 때 저연령소년 중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류심사원은 폐쇄형 시설이고, 저연령소년에게 특화된 시설이 아니라고 볼 때 분류심사원 이외의 다양한 임시조치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6) 법무부, 2020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2020, 33-34면.

147) 이승현·박성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82면.

▶▶ <표 3-6> 저연령소년 분류심사원 위탁현황

(단위: 명(%))

구분	만12세 이하	전체
2015년	24명(0.4%)	6,178명
2016년	31명(0.6%)	5,408명
2017년	50명(0.8%)	5,909명
2018년	56명(1.0%)	5,703명
2019년	45명(0.9%)	4,955명
2020년 9월기준	38명(1.2%)	3,240명
누적인원	244명	31,393명

출처: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위탁처우

(1) 위탁과정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분류심사원에 보내지 않지만,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초등학생 중 일상활동 반경이 넓은 경우들이 있음)에는 분류심사원 위탁을 하기도 한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불안인 것이다(판사1).

분류심사원 위탁은 재판에서 위탁결정이 내려진 후 바로 위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생애 첫 위탁을 하는 경우 자율위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우범성 없는 경우). 이러한 자율위탁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분류심사원 위탁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보호자가 데리고 가고, 위탁 종료시에도 보호자가 데리러 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는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율적으로 분류심사원에 가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심리적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위탁처우 평가

저연령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원 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진단 및 이에 기반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태도나 행동에서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첫째, 분류심사원은 서울분류심사원

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소년원에서의 기능대행 등 전국적으로 총 7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⁴⁸⁾ 즉 저연령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 수용됨으로써 심리적 문제, 가족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현재 분류심사원은 초범/재범, 우범 등 대상소년의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류심사원에서 초범, 재범, 우범 소년에 대해 분류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판사1). 저연령소년의 경우 초범이거나 우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리수용을 할 경우 별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류심사원 실무가의견도 저연령소년의 경우에는 중고생 연령대와 분리 수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조사 및 교육 등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 및 인력 확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저연령소년에게 맞추어진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분류심사원 실무가와와의 자문에 의하면, 위탁에 있을 땐 부모 관심도 많아서 이 기간 동안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연령소년에게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수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류심사원 위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⁹⁾ 소년조사관에 의하면, 분류심사원의 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소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현재 환경내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분류심사원 위탁은 안하는 편이라고 하였다(소년조사관1).

다섯째, 분류심사원 이외에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 임시로 위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소년부 판사에 의하면, 주민복지센터나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임시로 위탁받아서 사례관리해 주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법원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판사2).

한편, 분류심사원 이외의 임시조치로 쉼터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조사관

148)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2020, 594면.

149) 이승현·박성훈, 앞의 글, 135면.

에 의하면, 방임과 학대피해가 심한 소년에 대해서는 쉼터에 위탁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한다(소년조사관5).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청소년회복센터, 쉼터 등에 위탁하기도 하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잘 지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보호력이 있는 보호자가 케어해 주기 때문이다(판사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연령소년에 대해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원이 개발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

라. 심리

소년재판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소년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이루어지며, 재판에는 소년과 보호자가 같이 참석한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소년 법원은 성인 법원과 비슷하지만 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앉을 수 있으며, 판사는 아동을 다루는 훈련을 받는다.¹⁵⁰⁾

소년법상 심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소년법 제24조 제1항). 이외에 구체적인 동석자, 심리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국선보조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분류심사원 위탁시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분류심사원 위탁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 선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저연령소년에 대한 국선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고, 복지적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상담사 등이 국선보조인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⁵¹⁾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처분결정시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150) Youth Justice Legal Centre: Which Court(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OST Note Number 577, 2018.6, p.3, <https://dera.ioe.ac.uk/31884/>, 검색일: 2020.10.10.에서 재인용.).

151) 참고로 국선보조인이 분류심사원 방문을 할 경우 면담시간은 30분이내이며, 재판당일에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최정규·강정은·김수정·박보희·전미아·정병수·현소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159면). 즉 소년 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그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고려한다고 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력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보호자 보호력이 적절한 경우 1호(보호력이 좀 불안하면 위탁보호위원회에게 맡김), 불안한 경우 4호, 보호자의 보호력이 너무 낮으면 6호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다(판사 1). 또 다른 소년부 판사도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1호 처분 위주로 부과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1,4호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다(판사3).

마. 법원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1) 조사에 대한 의견

첫째, 처분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한 저연령소년은 한 사례가 있었다. 앞서도 보았듯이 처분전 교육은 주로 불처분이나 1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저연령소년의 경우 처분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처분전 교육을 받은 사례의 경우 교육당시 1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비행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였다. 처분전 교육에 대해서 보면, 보호자끼리, 아이들끼리 받았으며, 1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1-10호 처분에 대해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만화 PPT 등을 보았다고 하였다(저연령10). 이 소년의 경우 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는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년조사관 조사를 받은 사례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소년조사관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다는 의견(저연령13보호자), 처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단어를 잘 설명해 주었다는 의견(저연령1), 친절했다는 의견(저연령2) 등이 있었다. 중1때 소년조사관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례 역시 조사관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다(청소년3). 즉 소년조사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 및 보호자는 이 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인 편이었다. 저연령소년 보호자에 의하면, 3일간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았는데 이러한 상담조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심리, 초등학교 또래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 등에 대해서 알려주

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저연령3보호자).

2) 임시조치에 대한 의견

이 연구의 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 중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는 3명이었다(저연령3,8,10).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짧은 기간에 재비행이 일어난 경우들이었다. 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한 의견을 보면,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잘못했지만 초등학생에게 5주간 시설에 두는 것은 너무 길다고 하였다(저연령3보호자). 분류심사원에 다녀온 후 아이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하였다(저연령3보호자).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생활(4주반)은 무서웠다고 하였으며, 포승줄로 묶일 때는 심장이 떨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자유가 없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반면 인성교육은 도움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서로 싸우는게 오해로 싸우는 거니까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저연령8).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분류심사원에 갈 때 보호자가 울었고 아이도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분류심사원 생활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한다(저연령10).

청소년들의 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한 의견을 보면, 초등학교 시기에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5사례였다(청소년9,12,13,14,15). 이들의 의견을 보면 먼저 분류심사원 생활이 재미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때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며, 형들이 놀이도 가르쳐주고, 성교육, 미술치료 등도 재미있었다고 하였다(청소년9). 또 다른 사례도 형들이 잘 챙겨주었고, 부모님이 면회 오시니까 어디 놀러온 기분이었지만, 자유가 없는 것은 힘들었다고 하였다(청소년12). 절도예방교육,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이 있었는데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다만 물이 너무 차갑고 책상같은 것이 불편했다고 하였다(청소년13). 다음으로 분류심사원 선생님이 좋았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지적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청소년15). 이러한 사례들은 자유가 없는 것,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분류심사원에서 몰랐던 범죄얘기를 들어서 솔깃해지기도 했는데,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청소년14).

한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처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분류심사원 위탁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청소년8,16). 분류심사원은 하루 일과가 일찍 시작되며, 성교육, 인성교육, 심리검사 등을 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청소년8). 다음으로 좋은 면과 좋지않은 면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분류심사원에 가게 된 경우를 보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안좋은 점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청소년1).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잘해 준 선생님과 엄하신 선생님을 만났고, 형들, 친구들이 잘해 준 것이 좋았으며, 반성문 쓰는 것, (분류심사원에 있는 자신을) 친구들이 안좋게 볼까봐 두려웠던 점이 단점이었다고 하였다(청소년10). 한편 분류심사원 경험이 힘들었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중학생 초기에 분류심사원에 갔는데 당시 시설에서 제일 어렸으며, 외부와 단절된 것도 안좋았고, 무서웠다고 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분류심사원에서 맨날 울기만 했다고 한다(청소년 6). 또 다른 사례도 분류심사원에서 4주 있었는데 생활을 잘 못하고 싸우기도 했다고 하였다(청소년7).

이상에서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좋은 점을 꼽은 경우는 한 사례였으며, 이 경우 인성교육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 밖의 경우는 자유박탈, 규칙적 생활, 긴 위탁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저연령시기나 청소년기에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 형들과의 만남,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외부와의 단절, 규칙적 생활, 다른 위탁생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분류심사원에 처음 위탁되는 경우도 적응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류심사원에서의 아이들 발달수준 및 특성에 맞는 교육과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재판에 대한 의견

첫째, 재판당시 판사의 태도를 보면 판사가 무섭게 하거나 혼을 냈다는 사례(저연령 1,3,8)와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는 사례가 있었다(저연령11,13, 저연령4,7,12보호자).

판사가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연령 시기에 두 번째 재판을 받은 사례의 경우 판사가 무섭게 말해서 아이가 긴장하고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저연령3보호자).

저연령시기에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판사가 아빠같은 느낌이었던 의견(청소년11), 판사가 한 번 믿을테니 다음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례(청소년13),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되어 판사가 화난 사례가 있었다(청소년10). 이 외에 판사가 사고 쳐서 법원에 온 것이고 다음에 또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겁주려고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 판사의 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였다(청소년12).

면접대상자들의 응답내용을 보면, 저연령시기에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무섭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만 재비행이 이루어질 때에는 보다 엄하게 대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재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에 대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재판당시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를 보면, 저연령소년들의 경우 재판당시에 무서웠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많았다(저연령1,2,8,11, 저연령3,4보호자). 한 사례의 경우 경찰, 법원, 재판은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였다(저연령1).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재판할 때 가운데 서있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였다. 판사가 왜 했냐고 해서 호기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무섭기도 해서 다음부터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저연령2). 경찰보다 법원이 더 무서웠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저연령8). 또한 판사가 잘해준 경우에도 재판할 때 기분이 이상했고, 약간 무서웠다는 응답도 있었다(저연령11). 보호자를 통해서 아이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한 보호자의 경우 판사가 무섭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판사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으며, 많이 긴장했다고 하였다(저연령4보호자). 한편 보호자 자신도 재판시에 겁이 났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저연령2보호자). 여기서의 사례들을 보면, 판사가 무섭게 대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 무서움을 느낀 경우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판사가 혼냈는데 무섭지는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저연령3).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저연령시기에 재판을 받을 때 무서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청소년2,4,5,9).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보면 감옥에 갈까봐 무섭고 긴장해서 판사 앞에서 뭐라고 말할지 몰랐다는 사례(청소년9), 처음에는 무서웠고, 이후에는 무섭지 않았다는 사례(청소년2) 등이 있었다.

셋째, 재판을 위해 처음 법원에 가는 소년들의 경우 다른 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나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법원에서 청소년들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저연령5보호자). 청소년 사례의 경우도 초등학교 때는 대기실에 혼자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수갑 찬 애들을 보면서 큰일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청소년6). 이는 법원에서 다른 소년들을 마주치는 상황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재판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 사례의 경우 판사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판결내리고 끝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아이에 대한 감독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저연령7보호자). 또 다른 사례의 경우 판사가 처분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다음부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라고 말해 주었다고 하였다(저연령5). 재판당시 판사가 판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재판당시 받은 처분에 대한 이해를 보면, 한 사례의 경우 재판당시에는 보호관찰이 뭔지 몰랐으며, 보호와 관찰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를 관찰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 부모님 만나는 것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하면 안될 것 같아서 판사에게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저연령5). 그러나 유튜브로 보호처분에 대해 접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례(저연령2), 분류심사원에서 형들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사례(저연령8)도 있었다. 분류심사원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처분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재판시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였다(청소년3,5,7).

즉, 처음 재판을 받은 저연령소년의 경우 처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호자의 경우 '보호관찰이 무엇인지 뜻도 알려주면 좋겠다. 재판시 보호관찰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판사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다. 주눅 든 상황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누군가 도와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였다(저연령11보호자).

3. 처분

가. 심리불개시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 조사보고에 기반하여 사건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사안이 가벼워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소년에 대한 훈계 혹은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소년법 제19조 제2항).

소년부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보호자의 적절한 감호, 가치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를 한다(경찰 훈방과 사실상 같음). 심리불개시를 할 경우 법원에 부르지 않는데, 이는 법원에 재판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판사1). 또한 경찰단계 조사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심리불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단계의 조사자료를 검토했을 때 보호자가 모두 참여했고, 자전거 절도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걸어가기 귀찮아서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등)에 심리불개시를 한다고 하였다(판사2). 또 다른 판사도 경찰에서 사랑의 교실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심리불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판사4).

한편 단순히 비행전력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를 하는 것보다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처분이나 1호처분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판사3).

나. 불처분

불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 결정하게 된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비행사실은 있지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경우, 피해자의 용서가 있고, 보호력이 강해서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이루어질 수 있다.¹⁵²⁾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미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호력이 양호한 경우 불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전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처분전 교육을 통해 소년사법절차 및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이 많이 내려지는지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가용한 자료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의 경우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615명이었다. 같은 해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인원은 3,827명이었는데, 이는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의 44.4%에 해당한다. 즉 50%대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이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2019년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을 보면 전체 34,890명 중에서 심리불개시가 6,556명(18.8%), 불처분이 2,557명(7.3%), 보호처분이 24,131명(69.2%)이었다. 즉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을 합한 비율이 26.1%였다.¹⁵³⁾ 여기서의 통계는 촉법소년에 중학생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고, 소년부 송치된 연도와 처분을 받게 된 연도가 다를 수 있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다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심리불개시와 불처분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 보호처분

1)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현황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이 외에 소년보호의 특징은 보호자대상 개입(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처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저연령소년의 경우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 4호(단기보호관찰)와 5호(장기보호관

152) 한숙희, 앞의 글, 69-70면.

153)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 2020, 735면.

찰), 6호(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병원이나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이외에 2호(수강명령)와 10호(장기소년원 송치)의 경우 만 12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 중 일부가 가능할 수 있다. 한편 3호(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만 14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이렇듯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한 소년보호처분들이 가능하다(수강명령과 장기소년원 송치의 경우만 일부에 대해서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처분보다는 1호 위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사법연감을 통해서 최근 5년간 1호처분이 부과된 비율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를 통해서 1호 처분의 비율을 보면, 2015년 14.6%, 2016년 13.4%,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2.9%, 12.7%, 2019년은 12.9%였다. 즉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1호처분의 비율은 10%대 초반임을 알 수 있다(1호처분만 받은 인원임).

▶▶ <표 3-7> 1호 보호처분 현황 (2015년~2019년)

(단위: 명(%))

보호처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5,911(100)	23,526(100)	24,383(100)	24,494(100)	24,131(100)
1호	3,771(14.6)	3,142(13.4)	3,135(12.9)	3,104(12.7)	3,103(12.9)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1070면.

반면, 법원내부자료에 의해 2007-2016년까지 통계자료를 정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촉법소년에 대해 가장 많이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1호처분으로 나타났다.¹⁵⁴⁾ 2016년의 경우를 보면,¹⁵⁵⁾ 만10세는 보호처분대상자 총 74명 중 63명(85.1%)이 1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4호 9명, 1·5호와 7호처분이 각각 1명이었다. 만11세의 경우는 총 247명 중 1호처분이 224명(90.7%)이었으며, 1·4호 14명, 5·6호 6명, 1·5호 2명, 9호 1명이었다. 만12세의 경우는 총 638명 중 385명(60.3%)이 1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호 142명, 1·2·4호 43명, 1·4호 41명, 1·2·5호 13명, 5·6호 8명,

154) 이진국·오영근, 가정법원의 촉법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2017, 123-124면.

155) 인용 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병과처분 2명, 1·5호와 4·6호가 각각 1명이었다. 만12세의 경우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22.3%(638명 중 142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만12세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만12세부터 2호처분인 수강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처분을 받은 비율이 20%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¹⁵⁶⁾ 2016년의 자료를 보면 만10-11세의 경우 80-90%대가 1호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¹⁵⁷⁾

2) 보호자 등 감호위탁

가) 보호자 등 감호위탁 개관

1호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에 대한 감호를 위탁받은 사람(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것이다. 1호 처분은 보호자의 보호력이 있고 초범인 경우 이루어지는 처분이다. 자원보호자 감호 위탁의 경우는 비행내용, 요보호성은 1호처분과 유사하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나 제3자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¹⁵⁸⁾

자원보호자 감호위탁에 해당하는 위탁보호위원은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4호) 시설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 위탁보호위원 위탁은 신병인수, 신병불인수 위탁이 있으며, 이 연구의 자문대상인 판사와 소년조사관들에 의하면 대부분 후자가 활용되고 있다.

신병불인수 위탁인 위탁보호위원 위탁의 경우 소년과 위탁보호위원 매칭은 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위탁보호위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위탁보호위원은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지도사, 은퇴한 소년원 교사, 경찰(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판사1). 또 다른 법원에서는 위탁보호위원과 소년의 매칭을 상근진단전문가와 협의해서 하고 있었다. 이 전문가는 지역의 위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소년의 특성에 맞게 매칭을 해 주고 있었다(소년조사관4).

위탁보호위원은 월 2회 이상 면담, 매주 통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와 접촉하며, 이와

156) 이진국·오영근, 앞의 책, 124-126면.

157) 참고로 기존 논문에서도 1호 처분은 주로 촉법소년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제시된다(한숙희, 앞의 글, 83면).

158) 한숙희, 앞의 글, 70면.

관련된 리포트를 매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판사1).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와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년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 보호자 고충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다(판사3). 다만 위탁보호위원이 보호자 상담도 할 수는 있지만 위탁보호위원 역량, 수당이 적은 점 등의 한계가 있다(소년조사관1).

위탁보호위원의 관리에 대해서 보면, 1년에 1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위탁보호위원 위원이 저평가되는 경우 해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해촉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의뢰를 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소년조사관이 전수 집행 조사를 하고 있다.¹⁵⁹⁾ 실무적으로 2번 조사를 하는데 처분 후 1개월 시점에는 위탁보호위원이 아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며, 5개월 시점에는 아이 점검 위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관의 조사내용은 판사에게 보고하게 된다(소년조사관1).

신병인수 위탁의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맡을 수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호처분 대상자를 위탁기간 동안에 보호하고,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4호). 정원은 시설기준으로 5-10인으로 되어 있다.¹⁶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경남(6개), 부산(5개), 광주(2개), 대전(2개), 제주(2개), 울산과 경기, 충남 각각 1개 등 총 20개가 있다.¹⁶¹⁾ 가장 일반적인 운영 형태는, 운영자가 가정법원에서 위탁을 받은 6-10명의 소년을 가정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⁶²⁾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자 등 감호위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주로 1호처분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년과 보호자 대상 처분전 교육을 활용하여 소년사법절차 이해 및 청소년기 이해 등을 돕고 있다.

159) 반면 보호자 위탁의 경우에는 전수 집행조사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였다(소년조사관1).

160)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2020, 677면.

161) 앞의 책, 713면.

162) 서정아·박선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2016(박선영, 소년사법에 대한 중간처우 확대방안, 소년보호연구 31(1), 2018, 78면에서 재인용).

1호처분을 하게 되는 사례를 보면,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부모의 보호의지가 있는 경우(판사3), 어릴수록 보호자가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판사1), 저연령소년의 경우(판사2) 등이다.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는 4호처분보다는 1호처분 중에서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을 주로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판사2).

1호처분시 판사는 주로 보호자에게 처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아이를 책임지고 잘 지도하라는 의미이며,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 외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보호자가 잘 지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준다(판사3). 또 다른 판사도 1호처분에 대한 설명은 주로 보호자에게 한다고 하였다. ‘1호 처분의 의미는 지금 키우던대로 부모님이 계속 보호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법원에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이 처분의 집행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순간에 표정이 밝아져요. 보호자 표정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유사한 비행이 발생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그때에는 처분을 무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보호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들었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정도죠.’(판사2).

보호자 위탁의 경우 판사에 따라서는 자비상담을 권유하기도 하고, 일정한 숙제를 내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보호자와 자녀가 같이 4개월 동안 주제를 정해서 일기를 쓰게 하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판사1).

한편,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보호력이 없는 경우, 조손가정,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을 한다(판사2).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은퇴한 소년원교사와 매칭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위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판사1).

신병인수위탁기관 중 청소년회복센터는 주로 중고생연령대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⁶³⁾ 저연령소년의 경우 신병인수위탁이 거의 없지만, 청소년쉼터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소년조사관3).

1호처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 보면, 첫째 보호자위탁시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자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할 필요가

16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총 107명 중 가장 어린 연령은 만12세로 1명(초등학생)이었으며, 16-17세가 40%대를 차지하였다(서정아·박선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2016, 70-71면.).

있다.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보호위원 역량이나 열의에 따라 자원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법원에서 위탁보호위원에 대한 간담회와 집행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필요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수 집행조사를 하지는 않는데(소년조사관1), 이 경우에도 모니터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주로 1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양질의 위탁보호위원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위원 1인당 담당인원 3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판사1).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지와 지원, 보호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위탁보호위원이 필요할 것이다(소년조사관4).

셋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신병인수위탁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쉼터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경우는 신병인수위탁을 할 곳이 별로 없다(판사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저연령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신병인수자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3) 수강명령

가) 수강명령 개관

소년부 판사가 수강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2항).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상담기관,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수강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중학생 연령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2호 처분 대상자 보호자에 대해서 보호자교육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수강기관에서 보호자교육명령을 받으며 비용은 법원부담으로 한다. 수강명령 시간을 보면 지역사회 기관에서 하는 경우 12시간(소년)/6시간(보호자) 혹은 20시간(소년)/8시간(보호자), 보호관찰소에서는 40시간(소년)/8시간(보호자) 등으로 이루어진다(판사1).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2호처분인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 대상이며(소년법 제32조 제4항), 초등학교 중 일부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2호처분을 받는 초등학교생은 거의 없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소를 가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될 수 있고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보내는 편이라고 하였다(판사4).

또 다른 판사의 경우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보호관찰소에서 개별적 제공이 가능하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수강을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판사2).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강명령을 할 경우 개별적 접근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연령소년에게 적절한 수강명령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4)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 개관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은 단기 보호관찰(1년)과 장기 보호관찰(2년)이 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4, 5, 제33조 제2항, 제3항). 또한 보호관찰 부과시 대안교육이나 상담, 교육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소년법 제32조의 2). 이 외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등도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4), 소년의 경우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다.

소년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반사회적 성격, 태도 교정, 범죄유발 환경의 차단, 재범행동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⁶⁴⁾

16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한국보호관찰 30년사, 2019, 240면.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1) 저연령소년 현황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은 주로 1호이며,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법무부 내부자료를 통해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12세 이하 보호관찰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56명에서 2010년에 30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감소하여서 2015년에는 99명으로 감소되었으며, 2016년 다시 136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112명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3명이었으며,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70명이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0-12세 보호관찰 접수현황을 보면 초반에 비해 후반에 보호관찰 인원이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인원은 만 12세까지이며, 만12세의 경우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표 3-8> 10세-12세 보호관찰 접수현황(2007-2020년)

(단위 : 명(%))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8
10세	1	2	11	7	3	6	0	5	4	10	3	6	1	1
11세	2	5	39	46	46	33	13	10	24	19	17	32	25	11
12세	253	225	235	255	202	256	172	114	71	107	92	95	117	58
합계	256	232	285	308	251	295	185	129	99	136	112	133	143	70

*보호자교육(단독) 빈도 제외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내부자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2020년 8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초등학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법무부 본부에서 일선 보호관찰소에 요청을 하여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표3-9>와 같다. 초등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는 총 19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이었다. 또한 처분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단기보호관찰이었으며(17명), 단기보호관찰+수감이 1명, 장기보호관찰이 1명이었다. 비행명을 보면 절도가 8명, 성비행이 6명, 폭력이 2명 등이었다. 여기서의 수치를 보면, 초등학생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9> 보호관찰 대상 초등학생 현황

(2020.08.27. 기준, 단위: 명)

구분	구분	
	성별	남자
	여자	1
	합계	19
처분내용	단기보호관찰	17
	장기보호관찰	1
	단기보호관찰(수강)	1
	합계	19
유형	절도	8
	성비행	6
	폭력행위 및 상해	2
	기타	3
	합계	19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내부자료

(2) 저연령소년 보호관찰

여기서는 보호관찰관들과의 자문을 중심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가) 저연령시기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의 특성

먼저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저연령시기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들의 특징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첫째 특성은 가족적 요인이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호력 부재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12,13). 소년이 선천적으로 이상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 책임이 큰 편이며, 가정 내에서 준법에 대한 개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옳은 일, 그른 일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밖에 나가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을 하게 되며, 보호자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아이들끼리 치고 박고 놀 수도 있다고 생각)(보호관찰관12). 다음으로 가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보호관찰관2).

둘째, 일찍 비행을 시작할 경우 관계망이 일찍 형성될 수 있으며, 비행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보호관찰관3). 초등학교때 비행을 시작한 아이들은 중학교때 최고점을 찍으며, 일찍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 경각심이 낮고 비행경력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8).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방법

첫째, 개시시점에 보호관찰 인지범위를 체크한다. 즉 보호관찰에 대해 가족만 아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비행을 파악한 다음 특별준수사항 등에 대해 확인한다. 다음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살피고, 원호지원 등을 연계하기도 한다(보호관찰관12).

둘째, 보호관찰을 하는데 있어서 저연령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어휘선택, 설명 등을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하고, 단어도 아이에 맞게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 3,9). 예를 들면, 주거지 상주 등의 경우 상주의 의미를 설명하는 등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다(보호관찰관2). 또 다른 보호관찰관도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설명하고, 법률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대상자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4). 또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하지마' 보다는 '안하는게 어떨까'라고 얘기하며, 쉽게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보호관찰관도 있었다(보호관찰관7). 이와 더불어 저연령소년의 공감을 살만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면담한다는 경우도 있었다(보호관찰관13). 이상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면담에서는 소년의 나이에 맞게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쉽게 표현하여 이해를 돕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있어서 순응적이며, 생활을 잘 하는 경우에는 칭찬 등으로 격려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지도감독에 순응적이며, 경각심을 느끼는 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보호관찰관5).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자가 잘 생활하는 경우 지난 번 출석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칭찬을 많이 하며, 말 한마디를 해도 조금 더 신경쓰고 쉽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1). 후자와 관련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겁이 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였으며,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였다(잘못하면 형들처럼 소년원 갈 수 있다는 등)(보호관찰관8).

한편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지도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10).

넷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파악내용을 보면, 누구와 노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가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반면 중고생 연령대의 경우 야간에 무엇을 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등을 물어 본다(대상자간에 서로 잘 아니까)(보호관찰관3). 또 다른 보호관찰관도 저연령소년에 대해 동생하고 잘 지내는지, 밖에 많이 나가는지 등에 대해 물어 본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

다섯째, 보호자와의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상담을 하는 편이며, 보호자와 얘기하면서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보호관찰관6). 또 다른 보호관찰관도 저연령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는 편이라고 하였다. 보호자와 아이에게 반반씩 면담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더 물어보고, 민감한 얘기는 보호자와 둘이서 하였다(보호관찰관9).

여섯째, 보호자와의 동반출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보호관찰소 출석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보호관찰관1,4,6,7,8,9,11).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이 혼자 보호관찰소에 온다고 하면 직접 가는 편이다(보호관찰관6), 어리거나 지능이 낮은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관1)는 등이 있다.

저연령소년 보호관찰에서 보호자 동반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저연령소년의 경우 지난 출석시부터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때 보호자에게 물어 볼 수 있다(보호관찰관1). 다음으로 대상자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같이 오게 되면 보호자도 자녀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지도하기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8). 마지막으로 거주지에

서 보호관찰소까지의 거리가 먼 소년의 경우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보호관찰관 11).

실제로 저연령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이 많은 편이며(보호관찰관5,13),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보호관찰관5).

이외에 보호자와 같이 오면 좋지만,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직장생활, 생계가 있어서 부담스러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보호관찰관10). 한편 저연령소년에게 혼자 보호관찰소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같이 데리고 온다는 경우도 있었다(보호관찰관2).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호자 면담을 통한 아이 일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보호자와의 협조, 아이의 안전(특히 거리가 먼 경우)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부모가정, 보호자의 생업문제로 보호자 동반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적 편의제공 등을 통하여 보호자와 동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보호관찰소 출석과 현장방문의 비중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한 보호관찰관의 경우 외진 지역 거주, 교통문제, 보호자가 같이 못오는 상황에서는 보호관찰소에 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관찰소 출석이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호관찰관1). 또한 저연령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출석보다 출장을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보호관찰관2,4),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접촉 제한을 위하여 출석 면담보다는 현장 방문이 좋다는 의견(보호관찰관4), 현장방문이 소년에게 보다 편할 수 있다는 의견(보호관찰관3), 경각심을 위해서 1달에 1번 정도 보호관찰소 출석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보호관찰관7)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보호관찰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배려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더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보호관찰관의 경우 보호자 피로도, 생업문제를 고려해서 현장 출장을 좀 더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노력을 보이면 보호자나 아이들이 더 잘 따라온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1). 또다른 보호관찰관의 경우 저연령 저위험군은 낙인을 지양하기 위해 지도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호관찰관5). 여기서의 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비중을 늘린

다된다. 저위험군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중고생 연령대와외의 접촉과 관련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 중고생 연령대와 출석시간을 달리 하여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보호관찰관 1.6). 즉,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다 이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해서 중고생 연령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중고생 연령대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보호관찰관7).

이 외에도 저연령소년의 경우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시간에 출석시키거나, 출장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보호관찰관4). 저연령소년 보호관찰 지도감독시 중고생 연령대와외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자원연계와 관련해서 보면, 품행장애 등이 있는 경우 시 사회복지과 혹은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기도 하며,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보호관찰관4). 또한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위원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잘 대해 주면 잘 따를 수 있어서 보호관찰위원이 저연령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아이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위원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보호관찰관8).

자원연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도움이 되는 곳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소년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고, 개인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1).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전문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생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6). 원호와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주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보호관찰관7).

한편, 자원연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나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낙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의견을 보면, 기관간 연계나 자원연계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낙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초범이 많으므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비행이 많은 경우 노출에 신경을 덜 씀)(보호관찰관5). 또한 보호자도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날까봐 오픈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좁은 동네의 경우 다 알 수 있어서 보호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7).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교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학교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아이와 보호자 의사를 존중해서 학교와 연계 하지는 않고 있다(물론 결석이 많고, 보호자와의 협조가 안되면 학교와 협력해야 함)(보호관찰관1). 참고로 중고생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학교선생님을 멘토로 위촉해서 학생을 지도하기도 하는데,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의 보고서 제출 등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0).

열째, 보호관찰의 효과와 관련해서 보면, 먼저 보호관찰소 출석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범피억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1). 또한 저연령소년의 경우 단순 범죄, 초범이 많으며, 보호관찰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도, 감독에는 잘 따른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4).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이 이들의 재비행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게 긍정적 방향으로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부모대상 상담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모가 집중적 교육을 받아서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7).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호자 교육명령은 8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호자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이며 보호자가 바뀌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4). 다른 보호관찰관도 보호자교육 8시간은 부족하고 최소 20시간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호관찰관7).

즉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저연령소년의 긍정적 변화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있는 개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보호관찰관의 역할수행 및 필요한 사항

여기서는 먼저 보호관찰관의 역할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자에 대한 감독/감시와 지지/자원연계의 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자의 비율이 높다는 의견, 전자 비율이 높지만 저연령일수록 후자가 중요하다는 의견, 저연령소년의 경우 후자의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첫째 전자의 비율이 높다는 의견들을 보면, 8:2/9:1(보호관찰관12), 8:2(보호관찰관5)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자원을 연계하다보면 지도감독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보호관찰관12), 지도감독이 잘되면 원호에 신경쓸 수 있다(보호관찰관5)는 내용이 있었다. 이 외에 7:3(보호관찰관3), 6:4(보호관찰관4)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10:5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재/지도감독이 각각 5, 정서적 지지가 3, 원호가 2였다(보호관찰관13).

둘째, 관리감독이 조금 많지만 어릴수록 지지가 많아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상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보다 부모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대상자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인으로서 지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보다 엄하게 대한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 또 다른 의견으로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원호라고 하였으며, 저연령소년의 경우 자식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보호관찰관10).

셋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지지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8). 또한 10대 중후반의 경우 관리감독 및 지지/자원연계가 5:5이지만, 잘 생활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2:8 정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칭찬이 8, 그래도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잘 다독여야 한다는 얘기가 2라는 것이다(보호관찰관11).

여기서의 내용을 보면, 보호관찰관으로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저연령소년일수록 지지와 자원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 잘 생활하는 저연령 소년의 경우 지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조사자료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보호관찰관들의 경우 분류심사서, 결정전 조사서 등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호관찰관1,3,4,5,6,12). 이러한 조사자료는 초기분류시 활용가능하다는 의견(보호관찰관5), 조사자료가 있으면 짧은 시간에 개별처우 지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의견(보호관찰관6), 조사자료가 자원연계, 지도감독 방향을 정하는데 많이 참고되다는 의견(보호관찰관12) 등이 있었다. 조사자료와 관련해서 분류심사서보다는 결정전 조사서를 더 활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자는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관찰, 조사한 것인 반면 결정전 조사서는 밖에서 한 조사라서 사회 내 처우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1).

이렇듯 조사자료는 보호관찰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지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전 처분경력이 없어서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분류심사서나 결정전 조사서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보호관찰관2,7). 조사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나 보호자가 잘 얘기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얻기 힘들다(보호관찰관13). 또한 아이와 보호자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보호관찰관8), 심층면담을 하지만 조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필요할 수 있다(보호관찰관7).

마지막으로 저연령소년 보호관찰관으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면담기술 및 대상자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호관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마인드를 요구하는데 면담기술을 알면 좀 더 잘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보호관찰관12), 보호관찰관이 저연령소년과의 세대 차이로 인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놀이문화, 사고방식 등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보호관찰관4), 저연령소년에 대한 심리적 이해,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보호관찰관11) 등이 있었다.

둘째, 실제 연계해 줄 수 있는 자원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3). 요즘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이 2-3년마다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어려운데, 주민센터 직원 등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알려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특히 지자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원소개 및 연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팜플렛만으로는 자원의 실제 운영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게 한다면 적극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 또 다른 보호관찰관도 원호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고, 매뉴얼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5).

셋째,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도 중요한 만큼 보호자교육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 등이 보호관찰관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보호자 교육을 담당하는 과와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과가 달라서 이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데, 보호관찰담당자에게 보호자교육명령 내용 및 이수결과가 제공된다면 이를 토대로 보호자와 아이지도 등에 대해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보호관찰관7).

(라) 저연령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

이 연구의 자문대상이 된 보호관찰관들의 경우 저연령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서 첫째, 가족요인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가족의 사랑(보호관찰관6), 보호자의 지, 보호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9).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보호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잡아준다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9).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자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보호관찰관 4,10,11,12,13). 보호자가 제2의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학생들을 1:1로 케어해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의견(보호관찰관13), 보호자의 병리적 양육이 자녀문제와 관련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교육, 저연령시기 소년의 특성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보호관찰관11)이 있었다. 이외에 가족참여 프로그램(보호관찰관4), 가정에서의 인성교육(보호관찰관10)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지속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3,4). 옆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상담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3). 또 다른 보호관찰관도 저연령소년에 대해서 상담연계를 해 주고, 이를 통한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6). 앞서 살펴 본 논의에서 저연령소년의 경우 자존감이 비행이나 공격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⁵⁾ 이러한 점들을 고려

165) 윤우석, 앞의 글, 2010; 전신현, 앞의 글, 2019.

한다면 상담 등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연령소년 중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 가정에 대한 원호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2).

넷째, 자원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처분과 더불어 1호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보호위원과 보호관찰위원이 있는 경우 위탁보호위원, 보호관찰위원 면담, 보호관찰소 출석, 수강 명령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학교수업 등으로 힘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탁보호위원, 보호관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가 등을 통합하여 저연령소년이 한 곳만 방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보호관찰관4).

다섯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보호관찰관10), 아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학교선생님이 필요한 자원연계(상담센터 등)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보호관찰관6) 등이 있었다.

여섯째, 개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보호관찰관5,6). 주변의 관심과 더불어 개별적 처우가 필요한데, 같은 위험군이라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보호관찰관5). 또 다른 보호관찰관도 비행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호관찰관6). 또한 전인적·개별적 접근, 보호관찰관+심리상담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보호관찰관은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개별 소년의 상황에 맞는 친사회적 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보호관찰관11).

다)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1)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소년법상 6호처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에

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을 입소시켜 치료, 선도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3의 가).¹⁶⁶⁾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은 2017년 4,125명, 2018년 3,918명, 2019년 4,027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학대의 비율이 2017년 35.0%, 2018년 36.1%, 2019년 36.7%로 최근 3년간 각각 30%대 후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행·가출·부랑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2017년 227명(5.5%), 2018년 231명(5.9%), 2019년 473명(11.7%)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⁶⁷⁾ 아동보호치료시설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12개소가 있는데 서울(3개), 대구(2개), 경기, 부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이상 각 1개)에 위치하고 있다.¹⁶⁸⁾

6호처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루어지며,¹⁶⁹⁾ 사회복지사 및 임상심리 상담가가 상주하여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상담치료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¹⁷⁰⁾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가) 저연령소년 현황

앞서도 언급했듯이 6호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6호처분을 받는 저연령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용한 자료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있는 초등학교생은 27

16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또 다른 것으로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학대피해로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치료해 주는 시설이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3의 나).

16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58452, 검색일: 2020.10.13.).

16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알림(2019.12.31. 기준)-2020 아동복지시설 현황, 1면(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9667, 검색일: 2020.10.13.).

169) 이승현·박선영,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37면.

170) 앞의 책, 39면.

명으로 전체 458명 중 1.5%였다. 그 밖에 중학생은 173명(37.8%), 고등학생은 71명(15.5%), 대학재학은 4명(0.9%), 기타 169명(36.9%)이었다.¹⁷¹⁾ 즉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6호처분을 받는 초등학생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년조사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시설내 처우에 해당하는 6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저연령소년이더라도 계속 사고를 치거나 여자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될 때에는 6호처분 시설위탁 의견을 낸다고 하였다(소년조사관2). 6호처분 시설 종사자와의 자문에 의하면 시설에 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대체로 보호력이 낮은 아이들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저질렀던 비행보다는 요보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 중 보호력이 낮으면서 비행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6호 시설에 위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6호시설에서의 저연령소년 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저연령소년에 대한 6호 시설에서의 처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을 6호처분 시설에 보내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6호 시설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령대가 다양한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판사4).

둘째, 6호시설 2곳의 실무가 대상 자문에 의하면, 학과교육이나 대안교육으로 인정 받는 프로그램에서 연령별 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다. 시설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학력수준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개인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별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과목별 수준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6호 실무가2). 이러한 교육은 학교연계로 출석일수가 인정되는데 실제로 6호처분을 종료한 후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는 6호 시설에 오는 초등학생의 경우 6학년 말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17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알림(2019.12.31. 기준)-2020 아동복지시설 현황에서 지역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있는 초등학생인원을 합한 수치임(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9667, 검색일: 2020.10.13.).

시설에서는 학교 졸업만 하기 때문이다(6호실무가2).

인성교육 역시 연령대별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에 맞게 피드백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1).

셋째, 이 연구에서 자문을 받은 6호시설 실무가들은 어릴수록 보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회복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한 시설의 경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탁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족동반외출(몇 시간 같이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두 시설 모두 가족캠프(1박 2일)를 1년에 2회 실시하였다(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못함).

두 시설 모두 위탁된 아이들에 대한 보호자교육명령은 1박2일 가족캠프와 그 밖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시설의 경우 보호자교육은 청소년전문가가 담당하는데, 보호자의 보호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처방법, 청소년기 이해에 대한 정보제공 등 보호자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 1). 또 다른 시설에서는 가족관계를 중요시하여 주1회 면회를 진행하였다(월 3회). 면회를 통하여 가족간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담임선생님간 상담도 진행하였다. 또한 면회를 안 오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면회를 와달라고 협력을 구하기도 하였다(6호 실무가2).

넷째, 저연령의 경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이 저연령소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2). 한 시설의 경우 담임이 4명을 케어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선생님들을 충분히 두고 있어서 어린 아이 같은 경우 특히 어려움을 빨리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의 경우 규칙과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은 습관, 가치관을 배울 필요가 있는 아이들, 저연령의 아이들이 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퇴소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 대화로 갈등 풀기, 앉아있는 습관을 기른 것 등이라고 한다(6호 실무가2).

다섯째, 숙식은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6호 실무가1). 또 다른 시설에서도 한 방에 4-5명이 있는데 연령대가 고르게 있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2). 또한 처음 시설에 온 경우 수호천사가 2주 동안 같은 방을 쓰면서 적응을 도우며, 1달에 1번 방배치를 바꾼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2).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숙식으로 배려와

함께 하는 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체험형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6호시설의 경우 놀거리를 많이 체험하게 한다고 하였다(프로그램, 캠프, 음악회, 소풍, 스포츠이벤트 등). 또한 각종 행사에 보호자를 초대해서 가족간 관계 개선을 돕고, 외출(소풍, 동네의출,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다(6호 실무가1).¹⁷²⁾ 이러한 점들은 가족요인이 특히 중요하고,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형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는 저연령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6호처분의 경우 시설에서 매일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수시로 법원과 연락하고 있다. 또한 퇴소 즈음에 아이들을 법원으로 불러서 격려, 근황 및 퇴소 이후 계획 등을 알아보는 티타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판사1).

다음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6호처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첫째, 학교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호시설에서 나간 후에는 학교로 돌아가야 하며, 특히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 담임선생님과의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퇴소후 학교적응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6호시설 면회를 하고, 담임교사와 저연령소년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6호 실무가1).

둘째, 처분 이후 돌아갈 곳이 없거나 돌아갈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이에 대한 조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¹⁷³⁾ 또한 6호처분 대상자는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아이들이는데 처분 후에도 가정이 달라지지 않은 경우 연계할 자원이 필요하다. 나이가 든 청소년의 경우 자립기관이나 쉼터로 보내서 직업교육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처분후 연계할 자원이 부족하다(판사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6호처분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저연령소년을 위한 기관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6호시설의 연령대, 경계급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 학습장애, 발달장애 아이가 들어오면 많이 힘들어 하며, 놀림당하고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계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며, 저연령층의 경우도 (연령,

172) 그러나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족캠프 등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173) 한숙희, 앞의 글, 83면.

학교재학여부 등의) 조건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6호 실무가 1).

넷째, 지역별로 접근가능한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할 수 있다. 거주지와 시설간의 거리가 먼 아이들의 경우 심리적 거리감이 있고,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져서 힘들어 하기도 하며, 부모면회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위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접근가능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다(6호 실무가1).

다섯째, 저연령소년을 위한 현재 6호 시설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다. 시설은 비슷한 사람끼리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연령소년의 경우 현재의 6호시설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6호 실무가1). 또 다른 6호시설 관계자도 지금까지 6학년까지는 받아왔는데 확실히 나이가 많은 애들하고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4,5학년 아이들은 만나보지 않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2). 저연령소년의 경우 6호처분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나이가 어려서 교육도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판사3).

이 외에도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6호시설 특성에 맞는 규정마련(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하나라서 이 시설기준에 따라 적용되지만 6호처분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이나 규정 필요), 6호처분에 적절한 소년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호 실무가1).

라)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1)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개관

7호처분은 병원이나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말한다(소년법 제 32조 제1항).¹⁷⁴⁾ 현재 7호처분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되는 대전소년원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대전소년원은 7호처분으로 위탁된 소년 이외에 9,10호 처분자 중 일부가 수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장이 정신질환자(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포함), 신체질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의료·재활 소년원에 이송신청

174) 참고로 7호처분은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이었는데, 2020년 10월 20일자 개정으로 소년의료보호시설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자문시점인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대전소년원이 공사중이어서 7호처분자 이외에는 수용되지 않고 있었다.

7호처분의 과정을 보면, 준비교육과정-->집중치료과정-->치료후 교육과정-->사회복귀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귀과정의 경우 별도 사회복귀반 편성이 아니라 퇴원 후 이용가능한 무상외래진료 가능 국립병원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¹⁷⁵⁾. 대전 소년원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현재 대전소년원의 경우 지능을 기준으로 분반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가) 저연령소년 현황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를 통하여 대전소년원에 위탁된 만12세 이하 소년의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10월 시점까지 총 17명이 위탁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과 2017년은 각각 1명, 2018년 5명, 2019년 2명,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8명이었다.¹⁷⁶⁾ 참고로 연구진이 2020년 8월 대전소년원을 방문했을 시점에는 총 107명 중 초등학교생 위탁생이 4명이었다.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먼저 대전소년원 실무가와의 자문으로 대전소년원에 위탁되는 저연령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주로 ADHD와 지적 장애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지적장애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교육이 어렵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실무가 자문을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관련 내용을 보면, 첫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다른 위탁생도 마찬가지임). 가족의 영향으로 정신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가족의 지지로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전소년원 교사와의

175) 법무부, 2020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2020, 17면.

176) 법무부 내부자료는 연령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12세 이하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만12세의 경우 중학생이 포함될 수 있다.

자문에 의하면, 대전소년원 위탁생의 경우 보호력이 일반소년원생에 비해 낮은 편이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율도 일반소년원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즉 가정의 보호력이 일반소년원생에 비해서도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전소년원에 위탁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 약 복용과 관련해서 어릴수록 약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해 조기에 진단하고 약복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대전소년원 위탁이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퇴원후 1년 동안 무료 외래진료 치료가 가능하다. 위탁이 종료된 경우 보호자에게 연계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력 문제가 있는 경우 쉼터에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탁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어서 사회복지적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연령 소년의 나이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교육·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비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7호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첫째, 저연령 소년의 경우 처분 과정과 관계없이 장소를 분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위탁생 교육의 경우 연령편차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장소를 분리한다면(예를 들어 대전소년원내 저연령교육센터 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저연령소년의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기의 경우 인지, 정서, 신체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며, 중등과 초등의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전소년원 실무가 의견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자존감 및 도덕성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자존감의 경우 인지와 정서발달의 기본이며, 또래관계에서의 어울림과 사회적 상호작용, 지능발달에 중요할 수 있다. 도덕성의 경우 높은 아이일수록 자존감과 공감능력, 정서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기질과 더불어 도덕성이 발달하고 도덕적 내면화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되는 도덕성이 성인기의 도덕적 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교육내용을 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소년원 처분

(1) 소년원 처분 개관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는 8호(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와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년원의 구분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 소년원이 제시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년원에서는 분류심사결과, 법원소년부에서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처우계획을 세우며(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비행과 공범 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령에 따라서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 처분

(가) 저연령소년 현황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를 통하여 만 12세 이하 소년원 수용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6명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8호 2명, 9호 3명, 10호 1명). 연도별로 만12세 이하 소년의 수용현황을 보면, 2016년의 경우 9호 1명, 2017년에는 8호와 9호가 각각 1명, 2명, 2019년에는 8호와 10호가 각각 1명이었다(2015년과 2020년에는 만12세 이하 소년원생이 없었음).

여기서의 통계자료는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 연령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연령소년이 소년원에 수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이전 소년원법에서는 성별, 보호/위탁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다(구 소년원법 제8조). 그러나 연령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었다. 소년원 실무가에 의하면, 소년원

이 다인실(10-20명대)에서 2-3명(혹은3-4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리수용은 하지 않고 있다(소년원2).

또한 소년원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소년원 교육은 중등/고등반으로 분리하며, 나이가 있더라도 학력이 부족하면 중등반에 배정한다고 한다. 중등통합/고등통합으로 운영되며, 중등통합의 경우 중1,2,3학년이 다 같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하였다. 초등교육과정을 만들긴 했지만, 초등학생이 간혹 1명 있는 경우 한 명만 따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과정은 중등과 같이 하고, 함께 진행하기 어려운 과목은 따로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소년원2).

소년원에 송치되는 저연령소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저연령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소년원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동안 가족과 학교의 연계가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소년원1). 소년원 학교에 재학하는 소년 중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인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이렇게 본다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검정고시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보호자교육

(1) 보호자교육 개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의 보호자에 대해 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었다. 보호자에게 소년원, 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또한 보호자교육을 명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보호자, 교육받을 기관, 교육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5항).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등이 포함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2항).

판사와 소년조사관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보호자교육의 운영현황을 보면, 불처분이거나 1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처분전 교육을 통해 보호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 수강명령(2호)의 경우 해당기관, 보호관찰(4,5호)의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의 경우 시설, 소년원 송치처분(7-10호)의 경우 해당 소년원에서 보호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강명령 대상자의 보호자교육 시간을 보면, 2호처분 보호자교육은 12시간(소년)/6시간(보호자) 혹은 20시간/8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보호관찰소의 보호자교육은 40시간(소년)/8시간(보호자)으로 이루어진다(판사1).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자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는 경우 보호자교육은 앞서도 본 바와 같이 1박 2일의 가족캠프와 추가적인 별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저연령소년 보호자교육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반듯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연령일수록 보호자교육명령을 많이 내려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판사3).

한 소년조사관에 의하면, 소년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자교육명령이 많이 부과되며, 1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보호자교육을 거의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소년조사관1).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 중 1호처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분전 교육 혹은 지역사회내 부모교육이나 상담 연계 등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연령소년의 보호자교육에서는 청소년기 이해와 더불어 아동기 이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교육 혹은 개별 교육이나 상담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처분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1) 처분에 대한 의견

가) 조사대상자들이 받은 처분

먼저 이 연구의 면접조사대상자인 저연령소년의 처분내용을 보면, 1,4호 처분을 받은 경우가 8명(이 중 2명은 이전 1호처분 경험있음), 1,2,4호 처분을 받은 경우가 3명이었다. 이를 통해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1호 처분이 병과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강명령 시간을 보면, 2사례는 40시간, 1사례는 24시간이었다.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소년 중 한 명은 중학생이 되어서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 10명 정도와 같이 받았다고 하였다. 이 소년의 경우 수강을 받으면서 금연교육도 받았는데, 지금도 흡연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반면 지역사회 기관에서 혼자서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기관 선생님이 잘 대해 주고 음식도 챙겨 주어서 좋았다고 하였다(수강은 1회 4시간x10회).

다음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 등을 보면,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을 것, 학교생활 성실히 할 것,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이 있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1사례만 있었다. 참고로 중고생 연령대의 경우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많이 부과되는데 비해,¹⁷⁷⁾ 저연령소년의 경우 야간에 집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치료받을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치료비가 고가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연계해 준 상담센터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례도 있었다.

나) 보호관찰 내용

저연령소년 중 보호관찰 출석빈도가 확인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달에 2번이 5사례(저연령1,2,7,8,10)였으며, 1달에 1번이 5사례(저연령3,4,5,6,11)였다. 면

177) 소년법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야간시간 등에 외출제한을 준수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접당시의 상황을 보면, 보호관찰소 출석이 1달에 2번인 경우 코로나로 인해 1번은 출석, 1번은 전화(혹은 현장출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 출석이 1달에 1번인 경우도 격월로 출석하고, 나머지 월에는 직원이 출장으로 아이를 만나는 경우, 직원이 출장을 가는 월에는 출석을 안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보호관찰소 출석의 경우 항상 보호자(혹은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가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저연령1,3,4,5,7,8,9,10,11,12), 거의 보호자와 같이 간다는 경우도 있었다(저연령2). 보호자동반은 거주지와 보호관찰소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교통문제가 있거나,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안심되지 않아서 동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저연령소년의 보호관찰소 출석시 교통문제, 안전문제 등이 있어서 보호자동반이 많은데, 한부모가정, 보호자의 직장문제 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 출석이 보호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은 주로 10-20분내로 이루어지며, 일상활동에 대한 내용에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다) 보호관찰에 대한 의견

저연령소년의 보호관찰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 사례의 경우 처음에는 일대일 면담이 부담되었지만, 여러 번 만나고 자신감을 키우다 보니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만 일상에 변화가 없으니 더 말할 게 없어서 꼭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저연령5).

보호자들의 경우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에게 잘못했던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상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다(저연령7 보호자).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이 아이의 일정에 맞춰 시간을 조정해 주고, 배려해 주며, 아이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저연령11보호자). 이 사례의 경우는 저연령소년과 보호자가 보호관찰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과 보호자가 보호관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역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보호자도 보호관찰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저연령6보호자). 청소년보호자 중에서도 사고를 친 아이들을 국가에서 챙겨주고 신경써준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다(청소년3보호자). 반면, 보호관찰소에 가야는 하지만, 특별히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저연령3보호자).

라) 보호자교육명령에 대한 의견

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 사례들 중 보호자교육명령을 받은 사례는 6사례였다(저연령 3,5,7,9,10,13). 즉 전체 면접대상 13사례 중 절반 정도가 보호자교육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교육을 받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중고생 연령대 보호자들과 함께 받았다고 하였다.

보호자교육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저연령7,13보호자). 보호자교육을 통해 몰랐던 것을 배웠고, 알아도 실천이 안되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다고 하였다(저연령7보호자). 다른 사례의 경우 보호자교육에서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알려 주지만, 초등학생 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중고생과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이다(저연령3보호자). 저연령소년의 보호자들은 보호자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자들의 경우도 보호자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다(청소년2,4보호자). 보호자교육을 통해 칭찬 안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청소년4보호자), 7명이 같이 받았는데 거의 1:1이었고, 구체적인 양육방식을 알려 줘서 도움이 되었다(청소년2보호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교육내용이 편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보호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딱 한시간 듣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여러 번 받았는데 다 비슷했다고 하였다(청소년16보호자). 이와 유사하게 다른 보호자도 교육을 여러 번 받았는데 교육의 내용(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대화방법 등)이 매번 똑같았다고 하였다(청소년12보호자).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교육이 도움이 되지만, 아이의 연령대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교육명령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 유사한 내용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보호자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한 의견

저연령소년 중 위탁보호위원 위탁을 받은 경우는 3사례였다(저연령1,2,9). 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한 보호자의 경우 '위탁보호위원이 자주 연락해서 일상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아이와 만나서 먹을 것도 사주는데 좋은 분'이라고 하였다(저연령 2보호자). 또 다른 사례의 경우도 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저연령 9). 한편 한 사례의 경우 위탁보호위원이 매칭되었지만 면담시점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만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저연령1).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1호처분 중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을 받은 저연령소년 사례들은 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번의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호자의 경우 처음 보호위원은 좋아서 아이가 먼저 위원에게 연락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번째 위탁보호위원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육하원칙으로 질문하는 등으로 인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청소년16보호자).

바) 처분의 영향

먼저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현재 처분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들은 처분을 받음으로써 비행억제 및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보호관찰을 받는 것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는 의견(저연령1보호자), 보호관찰소 다니는 건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사고를 안친다는 의견(저연령2-경찰, 판사, 보호관찰 중에서 보호관찰이 가장 도움이 됨), 별의 맛을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견(저연령5), 처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막이놓은 느낌이라는 의견(저연령10), 보호관찰소에서 학교생활을 물어보니까 사고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저연령11) 등이 있었다. 즉 보호관찰을 받음으로 인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는 의견들이었다.

반면, 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한 사례의 경우 받은 처분에 대해

이해시켜준 사람이 없고, 아이가 과도하게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였다(저연령9보호자).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어린 시기에 형사사법절차를 거치고 처분을 받는 일련의 경험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저연령4보호자).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자신이 받은 처분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린 시기에 행동에 대한 결과(처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상처를 받은 경우 등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이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처분취지 및 처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저연령 소년의 경우 처우에서 회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저연령시기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면, 처음에는 반성했는데, 이후에는 익숙해 졌다는 의견(어린 시기에는 겁이 없어서 처분의 효과가 없었다고 함)(청소년2), 저연령시기의 처분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청소년7)이 있었다. 이는 처분의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경우 비행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청소년의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의견을 보면, 5,8호는 캠프 갔다 온 것 같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청소년12). 반면 자신이 받은 처분 중에서 좋았던 것으로 저연령시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쌀과 라면을 집에다 갖다 준 것이 좋았고, 그 기간 중에는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청소년9). 이 사례의 경우 저연령시기에 6호처분을 받고 이탈을 한 적이 있는데, 가족이랑 떨어져 잘 살 수 있을까, 가족이 버리면 어떻게 할까 등의 생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저연령시기에 거주지와 떨어진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후 6호처분을 다시 받았는데, 6호처분에서 좋았던 점은 밭에서 감자랑 고구마 캐고 먹은 것, 떡볶이 먹은 것, 축구하기 등이었다고 하였다. 안 좋은 것은 주변 사람과 싸운 것, 형들이 괴롭힌 것 등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삼겹살파티도 좋았다고 하였다(청소년9). 또 다른 사례의 경우는 6호가족캠프가 좋았다고 하였다(청소년16). 여기서의 면접내용을 보면, 저연령시기에는 경제적 지원, 음식제공과 체험활동, 가족관계 회복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든 소년과의 집단생활, 거주지로부터 먼 곳의 시설 수용 등은 저연령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의견

가) 비행원인 및 비행지속 이유

먼저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기관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연령시기의 비행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후 비행의 지속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저연령시기의 비행은 가족요인과 관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사례의 경우 (자신이 비행을 하게 된 것에는) 부모가 따로 사는 영향이 컸다고 하였다. 또한 방과후 집에서 맞아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가기가 더 싫었고 재미도 없었다고 하였다(청소년15). 이 외에도 보호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청소년13), 보호자와의 갈등으로(청소년14) 비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즉 저연령시기에 가족적 요인이 비행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지속이유에 대해서 보면,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들이 있었다(청소년2,7,12). 한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때 친구와 같이 비행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비행을 계속하는데 친구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였다(청소년2). 다른 사례의 경우 SNS 등으로 친구를 많이 알게 되고, 유혹에 의해 사고를 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사고를 계속 치게 되면서 똑같은 건 재미없어서 더 큰 사고를 치게 되었다고 하였다(청소년12).

여기서의 면접내용을 보면, 저연령시기 비행시작은 가족요인과 관련되며, 이후 비행지속에는 친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내용(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의견)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및 멘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저연령1,2,7,8,9,11보호자).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동네 어른들한테 억울하게 혼나거나 돌봄센터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어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박혀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이가 마음을 열고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대화도 하고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담으로 아이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이의 마음을 보호자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저연령1보호자).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보호자도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부모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이가 학교에서 연계된 상담을 했는데 상담회기가 끝나더라도 필요하면 오라고 해서 좋았다고 하였다(저연령7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부모입장에서 이야기 해주는 것과 제3자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듣는 입장에서 다를 것 같다고 하였다(저연령11보호자).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저연령8보호자).

또한 아이를 찾아서 만나주거나(저연령9보호자), 남자어른이 아이에게 좀 엄격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저연령2보호자).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를 찾아주는 성인이 없었는데, 현재 아이가 만나야 될 선생님이 여러 분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듯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저연령9보호자).

이러한 아이에 대한 상담은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센터 선생님이 아이의 마음과 고민을 보호자에게 얘기해 줘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연령소년의 경우 1:1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저연령3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도 아이가 학교연계 센터에 다니는데 상담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저연령1보호자). 다른 보호자도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하는데 아이가 잘 따르고 보호자도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하는 등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저연령2보호자). 위클래스에서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저연령5).

여기서 저연령소년 보호자들의 경우 아이에 대해 상담과 멘토역할을 해 주는 성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결과를 보호자에게 피드백해주는 것은 보호자의 양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⁸⁾

둘째, 아이에게 대학생 자원봉사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보호자의 경우 병원, 상담, 심리치료 등으로 1주일 내내 아이를 따라다닌 적이 있다고 하였다.

178) 참고로 면접대상인 저연령소년 대부분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였다(가족과 선생님이라는 응답도 있음). 그러나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경우도 2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친사회적인 성인의 지지와 관심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보호자의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연계되면 좋겠다고 하였다(저연령9보호자).

셋째, 교육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비행을 행했지만 아이 역시 상처를 가지고 있고, 비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치료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저연령4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의 경우 처벌이 아닌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캠프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저연령9보호자).

넷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저연령3보호자, 저연령10). 저연령소년들끼리의 놀이 체험,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저연령3보호자). 이는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아이에게 친사회적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화해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저연령5).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동네에서 어른들에 의한 낙인으로 힘들어하였다(저연령4보호자). 저연령소년의 경우 특히 낙인 등이 상처가 되고 이후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를 통한 회복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보호자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요즘 아이들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알려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보호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나라에서 도와주면 금방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였다(저연령3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의 경우도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며, 구체적 양육방법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저연령11보호자). 실제로 한 보호자의 경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연계 상담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즉, 아이가 잘못하면 화나고 매를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과 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저연령7보호자). 이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양육방법, 문제 발생시 보호자의 대응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저연령소년의 재비행 예방 등에 도움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 경제적 지원(저연령4보호자), 스스로의 결심(저연령11), 육체적으로 힘든 경험(저연령9)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저연령시기와 현재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내용(청소년 및 보호자 의견)

(1) 저연령시기에 필요했던 사항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기관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연령시기에 비행을 하지 않고 잘 생활하는데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청소년과 보호자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관심과 적절한 훈육,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했다며, 재판에 다녀온 뒤에도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했다고 하였다(청소년11). 또 다른 사례도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했다고 하였는데, 가출할 때만 자신을 찾지 말고 애초부터 찾아주길 바랬다고 하였다. 다만 가출이후 언니, 오빠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재미를 찾은 이후로는 보호자가 관심을 가졌어도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였다(청소년13).

훈육과 관련해서는 한 사례의 경우 부모가 풀어주면 부모를 만만하게보고, 심하게 때리면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훈육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도 부모가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잘 얘기해 주고 챙겨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였다(청소년8).

부모와 함께 할 시간으로는 부모가 같이 있어주는 시간(청소년15)과 부모와 같이 무엇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상황(청소년14) 등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한 사례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했다면서, 센터에서도 상담보다는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청소년15). 다른 사례도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이나 함께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청소년14). 이외에 저연령시기에는 집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청소년3).

둘째, 저연령시기에 관심가져주는 사람과 상담이 필요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참고로 저연령시기의 경우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례들이 있었다(청

소년4,5,14). 이 경우 지금은 친구(청소년4), 위클래스와 소년원선생님(청소년14)이 있다고 한 사례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없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시기에 관심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의견을 보면, 초등학교 시절 답답할 때가 많아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었다(청소년13). 한 보호자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며, 누가 옆에서 따뜻하게 얘기해 주고 편이 되어주었다면(또래 SNS친구가 아닌 어른 혹은 선배로서) 좋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하였다(청소년16보호자). 또 다른 보호자도 초등학교 때 보호자가 같이 있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심가져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였다(청소년2보호자). 청소년의 경우도 관심과 교육이 중요했다고 하며, 보호관찰 등은 관심을 주어서 좋았다고 하였다(청소년11). 다른 청소년들도 좋은 얘기 해주고, 맛있는 것 사주는 사람(청소년9), 이해해 주고 들어주는 사람(위클래스, 소년원선생님을 이전에 만났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이라고 함)(청소년14)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셋째, 저연령시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생활을 잘 하고, 학교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미를 느꼈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청소년1보호자).

그 밖의 의견을 보면, ADHD가 없는 것(청소년11), 경찰이나 보호자가 더 엄격하게 혼내고 교육(청소년10), 아이심리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청소년2보호자) 등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2) 저연령시기와 현재 필요한 내용 비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연령시기와 현재 각각 비행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응답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부모관심)→가족(부모와 시간보내기)(청소년13), 가족(부모의 관심과 적절한 훈육)→행동결과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 주는 것(청소년8), 가족(부모님 말 잘 듣기)→다른 사람의 관심(청소년7), 가족(적절한 훈육)→돈과 일자리(청소년4), 관심가져주는 사람→관심가져주는 사람(청소년2)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저연령시기에 필요했던 내용은 주로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연령시기와 현재 모두 관심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청소년의 경우 '전화로 잘 지내니? 뭐하고 지내니? 별일 없지? 이렇게 챙겨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청소년2). 한편 현재에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경우도 있지만, 이외에도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것, 관심가져주는 사람, 경제적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특히 저연령 시기의 경우 가족과 관련된 요인들이 재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가. 경찰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경찰단계에서는 조사(전문가참여제)와 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저연령소년의 경우는 지원결정)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이 우범소년 등을 인지한 경우 소년부 송치와는 별개로 지역사회 기관에 연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매뉴얼화된 것은 아니고 개별 경찰의 역량, 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첫째 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전문가참여제의 경우 범죄심리사가 비행성예측조사에 참여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행소년의 10%대만 비행성예측조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수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참여제의 기준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범죄심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선도프로그램 중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사랑의 교실)에는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의 청소년전문기관이 연계되고 있었다. 또 다른 선도프로그램으로 치유 선도 프로그램(마음나눔교실)은 신경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이 담당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선도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전문기관이 담당하지만, 중고생 연령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연령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개별적 프로그램 운영 혹은 저연령소년에게 특화된 기관과의 연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2019년부터 경찰에서 하고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에서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등을 통한 피해자 치유 및 가해자의 사회재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이다.

넷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조사과정에서 경계성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교육청과 연계된 정신병원에 의뢰해서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는 사건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경찰8).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경찰1,8). 조사과정에서 학대징후가 있다면(하나의 징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 물어 본 후 판단하지만 조심스러운 면이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대답을 안하거나 피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경찰8).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안전망에 속한 구청이나 시청에 알아봐서 지원조건이 되는 경우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경찰5,9). 특히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연계가 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경찰4). 친사회적 경험이 필요한 취약계층 소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의 연계로 체험기회 제공,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⁷⁹⁾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 중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를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경찰

179) 경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가 자문에 의하면, 경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이라서 연계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한다.

5.9). 경찰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이라서 청소년안전망 회의를 통해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에 연계된 사례가 있으면 진행상황, 연계된 소년의 변화상황 등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연계체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면서 어느 부문으로 연계하면 좋을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경찰9).

한편 학교를 다니면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하여도 지원이 보다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고로 경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저연령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진로체험 등이 제공되면 좋을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보면, '초등학생 중에 미용실 갈 돈이 없어 아빠가 잘라줘서 애들한테 놀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잘 다니면서 집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하였다(경찰5).

나. 법원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첫째, 조사과정에서 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 지역 의사, 임상심리사, 관련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이를 통한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개별 상담을 받으면서(필요한 경우 보호자상담 병행) 저연령소년과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하기 위한 자원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자원은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 자원의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소년조사관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저연령소년 중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소개해 주거나 위탁보호위원 중 복지와 관련된 사람을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복지적 자원이 필요한 저연령소년과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임시조치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임시조치시 청소년회복센터, 쉼터에 위탁하기도 한다. 물론 임시조치의 대부분은 분류심사원 위탁이지만 일부에서는 지역사회 기관에 위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임시조치가 필요한 저연령소년을 위해서 이들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이 더 발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처분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첫째, 1호처분 중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의 경우 지역사회 위탁보호위원을 위촉하여 소년과 1:1로 매칭하고 있다. 저연령소년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주로 1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보호력이 약한 소년은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보호위원 위촉과 관리를 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위탁보호위원은 상담가, 학교전담경찰관, 은퇴한 소년원교사, 교사 등 다양하다(판사1). 다만 위탁보호위원은 소년을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력 등 가정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1호처분 신병인수위탁시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가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병인수 위탁이 필요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쉼터 등과 연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문 편이다. 신병인수가 필요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위탁할 기관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신병인수가 필요한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수강명령의 경우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이 수강명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수강명령 가능연령을 낮춘다면 저연령소년에게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과 관련해서는 특별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위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⁸⁰⁾ 이러한 위원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을 연계하는 것이

180) 특별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소장이 대상자의 보호관찰활동 지원을 위해 위촉할 수 있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또한 범죄예방위원도 범죄예방과 보호관찰활동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에 대한 부가처분,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호자교육명령이나 수강명령처럼 기관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기관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외에 보호관찰관이 지원이 필요한 저연령소년에 대해 자원연계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 보호관찰 업무량을 고려할 때 자원을 알아보고 연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원연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가. 통합지원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가족이며,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나 성폭력피해아동 등이다.¹⁸¹⁾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2). 지원내용은 건강증진 서비스(검진과 질병예방교육), 아동의 기초 학습과 사회적, 정서적 발달 지원, 부모대상 양육지도 등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지원과정을 보면, 대상자 선정(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사례회의(대상자 필요와 상황 파악) 및 개입영역 구체화→서비스 계획과 제공(아동발달 단계별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 신체/건강관련 기관(병의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인지/언어 관련기관(방과후 돌봄기관, 지역도서관, 어린이집), 부모 등 가족관련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센터), 정서/행동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사례관리를 하게 된

181)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지원대상(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2_01.asp, 검색일: 2020.10.20.).

다.¹⁸²⁾ 드림스타트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¹⁸³⁾

관련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대상자는 자체 발굴(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행정데이터로 확인→초기 상담→대상자 선정)이나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연계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도 개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우선적인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도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원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12세가 도래할 때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대상 아동이 13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연령이 도래하였을 때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15세까지 연장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이 많지 않다고 한다(사례수가 많기 때문).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이는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 교육, 의료와 자립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청소년 및 보호자와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운영체계를 보면, 발견(1388 청소년 전화나 상담 등/경찰서, 학교, 아웃리치 등/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통합), 개입(긴급 구조/일시보호, 심리검사와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파악), 서비스 제공 및 연계(상담, 정서적지지/경제적 지원/의료, 법률, 자립지원 및 연계, 시설보호)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¹⁸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있는데 총 13개 기관(또는 단체)이 포함된다. 여기서 지자체의 역할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필수연계기관 상호연계나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허브역할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182)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지원과정(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검색일: 2020.10.20.).

183)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지역드림스타트 안내(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4_01_01.asp, 검색일: 2020.10.20.).

18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위기지원사업(청소년안전망)(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sn=166, 검색일: 2020.11.18.).

있다. 이 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¹⁸⁵⁾ 센터의 인력을 보면, 시도센터는 14명 이상, 시군구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을 두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도센터는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시군구센터는 1명 이상이 있도록 되어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자체 직영, 법인설립 운영, 위탁운영(지자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¹⁸⁶⁾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가에 의하면, 학교나 법원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법원의 수강명령도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¹⁸⁷⁾ 실무가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중요하며, 효과는 소년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취약하고, 방임된 소년의 경우에는 조금만 보듬어주면 괜찮아지지만, 정신적 문제·가정문제가 있는 소년, 피학대경험이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긍정적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1) 비행 및 일탈예방을 위한 지자체 지원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비행 및 일탈예방과 가정, 학교 생활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재학중인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대상 중 하나는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 이 경우 청소년은 9-24세를 말한다. 따라서 저연령소년의 경우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로부터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호지원은 상담이나 교육 등의 방법으로

185)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2020, 349면.

186) 앞의 책, 354면.

187)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상담복지센터와 구로구상담복지센터에서 소년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호지원활동, 지도자교육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0조). 이는 비행소년(저연령 소년포함)의 사회내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통보하게 되며, 특별지원의 대상 중 하나는 비행이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신청경로는 당사자 및 가족, 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대안교육시설(교사),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담당 직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쉼터 등)(사회복지사), 청소년기관 및 시설(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¹⁸⁸⁾

선정기준을 보면,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가 해당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¹⁸⁹⁾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을 보면, 생활지원은 월 50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학교운영비등), 자립지원(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등이다.¹⁹⁰⁾ 여기서 특별지원은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 혹은 중요한 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다(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2개 종류 이상 지원가능함).¹⁹¹⁾ 상담지원에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¹⁹²⁾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¹⁹³⁾

188) 여성가족부, 앞의 책, 750면.

18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 검색일: 2020.10.3.).

190) 여성가족부, 앞의 책, 748면.

191) 앞의 책, 761면.

192) 앞의 책, 764면.

193) 앞의 책, 761면.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담지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사업, 청소년쉼터 등에 연계하게 된다.¹⁹⁴⁾

저연령 비행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가 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연령소년 대상자 발굴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학교에서의 지원

10-12세에 해당하는 초기청소년기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성공으로 자아개념을 정의한다.¹⁹⁵⁾ 이렇게 볼 때 학교에서의 적절한 개입 및 처우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We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망이다.¹⁹⁶⁾ 1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의 위클래스(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예방, 지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위센터(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 대상 진단 및 상담 등) 및 위스쿨(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⁹⁷⁾ 저연령시기의 경우 학교생활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이후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시기에 위클래스를 통한 적절한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위클래스는 위센터, 위스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전국 초중고 위클래스 설치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65.6%이다. 특히 전북(31.4%)의 경우 위클래스 설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은 13%이다.¹⁹⁸⁾ 즉 저연령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한 학교차원의 개입 및 지역사회연계

194) 앞의 책, 759면.

195) Portland State University, op., cit., p.1.

196) Wee홈페이지, 사업소개(<http://www.wee.go.kr/home/intro/intro01001v.php>, 검색일: 2020.11.11).

197) Wee홈페이지, 수행조직(<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 검색일: 2020.11.11).

198) 김병욱의원 블로그, '김병욱의원, 초·중·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설치율 65.5%, 전라북도 31.4%로 가장 낮아', 보도자료 2020.10.4(<https://blog.naver.com/ilungkim/222106271968>, 검색일: 2020.11.11.).

를 할 수 있는 기반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 위탁보호

1)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6). 위탁가정은 소규모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 위탁가정의 규모를 보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이어야 한다(18세 이상 자녀제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위탁가정에 대해 만7세-13세 아동당 월 40만원 이상 양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¹⁹⁹⁾

관련실무가와와의 자문에 의하면, 앞으로 전문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복지학, 심리학 전공자, 임상 유경험자 등 역량있는 위탁보호위원이 양산될 경우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상(제52조) 아동보호시설의 한 종류이며,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보호와 양육, 자립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²⁰⁰⁾ 공동생활가정은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성별을 분리해서 보호하고 있다.²⁰¹⁾

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발달론적 관점에서 특성이해, 아동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아동의 욕구를 점검하여 개별적인 자립계획수립), 원가족과의 관계회복(가족방문이나 전화, 문자 등 관계유지 노력, 가족참여프로그램(가족캠프등), 부모교육, 학교와 관계 형성(교사와 정기적·지속적인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 참여), 지역내 자원 활용(지역 관공서와 민간자원

199)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20, 77면(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58413, 검색일: 2020.10.13.).

200) 앞의 책, 126면.

201) 앞의 책, 134면.

등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기관과 관계형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²⁰²⁾ 관련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공동생활가정은 지역마다 분포에 차이를 보이며, 비행력이 강한 아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에 비행력이 강한 아이가 들어 오게 될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의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과 자립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²⁰³⁾ 쉼터의 종류를 보면, 24시간 이내로 일시 보호하는 일시청소년쉼터(별도 야간보호시설과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보호가능),²⁰⁴⁾ 3개월 이내로 보호하는 단기청소년쉼터(25명 미만, 3개월 범위에서 2차에 한해 연장가능)²⁰⁵⁾, 3년 이내로 보호가능한 중장기청소년 쉼터(10명 이내, 1년 연장가능)²⁰⁶⁾가 있다.

청소년쉼터는 성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²⁰⁷⁾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쉼터현황을 보면 일시는 32개소, 단기와 중장기는 각각 62개소, 40개소가 있다(유보4개소).²⁰⁸⁾

청소년쉼터는 중고생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가 있지만, 이는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들에게 적합한 시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상담 지원 등

상담지원은 앞서 살펴 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202) 앞의 책, 147면.

203) 여성가족부, 앞의 책, 469면.

204) 앞의 책, 548면.

205) 앞의 책, 555면.

206) 앞의 책, 559면.

207) 앞의 책, 560면.

208) 앞의 책, 564면.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는 청소년상담분야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며, 위기청소년과의 지속적 관계형성을 통해 위기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²⁰⁹⁾ 이는 중·고 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²¹⁰⁾

대상청소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 청소년안전망사례관리 회의에서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장기적 사례관리를 요하는 경우에 청소년동반자 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문제(발달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 등에 연계할 수 있다.²¹¹⁾

2020년을 기준으로 청소년동반자수는 1,321명이며, 수혜청소년수는 40,664명(사례관리목표)이고,²¹²⁾ 국고보조율은 50%이다.²¹³⁾

사례관리는 3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개별 사례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²¹⁴⁾ 이러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학교, 경찰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²¹⁵⁾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고위험군 연계가 가장 많다고 한다. 앞으로 상담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저연령소년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법원, 보호관찰소 등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 센터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부, 경찰, 법무부, 법원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센터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생은 입학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소년이다.²¹⁶⁾ 따라서 센터의 대상이 되는

209) 앞의 책, 438면.

210) 앞의 책, 437면.

211) 앞의 책, 440면.

212) 앞의 책, 452면.

213) 앞의 책, 450면.

214) 앞의 책, 447면.

215) 앞의 책, 438면.

216) 앞의 책, 821면.

초등학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상(제52조)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상담, 치료, 예방, 연구하는 시설이다.²¹⁷⁾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아동상담소는 인천에 5개, 경기 3개,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로 총 10개가 있다.²¹⁸⁾

마. 정신건강 지원

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혹은 보건소)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등록과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비 지원과 치료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이 지원될 경우 해당예산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센터(혹은 보건소)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²¹⁹⁾ 해당 센터(혹은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한 후 정신건강 서비스(사례관리, 상담, 치료(검사)비 지원,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를 제공하게 된다.²²⁰⁾

교육부에서 학생 대상 선별검사를 하고,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에 의뢰하게 되며, 이 두 센터에서는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²²¹⁾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7개 광역시와 9개 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²²²⁾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17)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20, 126면.

218) 보건복지부,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2020, 1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9667, 검색일: 2020.10.13.).

219)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0, 73면.

220) 앞의 책, 74면.

221) 앞의 책, 83면.

222) 앞의 책, 24면.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 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청소년보호법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²²³⁾ 동 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식 상담, 치료, 보호, 교육 등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로의 회복,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²²⁴⁾

센터는 단/장기가 있으며, 단기(4박 5일)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는 1개월과 4개월과정이며, 각각 연 1회, 연 2회 이루어진다. 장기과정은 각각 60명을 대상으로 한다.²²⁵⁾ 초등학생은 장기과정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면접, 사전 심리검사로 대상자를 파악하며, 가족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입교식 및 수료식, 가족캠프(1일), 가족방문의 날(보호자교육, 집단상담, 1일), 전화상담(주1회), 개별보호자 상담(6회 이내)). 또한 총 10회기의 패밀리멘토 프로그램²²⁶⁾을 운영하며, 비용은 월 3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청소년쉼터,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취약계층임을 시설장, 학교장이 증명할 때에는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²²⁷⁾ 센터의 대상자는 청소년관련시설, Wee 센터, 학교 등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다.²²⁸⁾

센터에서는 집단상담과 집단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중고생, 후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승마치료, 동물매개치료 등을 하고 있다(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음악, 미술, 요가/명상치료, 예술치료 등).²²⁹⁾ 체험활동으로는 스포츠, 자연체험과 진로체험, 봉사활동 등이 있다(초등학생대상).²³⁰⁾ 또한 센터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초등반을 별도로 두고

223) 여성가족부, 앞의 책, 1115면.

224) 앞의 책, 1117면.

225) 앞의 책, 1118면.

226) 패밀리멘토의 경우 상담 등을 전공한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기술 및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임(주1회, 총 10회). 앞의 책, 1130면.

227) 앞의 책, 1119면.

228) 앞의 책, 1120면.

229) 앞의 책, 1127면.

있다.²³¹⁾

센터에서는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개별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문자발송 월1회, 전화 상담 분기별 1회)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도 활용하고 있다.²³²⁾

이 센터의 경우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있는 저연령 소년에 대한 치료재활을 할 수 있고, 초등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센터가 한 곳에 있어서 거주지와 거리가 먼 경우의 심리적 문제나 가족관계 유지 문제, 1달, 4달 거주식으로 운영되어 저연령소년이 일정기간 집과 떨어져서 보내야 하는 점,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4절 |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협력 제고 및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도 파악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는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 청소년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환경조사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사는 주로 개인적 특성(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일수록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행성예측조사는 본인과 보호자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질문내용이고, 문항수가 많다는 점(344문항)으로 인해 저연령소년이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30) 앞의 책, 1135면.

231) 앞의 책, 1133면.

232) 앞의 책, 1137면.

경찰서에 따라서는 단축형(136문항)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문항 수만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이해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조사 방법을 보면, 보호자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연령소년의 조사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보호자 이외의 외부자원이 참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중고생 연령대와 같이 진행하거나 개인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중에는 저연령소년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연령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외부 전문가 개입을 통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관계회복과 재비행 예방을 위한 것이며, 보호자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셋째, 경찰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과 보호자 대부분은 경찰이 잘 대해 주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는 경찰이 무섭게 말해서 아이가 위축되고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 대한 저연령 소년의 태도를 보면, 무서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는데, 이는 경찰의 태도와 관계없이 경찰에 처음 접촉하는 경우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이들 입장에서 경찰조사가 두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해력이나 어휘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우들이 있었고 비행성예측조사를 경험한 소년의 경우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저연령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선택, 조사내용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연령소년들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움이 된 경우를 보면 2명이 같이 받았으며(거의 개별적), 필요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별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는 처분전교육과 소년조사관 교육, 전문가진단 및 상담

조사, 꿈키움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등이 있다. 이 중 처분전 교육과 소년조사관 조사는 소년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저연령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처분전 교육은 불처분이나 1호처분이 예상되는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년사법절차 및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으로 소년사법에 대해 알고, 보호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후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조사관 조사도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분야 전공자인 소년조사관이 아이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게 조사하고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처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조사관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조사관 조사를 받는 저연령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이는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지능, 발달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조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12회기로 이루어지며, 저연령소년의 경우 상담을 통한 성행개선을 위해서 활용하였다. 현재 소년법상 수강명령이 12세 이상이라서 저연령소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이 강한 상담조사를 통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는 3일간 이루어지며, 센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소에서의 결정전 조사는 판사에 따라 활용하기도 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과 달리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환경적 요인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소년조사관 인력, 전문가 자원 발굴 및 연계 어려움, 비용문제 등이 있어서 저연령소년 중 일부만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임시조치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류심사원에 안 보내려고 하지만 주거불안정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였

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일정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통하여 상세한 진단 및 이에 기반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해당 기간 동안에 교육을 통한 태도나 행동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자유제한, 거주지와 거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다른 연령대 청소년과의 분리수용이 아닌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류심사원 이외에는 쉼터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 임시로 위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법원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 및 보호자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들이 소년조사관 조사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년조사관이 관심을 가져주고, 잘 얘기해 주고, 단어를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다만 청소년기가 아닌 초등학교 아이의 심리와 그 나이 또래에서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좋은 점을 꼽은 경우는 한 사례였으며, 이 경우 인성교육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밖의 경우는 자유박탈, 규칙적 생활, 긴 위탁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저연령시기나 청소년기에 분류심사원 위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 형들과의 만남,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외부와의 단절, 규칙적 생활, 다른 위탁생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분류심사원에 처음 위탁된 경우도 적응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류심사원에서의 아이들 발달수준 및 특성에 맞는 교육과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연령소년의 보호자 중에도 재판시에 겁이 났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저연령시기에 재판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재판받을 때 무서웠다고 하였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 재판이 반복될 때에는 무섭지 않았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당시 처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호자들도 처분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분류심사원을 다녀온 경우, 주변에 비행친구나 선배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볼 때 저연령소년 재판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특히 신병불인수 처분)이 많이 부과되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사안이 경미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있는 경우 보호자위탁을 하며, 어릴수록 보호자가 믿을 만하면 1호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는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신병인수위탁의 경우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신병인수위탁을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다고 하였다(쉼터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함).

둘째, 수강명령의 경우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판사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 접근,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집행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셋째, 보호관찰의 경우 만12세 이하 대상자는 2016년 이후로 100명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연구의 조사시점(2020년 8월)에 초등학생만을 파악했을 때는 19명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별도 지침이 있지는 않다. 다만 실무가대상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있어서 저연령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선택, 개인의 일상생활 질문(중고생 연령대는 친구 등에 대한 질문 포함), 보호자와 보다 많은 대화 등의 특징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 출석시 보호자동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아이파악 및 안전을 위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현장출장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면담기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처분에 대해서 보면, 6호처분 위탁을 받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있는 초등학생은 27명이었다(2019년말 기준). 아동보호치료시설 실무자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별도 방 배치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교과교육의 경우 개인별 학력수준에 맞게 반을 배치한다고 하였다. 한편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과 연령에 적합한 대안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섯째, 소년원 처분과 관련해서 보면,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저연령소년(초등학생)은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4명이었다. 실무가 자문에 의하면, 의료재활소년원은 지능을 기준으로 분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저연령소년에 대한 분리 교육, 그리고 이들의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8-10호 처분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8호처분 대상자는 2명, 9호와 10호는 각각 3명, 1명이었다. 여기서의 통계자료는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 연령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연령소년이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저연령소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설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

여섯째, 보호자교육에 대해서 보면, 불처분이나 1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전 교육을 통해 보호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밖의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기관에서 보호자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어릴수록 보호자교육명령을 많이 내린다고 하였다.

일곱째, 처분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을 보면,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들은 처분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다만 어린 시기에 행동에 대한 결과(처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상처를 받은 경우 등도 있었다. 보호자교육에 대해서는 양육방법, 아이에 대한 이해 등에서 도움이 되지만,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에 대해서 보면, 경찰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제조사, 선도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기관에 연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원단계에서는 조사과정(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에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임시조치할 수 있는 자원 등을 발굴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처분단계에서는 1호처분시 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자원 활용, 수강명령 집행시 지역사회 기관 발굴 및 활용, 보호관찰시 특별범죄예방위원이나 상담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와 관련해서 보면, 드림스타트(취약계층 만12세 이하 대상)와 청소년안전망(9-24세 대상)을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취약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로 지원대상이 되며, 후자의 경우 저연령소년보다는 청소년 중심의 기관연계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의 위탁보호와 정신건강 지원,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 4 장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제4장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제1절 | 미국

1. 개관

여기에서는 우선 아동범죄자 처리를 위한 특별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는지를 개관에
서 함께 살펴보고 미국의 사법부 내의 형사절차상 아동에 대한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여부 및 아동의 범죄예방 또는 비행을 행한 저연령 아동에 대한 특별한 처우프로그램
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연령아동의 발달상의 특성상 청소년과는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절차들이 아동의 범죄예방 및 보호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2019년 소년범죄자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각 주의 소년사법은 어린 소년들을 공식적인 법원처리절차로부터 전환하고 구금에
대한 대안들을 제공하고, 소년법원관할권을 회복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고,
독방 감금을 제한하는 법 제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²³³⁾

우선 2020년 7월부터 발효되는 알칸사스 주법은 모든 법원이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년보호부서
(DY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에서 소년의 범죄 개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33)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on), Juvenile Justice 2019 Year-End Report
(<https://www.ncsl.org/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juvenile-justice-2019-year-end-report.aspx>, 검색일: 2020.6.22.).

위험평가도구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법원은 검증된 평가를 통해 낮은 위험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경범죄(비행)를 범한 소년을 수감하는 것이 금지되며, 증거에 기반한 발달상 적절한 가족 중심적이고 재활적인 지역사회기반 대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²³⁴⁾

콜로라도 주 역시 2019년에 정신건강검진도구 및 소년의 다이버전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역 변호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도구를 포함하여, 유효한 위험 평가도구를 소년사법시스템 전반에 채택 및 구현하도록 법을 개혁하였다.²³⁵⁾ 시스템관계자는 모두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효과적인 측정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법은 소년을 소년사법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자기 또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소년에 한하여 구금을 제한하였고,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대안 절차를 채택하였다.²³⁶⁾

루이지애나도 위험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금소년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2019년 Provides relative to the detention or release of juveniles을 제정하였는데, 안전한 구금은 법정에서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공공안전 위험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동 평가를 위한 심사도구는 아동이 구금되기 전 또는 가능한한 조기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관할권 내에 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소년들에게 비용 없이 구금을 대안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³⁷⁾

워싱턴주는 성인이 저지르면 범죄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 소년을 구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주 정부는 ‘법정명령예외’, 즉 법원명령에 의하여 구금을 하도록 하는 예외를 금지하였으며, 이는 법원 판결에 불이행한 지위비행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예외조치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신법은 법원이 안전하지 않은 가정외의 배치, 지역사회기반 멘토링, 상담, 가족화해, 활동적인 건강서비스 및 위기에 처한 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타의 개입 또는 중재를 하도록 명령한다.²³⁸⁾

234) Ibid.

235) Colorado General Assembly, SB19-108 Juvenile Justice Reform, 2019, pp.5-8 (https://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2019a_108_signed.pdf, 검색일: 2020.6.22.).

236)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on), op., cit.

237) Ibid.

미시건주는 소년사법관할권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고, 2021년 10월부터 특정 범죄를 범한 17세 소년은 자동으로 성인 형사법원에 귀속되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한다.²³⁹⁾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2017년의 개혁을 기점으로 ‘연령조정 (Raise the Age Modification)’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동의할 경우 소년이 성인형사법원에서 소년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이 경우 자동으로 형사법원의 기록이 삭제된다.²⁴⁰⁾ 오레곤주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15세에서 17세 소년에 대하여 법률상 성인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검사는 소년이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하여야 한다.²⁴¹⁾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몬태나 주법은 경찰의 소년에 대한 DNA 샘플채취시기를 제하는 바 법원의 명령 또는 부모의 서면허가의 경우에 한정되며, 다만 소년이 성폭력 혹은 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채취가 허용된다.²⁴²⁾ 일리노이 주에서는 학교직원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이 학교 내에서 학생을 구금하고 심문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²⁴³⁾ 만일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은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상담가나 간호사 또는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한 학교 직원이 심문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⁴⁴⁾ 이로서 저연령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사법적 개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소년의 발달정도에 따른

238) Ibid.

239) State of Michigan 100th Legislature Regular Session of 2019, Enrolled Senate Bill No. 102, pp.1-2(<http://www.legislature.mi.gov/documents/2019-2020/publicact/pdf/2019-PA-0097.pdf>, 검색일: 2020.6.23.).

240) General Assembly of North Carolina Session 2019, Senate Bill DRS35175-MV-114 Short Title: Raise the Age Modifications. p.3 (<https://webservices.ncleg.gov/ViewBillDocument/2019/2104/0/DRS35175-MV-114>, 검색일: 2020.6.26.).

241) 80th Oregon Legislative Assembly—2019 Regular Session, Enrolled Senate Bill 1008, p.5(<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1008>, 검색일: 2020.6.26.).

242) 2019 Montana Legislature Senate Bill NO. 262(http://custom.statenet.com/public/resources.cgi?id=ID:bill:MT2019000S262&ciq=ncsl53&client_md=896fc4c515a1f2cfc562f8b48f83abf6&mode=current_text, 검색일: 2020.7.22.).

243) 101st General Assembly, State of Illinois 2019 and 2020 SB1357(http://custom.statenet.com/public/resources.cgi?id=ID:bill:IL2019000S1357&ciq=ncsl53&client_md=03ba3e0f3d9fe63156cdae711a9c6022&mode=current_text, 검색일: 2020.7.22.).

244) Ibid.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법적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소년의 태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진술조력인제도가 있지만 아동에 대한 동 제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가. 개관

미국의 경우 저연령소년이라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달리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 보겠지만 경찰에서는 심문시의 특별한 주의 또는 조건이 부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검사는 기소재량이 없으므로, 검사는 경찰로부터 이송 받은 증거를 토대로, 그와 같은 증거들이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지만,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건이 기각되거나 또는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에게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소년도 성인범죄와 같이 죄상인부절차(Arraignment)를 거치므로, 기소 심리단계에서 소년은 법정에서 출두하여 청원서에 기재된 범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것을 요청받는다.

법원절차는 소년법원과 일반 형사법원으로 나뉘는데, 소년과 관련된 형사범죄 및 기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은 소위 국친사상(parens patriae)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법적 개념의 산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시민에 대한 법적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개념이다.²⁴⁵⁾ 전반적으로는 지위비행이 아닌 한, 각 주마다 서로 상이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넘게 되면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저연령소년이라도 특별한 절차를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45) Legal Information Institute LII, Parens Patriae(https://www.law.cornell.edu/wex/parens_patriae, 검색일: 2020.9.12.).

나. 경찰단계

1) 소년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

소년범죄사건은 국가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고 주민기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카운티 변호사는 주를 대표하여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일정한 상황에서는 법집행관이 법정출두통지(citation)를 발행한다.²⁴⁶⁾ 소년이 범한 범죄는 일반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수사되는데, 범죄가 보고되면 경찰은 우선 소년이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신뢰 하에 보고서가 검사에게 송부되거나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다.²⁴⁷⁾

청소년 관련 법들은 특정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 비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법원소환여부는 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죄를 범한 소년이 구금될 수 있는데 구금여부의 심리를 위해 24-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경찰은 소년을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양육권을 이유로 석방하거나 청소년 보호시설에 배치할 수도 있다.²⁴⁸⁾

2) 소년에 대한 경찰심문의 특칙

이른바 묵비권으로 알려진 미란다원칙은 경찰이 특정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권리인바 이는 소년에 대한 경찰심문에서도 동일하지만,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예방조치와 요구사항이 부가되는데, 만일 경찰이 이러한 추가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를 구금시킬 허가서나 그 어떤 진술도 판사에 의해서 부인될 위험이 있다.²⁴⁹⁾

명백히 체포는 경찰에 의한 구금에 해당하지만, 공식적인 체포 없이도 구금될 수 있는 여타의 상황들은 많으므로, 법집행기관이 특정인을 적절히 구금하였는지에 관한

246)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Court Process(<https://www.stearnscountymn.gov/288/Juvenile-Court-Process>, 검색일: 2020.09.12.).

247) Ibid.

248) Ibid.

249) Findlaw, Police Questioning of Minors. 2019.2.14(<https://criminal.findlaw.com/juvenile-justice/police-questioning-of-minors.html>, 검색일: 2020.9.13.).

판단을 위해 법원은 ‘합리적인 평균인(reasonable person)’ 기준을 토대로 사안을 조사하고, 만일 합리적인 평균인이 그 정황 하에서 비제한적이라고 느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²⁵⁰⁾ 또한 만일 합리적인 평균인이 떠날 수 있음을 자유로이 느끼지 않는다면, 경찰은 상대방을 구금한 것이고 따라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²⁵¹⁾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미성년자를 심문하는 동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원이 미성년자를 경찰 내 구금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령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경찰은 심문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장소에 현존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있어서 심문대상자의 연령을 균형 있게 다루는 방안을 사용하여야 한다.²⁵²⁾

다. 법원단계

1) 소년법원절차상의 소년에 대한 특칙

가) 소년법원 사건의 특징과 종류

법원에서의 특징으로는, 소년사건기록은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성인기록과는 달리 봉인된 문서이다.²⁵³⁾ 이러한 조치는 다이버전의 목적과 같이 소년의 한번의 실수가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소년이 18세에 이르면 삭제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소년법원절차는 성인절차보다는 덜 공식적이다.²⁵⁴⁾

오늘날에도 국친사상은 소년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해로운 대안을 최소화하는데 기초가 된다. 특히 소년처분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되는 바는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ing)²⁵⁵⁾의 선고인바, 이를 통해 최대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년

250) Ibid.

251) Ibid.

252) J. D. B. v. NORTH CAROLINA(2011) No. 9-11121 Argued: March 23, 2011 Decided: June 16, 2011.

253) Findlaw, Juvenile Court Procedure, 2019.2.8.(<https://criminal.findlaw.com/juvenile-justice/juvenile-court-procedure.html>, 검색일: 2020.6.18.).

254) Ibid.

255) Findlaw, Types of Criminal Sentences(<https://criminal.findlaw.com/criminal-procedure>

은 선고기간동안 모니터링되고 그들이 재활되었다거나 최대선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한다는 점 및 그 자체가 가장 해롭지 않은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소년법원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건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건유형은 3가지로 분류된다.²⁵⁶⁾ 첫째, 소년비행사건(Juvenile Delinquency Cases)이다. 이는 형사미성년자들이 만일 성인이었다면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사건이다. 소년에 대한 처벌과 소년비행법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성인형사법원에서의 그것과 명백히 차이가 있다.²⁵⁷⁾ 소년법원절차는 소년에 대한 재활과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데에 핵심이 있다. 둘째, 소년의존사건(Juvenile Dependency Cases)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확대하거나 방치 또는 포기한 소년들을 포함한다.²⁵⁸⁾ 이러한 종류는 아동의 안전보호에 초점이 있으며, 가정법원사건과 유사하게 다루어진다.²⁵⁹⁾ 셋째, 지위비행사건(Status Offense Cases)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소년법상 우범소년과 유사하다. 이 경우는 특히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지위비행으로, 미성년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통금시간 위반, 폭주 또는 무단결석 등이 포함된다.²⁶⁰⁾

나) 비공개원칙

미네소타법(Minn. Statutes Sec. 260.155 subd. 1 및 Sec. 611A.02)은 청소년청문회의 경우 일반인의 참석을 금지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 업무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자의 경우, 범죄 당시 청소년이 16세 이상이었고 범죄를 범했다고 주장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²⁶¹⁾ 즉, 16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되지

/types-of-sentences.html, 검색일:2020.6.18.) indeterminate sentencing이란 징역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대신에 '~기간 이상이 아닌(not more than)' 또는 '~기간 이하가 아닌(not less than)'의 미리 규정된 일정한 기간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부정기형의 선고 권한은 일반적으로 주법에 의하여 부여된다.

256) Findlaw, Juvenile Court Procedure, 2019.2.8.

257) Ibid.

258) Ibid.

259) Ibid.

260) Ibid.

261)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Court Process(<https://www.stearnscountymn.gov/288/Juvenile-Court-Process>, 검색일: 2020.09.12.).

않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다.

2) 소년범죄 형선고의 특칙

가) 소년사법상의 소년혼합형 선고(Juvenile Blended Sentencing)와 실패

혼합형 선고는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에서 성인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²⁶²⁾ 즉, 소년혼합형 선고는 일정한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소년법원이 형사판결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의 표는 소년혼합형 선고에 대한 통계이다. 여기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숫자는 청소년이 법적으로 형사법원에서 면제될 수 있는 최소연령을 의미하며, NS는 최소연령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No minimum age is specified)한다.

▶▶ <표 4-1> 소년법원 혼합형 선고 및 형사법원배제 최소연령, 2015

(단위: 연령)

주	최소 연령	형사 범죄	특정 중범죄	경제 범죄	살인 범죄	대사인적 범죄	특정 재산 범죄	특정 마약 범죄	총기 범죄
Alaska	16					16			
Arkansas	NS		13	NS	NS	13			14
Colorado	NS		NS			NS			
Connecticut	NS		NS			NS			
Illinois	13		13						
Kansas	12	12							
Massachusetts	14		14			14			14
Michigan	NS	NS	NS		NS	NS	NS	NS	
Minnesota	14		14						
Montana	NS		12		NS	NS	NS	NS	NS
New Mexico	14		14		14	14	14		
Ohio	10		10		10				
Rhode Island	NS		NS						
Texas	NS		NS		NS	NS	NS	NS	

출처: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court blended sentencing offense and minimum age criteria, 2015 (https://www.ojjdp.gov/ojstatbb/structure_process/qa04113.asp?qaDate=2015, 검색일: 2020.6.18.).

262) US Legal, Juvenile Blended Sentencing Law and Legal Definition(<https://definitions.uslegal.com/j/juvenile-blended-sentencing/>, 검색일: 2020.6.18.).

이는 앞서 언급한 소년혼합형 선고를 허용하는 14개 주, 알래스카, 알칸사스,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즈, 캔서스,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타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의 연령제한으로, 혼합형선고를 허용하는 범죄를 8개 군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최소연령을 정하지 않은 주들은 저연령 아동에 대하여도 소년법원에서 형사판결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모든 범죄에 최소연령을 정하지 않은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시간, 텍사스 및 특정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최소연령을 정하지 않은 몬타나의 경우 저연령 아동에 대한 혼합적 형사판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혼합형선고를 하는 일리노이주 검찰은 2019년 11월에 이동식 주택에 방화를 하여 5명을 숨지게 한 9세 아동에게 1급 살인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²⁶³⁾ 일리노이주에 따르면 13세 이상이 형사처벌의 기준연령이고, 10세가 구금의 기준이므로 10세 이상 13세 미만이라면 카운티 청소년 구금시설에 보내졌겠지만, 9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능한 유일한 강제는 집행유예이다.²⁶⁴⁾

나) 연장관할 소년 지정(Extended Jurisdiction Juvenile (EJJ) Designation)

미네소타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에 해당하는 형을 부과하되, 청소년 연장관할을 통해서 10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하여 내담자 평가, 사례계획, 적절한 개입과 결과 측정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⁶⁵⁾ 미네소타 주의 경우 이를 위해서 1994년 연장청소년관할법(Extended Jurisdiction Juvenile legislation(EJJ))을 제정하였는바, 이는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성인형사사법절차로의 전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²⁶⁶⁾ 이에 따르면 법원은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형을 부과하되 소년배치를 함으로써, 만일 범죄소년이 조건을 위반하면, 성인 형벌이 그대로 선고되지만 반대로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21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법원 관할이 적용되게

263) U.S. News, "9-Year-Old Charged With Murder in 5 Illinois Fire Deaths"(<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19-10-08/9-year-old-to-face-5-murder-charges-in-deadly-illinois-fire>, 검색일: 2020.6.18.)

264) Ibid.

265)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Diversion Program(<https://www.stearnscountymn.gov/261/Juvenile-Diversion-Program>, 검색일: 2020.10.11.)

266) Stearns County Attorney, Extended Jurisdiction Juvenile (EJJ) Designation (<https://www.stearnscountymn.gov/382/Extended-Jurisdiction-Juvenile-EJJ-Desig>, 검색일: 2020.10.11.)

되는 바, EJJ는 성인 형벌 부과 억제 요인을 대안으로 하여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가 청소년관할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one last chance)”를 제공하는 것이다.²⁶⁷⁾

라. 지위비행자에 대한 처우 실태

통상 지위비행이라고 일컫는 Status Offender는 저연령으로 인하여 법위반으로 간주되는 비범죄행위(noncriminal act that is considered a law violation)를 한 아동을 의미한다.²⁶⁸⁾ 지위비행 행위(status offending behavior 또는 status offenses)는 성인에 의하여 범해지면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행위이지만, 행위자가 아동(minor)이기 때문에 저연령으로 인하여 소년법원의 제재가 부여되는 행위이다.²⁶⁹⁾

다만 미국의 경우, 법률상 우리 법제와 일치하는 우범 및 촉법소년의 개념을 찾기는 어렵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라 함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를 범한 자를 의미하므로, 지위비행은 우범소년에 가장 근접한 용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우범소년과 촉법소년과 같은 구분은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의 범주에 무단결석, 가출, 통금위반, 음주 등의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범죄(offense)를 포함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²⁷⁰⁾ 다만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접근을 위하여 우리 법제에서 가장 유사한 개념인 우범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범소년의 2017년 통계는 다음과 같다.

267) Ibid.

268)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Status Offenders.” Literature review.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5. p.1.

269) 28 C.F.R. § 31.304(h) (West 2012) (defining status offender as a “juvenile offender who has been charged with or adjudicated for conduct which would not, under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offense was committed, be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270) Deinstitutionalization of Status Offenders (DSO) Facts and Resources, 상의 2011년 통계에는 지위비행에 무단결석, 가출, 음주, 통행금지위반, 선도위반 이외에 offense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OJJDP, Easy Access to the Census of Juveniles in Residential Placement (http://www.ojjdp.gov/ojstatbb/ezacjrp/asp/Offense_Adj.asp, 검색일: 2020.7.3.)의 2017 통계에는 offense를 그 대상에서 삭제하였다.

▶▶ <표 4-2> 2017년 지위비행 유형별 위반자수

(단위: 명)

Status offense	합계	일반위반	위반으로 인한 구금	다이버전
가출	324	175	114	24
무단결석	420	351	38	15
선도불능	645	522	91	20
통행금지위반	47	21	26	0
음주	88	69	19	0
기타	166	98	36	9
합계	1,690	1,236	324	68

출처: OJJDP, Easy Access to the Census of Juveniles in Residential Placement: 1997-2017
(https://www.ojjdp.gov/ojstatbb/ezacjrp/asp/Offense_Adj.asp, 검색일: 2020.6.5.)

마. 형사사법절차에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개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기 전, 또는 법원에서 처우를 하기 전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에 범죄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위탁하거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의 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 법원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다. 미네소타 법원이 소년에 대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의 참여 및 모니터링을 우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참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후술하겠지만,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의 개입단계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상태, 인종 여부, 거주 환경 등을 비롯한 개인의 총체적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범죄개입여부와 관계없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개입하는 방법이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페리 프리스쿨처럼 영아 또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가정환경에 진취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이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이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조기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아동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아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족구성원을 모두 참여시켜서 가족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둘째, 이미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지위비행을 범한 아동에 대하여 법원에서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에 위탁하여 개선교화를 돕는 방법이다. 이는 특별한 센터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거나 갱단에 가입하거나 하려는 아동에 대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비단 범죄만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함께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돕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미국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법원이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판결선고와 동시에 먼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선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호처분의 담당기관을 지역사회 연계 민간기관 또는 자원봉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성관련 범죄를 범한 청소년은 정신적 문제 평가, 개인 및 집단치료, 분노관리, 피해자에 대한 공감력,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치료 및 거짓말탐지기 실험을 받으며,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여야 하고, 지역 치료프로그램인 CORE 전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치료에 참석하여야 한다.²⁷¹⁾ CORE Professional Services는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민간조직으로, 학대가 가족과 지역 사회에 야기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미네소타 중부 및 주 외 지역에 예방, 교육 및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활동이다.²⁷²⁾ 또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된 청소년은 약물의존, 정신건강, 성범죄자 치료를

271)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Supervision Sex Offender Program (<https://www.stearnscountymn.gov/1179/Juvenile-Supervision>, 검색일: 2020.10.11.).

272) CORE Professional Services, P.A. (<https://coreprofessionalservices.com/index.html>, 검색일: 2020.10.22.).

위하여 특수치료나 대체거주로서 위탁가정이나 그룹 홈을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아닌 외부 주거시설에의 임시거주가 명령될 수 있다.²⁷³⁾

루이지애나주의 경우에는 1991년 루이지애나 아동법(Louisiana Children's Code)이 통과되면서 입법적 근거를 두고 소년법원에 Families in Need of Service(FINS)가 설치되어 지위비행을 범한 소년 및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게 되는 바, 동법 제7장에 따르면 FINS의 목적은 가족의 기능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1) 아동에 의한 자기파괴적 행동을 정의하고 (2) 아동의 해악에 기여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동 및 가족의 일상에 법원의 개입을 보장한다.²⁷⁴⁾ 특히 루이지애나의 동 서비스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관인 루이지애나 FINS 협회는 비행이나 체포 또는 판결을 포함한 보다 심각한 불법행위로부터 소년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위비행 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FINS 지역 프로그램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한다.²⁷⁵⁾

이처럼 각 주는 주법상의 아동 및 소년사법과 관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 연계처우를 시행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사법기관 연계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저연령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지역사회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비행을 예방하거나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비행을 멈추게 함에 유용하다고 증명된 프로그램과 실천사항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기 교육개입 프로그램, 학교/지역사회기반 교육 프로그램, 범죄조직예방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주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각 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73) Stearns County Attorney, op. cit.

274) Calcasieu Parish Police Jury, LA, Fins Division(<https://www.calcasieuparish.gov/services/juvenile-justice-services/programs-department/fins-division>, 검색일: 2020.9.16.).

275) Louisiana Families in Need of Services Association, Inc., Committed to Providing Services to Families in Need(<http://lafins.org/>, 검색일: 2020.9.17.).

1) 조기 아동교육개입 프로그램

가) 조기 아동교육개입의 함의

조기 아동교육개입 프로그램들은 그 역사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대체로 직접 아동범죄자를 다룬다기 보다는 조기에 범죄에 노출되거나 저소득, 슬램가의 아동들이 범죄성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적 개입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²⁷⁶⁾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임신부 시기부터 개입하기도 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사회적·정서적인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환경을 극복하고 범죄성향을 보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²⁷⁷⁾ 즉, 조기 아동교육개입이란 특히 저소득층 또는 유색인종, 노숙아동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획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²⁷⁸⁾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조기 개입프로그램으로써, 휴스턴 부모-아동 발달센터, 페리 프리스쿨, 예일 아동복지프로그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의무학령 이전의 미전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연방차원의 지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휴스턴 부모-아동 발달센터

휴스턴 부모-아동 발달센터(The Houston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는 아동조기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 나이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멕시코출신의 저수입 가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⁷⁹⁾ 가장 조기투입되는 동 프로그램은 1-3세 아동에게 2년간의 집중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1세 연령에 ‘연간 집단(Annual Cohorts)’ 프로그램에 부모가 승인을 하면서 시작되고, 아동이 3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프로그램이 끝나게 된다. 프로그램 말에

276) Abam, Ruddy Sirri-Aknowi, Early Childhood Community Intervention: Preventing Neighborhood Factors of Crime and Delinquency,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Law & Society Annual Conference, 2015, p.8.

277) Ibid.

278) Ibid.

279) Johnson, D. L. “EARLY CHILDHOOD PROGRAMS The Houston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 Project, Disseminating a Viable Program for Enhancing At-Risk Families”,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vol. 7, Issue 1, 1990, p.89.

는 약 1-4년 후에 문제행동에 의한 사건의 감소로 인한 성공과 프로그램 완료후의 강화된 행동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²⁸⁰⁾ 동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수입가정의 아동들의 학교적응실패를 예방하고 부차적으로는 문제행동이 가능한 요인들을 방지하고자 고안되었다.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집중하면서 초기 유아기에 개입을 시작하는 예방적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동 프로그램은 그와 같은 가정의 일상에 매우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⁸¹⁾ 아이오아의 기초습득 테스트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동들은 2-5학년 과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 읽기, 단어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²⁾

PCDC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동인은, 궁핍은 지속적이며, 기술결여로 인한 궁핍의 영향력은 오로지 교육, 즉 보다 나은 고용기회와 경제적·지위적 향상된 삶의 질을 사회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교육을 통해서만 극복된다는 이론적 배경하에 운영되어 왔다.²⁸³⁾ 따라서 교육적 실패를 막는다면, 학교성취도는 보다 높은 지위, 그리고 나아가 향상된 경제적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가능한 한 아동의 삶에 있어서 조기에 개입이 투입될수록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며, 만일 그와 같은 개입에 부모, 특히 모가 참여할수록 그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²⁸⁴⁾

학교,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아동에게 위험요소가 노출될수록 그들의 상호작용은 비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지속될 우려가 높다.²⁸⁵⁾ 그와 같은 위험 요소란, 가난, 실업 스트레스, 질병, 감독부재, 부모나 형제의 범죄전력, 남용, 태만이나 트라우마, 비행행위를 하는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 위험한 이웃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아동예방 또는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론상으로는 조기개입이 계획될수록, 범죄나 비행에의 경향은 아동이 어릴 때 유의미하게

280) Ibid, p.91.

281) Johnson, D. L., and Walker, T., A Follow-up Evaluation of the Houston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5(3), 1991, p.226.

282) Ibid, pp.226-227.

283) Johnson, D. L.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 Follow-up Project: Child Behavior Problem Result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7(4), 2006, pp.391-407.

284) Ibid, pp.400-407.

285) Zagar, R. J., Busch, K. G., and Hughes, J. R., EMPIRICAL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AND BEST TREATMENTS: WHERE DO WE GO FROM HERE? 1. *Psychological reports*, 104(1), 2009, p.279.

제거될 수 있다고 본다.²⁸⁶⁾

다) 페리 프리스쿨(The Perry Preschool)

페리 프리스쿨의 목표는 불우한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 나이에 조기개입하는 방안이다.²⁸⁷⁾ 이는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만 3-4세 아프리카계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입하는 것을 가장 초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지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을 촉진 시킴으로써 아동빈곤과 학교적응실패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고, 학업에서의 성공이 정상적인 취업 및 사회진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²⁸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0주로 구성되고, 매일 2시간 30분의 교실수업과 일주일당 아동가정방문을 통한 1시간 30분의 추가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는 바, 가정방문은 교육 과정에 모를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양육의 올바른 방향과 지원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가정방문을 위해 교사들은 30분간 준비시간을 가지고, 교실수업이 가정으로 이어 지도록 부모와의 전략적 회의를 주도한다.²⁸⁹⁾

원래는 ‘인지지향적 교육과정’이었으나 최근에는 ‘하이스코프 커리큘럼(HighScope Curriculum)’이라고 불리는, 아동들이 활동적인 참가자로서 배우는 열린 방식을 강조 한다.²⁹⁰⁾ 교실수업에서는 계획과 이에 대한 재검토의 일상적인 반복되고 계획된 학습 이 이루어지고, 개인별로 구성된 교육과 습득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기술이 구축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아동교육과 발달심리학의 연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아동의 천부적 호기심과 탐구력이 공식적 학습환경에 접목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²⁹¹⁾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창조적 표현, 언어와 문장해석력, 사회 관계 및 개인의 창의력, 운동과 음악, 아동의 유사성과 차이성의 분류화, 시리즈와 패턴만들기, 숫자와 시공간 등에 관한 주된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계획과 활동내용을

286) Ibid., p.279.

287) Social Programs That Work, Perry Preschool Project (<https://evidencebasedprograms.org/programs/perry-preschool-project/>, 검색일: 2020.7.16.).

288) Youth.GOV, Perry Preschool Project(<https://youth.gov/content/perry-preschool-project>, 검색일: 2020.7.16.).

289) Ibid.

290) Ibid.

291) Ibid.

구성한다.²⁹²⁾

페리프리스쿨의 강한 신념은 빈곤층의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의 시작을 제공하고 빈곤의 순환을 깰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유아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빈곤층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다는데 있다.²⁹³⁾ 근본적으로 가정의 빈곤과 그로부터 비롯된 난관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의 지적능력 저하 및 학습과 학교생활에서의 실패라는 부정적 경향이 초래되며, 그와 같은 학교부적응으로 자퇴나 퇴학, 학년유급의 위험이 높아지고, 교육 기반의 결여가 직업선택자격 및 기회를 박탈하며 범죄행위로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²⁹⁴⁾ 따라서 동 프로그램은 저연령 아동에의 초기 및 조기개입을 중요시한다.

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The Head Start Program)

헤드스타트 및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가 학교입학 전에 출생시점부터 5세까지 지원을 받는 연방정부 차원의 무료 유아프로그램이다.²⁹⁵⁾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임신부 및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제공되고²⁹⁶⁾, 헤드스타트는 3-5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²⁹⁷⁾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위탁양육아동, 노숙아동 및 생활보조금이나 저소득 임시지원가정 등 공공지원을 받는 가정의 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²⁹⁸⁾ 동 프로그램은 자녀의 가정방문, 학부모의 프로그램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기적인 특별활동 및 모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 및 가정을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에 연결하는 기능도 담당한다.²⁹⁹⁾ 동 프로그램은 지역의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며, 교육 이외에도 무료 의료지원,

292) Ibid.

293) Parks, G.,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ctober 2000, p.2.

294) Ibid, p.3.

295) Office of Head Start, Head Start Services(<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검색일: 2020.8.17.).

296) Head Start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Early Head Start Programs(<https://eclkc.ohs.acf.hhs.gov/programs/article/early-head-start-programs>, 검색일: 2020.8.18.).

297) Childcare,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https://www.childcare.gov/consumer-education/head-start-and-early-head-start>, 검색일: 2020.7.17.).

298) Your Path to Government Benefits,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https://www.benefits.gov/benefit/616>, 검색일: 2020.8.18.).

299) Childcare, op. cit.

치과치료, 건강한 식사와 간식, 안전한 실내외 놀이 등도 포함되는데, 각 주의 헤드스타트는 연방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하며, 해당 주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³⁰⁰⁾

동 프로그램은 2007년 12월 12일 부시 전 대통령이 Public Law 110-134 “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 of 2007”을 비준함으로써 재인증되었다.³⁰¹⁾ 이들은 의무적인 학령이 되기 전까지 5년간 제641조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지역단위의 모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다.³⁰²⁾ 또한 제645조(42 USC 9840)에 의하여 노숙아동 역시 그와 같은 참여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³⁰³⁾

제641A조(42 USC 9836A)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가져야할 연방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기관들은 다음의 프로그램 수행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건강, 부모참여, 영양 및 사회서비스, 제642조에 기술된 전환활동 및 기타 서비스 (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최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헤드스타트 아동산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준비상태와 관련된 발달적으로 적절한 교육수행 표준으로서, 구두언어와 듣기 이해력을 포함한 언어 지식과 기술, 음운인식, 인쇄인식 및 기술, 문해력 지식 및 기술, 수학과 과학 지식 기술, 학업성취 및 아동발달 관련 인지능력, 아동발달 및 조기학습과 관련한 학습접근법, 사회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정서적 발달, 창작예술능력, 신체발달 등 적절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법이나 지방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관련 기관은 프로그램 표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³⁰⁴⁾ 그밖에도 제642B조는 차별금지조항으로 인종, 신념이나 피부색, 출신국가나 성별, 정치적 가입 등의 여부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³⁰⁵⁾

프로그램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기학습 영역은 개별학습경험을 통해

300) Ibid.

301) Head Start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Head Start Act (<https://eclkc.ohs.acf.hhs.gov/policy/head-start-act>, 검색일:2020.7.19.).

302) Ibid.

303) Ibid.

304) Ibid.

305) Ibid.

아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서 제641A조[42 USC 9836A] (B)에서 제시한 학습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³⁰⁶⁾ 건강 영역은 아동의 운동, 신체발달검사, 영양가 있는 식단의 제공, 구강건강 및 정신건강 측면의 지원을 한다.³⁰⁷⁾ 가족지원 영역은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주택안정성, 평생 교육 및 재정적 안정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 및 강화를 지원하고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부모와 가족을 모두 참여시키도록 한다(제642B조. [42 USC 9837b]).³⁰⁸⁾

헤드스타트 내에서도 연령이나 특수성에 따라 3-5세 대상 헤드스타트, 3세 미만 조기 헤드스타트, 아메리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대상 헤드스타트, 이주민 및 분기별 헤드스타트(Migrant and seasonal head Start)등으로 구분된다.³⁰⁹⁾

페리 프리스쿨의 전통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또 다른 대안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써, 1965년에 ‘가난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연방차원의 동 프로그램은 조기개입을 통해 교육적 구성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발달된 또래와 덜 발달된 아동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³¹⁰⁾ 이는 초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신의 약 561,000명의 아동들로 시작하여, 1966년 여름에는 750,000명의 흑인 아동뿐만 아니라 백인 아동까지도 확장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시 아동 1인당 1,000 달러가 소요되었다.³¹¹⁾ 최근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약 80만명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아동 한명당 약 5,40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³¹²⁾ 헤드 스타트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연방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1,400여 개의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³¹³⁾ 가이드라인의 일부는 참여자들에게 음식 등의 영양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의료지원에 관한 모니터링과 시설제공

306) Ibid.

307) Ibid.

308) Ibid.

309) Office of Head Start, op. cit.

310) Garces, E., Thomas, D., and Currie, J., Longer term effects of Head Star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merican Economic Review, February 2000, p.1.(<http://www.econ.ucla.edu/people/papers/Currie/Currie139.pdf>, 검색일: 2020.8.18.).

311) Ibid, p. 2. 예산 면에서 동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1971년에는 40만 명 이하의 아동들이 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으며, 아동당 약 4천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312) Ibid.

313) Ibid.

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강화되었다.³¹⁴⁾ 헤드스타트는 미국의 모든 주와 영토에서 매년 백만명 이상의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다.³¹⁵⁾

2) Families in Need of Service(FINS)

Families in Need of Service(FINS)은 지위비행을 범한 소년 및 그들의 가정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년과 가족 원조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³¹⁶⁾

루이지애나주의 경우에는 1991년 루이지애나 아동법(Louisiana Children's Code)이 통과되면서 입법적 근거를 두고 소년법원에 설치되었는데, 동법 제7장에 따르면 FINS의 목적은 가족의 기능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1) 아동에 의한 자기파괴적 행동을 정의하고 (2) 아동의 해악에 기여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동 및 가족의 일상에 법원의 개입을 보장하는 것이다.³¹⁷⁾ 특히 루이지애나의 동 서비스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관인 루이지애나 FINS 협회는 비행이나 체포 또는 판결을 포함한 보다 심각한 불법행위로부터 소년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위비행 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FINS 지역 프로그램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한다.³¹⁸⁾ 동 협회는 루이지애나 주 전체를 포괄하여 42개 지구를 7개 지역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³¹⁹⁾

루이지애나 아동법에 따르면 FINS프로그램의 대상은, 1. 통제불가능한 아동 2. 무단결석을 하거나 고의적·반복적으로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아동 3. 무단가출 4. 취하게 하는 음료를 반복적으로 소자·소비하였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목적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왜곡하거나 그와 같은 음료의 판매 또는 취급장소를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아동

314) Ibid.

315) Office of Head Start, op. cit.

316) Calcasieu Parish Police Jury, LA, Fins(Families in need of Services) (<https://www.calcasieuparish.gov/services/juvenile-justice-services/programs-department/fins-families-in-need-of-services>, 검색일: 2020.9.13.).

317) Calcasieu Parish Police Jury, LA, Fins Families in need of Services (<https://www.calcasieuparish.gov/services/juvenile-justice-services/programs-department/fins-division>, 검색일: 2020.9.16.).

318) Louisiana Families in Need of Services Association, Inc., COMMITTED TO PROVIDING SERVICES TO FAMILIES IN NEED(<http://lafins.org/>, 검색일: 2020.9.17.).

319) Louisiana Families in Need of Services Association, Inc., REGINS (<http://lafins.org/regions.html>, 검색일: 2020.9.17.).

5. 연방 주, 또는 지역법률에 의해 성인에 의해서도 범죄가 되는 행동을 범한 10세 미만의 아동 6. 아동보호자가 각호의 아동행동을 유발 또는 장려·기여한 경우 7. 위반 통지 후 보호자가 아동의 무단결석, 학교교칙위반 등 심각한 교육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교사, 학교장 또는 관련 직원과의 회의에 고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 8. 지위비행 아동이 이에 해당한다.³²⁰⁾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접수단계로서 FINS 직원들은 부모, 보호자, 기타 성인 가족구성원, 법집행기관, 공공 또는 사설 서비스제공자, 아동의 학교 또는 법원이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대상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를 서면으로 받고, 둘째, 초기 심사단계로서 사회적 이력과 위험선별을 포함한 초기 면접에서는 필요에 따라 아동, 부모/보호자 및 기타 가족구성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련 모든 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³²¹⁾ 셋째, 가정지원 계획회의로서 가족 및 관련 당사자(일반적으로는 신고기관, 학교담당자 및 서비스기관의 대표)와 함께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비공식적 가족지원계획(Informal Family Services Plan Agreement (IFSPA))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서비스제공단계에서는 FINS 직원이나 기타 지원기관과의 분장을 통해 지원이 제공되는데 모니터링은 FINS모니터나 사건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아동, 부모/보호자 및 학교담당자 및 지원기관과 접촉하면서 이루어진다.³²²⁾

6개월간의 검토 및 지원 후에 FINS는 1) 사건의 종결 또는 최초 신고의 기각, 2) 가능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수정가능한 비공식적 가족지원계획의 6개월 연장, 3) 법원에의 회부라는 세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IFSPA가 최초 구상된 시점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기간 동안 사건을 모니터링 한 후에, 해결을 위한 더 이상의 시도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만 법원에 소년범죄 또는 소년비행사건으로 회부되게 된다.³²³⁾

320) Calcasieu Parish Police Jury, LA, Fins Division(<https://www.calcasieuparish.gov/services/juvenile-justice-services/programs-department/fins-division>, 검색일:2020.9.16.).

321) Fifth Judicial District Court, Families in Need of Services(FINDS) (<http://www.5jdc.us/fins.php>, 검색일: 2020.9.15.).

322) Ibid.

323) Ibid.

3) 건전한 아동발달을 위한 Blueprint 프로젝트

비행이나 범죄의 성향으로부터 비행행동 억제와 전 사회규범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소년들에게 설득력이 약한 학교기반 또는 지역사회기반 재활프로그램들이 사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이와 차별화되는 콜로라도-볼더 대학의 범죄예방연구센터로부터 출발한 건전한 아동발달을 위한 블루프린트 프로젝트(The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project)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에 따른 세 가지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블루프린트 프로젝트의 임무는 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고 청소년 발달 및 성인으로의 건전한 과정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증거에 기반하여 입증된 개입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³²⁴⁾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시행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엄격하게 평가하였을 때 효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효과보다는 비용소모가 매우 심각하다.³²⁵⁾ 이에 반해 동 프로그램은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지원만을 선택하고, 지역사회가 확산을 가지고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이나 입증된 중재리스트를 제공하고,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광범위한 예방프로그램 및 위기의 아동과 문제있는 청소년 또는 수감경력이 있는 성인을 위한 고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³²⁶⁾

동 프로그램 단계별로 4단계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1단계에서는 문제행동을 성인범죄, 알코올, 반사회적-공격적 행동, 따돌림, 아동학대, 문제행동, 비행과 범죄행위, 외현화 행동문제, 조직(갱) 가입, 에이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알코올이라는 문제행동을 선택하면 20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2단계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아(0-2세), 조기 아동기(3-4세)- 프리스쿨, 후기 아동기(5-11세)-초등학교, 조기 청소년기(12-14세)-중학교, 후기 청소년기(15-18세)-고등학교, 조기 성년기(19-22세), 성인으로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여기에 성별과 인종을 더하게 되면 만일 12-14세를 선택하면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³²⁷⁾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324)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PROVIDING A REGISTRY OF Experimentally Proven Programs(<https://www.blueprintsprograms.org/>, 검색일: 2020.9.23.).

325) Ibid.

326) Ibid.

327)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Blueprints Program Search Example 1 (<https://www.blueprintsprograms.org/blueprints-search-example-1/>, 검색일: 2020.9.23.).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타입과 세팅 아래의 개입의 연속으로써 보편적 예방(Universal Prevention), 선택적 예방>Selective Prevention), 지시된 예방(Indicated Prevention) 중에서 보편적 예방을 선택하면 10개 프로그램으로 줄어든 결과를 제공한다.³²⁸⁾ 마지막으로 위험 및 보호인자로써 개인 및 가족 인자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동료’라는 선택지 중 위험인자에는 친구의 조직(갱) 가입, 반사회적 동료와의 상호작용, 반사회적 행동을 위한 동료 보상, 동료양물남용, 데이트 폭력이 있고 같은 ‘동료’라는 선택지 중 보호적 인자에는 친사회적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 중에서 동료약물남용을 추가하면 결과가 5개로 줄어들어 가장 필요하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³²⁹⁾

가) 12-14세 아동을 위한 라이프스킬 훈련(LifeSkills Training: LST)

(1) 개요

LST라고 알려진 라이프스킬 훈련이란 초기 청소년기 12세에서 14세까지의 모든 남녀학생의 알코올이나 담배, 마리화나 사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³³⁰⁾ 프로그램의 타입은 대체로 알코올예방과 치료, 인지적-행동교정 훈련, 약물예방 및 치료, 학교-개인의 전략적 기술훈련, 사회적 감수성 훈련 등으로 구분되고, 연령별로는 우선 12세에서 14세의 초기 청소년기, 중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게 된다.³³¹⁾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길버트 보트빈(Gilbert J. Botvin) 박사가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실기반의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이다.³³²⁾ LST는 3년에 걸쳐서 5, 10, 15 세션의 세 가지 총 30단계로 구성되며, 추가로 폭력예방수업도 매년(3, 2, 및 2세션) 제공된다.³³³⁾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알코올예방 및 치료, 인지-행동적 훈련, 약물예방 및 치료, 학교의 개별적인 훈련, 기술훈련, 사회 정서학습이며, 세 가지 주요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1) 개인의 자기관리 기

328) Ibid.

329) Ibid.

330)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LifeSkills Training (LST) (<https://www.blueprintsprograms.org/programs/5999999/lifeskills-training-lst/>, 검색일: 2020.9.23.).

331) Ibid.

332) Ibid.

333) Ibid.

술, (2) 사회적 기술, (3) 특히 약물사용과 관련한 정보 및 억제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 시연, 피드백, 강화 및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³³⁴⁾

(2) 프로그램의 구성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두 가지 일반 기술 교육 구성요소와 흡연, 음주 또는 불법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주된 요소가 포함된다.³³⁵⁾

개인적 자기관리기술요소(Personal Self-Management Skills component)는 학생에게 자기이미지와 그것의 행동에의 영향을 조사하고, 목표설정과 개인적인 발전트랙의 유지, 날마다의 결정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들이 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각각 대안적인 해결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구성된다.³³⁶⁾

사회기술요소(Social Skills component)는 선생이 학생에게 수줍음을 극복하는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오해를 피하고 대화의 시작과 수행, 사회적 요청을 처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며 요청하거나 반대로 거절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주장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순간에 직면하였을 때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것 이외의 선택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저항기술요소(The Resistance Skills component)는 학생에게 담배, 알코올, 기타 약물 사용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인식하고 이를 저항하기 위한 도전을 가르친다.³³⁷⁾

코칭과 연습을 통해서 그들은 알코올, 담배 또는 기타약물사용, 폭력과 비행과 같은 기타 위험 행동에 관여하라는 동료와 대중매체의 압박을 다루는 실천적인 저항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주요 목적은 거절 기술의 개발 촉진을 통하여 폭력과 약물사용에 대한 규범적 예측을 줄이는데에 있다.³³⁸⁾

LST 교육자는 설명, 행동연습 촉진, 피드백과 강화를 포함한 상호작용적인 교육기

334) Ibid.

335) Ibid.

336) Ibid.

337) Ibid.

338) Ibid.

술의 조합을 사용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교실밖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실천에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³³⁹⁾

나) 대안적 사고활성화 전략(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블루프린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교육모델은 PATHS라고 일컬어지는 예방모델로, 아동의 감정적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의 습관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감정적·행동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학급 학습계획상에 포함되거나, 문제해결능력, 자기통제, 감정적 사고력, 긍정적 동료상호작용 및 사회적 경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초학습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2-3회, 매 20-30분동안 PATHS 커리큘럼은 학급 내에서 공격, 좌절, 분노, 우울감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친화적 행동 및 보호적 행동과 관련한 통제된 학습을 통해 그 효과를 보여 왔다.³⁴⁰⁾ 미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ATHS는 행동적 어려움의 감소와 감정적인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³⁴¹⁾ 통제그룹 173명과 개입그룹 114명으로 포함한 287명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에 있어서 통제그룹이 아닌 개입그룹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향상을 보였는데, 교육자들에 의하면 자기통제기술뿐만 아니라 보다 진취적인 공감능력과 감정적 이해력을 아이들이 습득하는데 동 프로그램이 매우 유효하다고 한다.³⁴²⁾

4) 멘토링 프로그램

가) 빅브라더, 빅시스터(Big Brother, Big Sister: BBBS)

빅브라더, 빅시스터는 1904년 결성된 조직으로 현재 20만명 이상의 미전역의 아동들이 받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다.³⁴³⁾ 빅브라더, 빅시스터란

339) Ibid.

340) Curtis, C. and Norgate, R., An Evaluation of the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Curriculum at Key Stage 1,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3(1), 2007, pp.33-44.

341) Ibid.

342) Ibid, pp.37-43.

미국 전역에 걸쳐 500여개 이상의 기관을 두고 청소년과 성인 자원봉사자 간의 1대1 관계를 145,000여개 이상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광범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학교성취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비율의 참여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BBBS의 영향을 받고 있다.³⁴⁴⁾

유타 주의 경우 2019년에 평균 나이 13세의 668명의 리틀 브라더인 아동들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멘토들은 2019년 1년 평균 48,100시간을 리틀 브라더에 할애하였는데, 리틀 브라더 중 77%는 빈곤층이고, 54%는 유색인종이었으며, 최소한 12개월 동안 66%가 멘토를 두고 있었다.³⁴⁵⁾ 유타주의 빅브라더 빅시스터 프로그램은 1978년에 시작되었으며, 참여자의 92%가 학업적 성취도 향상을 보였고, 100% 참여자 전원이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였으며 86%가 부모에 대한 신뢰도를 보였고 94%가 부모 이외의 의존할 수 있는 성인이 생겼다고 답하였다고 한다.³⁴⁶⁾

나)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MBK Alliance

2014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색인종인 소년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기회의 격차에 직면하여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를 발의하였던바, 이는 모든 어린 아동들이 그들의 잠재성에 이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소년이 멘토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대학진학에 이를 수 있는 기술과 네트워크를 지원받고, 중간계층으로서의 삶의 질을 가능케 하는 직업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 사업체, 기금 등과 맺어준다.³⁴⁷⁾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연설에서, 행정부의 정책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아동과 미국인에게 손을 내밀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아동의 교육부터 개입하여야 함과 유색인에 대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³⁴⁸⁾

343) 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About us Program(www.bbbs.org/, 검색일: 2020.8.18.).

344) Ibid.

345) Community-Based Impact Report 2019.(<https://bbbsu.org/wp-content/uploads/2020/07/Community-Based-V4.pdf>, 검색일: 2020.10.21.).

346) Ibid.

347) MBK(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About(<https://www.obama.org/mbka2/about-mbka/>, 검색일: 2020.7.13.).

등 사업은 다음의 6가지 특수한 지역사회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³⁴⁹⁾

- 모든 아동들이 인지적·물리적·사회적·감정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보장할 것
- 모든 아동들이 3학년에는 그 학년에 맞는 읽기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모든 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모든 소년들이 후속 교육이나 훈련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학교를 나온 모든 소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모든 소년들이 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와 같은 목표들은 매우 구체적인 이유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모든 아동들이 3학년까지 학년에 맞는 읽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에 관하여는, 읽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읽기가 필수가 되어야 함을 확실히 한다.³⁵⁰⁾ 이는 조기에 읽기가 되는 것이 교육, 취업 및 삶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3학년까지 완전한 독서가 가능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 내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중퇴율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대학 및 취업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⁵¹⁾ 이를 위한 핵심원칙으로서, 1) 모든 아동은 적극적인 학습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고, 아동의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 조기교육담당자들은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를 받으며, 2) 자녀의 조기학습에 가족참여는 양질의 조기진단 및 교육에 중요하며, 3) 도서관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들은 아동과 부모에게 문장해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업 및 교육을 신장함과 동시에 조기 두뇌발달을 촉진함에 기여하여야 하고, 4) 증거기반 교육(Evidence-based instruction)은 아동이 성공에 필요한 읽기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적절히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표방한다.³⁵²⁾

348)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2014/02/27(<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2/27/remarks-president-my-brothers-keeper-initiative>, 검색일:2020.7.13.).

349)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About the New York State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http://www.nysed.gov/mbk/about-new-york-state-my-brothers-keeper-initiative>, 검색일: 2020.7.14.).

350) MBK(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Reading at Grade Level by Third Grade(<https://www.obama.org/reading-grade-level/>, 검색일: 2020.7.30.).

351) Ibid.

352) Ibid.

등 사업은 유색인종 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데, 지역 지도자들은 유색인종 소년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부서 전체의 노력을 지지하며, 비영리단체들은 요람에서 직업에 이르기까지 유색인종 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늘려야 하며, 기업들은 소년들을 지원하고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자선활동가들은 소년들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YOUTH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간을 투자한다.³⁵³⁾

다) 10-14세 대상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idwestern Prevention Project:MPP)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란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라고도 불리며,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³⁵⁴⁾ 이는 학교 시스템과 지역사회 분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반사회적 행위나 비행, 범죄로 가는 출구가 될 수 있는 알코올, 담배 그리고 마리화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로서 6학년 및 7학년(12-13세)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넓게는 10세에서 14세의 남녀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³⁵⁵⁾

등 프로그램은 해로운 물질사용을 막는 작업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역할놀이, 학생또래집단 리더십, 모니터링과 숙제 등과 같은 활동적 사회적 학습기술을 사용하여 아동들을 보살핀다.³⁵⁶⁾

이처럼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들은 어린 아동들의 삶의 과정을 향상시키도록 고무하며, 그들의 빈부라는 환경이나 어디에서 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들은 사회적·물질적으로 관련된 것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 재정적·문화적 자원에 대한 정보 접근, 사적 관계형성, 감독과 지도, 기술훈련, 가족을 위한 직업적 양질의 기회,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지식,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의 목표 - 미래에 있어서 비행하

353) MBK(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Our Work(<https://www.obama.org/mbka2/our-work/>, 검색일: 2020.7.30.).

354) Prevention Solutions,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https://preventionsolutions.edc.org/services/resources/midwestern-prevention-project>, 검색일: 2020.7.11.).

355) National Institut of Justice, Program Profile: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MPP) (<https://www.crimesolutions.gov/ProgramDetails.aspx?ID=247>, 검색일: 2020.7.13.).

356) *ibid.*

능성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모든 인자들에 관하여 보호적 요소들을 강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비행을 포함한 악으로부터 소년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기술을 계발하고 비행이나 범죄의 위험요소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

4. 소결

미국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처우 프로그램을 살펴본 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단계에서 소년이 범한 범죄는 일반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수사되는데, 범죄가 보고되면 경찰은 우선 소년이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신뢰 하에 보고서가 검사에게 송부되거나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구금이 원칙이라는 점, 소년심문에 있어서의 특칙을 매뉴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둘째, 검찰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검사는 기소재량이 없으므로,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달된 정보를 검토하고 그와 같은 증거들이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소년도 성인범죄와 같이 죄상인부절차(Arraignment)를 거치므로, 기소심리단계에서 소년은 법정에서 출두하여 청원서에 기재된 범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것을 요청받는다라는 점에서, 성인범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셋째, 법원단계에서는 소년법원의 특칙이 있고 혼합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 최근의 국제사회의 영향력 하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높이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지만, 여전히 소년구금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에 의한 비판이 높다.

넷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지만, 미국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저연령 소년 처우프로그램들이 많다. 10-14세 대상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idwestern Prevention Project:MPP)나 스킨맨 재단 등 많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여 미국 전체에 확대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의

통일화 및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처우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조기개입 프로그램들이 매우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개입의 취지는 범죄에로 진입 또는 유입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아동이 범죄와 단절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하여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지어는 페리 프리스쿨처럼 영유아시기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조기 헤드스타트처럼 임신부에게까지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범죄에 노출될 환경이나 인자들을 원천봉쇄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학교 교육의 완성을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교 교육의 이탈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교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이수 또는 학교로의 복귀가 저연령소년의 범죄해결의 핵심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정신건강의 회복 및 가족관계에서의 연대회복이 보다 증시되는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일곱째, 처우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며, 미국 전역에 연결망을 가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행해지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째, 유색인종에 대한 특별처우 프로그램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의 경우 빈곤, 가정폭력, 영양결핍, 갱문화, 마약 등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전대통령이 발의한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와 같이 유색인종이 처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유색인종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복지적 혜택을 부여하고 학교 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절 | 영국

1. 개관

가. 소년형사사법에 대한 이해

영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에 의하여 1908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소년법원(Juvenile Court)이 폐지되고 소년을 다루는 법원을 청소년법원(Youth Court)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부터는 12-14세의 누범소년에 대하여 시설 내 수용이 가능한 구금처분으로서 안전교육명령(secure training order)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소년범죄자 시설수용명령도 1년에서 한해 더 연장하여 2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7년의 범죄(양형)법(Crime (Sentences) Law 1997)으로 인하여 기존의 16세에서 10세로 외출금지명령의 대상자의 연령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10-18세 소년범죄자가 유죄가 확정되면 이름을 공표할 수 있으며 소년에게 명령함에 있어서 소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³⁵⁷⁾

1998년의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 Disorder Act 1998 (as amended by the Criminal Justice & Immigration Act 2008 and the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으로 인하여 소년에 대한 처분부과 요건이 더욱 엄격해 졌는데, 동법 제66 B조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소년조건부경고³⁵⁸⁾가 가능하다.³⁵⁹⁾ 1) 담당기관은 소년이 범죄를 범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2) 담당기관 또는 관련 검사는 소년에게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소년이 범한 범죄를 반영하여 소년조건부경고가 주어지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소년은 담당기관에게 자신이 범죄를 범하였음을 인정

357) UK Legislation, Crime (Sentences) Act 1997(<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7/43/contents>, 검색일: 2020.7.16.).

358) 권한있는 기관으로서 경찰이나 검찰이 소년에게 소년법원에 이송하는 대신에 행하는 처분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부과할 수 있다.

359)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Youth Conditional Cautions, Crime & Disorder Act 1998, 2013, p.3(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43443/9780108512179.pdf., 검색일: 2020.10.17.).

하여야만 한다. 4) 담당기관은 소년조건부경고와 주의의 효과로써, 조건을 충족함에 실패하는 경우 원래 범죄로 기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소년에게 설명하여야만 한다. 소년이 16세 또는 그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에 적절한 성인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 5) 소년은 범죄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만 하며, 담당자에 의해서 소년조건부경고 및 그에 부가된 상세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이에 소년이 동의하여야 한다.³⁶⁰⁾ 소년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하는데, 첫째, 재할로서 행동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소년이 재사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둘째, 배상으로서 발생한 손상이 소년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로써 소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급의 근로를 하거나 재정적인 패널티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³⁶¹⁾ 특히 10세 미만자에 대하여 통행금지명령(curfew order)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³⁶²⁾ 또한 동법에 의하여 범죄뿐 아니라 질서위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 및 반사회적 행동명령(anti-social behavior order), 양육자 교육명령(parenting order), 피해회복명령(reparation order), 행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 등의 부과가 가능해졌다.³⁶³⁾

이에 따르면 반사회적질서적 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란 지역주민이나 행인들을 괴롭히는 행위,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소음을 내거나 욕설, 낙서를 하는 행위, 무리지어 다니면서 행인을 위협하는 행위, 아동에 의한 음주나 흡연행위 또는 약물남용 행위, 구걸행위, 자동차로 만들어 내는 소음공해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다.³⁶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우선 2000년 형사법원권한(판결선고)법(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을 통해서 소년 사법에 관한 준비를 하였고, 형사사법 및 법원서비스법(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 Act 2000)과 반사회행

360) Ibid, p.6.

361) Ibid, p.9.

362) UK Legislation, Crime and Disorder Act 1998(<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contents>, 검색일: 2020.10.17.).

363) Ibid.

364) Ibid.

등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및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 등이 연이어 개정되면서 소년보호사상을 보다 강조하여 복지적인 측면의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10세 미만의 범죄아동의 사법처우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책임 연령은 10세로서,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범죄를 범할 경우 체포되어 법정에 출두될 수 있지만, 청소년 법원(Youth courts)에서 처리된다는 점 및 성인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 그리고 성인 교도소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특별보안센터(special secure centres)로 보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18세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취급되지만, 징역형의 경우에는 성인교도소가 아닌 18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구금시설로 보내지게 된다.³⁶⁵⁾

10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는 없고, 지역 아동 통행금지(Local Child Curfew)와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이 부과될 수 있다.³⁶⁶⁾ 여기에서 지역아동통행금지는 경찰이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10세 미만의 아동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공공장소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처우로서 최대 90일까지 금지기간이 지속될 수 있으며 만일 아동통행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아동안전명령이 부과되는데, 동 명령은 통행금지명령을 위반한 아동을 YOUTH offending team의 감독하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최대 3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2개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으며 만일 아동이 명령의 준수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아동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³⁶⁷⁾

만일 10세 미만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보호하에 두게 되거나 또는 아동의 부모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부모는 양육프로그램에의

365) UK GOV,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https://www.gov.uk/age-of-criminal-responsibility>, 검색일: 2020.10.17.).

366) UK GOV, What Happens If a Child under 10 Breaks the Law? (<https://www.gov.uk/child-under-10-breaks-law>, 검색일: 2020.10.17.).

367) Ibid.

참석, 양육계약에의 서명, 그리고 법원에 의한 양육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³⁶⁸⁾ 우선 양육프로그램이란 지역 청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이나 그밖의 청소년사법단체 또는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에 따라 달리 제공된다.³⁶⁹⁾ 양육계약이란 지역 청소년범죄팀의 구성원과 아동, 부모에 의하여 서명된 자발적인 계약으로, 아동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함에 대한 동의로써, 만일 부모가 서명을 거부하면 아래의 양육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³⁷⁰⁾ 마지막으로 양육명령을 부과하는 주체는 법원으로 아동 및 부모가 준수해야 할 명령 또는 금지내용이 주어지고, 최대 12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바, 양육명령의 부과 자체가 범죄전과기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명령위반의 경우 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³⁷¹⁾

다.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범죄아동의 사법처우

현재 소년법원이 다루는 대상은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아동이지만, 1908년의 아동법상으로는 소년법원의 심판대상은 7-15세였고, 구금형의 선고만 14세 이상이었고 이후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에 의하여 15세에서 16세로 상한이 높아졌다가, 세계제2차 대전 이후 소년범죄자에게도 적용되었던 종신형 부과가 폐지되고 구금선고의 하한도 14세에서 15세로 높아졌으며, 이후 1991년 형사사법법으로 지금과 같이 소년법원의 대상은 17세로 인상하게 되었다.³⁷²⁾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법절차처럼 체포되어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범죄로 기소된 10-17세 아동의 신원은 법원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법정 내에서는 재판공개 원칙과 같이 법정에서의 심리사건에 대한 일반 참가자로서 당사자, 부모 및 보호자, 언론인까지 다양하게 참관이 허용된다.³⁷³⁾

368) UK GOV, What Happens If Your Child Gets in Trouble with the Police (<https://www.gov.uk/if-my-child-gets-in-trouble-with-police>, 검색일: 2020.10.17.).

369) Ibid.

370) Ibid.

371) Ibid.

372) 동법은 10세에서 13세까지를 아동(child), 14세부터 17세까지를 청소년(young person)으로 구분한다.

373)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Youth Crime(<https://www.cps.gov.uk/crime-info/youth-crime>, 검색일: 2020.10.18.).

공개제한의 원칙에 따라 절차에 관련된 아동의 이름, 주소 또는 학교는 공개되지 않으며,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익명이 유지되지만 절차종료후에는 언론에 의한 사후이의제기는 가능하다.³⁷⁴⁾

아동 범죄자는 피고인으로서 취급되는 성인에 비하여 보호적으로 취급되는데, 1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법정 출석의무가 있고, 보다 중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와 변호를 하는 판사와 변호사 모두 범죄아동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절차중에 법정 가운과 가발을 벗을 수 있다.³⁷⁵⁾ 또한 10-17세 아동이 범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소년조건부경고(youth conditional caution)가 부과될 수 있는데, 동 경고는 권한있는 자, 일반적으로는 경찰 또는 검찰청의 검사가 하나 이상의 조건이 첨부된 주의를 부과함을 결정하여 허용된다.³⁷⁶⁾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가. 개관

영국은 청소년범죄팀이 각 형사사법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에게 경찰단계에서 처분권한이 없는 것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경고처분을 함으로써 유죄가 인정되는 소년에게도 법원의 사법처분을 피하고 조기에 사회 내 처우 또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처분시에 전문가나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른 의사표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아동이 자신의 심정이나 견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자신이 겪어야 하는 사법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저연령소년에 친화적인 사법절차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저연령소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부과할 때에도 아동이 법에 저촉되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후에야 가능하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법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374) Ibid.

375) Ibid.

376) Ibid.

이하에서는 경찰, 검찰 및 법원단계에서 저연령소년에게 부과되어지거나 소년이 거쳐야하는 각각의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경찰단계

1) 소년경고(youth cautions) 처분의 부과

2013년 이전 경찰은 경미범죄에 대하여 1) 소년이 비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할 것, 2) 그와 같은 증거들로 기소한다면 유죄선고가 될 만한 사유일 것, 3) 소년이 스스로 비행에 대하여 자백 또는 시인을 할 것, 4) 비행소년에게 유죄선고나 비행전력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다이버전으로서 견책(Reprimand), 최후 경고(Final Warning), 소년조건부경고(Youth Conditional Caution)의 부과가 가능하였었지만, 2013년 4월 8일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구조 및 처벌에 관한 법률(section 135 (1)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견책 및 경고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경찰이 행할 수 있는 처분은 조건부소년경고 및 소년경고처분(youth cautions (sections 66ZA and 66ZB Crime and Disorder Act 1998, inserted by section 135 (2)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에 한정되며, 경고처분은 경찰이 할 수 있지만 검사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³⁷⁷⁾

개정법에 따르면 소년경고(youth cautions)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1) 경찰(the constable)은 소년이 범죄를 범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2) 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경찰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3) 행해진 범죄를 고려할 때 소년이 기소되어야 하거나 소년조건부경고(Youth Conditional Caution)가 부과되어야 할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³⁷⁸⁾

그리고 소년경고를 부과할 경우 적절한 성인(동조 제7항에 따르면 1)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2) 만일 아동이 지역당국이나 자원봉사기관에 머무를 경우, 그 지역당국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자, 3) 사회봉사자나 지역 행정가, 4) 만일 앞선 조건을 가진 자가

377) UK Legislation, Crime and Disorder Act 1998(<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ZA>, 검색일: 2020.10.19.).

378) Ibid.

없을 경우, 18세 또는 그 이상의 “경찰이 아닌” 신뢰할 사람이 현존하여야 하며, 만일 경찰이 소년에게 소년경고를 부과하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 사항을 설명하여야만 하며, 소년경고나 소년조건부경고 이외에 다른 경고가 경찰에 의해서 소년에게 부과되지는 않는다. 379)

경찰에 의한 소년경고의 횟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소년이 과거에 유죄판결, 견책, 경고, 소년경고 및 소년조건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소년경고를 받을 수 있다.380)

2) 소년경고처분 부과 기준

경찰이 소년경고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범죄경력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범죄의 심각성은 ACPO 소년범죄사건심각성행렬(the ACPO Gravity Matrix)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바, 이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들을 정렬하고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점수는 범죄 심각성의 악화 또는 완화에 따라서 한 단계씩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381)

만일 심각성 점수가 2 또는 3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년경고를 받게 되지만, 만일 범죄행동이 소년경고에 의해서만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다면, 경찰은 소년조건부경고(Youth Conditional Caution)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찰에 의해서 소년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그 즉시 소년범죄팀(YOT)에 회부되어 개입이 진행된다.382)

다. 검찰단계

1) 경고처분

개정된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66A조에 따르면 권한있는 자 즉, 검사와 경찰 또는 동법의 목적을 위해 기소에 관련하는 권한자는 모두 소년에 대하여 소년조건부경고처

379) Ibid.

380)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Youth Offenders(<https://www.cps.gov.uk/legal-guidance/youth-offenders>, 검색일: 2020.10.19.).

381) Ibid.

382) Ibid.

분을 할 수 있다.³⁸³⁾ 소년조건부경고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년경고 부과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경고에 첨부되는 조건은 1) 소년의 재활을 가능하게 할 것, 2) 소년이 범죄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보장할 것, 3)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추구하여야 하며, 또한 범죄를 범한 소년이 재정적 제재를 보상한다거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³⁸⁴⁾

청소년 조건부경고는 범죄심각성 단계가 4인 중오범죄나 가정폭력 이외에 어느 범죄든 부과될 수 있지만, 다만 검찰청에 의하여 범죄가 기소가능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³⁸⁵⁾ 소년조건부경고는 과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소년에게만 부과되었던 제한도 개정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의 전력이 있는 소년에게도 부과되며, 그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³⁸⁶⁾

만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검찰이 소년경고나 소년조건부경고가 보다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해당 사건은 연기되어야 하며, 만일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그와 같은 경고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은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선결하고 범죄에 해당될 경고처분도 가능함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한다.³⁸⁷⁾

2) 기소결정

검사는 기소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정황 및 소년관련 환경을 고려하고 관련 검찰청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³⁸⁸⁾ 이와 같은 결정에는 다음의 인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4-4)).³⁸⁹⁾

383) UK Legislation, op. cit.

384) Ibid.

385)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op. cit.

386) Ibid.

387) Ibid.

388) R v Chief Constable of Kent and Another ex parte L, R v DPP ex parte B (1991) 93 Cr App R 416.

389)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op. cit.

»» <표 4-3> 기소결정시 고려사항

1. 아동의 가정내에서의 행동 정책/방침
2. 경찰이 연루된 이유 및 행동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 (경찰개입에 대한 절차 및 지침에 따른, 경찰개입에 관한 가정의 설명)
3. 가정에 의한 기 취해진 비공식적/징계적 조치의 유무 (소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행동 및 소년의 일상에서의 사건들, 소년과 피해자간의 이력, 소년에 의한 어떤 사과나 배상, 가정의 훈련방침에 따른 어떠한 징계 등을 포함하여 소년의 최근 행동에 대한 가정으로부터의 정보)
4. 사과나 배상여부 (소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행동 및 소년의 일상에서의 사건들, 소년과 피해자간의 이력, 소년에 의한 어떤 사과나 배상, 가정의 훈련방침에 따른 어떠한 징계 등을 포함하여 소년의 최근 행동에 대한 가정으로부터의 정보)
5. 피해자의 견해 (증거제공 및 회복적 사법 또는 기타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피해자의 자발적인 법원출석의사를 포함한 피해자의 의사)
6. 사회복지사의 견해 (특히 청소년이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형사사법적 개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복지사, 상담사 또는 CHAMS 활동가의 견해)
7. 보호대상(처분대상) 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 (지역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보호상태가 고려되기를 원할 경우, 아동의 필요와 지역당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등.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돌봄정책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역당국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8. 가정에서의 최근 행동/이전의 사건들
9. 보호대상 아동의 사건에 대한 정보 (예컨대,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인터뷰)
10. 악화 또는 완화의 요인 존재여부 (검찰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악화 또는 완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3)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소년 기소시 유의사항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범죄소년은 대체로 그러한 행위가 공공에 위협을 주기보다는 공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 경우가 많지만, 공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경우에는 공익상 기소가 필요한 바, 검사는 1) 범죄의 중대성, 2) 과거 위반전력 여부, 3) 소년범죄자의 정신장애 또는 장애적 성격, 4) 재범 또는 반복가능성 5) 기소를 대체할 적절한 대안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견책(Reprimand)과 최종 경고(Final warning)는 모두 충분한 증거와 소년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인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³⁹⁰⁾ 범죄성립에 있어서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정신장애 소년의 진정

390) Ibid.

한 고의입증이 특히 문제될 수 있으며, 검찰은 소년에 의한 범죄의 인정(시인)이 진정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의 시인(자백)에 의존하는 경우에 견책 또는 최종 경고를 적용할지 및 추가조치 여부를 판단함에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³⁹¹⁾

검찰의 작성 서류에는 관련 복지기관의 의견, 특히 범죄소년의 발달단계 또는 법위반에 대한 이해 여부 및 반복(재범) 가능성, 심리상태가 절차의 영향을 받을지 여부,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현출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³⁹²⁾

라. 법원단계

1) 청소년 법원의 판결절차

형사절차에 대한 통합적 실무지침(The Practice Direction (Criminal Proceedings: Consolidation), para.III.30 (Practice Direction (Criminal Proceedings: Further Directions) [2007] 1 WLR 1790에 의해 삽입된 것)은 소년법원의 재판, 선고 및 항소 절차에도 적용되며, 취약한 피고인이 유죄선고 및 형량 결정에 관한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특히 아동·청소년법 제44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항 및 제3항의 원칙에 따라 저연령의 피고인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³⁹³⁾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51A(3)조 하에서는 소년이 재판에 보내지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소년범죄자의 성격과 정황, 위험평가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범죄소년이 위험하다는 평가가 될 것과, 소년이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이외에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이 소년의 재판에 적합함을 근거로 약식재판(summary trial)을 청구하여야 한다.³⁹⁴⁾

일단 청소년법원에 회부되면, 선고할 수 있는 명령과 연령은 다음과 같다(표 4-5)³⁹⁵⁾

391) Ibid.

392) Ibid.

393) Ibid.

394) Ibid.

395) Sentencing Council, Sentenc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https://www.sentencingcouncil>).

▶▶▶ <표 4-4> 영국 청소년법원 선고종류 및 연령기준

선고 종류	10-11세	12-14세	15-17세
절대적 또는 조건부 석방 또는 배상명령(Absolute or conditional discharge or reparation order)	√	√	√
재정적 명령(Financial order)	√	√	√
위탁 명령(Referral order)	√	√	√
소년재활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YRO))	√	√	√
위탁양육의 감시 또는 강화를 수반한 소년재활명령(YRO with intensive and surveillance of fostering)	X	√(재범자 한정)	√
구금 및 교육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	X	√(재범자 한정)	√
S.91PCC(S)Act 구금(grave crime)	√	√	√
구금연장선고(Extended sentence of detention)*	√	√	√

* 구금연장선고는 만일 특별한 범죄 또는 성범죄가 발견되었고, 법원이 아동이나 소년범죄자가 특별한 범죄를 범하여 야기되는 중대한 공공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 부과되며 기간이 없음.

2) 학습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재판절차

정신장애 소년을 위한 재판절차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1) 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하여야만 함. 2) 법원은 범죄행위 또는 비행행위 당시 그 비행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년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만일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가해소년에 대항할 어떠한 방어수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소년이 이해하였을 것. 4) 소년이 원할 경우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보장될 것. 5) 소년이 관련 문제를 이해한 후에 스스로 어떠한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고려할 기회가 법원에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³⁹⁶⁾

청소년법원은 학습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소년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6]).³⁹⁷⁾

www.gov.uk/overarching-guides/magistrates-court/item/sentencing-children-and-young-people/#Section%20six:%20Available%20sentences, 검색일: 2020.10.20.).

396) R (TP) v West London Youth Court [2005] EWHC 2583 (Admin).

397)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op. cit.

» **〈표 4-5〉 재판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1) 청소년의 인지기능을 고려할 것
2) 간결하고 간단한 언어의 사용
3) 정기적인 휴식을 가질 것
4) 추가적인 시간을 주고 법원 절차를 설명할 것
5)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6)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장할 것
7) 가능한 한 결과와 판결문을 설명할 것
8) 교차검토를 통해서 질문이 짧고 명확하도록 하고 소년의 두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보장할 것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영국에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은 청소년범죄팀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범죄팀에 대해서 소개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Youth Offending Team(YOT)

가) 개요

청소년범죄팀(Offending Team)은 아동의 배경을 보고 그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1) 지역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2) 경찰서에 체포될 경우 아동 지원 3) 법원에서 아동과 부모 지원 4) 지역사회 신고를 받은 아동 감독 4) 구금선고를 받은 아동과의 연락 유지 등이 그것이다.³⁹⁸⁾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각 지역 당국은 경찰, 사회복지사, 교육당국, housing offer 그리고 보호관찰국 등 기타부서들의 인력들로 이루어진 지역 소속의 Youth Offending Team(YOT)를 관리하며, 소년 범죄자들을 그들의 생활수준에 맞춰 지원해주기 위해 통합적인 팀을 운영하고 있다.³⁹⁹⁾

청소년의 우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YOT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범죄예방

398) UK GOV,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검색일: 2020.10.21.).

399) Law and Parents, The Role of the Youth Offending Team(<http://www.lawandparents.co.uk/role-youth-offending-team.html>, 검색일: 2020.10.21.).

에 적극적이어야 비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문제의 청소년에게도 더욱 유리하며, 종종 퇴학, 가정문제, 전과가 있는 부모 또는 가족과 있는 것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이 경찰서에서 마지막 경고를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으면(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 YOT가 그들의 가족상황, 가정환경, 교육, 태도 그리고 범죄경력을 포함한 그들의 생활들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게 된다.⁴⁰⁰⁾ 만일 청소년이 소년법원, 하급 법원, 형사 법원이든 선고를 받게 되면, YOT는 청소년이 적당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앞서 말한 그들의 정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는 법원에서 유리하게 사용되며, 청소년의 변호사와 기타 당국들이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여하여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⁴⁰¹⁾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금이 필요하다면, YOT가 청소년이 특별히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지(구금 또는 보내지는 구금시설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YOT는 소년 사법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보석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돕는 역할도 하며, 청소년의 구금이 해제된 이후, 청소년범죄팀은 그들이 구금 이후의 삶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로 도움을 준다.⁴⁰²⁾

나)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부모님과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은 ㉠ 경찰과 문제가 있었던 경우, ㉡ 범죄를 저지를 위협에 처해있는 경우, ㉢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한 경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의하여야 한다.⁴⁰³⁾

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들은 각기 다른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활동들은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400) Ibid.

401) Ibid.

402) Ibid.

403) UK GOV, 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 검색일: 2020.10.21.).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교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일부는 그룹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일부는 성인 감독관에 의해 1인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⁴⁰⁴⁾

▶▶ <표 4-6> 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종류	활동내용	공동사항
youth inclusion programme	youth inclusion programme은 8세 ~ 17세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보통 정해진 기간동안 이루어진다. 종종 아이들에게 필요하거나, 활동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intervention plan'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데, 프로그램 대상자인 어린 아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해야한다. Intervention plan은 어린 아이들이 해야할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	프로그램의 패널은 local youth 또는 지역 관계자로 이루어지며, 8세 ~ 13세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local service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ocal service는 학교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지원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종종 그의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	멘토는 숙련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멘토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괴롭힘에 대처하도록 하고, 직업 또는 학교 지원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멘토링과 같은 개인적인 도움이 종종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일 때도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통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및 가족의 참여& parenting programmes	일반적으로 부모와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이는 아이들과 함께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enting programme은 아이가 법에 저촉할 경우,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parenting programme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예외적으로 필수적 참여가 요구되기도 한다. parenting programme 또한 youth crime prevention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가끔 분리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육아기술 향상과 가정에서 어떠한 요인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UK GOV, 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 (<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what-these-programmes-are-and-how-they-work>, 검색일: 2020.10.21.).

404) UK GOV, 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what-these-programmes-are-and-how-they-work>, 검색일: 2020.10.21.).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 재단은 2012년부터 2,500만 파운드 규모의 Big Lottery기금의 지원을 받아 목표실현(Realising Ambi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진취적인 성취력을 가질 수 있도록 22개 조직을 지원하여 25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전역의 8세-14세 아동 16만명이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⁴⁰⁵⁾

따라서 영국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역시 영파운데이션의 관리 하의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며, 앞서 언급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역시 영파운데이션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에서 특히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또는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조기개입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 말라기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and Family Support Programme (Malachi))

말라기는 영국 내에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조기개입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EIFSP)을 보다 개선하여 한 단계 강화시킨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개입기간동안 문제 있는 아동과 가족을 전문가가 찾아가는 일대일 지원프로그램이다.⁴⁰⁶⁾

말라기 프로그램은 1991년에 설립되어 미들랜드(Midland)와 스태퍼드셔(Staffordshire) 전역에서 아동조기개입 및 가족치료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으로, 1991년 초기에는 학교 뮤지컬 드라마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의 두려움과 걱정을

405) The Young Foundation, Realising Ambition(<https://www.youngfoundation.org/projects/realising-ambition/>, 검색일: 2020.10.24.).

406) Big Lottery Fund, Malachi Case Study, pp.1-2(<https://cdn.catch-22.org.uk/wp-content/uploads/2017/04/Malachi-Early-Intervention-and-Family-Support-Programme.pdf>, 검색일: 2020.10.10.)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한해만 304개의 학교, 1,126 가족 및 4,830명의 아동들이 지원을 받았다.⁴⁰⁷⁾ 예컨대 스태퍼드셔 말라기의 경우, 2015년부터 시작하여 학교에서 학생전용으로 6주, 학교 또는 가족에서 12주간 중재활동을 하며, 최대 6개월까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이를 조기지원평가(Early Help Assessment(EHA))를 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을 지원한다.⁴⁰⁸⁾

말라기 키즈 프로그램은 아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우정을 나누고 괴롭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직원이 학교나 자정을 방문하여 활동, 게임 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일대일로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한다.⁴⁰⁹⁾

말라기 턴즈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말라기 키즈 프로그램과 목적이 같으며, 일대일로 정서적 안정을 취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음악 및 드라마 프로젝트(Drama projects)를 통하여 아동이 뮤지컬 공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성장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⁴¹⁰⁾

말라기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비밀준수를 원칙으로 하여 가족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아동을 포함한 가족이 일대일(one-to-one therapy)로 대면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Inspiring Futures 과정은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로서의 문제를 서로 배우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행동개선을 목표로 12주간 아동과 가족의 유대감, 애착, 의사소통, 관계형성을 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다.⁴¹¹⁾ 말라기 프로그램들은 아동이 괴롭힘과 갈등과 같은 학교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비행상황을 탐구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407) Malachi, About Us(<https://www.malachi.org.uk/>, 검색일: 2020.10.10.).

408) Malachi in Staffordshire(<https://www.malachi.org.uk/services/malachi-in-staffordshire>, 검색일: 2020.10.10.).

409) Malachi, Malachi Kids(<https://www.malachi.org.uk/services/young-kids>, 검색일: 2020.10.10.).

410) Malachi, Malachi Teens(<https://www.malachi.org.uk/services/young-teens>, 검색일: 2020.10.10.).

411) Malachi, Malachi Professionals(<https://www.malachi.org.uk/services/professionals>, 검색일: 2020.10.10.).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효과적으로 중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⁴¹²⁾

나) Action for Children 기능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 (Action for Children))

Action for Children은 영국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설구급이나 보호시설에의 입소에 직면한 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집중 가족치료의 한 형태로서 기능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 (FFT))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양육기술을 개선하고 약물사용과 폭력 등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자 한다.⁴¹³⁾

동 프로그램은 영국전역에서 행해지는데, 2019년 한해에 195,484명의 아동과 아동의 가족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개입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소년의 80%가 지원 이후 개선되어 왔다.⁴¹⁴⁾

동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지원형태로는 Spring Nurseries가 있는데, 아동과 가족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국 전역에 55개의 아동센터와 46개의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놀이, 학습 및 개인개발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개별지원과 수업을 제공한다.⁴¹⁵⁾ 또한 임신부터 유아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빈곤에서부터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데, 부모지원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동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준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¹⁶⁾ 또한 2018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서 “Parent Talk”를 운영하여 0-19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일대일로 모든 상담에 임하고 있는데, 아동의 정서적 안정, 행동교정과 학습, 발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⁴¹⁷⁾ Action for learning의

412) Ibid.

413) The Young Foundation, 18 Services Preventing Youth Offending (<https://www.youngfoundation.org/youth-education/realising-ambition-case-studies/>, 검색일: 2020.10.10.).

414) Action for Children, Our Work in England (<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our-work-and-impact/our-work-around-the-uk/our-work-in-england/>, 검색일: 2020. 10. 11).

415) Ibid.

416) Ibid.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위탁프로그램, 입양프로그램, 육아지원, 보육원운영 등이 있다.⁴¹⁸⁾

위탁프로그램은 6-18세의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탁할 위탁가정을 찾아 아동과 연결해주는데, 위탁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위탁의 유형으로서 장기위탁은 아동이 독립적으로 살 준비가 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위탁가정과 함께 하고, 단기위탁은 아동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을 제공하고, 단기휴식은 가족이나 전임위탁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며칠 동안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이고, 변환(Transform)은 심각한 혼란, 학대 또는 트라우마에 처한 아동들이 보이는 복잡한 요구와 애착장애 및 위험행동을 치유하기 위한 2년 기간의 프로그램인바, 피위탁아동이 형제인 경우 함께 위탁되도록 노력한다.⁴¹⁹⁾ 또한 Parent and Child는 그들 자신의 아동들이 있는 부모를 돌보는 위탁형태로서 일반적으로 3개월간 지속되며, Staying Put은 18세가 된 이후에도 위탁가정이 머무르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⁴²⁰⁾

다) 스텝핑 업(Stepping Up (The Bridge Foundation))과 약물남용치료 프로그램

심리치료와 예술을 위한 브리지재단(Stepping Up (The Bridge Foundation))은 가장 취약한 지역구에서 지난 20년 동안 경험 많은 상담사와 치료사를 통해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여 왔는데, 특히 취약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기 전부터 후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스텝핑 업(Stepping)을 주도하여, 아동들에게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특별한 조합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⁴²¹⁾ 스텝핑 업은 5개의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1) 예술기반 활동을 하도록 구성된 Creative Youth Network, 2) 비 접촉적 복싱을 가르치는 Empire Fighting Chance, 3) 부모 또는 형제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받는 아동을 멘토링하는 Bristol

417) Action for Children, About us(<https://parents.actionforchildren.org.uk/about/>, 검색일: 2020.10.12.).

418) Action for Children, op. cit.

419) Action for Children, Fostering in the North (<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how-we-can-help/our-local-services/find-our-services-near-you/fostering-in-the-north/>, 검색일: 2020. 10. 11).

420) Ibid.

421) The Young Foundation, 18 services preventing youth offending (<https://www.youngfoundation.org/youth-education/realising-ambition-case-studies/>, 검색일: 2020.10.10.).

Drugs Project, 4) 부모 또는 형제의 약물 남용에 영향을 받는 아동을 위한 환경친화적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Hawkspring, 5) 학교 기반 상담을 제공하는 Bridge의 협력이 그것이다.⁴²²⁾⁴²³⁾

이 중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받는 아동을 멘토링하는 Bristol Drugs Project의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브리스톨의 BDP청소년팀(BDP Youth Work Team)은 개인의 비밀준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브리스톨 전역의 11세-19세의 소년을 위해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일대일 활동시간을 두고, 일대일로 BDP담당자가 소년을 만나서 소년 개인의 위험에 중점을 두고 알코올 또는 약물사용과 관련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최대 12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유동적이다.⁴²⁴⁾ BDP 청소년팀은 브리스톨 전역의 학교와 대학, 대안학습규정과 기타 청소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만일 알코올이나 약물 이외의 정신건강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약물남용치료서비스(Young People's Substance Misuse Treatment Service)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NHS의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 (CAMHS)의 일부이다.⁴²⁵⁾ 청소년약물남용치료서비스는 18세 이하의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한 기관으로, 아동중심 평가, 중재, 전문적이고 구조적인 치료계획의 다중모드 프로그램, 약물해독 및 대체처방, 위해감소서비스를 포함한 약학적 관리, 심리치료를 포함하는데, 필요할 경우 가족과의 협력치료를 하게 된다.⁴²⁶⁾

가족지원사업으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1-19세의

422) Ibid.

423) 스텝업 업의 확장형태로서 행해지는 브리스톨 시의회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브리스톨 시의회가 서명한 학습계약서에 따라 고용주는 소년이 스텝업 업 통합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은 1) 6개의 학습교과: 각 교과는 2일씩 총 12일로 구성되고, 커리큘럼은 해당 분야의 고급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 행동 학습세트는 교육 2일차에 진행되며, 평등그룹의 특정 학습 필요성에 맞게 조정되고, 3) 현재 소속 조직의 외부에서 이상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가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4) 2시간 동안 6회에 걸쳐, 조직의 외부에서 멘토가 지정되어 대면 및 메일 등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5) 경력관리 및 멘토링 워크샵이 2일간 제공된다. Bristol.gov.uk, Stepping Up programme(<https://www.bristol.gov.uk/mayor/stepping-up-programme>, 검색일: 2020.10.12.).

424) Bristol Drugs Project, Youth Work(<https://www.bdp.org.uk/youth-work>, 검색일: 2020.10.12.).

425) Community Children's Health Partnership(CCHP), Young People's Substance Misuse(<http://cchp.nhs.uk/cchp/explore-cchp/young-peoples-substance-misuse>, 검색일: 2020.10.12.).

426) Ibid.

아동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라면 약물에 의해 영향받는 아동 지원(Children Affected By Substances (CABS) service)을 DBP청소년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동 지원은 자녀의 위험을 줄이고 회복력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일대일로 기간을 정해 지원되는데, 학교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대안센터 등에서 행해질 수 있다.⁴²⁷⁾

라) 10-14세 가족프로그램강화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me 10-14 (UK))

동 프로그램은 최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Oxford Brookes University (OBU))이 채택한 것으로 10세-14세의 소년이 있는 가족이 십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7주간의 증거기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me)으로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부모(보호자)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⁴²⁸⁾ 여기에서 증거기반이라 함은 EIF증거기준(EIF evidence standards)의 증거등급 5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생에서 지연된 개입('late intervention')이나 급작스런 서비스 제공을 감소시키고 삶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아동에 이익이 되는 산출물이라고 확인된 증거를 기반으로 함을 의미하는데, 4등급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이는 기존 연구들 중 최소한 하나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아동개선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3등급은 인과성에 대한 검증이 된 단기적인 긍정적 영향의 증거가 있는 프로그램을, 2등급은 아동을 개선한다는 예비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3등급 이상의 프로그램이 적용된다.⁴²⁹⁾

10-14세 가족프로그램강화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me 10-14)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고 고위험군 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생물심리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 및 기타 경험에 기반한 가족위험 및 보호 요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보호과정의 향상 및 가족위험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⁴³⁰⁾ 일반적으로 7주간의 과정에서

427) Bristol Drugs Project, Family Support(<https://www.bdp.org.uk/family-support>, 검색일: 2020.10.12.).

428) The Young Foundation, op., cit.

429)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EIF Evidence Standards(<https://guidebook.eif.org.uk/eif-evidence-standards>, 검색일: 2020.10.13.).

각각 2시간 동안 구성되는데, 가족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양육상의 제한 설정 및 아동의 또래압력에 대한 저항과 같은 특정 기술을 배우게 되는 바,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3등급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수행결과에 대한 4등급은 받지 못하였다.⁴³¹⁾

동 프로그램의 효과는 모두 각각의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검증된 것으로, 1)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지원, 2) (자기보고 및 학부모보고에 근거한) 학교 출석도 및 취업 향상 3) (관찰자 등급에 의한 공격성과 적대적 감소 증명 및 자체 보고에 의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 감소 증명에 따른) 범죄, 폭력 및 반사회적 행위 예방, 4) (자체보고에서 1년 후속조치에 의한 낮은 알코올 영향지수 및 2년 후속 조치에 의한 낮은 알코올 영향지수, 그리고 월별 전반적인 낮은 수준 및 낮은 약물사용 증가율에 근거한) 약물남용방지, 5) (자체보고에 근거한 성관계중 약물사용률 감소, 직전 해의 파트너 수 감소 및 일생동안 성병감소에 근거한) 위험한 성행위 및 십대 임신예방이라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⁴³²⁾

동 프로그램은 훈련된 조력자(1명의 주임 실무자 및 2명의 공동 실무자)가 8-12가족에게 그룹단위로 제공하는데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되는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관련 가족 기술(예: 약물남용에 대한 가족 의사소통 또는 또래 집단 거부의 기술)에 대한 별도의 과정에 참석하여 그룹 토론 및 실습활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배우게 된다.⁴³³⁾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QCF-4 / 5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리드 퍼실리테이터와 QCF-3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두 명의 공동 진행자로서, 교육상 3일간의 인증된 훈련이 필요하다.⁴³⁴⁾

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범죄 및 문제행동과 약물 남용은 가족 체계 내 위험/보호요

430)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me 10-14(<https://guidebook.eif.org.uk/programme/strengthening-families-programme-10-14>, 검색일: 2020.10.13.).

431) Ibid.

432) Ibid.

433)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About the Programme(<https://guidebook.eif.org.uk/programme/strengthening-families-programme-10-14#about-the-programme>, 검색일 2020.10.13.).

434) Ibid.

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잘못된 가족 의사소통과 비효율적인 양육방식을 개선하고 동 과정을 통해 가족문제해결기술을 개선하고 가족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가족 내의 위험을 식별함과 동시에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가족의사소통 및 청소년 태도 개선, 양육방법의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10-14세 소년들의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 행동에의 관여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학교적응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⁴³⁵⁾

2) Respect Young People's Programme(Respect)

Respect는 전문가 조언이나 교육, 발달지원, 기타 지원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부모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형태의 범죄나 공격적 행동의 전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⁴³⁶⁾ Respect 교육은 가정폭력 가해자, 남성 피해자 및 친밀관계에서의 청소년 폭력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세 가지 영역에서 일하는 바 1) 다른 조직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2) 친밀관계에서 폭력과 학대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가정폭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복지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 학대행동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3) 가정폭력의 남성피해자(male victims)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이를 위한 전국적 회의 주최 및 일선 업무자를 위한 도구개발을 한다.⁴³⁷⁾

이중에서 Respect Young People's Service는 친밀관계에서의 아동과 소년의 폭력과 남용에 투입될 지역당국, 제3의 기관 및 경찰의 범죄감독관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는 영국 여러 지역 당국과 경찰 범죄 위원회에 제공되고 있는 바 1) CAPVA(Child and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and Abuse)는 자녀 또는 소년에 의한 부모(보호자)를 상대로 하는 폭력 및 학대행동을 포함하는데, 학대에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형태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피해 및 형제와 같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학대도 여기에 해당한다.⁴³⁸⁾ 2)

435) Ibid.

436) The Young Foundation, op., cit.

437) Respect, Project(<https://www.respect.uk.net/pages/32-projects>, 검색일: 2020.10.14.).

438) Respect, CAPVA Child and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and Abuse (<https://www.respect.uk.net/pages/114-capva>, 검색일: 2020.10.14.).

RYPP(Respect Young People's Programme)은 10세-16세의 소년이 부모(보호자)와 같은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학대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아동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부모(보호자) 및 소년 모두에게 해결책이 되도록 협력하는데, 프로그램의 실무자는 3개월간 매주 구조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지원, 통찰력 및 간단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장기화된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자녀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스펙트럼상태(ASC) 진단을 받았거나 심각한 정서적 조절장애가 있는 가족일수록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⁴³⁹⁾

이 역시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동교육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코스별로는 1) 1단계 일반적 인식교육: 입문과정으로 주제에 대한 인식 고취 2) 2단계 기술기반 교육: 이해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급 과정 3) 3단계 고급 기술교육: 숙련된 일선 담당자를 위한 과정으로 주제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이 있다.⁴⁴⁰⁾

동 프로그램도 이를 지원하는 실무자나 경찰관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1) 1일 조기 대응교육(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2) RYPP 실현교육(프로그램 시행, 위탁, 사건 및 위험요소관리와 비디오자료 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 청소년 세션을 위한 전달 매뉴얼과 관련된 교육으로 상대방의 선택한 장소에서 기관이 제공하는 4일간의 교육포함), 3) CAPVA에 대한 조기대응으로서 질문 및 대응(RYPP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아동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는 가족을 지원할 최대 25명의 일선 직원을 위한 1일 교육과정으로, 동 교육과정은 관련된 역학을 이해하고 실무자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CAPVA를 인지할 수 있는 함양된 능력을 제공한다), 4) CAPVA에 대응하는 경찰관을 위한 교육(경찰관이 CAPVA에 대한 인지능력을 배양하고, 위험을 이해하고 증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다양한 경찰관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됨)으로

439) Respect, RYPP Respect Young People's Programme(<https://www.respect.uk.net/pages/115-rypp>, 검색일: 2020.10.14.).

440) Respect, Face-to-Face Training(<https://www.respect.uk.net/pages/66-face-to-face-training>, 검색일: 2020.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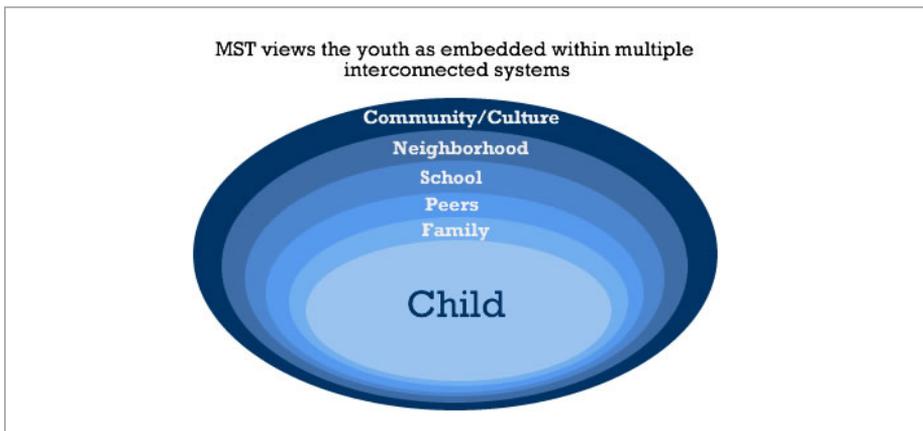
구분된다.⁴⁴¹⁾

3) 다중체계적 기법(Multi-Systemic Therapy for Externalizing Youth(MST))

가) 프로그램 개요

다중체계적 치료기법은 11-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집중적인 가족/지역사회 기반 개입프로그램으로, 소년들이 비행이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구급이든 돌봄이든간에 양육권으로부터 벗어날 위험을 제거하고, 가정, 학교, 문제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의 순환고리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⁴²⁾

» [그림 4-1] 다중연계시스템을 포함한 MST 치료기법



위의 그림⁴⁴³⁾과 같이 다중이란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동료, 학교, 이웃, 지역사회로 확대는 상호연계 시스템의 다중적인 아동에의 개입을 통한 개입을 한다는 의미이고, MST 치료사는 가정 내로 방문하여 3-5개월동안 집중적으로 협업하면서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족과의 항상적인 통화와 연락을 취함으로써 강화된 지원을 하게 된다.⁴⁴⁴⁾

441) Respect, Training, Implementation and Services(<https://www.respect.uk.net/pages/117-training-implementation-and-services>, 검색일: 2020.10.14.).

442) Multisystemic Therapy, Multisystemic Therapy(MST)(<http://www.mstuk.org/multisystemic-therapy-mst>, 검색일: 2020.10.16.).

443) Multisystemic Therapy, Multisystemic Therapy(MST)(<http://www.mstuk.org/about/about-2>, 검색일: 2020.10.16.).

MAST치료팀은 3-4명의 석사 수준 이상의 치료사로 구성되고 박사 수준의 감독자가 감독하는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각 치료사는 4-6 가족을 담당한다.⁴⁴⁵⁾ MST 치료사는 1)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집중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의 제공, 2)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소년의 참여 및 성공가능성 증대, 3) 보호자와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활동 장려, 4) 청소년의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 5) 가족관계 개선, 6) 약물남용을 포함한 청소년 또는 부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⁴⁴⁶⁾

나) 9가지 핵심원칙

MST는 9가지 핵심원칙과 구조화된 분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기본틀을 사용하는데, 아래 표와 같은 원칙들이 제공되고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⁷⁾

444) Ibid.

445) Zajac, K., Randall, J., and Swenson, C.C., Multisystemic Therapy for Externalizing Youth, 2015(<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75575/>, 검색일: 2020.10.16.).

446) Multisystemic Therapy, op. cit.

447) Multisystemic Therapy, Nine Principles(<http://www.mstuk.org/about/about-1>, 검색일: 2020.10.16.).

▶▶▶ <표 4-7> MST 핵심원칙

원칙	내용
원칙1: 적합성 찾기 (Finding the fit)	식별된 문제 사이의 “적합성(fit)”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청소년의 프로그램 성취의 적합성 평가는 치료과정을 안내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칙2: 장점 및 강점에의 집중(Focusing on positives and strengths)	MST 치료사들은 청소년의 가정에서 발견한 장점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족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희망감을 구축하고, 보호인자를 구별하고,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부모(보호자)의 자신감을 강화함으로써 좌절감을 감소시키는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
원칙3: 책임감 강화 (Increasing responsibility)	치료개입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다.
원칙4: 현실중심적, 행동지향적, 명확한 목표정립적(Present-focused, action-oriented and well-defined)	개입은 청소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루는데, 치료사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의된 문제들을 타겟으로 하여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찾는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참가자들은 치료진행상황을 추적하고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과거에 집중하거나 통찰력을 얻음으로써, 현재 중심적인 해결방법에 집중하여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명확한 목표가 달성될 때, 치료가 종료될 수 있다.
원칙5: 사건들의 표적화 (Targeting sequences)	개입은 확인된 문제들을 지탱시키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가족, 교사, 동료,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내부 및 상호간 일련의 행동(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6: 발달적인 적합성 (Developmentally appropriate)	개입은 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하게 설정되고 그들의 발달적 필요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이 동료와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학업·직업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의 구축을 강조한다.
원칙7: 지속적인 노력 (Continuous effort)	개입은 소년과 가족이 그들의 노력을 발휘할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 매주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집중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의 장점에는 보다 신속한 문제해결, 개입 필요성의 미세조정의 보다 빠른 식별, 지속적인 산출물의 평가, 보다 빈번한 교정적 개입,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성공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의 변화를 조율할 수 있는 가족의 힘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보다 많은 기회 등을 들 수 있다.
원칙8: 평가 및 책임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개입효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책임이 있는 MST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된다. MST는 가족들을 “저항적이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동기부여가 없다”고 꼬리표를 달지 않고, 가족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긍정적인 치료결과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MST팀에 부과한다.
원칙9: 일반화 (Generalisation)	개입이 종료된 후에는 가족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보호자)에게 부여되도록 개입이 설계된다. 부모(보호자)는 장기적 성공의 열쇠로 간주된다. 가족구성원은 MST 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과정을 주도한다.

4. 소결

영국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치우 프로그램을 살펴본 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단계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경고처분 및 조건부경고처분이 처분 횟수나 소년의 범죄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년에 대한 사법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훈방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범죄혐의가 있는 촉법소년을 경찰단계에서 임의로 종료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단계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매뉴얼이 일반 범죄소년에 대한 지침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에 대한 지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 소년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훈육상태 및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단체나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색이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매우 쉽고 간단한 용어로 절차를 설명하고 조사를 함으로써 아동의 이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적 접근을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원단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처분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개입시키는 점이다. 또한 정신장애가 있는 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의 매뉴얼을 별도로 정비하고 있어서, 아동의 사법절차에 대한 위협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보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넷째, 국가기관인 청소년범죄팀(YOT)이 모든 형사사법절차에 개입하되, 다기관 협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프로그램 역시 매우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기금을 토대로 국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과 아동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상담 및 치료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기개입 프로그램들은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과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중요시한다. 또한 가족이 변화하여야 아동의 범죄가 근본적으로 근절된다는 점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단계별 접근 및 전문가의 개입을 필수로 한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원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원칙들은 과거의 경험 및 유사치료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즉 증거기반 프로그램 및 원칙들이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투입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일회적이거나 자의적인 원조가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전문가들의 육성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기관에서 병행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문가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고, 교육을 통한 저연령소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여덟째, 저연령소년을 보호할 위탁가정의 보호자들에게도 위탁기간 쌓일 피로를 위한 단기휴식기간을 부여한다. 즉, 지속적인 위탁으로 인한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며칠 동안 위탁을 대신할 전문인력이 아동보호를 담당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적인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아홉째, 정신건강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투입을 통해 정신건강의 회복, 자존감 및 자신감의 고취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으로써, 아동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정상적인 학업이수 후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복싱 프로그램처럼 신체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신체활동으로 폭력적 성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등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연령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양육방식의 훈련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그릇된 양육방식을 가진 부모가 이를 교정하지 않는 한 가정으로부터의 아동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 그러한 가정일수록 아동과 부모간의 연대감이 결여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동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수반된다.

제3절 | 독일

이 절에서는 독일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소년사법제도 개관 및 저연령 비행소년의 처우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처분·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자원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한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소년범 처우 이념 및 개념 정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통계 등을 개관하고(아래 1), 독일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를 살펴본 후(아래 2), 지역사회의 처우(아래 3)를 순서대로 살펴본다(아래 4).

1. 개관

가. 전반적인 소년범 처우 이념

1) 소년범의 정의

독일 형사사법체계상 형사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 기준은 14세이다. 만 14세 미만자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며(독일 「형법」 제19조), 사법절차상 아동(Kinder)으로 지칭된다.⁴⁴⁸⁾ 이 때 연령의 기준은 범행 행위 시이다.⁴⁴⁹⁾

일반형사절차의 특례규정 대상인 소년범의 하한 연령기준은 18세이다. 행위 시 기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소년(Jugendliche)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에 따라 일반형사절차와 구분되는 특별 처우를 받게 된다. 행위 시 18세 미만자인 소년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21세 미만 초기성년(Heranzwachsende, 동법 제1조 제2항) 역시 소년법원법의 우선적용을 받는다(동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2항).

448) Eisenberg, U., Jugendgerichtsgesetz, 20., neu bearb. Aufl., München: C. H. Beck, 2018, § 1 Rn. 1.

449) PDV 382 3.1.4(DVJJ-Journal, 1997, p.9.).

2) 소년범 처우 이념

「소년법원법」은 그 목적을 소년의 재범방지라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사상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동법 제2조 제1항) 이에 따른 다양한 처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범은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징계처분(Zuchtmittel)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처분을 받게 되고(동법 제5조), 구금 시에도 일반 자유형과 구분되는 소년자유형(Jugendstrafe)을 집행받게 된다(동법 제8조). 이 때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소년구금시설인 소년교도소(Jugendstrafanstalt)에서 소년자유형을 집행받게 되고(동법 제17조), 그 기간 역시 단기 6월 내지 장기 5년으로 일반 성인범보다 짧으며, 일반적 성인범의 법정형이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장 10년의 형을 집행하게 되는 등(동법 제18조 제1항)의 특례를 부여받는다. 독일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형벌 그 자체보다 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⁴⁵⁰⁾

이러한 독일의 소년범 모델은 복지모델과 소년 정의모델>Youth Justice model)의 혼합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⁵¹⁾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소년범은 제도화된 범령이라는 점, 범죄행위자가 아닌 범죄행위 지향적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다른 규범 학습 중 제한적 수단인 ‘형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소년에 대한 적극적 ‘사회화 도구’가 될 수는 없지만, 교육을 지향하는 제재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년이 규범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제도로써 교육사상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⁴⁵²⁾

1990년대의 독일 소년법 개정에서는 다이버전을 확장하였다, 즉 사회 교육 과정, 지역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사의 특별 관리 및 감독, 재판전 구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다.⁴⁵³⁾

한편, 독일에서 소년에 대하여는 「연방사회법전 제8권」(SGB VIII)인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에 따른 교육부조가 소년법의 통제보다 우선 적

450) Persson, M., op. cit., p.116.

451) Dünkel, F., Juvenile Justice Systems in Europe - Reform Developments Between Justice, Welfare and 'New Punitiveness', Kriminologisches Studijos 10, 2014, p.39; Persson, M., op. cit., p.140.

452) Meier, B.-D., Rössner, D. and Schöch, H., Jugendstrafrecht. 2. Aufl., München: C. H. Beck, 2007, pp.11-14.

453) Dünkel, F., op. cit., p.55.

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년법의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⁴⁵⁴⁾ 특히 이 원칙은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저연령소년범에게는 더욱 중요한데, 독일에서 저연령소년범, 즉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우리 소년법과 다르게 어떠한 소년법적 제재나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목차 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나. 독일에서 형사미성년자 및 저연령 비행소년의 개념 논의

독일의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들에게는 형법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⁴⁵⁵⁾

독일의 소년법 관련 법개정 연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871년 독일 제국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12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제정 이후 14세 미만을 절대적 형사미성년자(Strafmündigkeit)로 보았으며, 나치시대에 다시 이를 12세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⁴⁵⁶⁾ 즉 현행 독일 법제도상 우리나라의 12세 이하 '저연령 소년범'에 비견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사미성년자 중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저연령 소년범과 비교될만한 연령 기준은 14세라 볼 수 있다.

다. 저연령 비행소년의 비행 동향 등

독일에서도 경찰범죄통계(PKS: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에서 드러나는 소년범 숫자가 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면서 소년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고 한다.⁴⁵⁷⁾ 그러나 2019년 통계자료를 통해 2005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 독일 내 14세 미만인 아동 범죄혐의자 수가 10만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17년

454) Meier, B.-D. et al., op. cit.,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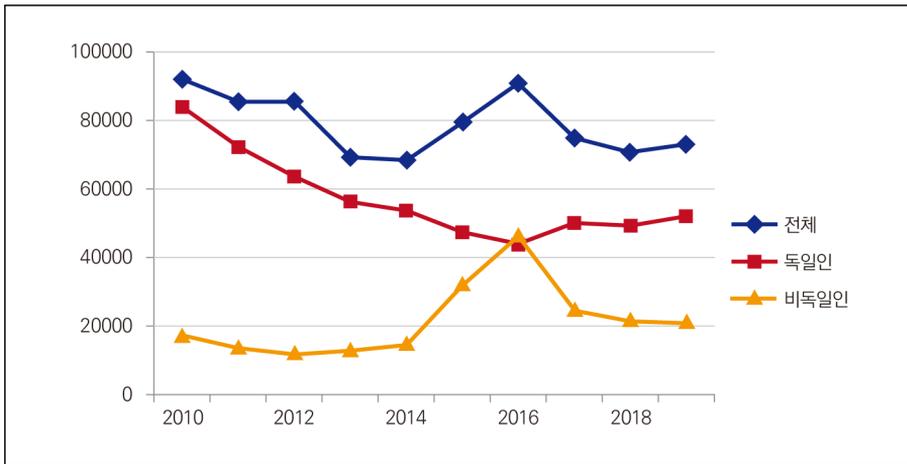
455) Eisenberg, U., op. cit., § 1 Rn. 1.

456)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75면; 독일 소년법원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하여 Eisenberg, U., op. cit., Einl. Rn. 1 ff.; Meier, B.-D. et al., op. cit., p.31 ff. 참조.

457) Bindel-Kögel, G., Heßler, M. and Münder, J., Kinderdelinquenz Zwischen Polizei und Jugendamt, Münster: LIT Verlag, 2004, p.11.

이후 아동 범죄혐의자 수는 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기간 내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감소세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⁵⁸⁾ 2019년 아동 범죄혐의자는 전년 대비 3.6%p 증가하여 72,890명이었고, 이는 전체 범죄혐의자의 3.6%를 차지한다.⁴⁵⁹⁾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혐의는 상점절도로 22,807건을 기록하였다.⁴⁶⁰⁾ 전체 아동 범죄혐의자 중 독일인의 경우 위험한 상해(형법 제224조)·중상해(형법 제226조), 여성성기절제(형법 제226a조), 고의 단순상해, 절도 전체, 모욕, 손괴 등의 범죄가 증가세를 보였고, 비독일인의 경우 상점절도만 감소추세이며 나머지 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였다.⁴⁶¹⁾

» [그림 4-2] 독일의 아동 형사범죄 발생추이



출처: Bundeskriminalamt(Hrsg.), op. cit., p. 31의 표를 2010년부터 재구성

한편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자의 범죄는 공식적 통계로는 발표되고 있지 않다. Bindel-Kögel/HeBler/Münder가 2004년 베를린에서 실시한 아동범죄에 대한 실태조사⁴⁶²⁾에서 1999년의 베를린의 통계를 산출한 바 있는데, 피의자로 신고된 14세 미만자인 아동 중 10세 미만자는 14.8%, 10세 이상 12세 미만 자는 27.1%, 12세 이상

458) Bundeskriminalamt(Hrsg.),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republik Deutschland Jahrbuch 2019 Band 3 Tatverdächtige, Wiesbaden, 2020, p.31.

459) Bundeskriminalamt(Hrsg.), op. cit., p.31.

460) Ibid., p.32.

461) Ibid., pp.31-32.

462) 이하 Bindel-Kögel/HeBler/Münder 실태조사(2004)라 한다. 이 내용은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02 ff.에 수록되어 있다.

14세 미만 자는 58.1%로 12-14세 사이의 연령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고, 10-12세 사이의 연령 역시 전체 아동 피의자 중 1/4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⁴⁶³⁾ 비록 오래 전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실증통계인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저연령 소년범에서는 역시 형사책임능력에 근접한 12-14세 사이의 연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저연령 소년범 기준인 12세 미만자의 비율 역시 독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발견할 수 있다.

라. 소년범 형사절차 개관

1) 소년범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적 대응

일반적인 소년범 범행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비공식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외의 방법을 통한 해결방법이 선호된다. 단순불기소, 사회부조상의 조치가 취해지거나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불기소, 소년전담판사가 경고, 준수사항, 부담명령을 발령하는 비공식적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⁴⁶⁴⁾ 둘째, 소년범의 형사절차는 소년전담판사의 정식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교육처분, 징계처분, 소년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년형벌은 재범우려가 낮을 경우 집행유예할 수 있다.⁴⁶⁵⁾ 그 외 보안처분으로 정신병원, 중독치료시설 수용, 집중보안관찰, 운전면허 취소 등이 부과될 수 있다(소년법원법 제7조, 형법 제63조, 제68조, 제69조).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463)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06.

464) Meier, B.-D. et al., op. cit., p.19.

465) Ibid., pp.20-21.

▶▶▶ <표 4-8> 독일 소년범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절차적 대응

범죄 행위	불기소 (다이버전)	단순불기소 (제재 포기)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호)	
		형법 이외의 방법 이용 (법원조직법 제4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부조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불기소(부모·청소년청의 개입) • 가해자-피해자-조정(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 제2문)이 성공한 경우 불기소
		소년전담판사의 비형식적 방법 이용 (소년법원법 제45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준수사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4, 7, 9호) • 부담명령(소년법원법 제15조)
	형사 절차	형식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처분(9-12조): 준수사항 부과, 교육지원 이용명령 • 징계처분(13-16조): 경고, 부담명령 부과, 소년 구금 • 소년형벌(17, 18조) [재범우려 낮을 경우 집행유예(소년법원법 제21조 이하), 선고유예(제27조 이하)]
		보안처분(위험예방) (소년법원법 제7조, 형법 제61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원(형법 제63조) • 중독치료시설 수용(형법 제64조) • 집중보호관찰(형법 제68조) • 운전면허취소(형법 제69조)

출처: Meier, B.-D. et al., op. cit., p.19의 <그림 2>를 표 모양으로 변형하고 내용을 추가함

2) 소년사건의 관할 및 소년사법보호관 제도

소년사건은 특별법원으로서의 소년법원이 관할한다(「소년법원법」 제33조). 구법원에는 소년전담판사 및 소년참심재판부가 설치되며, 지방법원에는 소년합의부가 설치된다.⁴⁶⁶⁾ 특히 소년형사절차에서는 「소년법원법」 제38조에 따라 소년사법보호관(Jugendgerichtshilfe) 제도를 두고 있다. 소년사법보호관은 독자적 소송기관이지만 아동청소년청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속은 청소년청이다(「사회법전 제8권」 제52조).⁴⁶⁷⁾ 이들은 소년범의 사회적 환경을 확인하고,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소년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⁴⁶⁸⁾ 예를 들어 「소년법원법」 제45조에 따르면 교육적 조치가 개시되었고 공소제기

466) Meier, B.-D. et al., op. cit., p.22.

467) Ibid.

468) Ibid.

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소년사법보호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⁴⁶⁹⁾

3) 연령에 따른 소년사건의 절차적 대응

소년법에 대한 형사(소년법)상 및 공법(사회부조)상의 법령적용 내용을 연령별로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9> 독일의 소년법에 대한 형사법 및 사회부조법 적용

연령	형법·소년법	공법(사회부조)
0-6세	형법상 책임무능력자(형법 제19조)	
7-14세 (아동)	→ 형벌 및 보안처분 배제	
14-18세(소년)	<소년법원법상 처분> 책임심사(제3조) → 불법성인식 및 행동의 성숙에 따라 형사법상 책임을 짐. 책임 없는 경우 가정법원과 동일한 조치 법률효과발생(5-32조) → 교육처분, 징계처분, 소년형벌 개선·보안처분, 보호감호, 사회치료기관에서의 소년형벌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에 따라 청소년부조기관의 지원(교육부조인, 가족후원, 일일보호, 교육보조 등) 사회법전 제8권 제11-58조) • 민법 제1666조, 제1666a조 상의 가정법원 결정에 따른 국가개입
18-21세(초기성인) (민법상 성인)	<소년법원법 제105조에 따른 판단> • 도덕·정신적 발전 정도가 소년과 동일한 경우 소년형법 적용가능 • 형법 완화(중신형 완화 등)	신청에 따른 소년부조기관의 제공(사회법전 제8권 제41조: 직업교육 등)
21세 이상 (성인)	<형법 적용> 형법 제38조 이하 보안처분 제63조 이하	예외적으로 27세까지 청소년부조 계속(사회법전 제8권 제41조, 제7조 제1항 3호) 성인의 경우 연방사회법 제72조 상의 사회부조

출처: Meier, B.-D. et al., op. cit., p.15의 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민법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소년법원법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는 재가공을 하였음.

4) 저연령소년의 범행에 대한 절차 개관

소년법의 형사절차를 연령에 따라 접근해 볼 경우 책임무능력자인 14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연령소년법의 사건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수사 및 공소 단계

469) Ibid.

에서 범행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 형사절차는 중지된다. 둘째, 경찰업무지침 및 소년법원법 지침 등에 따라 피고지자 및 감독의무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아동의 발달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아동복지절차의 개입 필요 여부와 관련 되는 사안에서 청소년청이 개입하게 된다. 가장 예외적인 케이스는 민법 제1666조, 제1666a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금지시키거나 친권을 박탈하여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고, 아동을 시설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내용은 아래에서 각 기관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앞에서 살펴본 일반 소년법 절차와 달리 저연령 소년, 즉 아동의 범죄에 대한 처우의 주무 담당기관은 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는 청소년청이다. 그러나 청소년청은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아닌 복지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아래 3.에서 별도로 다루게 된다. 형사절차에서 처우의 주무 담당기관은 경찰로서 청소년청과의 연계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범죄 수사에 관련하여 검사 및 가정법원이 관여하게 된다.⁴⁷⁰⁾

가. 경찰 단계

경찰은 범죄를 인지하는 1차적 기관이다. 경찰단계에서의 <범죄 인지 → 범행자 조사 → 사건 처리>의 순서에 따라 아동의 절차 상 처우실태를 살펴본다. 경찰 업무지침 중 「PDV 382」(청소년업무처리지침)⁴⁷¹⁾은 14세 미만 아동 및 18세 미만 청소년 수사단계에서의 처우의 가장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PDV 382는 아동·청소년사건을 “미성년자가 가담한 사건, 청소년 및 18세 이상 21세 미만 성인에 대하여 형벌 및

470) Bindel-Kögel et al., op. cit., p.191.

471) PDV는 Polizeiliche Dienstvorschrift의 약자로, 독일 연방에 효력이 있는 경찰의 업무지침을 뜻하며, 그 중 PDV 382 Bearbeitung von Jugendsachen (Ausgabe 1996)는 1996년에 만들어진 청소년업무처리지침을 뜻한다. PDV는 전체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PDV 382는 독일청소년사법지원협회(DVJJ)에서 공개하고 있다. DVJJ-Journal, 1997, pp.5-21.

질서위반금이 부과될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⁷²⁾ 14세 미만의 아동 사건 역시 당연히 경찰의 PDV 382(청소년업무처리지침) 상의 아동·청소년사건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아동의 사건처리 시 PDV 382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 인지

우리나라의 공소제도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검사가 기소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를 취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제170조 제1항).⁴⁷³⁾ 검사 뿐 아니라 경찰 역시 기소법정주의에 구속되어 일단 인지된 형사사건은 형사미성년자 범행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⁴⁷⁴⁾ 한편 이러한 경찰 수사 업무 중 아동의 비행을 인지할 수 있다. 아동 비행이 인지되는 방법은 일반사건에 아동이 연루된 경우, 고소·고발, 실종사건 관련인 경우 등 다양하다.⁴⁷⁵⁾

2) 조사

원칙적으로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아동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⁴⁷⁶⁾ 경찰은 고소사건 접수 및 사건 인지 시부터 검찰에 사건 인도시 까지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상 수사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⁴⁷⁷⁾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 제163a조).⁴⁷⁸⁾ 형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 제163조에 따라 경찰은 사건수사의 의무를 지니지만 문언 해석

472) PDV 382 Nr. 1.1; DVJJ-Journal, 1997, pp.5-6.

473) 동법 제152조는 검사의 기소독점 및 수사강제를, 제170조 제1항은 수사가 공소제기에 충분한 경우 기소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474)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6, 76.

475) Ibid., p.73.

476) Ibid., p.77; Eisenberg, U., Zur Rechtsstellung von Kindern im Polizeilichen Ermittlungsverfahren, in: StV 1989, p.556; Ostendorf, H., Jugendgerichtsgesetz. 7. Aufl., Baden-Baden: Nomos, 2007, § 1 Rn. 4; PDV 382 3.4.1; DVJJ-Journal, 1997, p.11.

477) Ostendorf, H., op. cit., § 1 Rn. 4.; Bindel-Kögel, G. et al., Ibid., p.76. 이에 반하여 향후의 범행을 저지하고 법정대리인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체포권 등과 같은 수사권을 주장하는 견해로 Brunner R. and Dölling, D., Jugendgerichtsgesetz, 11. Aufl., Berlin: de Gruyter, 2002, § 1 Rn. 13(Ostendorf, H., op. cit., § 1 Rn. 3에서 재인용).

478) Eisenberg, U., op. cit.(b), § 1 Rn. 4;

상 '소추가능한 형사사건'으로 한정되므로, 대상자가 형사미성년자(형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인 경우는 소추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소추가 불가하며(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상 사실관계탐지의무가 제한되어⁴⁷⁹⁾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수사를 중단하게 된다.⁴⁸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만약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14세 미만 아동에게 경찰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형사미성년자 아닌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교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⁴⁸¹⁾ 따라서 경찰의 PVD 382(청소년업무처리지침)은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우선 저연령 소년의 수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아동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⁴⁸²⁾ 즉 우리 소년법과 비교한다면 「소년법」 제4조 제2항의 이른바 '촉법소년'만이 그 대상이 되며, 14세 미만자로서 제3호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불가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경찰이 그 아동을 수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첫째, 해당 사건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14세 이상의 타인이 가담한 경우, 둘째, 보호 및 양육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셋째, 후견법원상 처분 및 관청의 처분이 (경우에 따라 양육권자에게도)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 민법상의 청구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이다.⁴⁸³⁾ 어떤 경우이든 경찰은 피고소, 경찰 소환, 청문, 신문 등이 미성년인 소년범에게 큰 의미가 됨을 유념해야 하며, 신문절차에서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⁴⁸⁴⁾

아동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조건은 첫째, 해당 사건에 14세 이상의 타인이 가담한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아동의 범행에 관련하여서는 아동에 대한 체포, 신체수색(혈액 검사 등), 주거수색, DNA 동일성 검사, 사진-지문측정(「형사소송법」 제81b조), 미결구류 등의 수사활동이 금지되지만(「형사소송법」 102조, PDV 382. Nr. 8.1.1), 성인이

479) Eisenberg, U., op. cit.(a), p.47 ff.

480)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77.

481) Eisenberg, U., op. cit.(b), § 1 Rn. 4a.

482) PDV 382 Nr. 3.1.1 전단; DVJJ-Journal, 1997, p.8.

483) PDV 382 Nr. 3.1.1 후단; DVJJ-Journal, 1997, pp.8-9.

484) Ostendorf, H., op. cit.(a), § 43 Rn. 8;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74-75.

아동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면 성인을 범행자로 두고 가담 아동은 성인 범행에 대한 타인인 제3자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103a조의 수색 조항을 아동에게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이 제3자라면 제3자인 아동의 신원확인 목적(「형사소송법」 제163b조 제2항, 제163c조)으로 위의 수사활동이 가능한 것이다.⁴⁸⁵⁾ 경찰은 미성년자가 체포된 경우 양육권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PDV 382 Nr. 6.4.1), 체포된 아동은 신뢰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할 기회를 가진다(PDV 382 Nr. 6.4.3).⁴⁸⁶⁾ 또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자에게 중대범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81a조에 따라 신체검사(혈액검사)를 할 수 있으며,⁴⁸⁷⁾ 그 외의 경우에는 동법 제81c조(제3자에 대한 검사), 제81d조(신체검사)에 따른 신체검사만이 허용된다(PDV 382 Nr. 7.1.1).

또한 아동은 피의자가 아닌 증인으로서만 신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만 신문이 가능할 뿐, 자기사건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다.⁴⁸⁸⁾ 독일 「형사소송법」 제241a조 제1항은 “16세 미만의 증인은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한다”고 하여⁴⁸⁹⁾ 아동·청소년 증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법 제168e조에 따라 “참석권한 있는 자와 격리하여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⁴⁹⁰⁾ 아동이 증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른 ‘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권’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⁴⁹¹⁾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증언거부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들이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2조 제2항)⁴⁹²⁾

둘째, 경찰은 소년 피의자를 처음 만나는 기관으로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서 청소년청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즉, 경찰은 14세 미만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따라서 청소년청과의 접촉이 필요한지 첫 번째로 조사하는 기관이 된다.⁴⁹³⁾ 경찰은 자체 지침인 PDV 382(청소년업무처리지

485) Eisenberg, U., op. cit.(b), § 1 Rn. 4a ff;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78 ff.

486)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79.

487) Ibid.

488) Ostendorf, H., op. cit.(a), § 1 Rn. 4;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77.

489)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189면.

490)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168면.

491) Eisenberg, U., op. cit.(b), § 1 Rn. 4f.

492)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32면.

493)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74-75.

침)에 따라 지체 없이 위협에 처한 미성년형사범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청으로 제공한다.⁴⁹⁴⁾

셋째, 해당 아동, 양육권자에게 후견법원 상의 처분 및 관청의 처분이 부과되어야 하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관련될 수 있다. 독일의 0세 이상 6세 미만인 자는 불법행위능력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828조 제1항). 그러나 7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제한적 불법행위능력이 있어, 인식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828조 제3항). 따라서 경찰은 1차 조사기관으로서 민법상의 청구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3) 이관 등 처리절차

경찰은 모든 인지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아동 범죄인 경우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아동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검사에게 수사종결보고서(Abschlussbericht 900)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마감한다.⁴⁹⁵⁾

한편 이러한 경찰수사 업무 중 아동의 비행이 인지되었고, PDV 382(청소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개별 아동이 발달에 위협이 있다고 판정되면 청소년청에 신고하여 복지업무를 이관하게 된다.⁴⁹⁶⁾ PDV 382(청소년업무처리지침) Nr. 2.2.에 따르면 아동이 범죄피해자인 경우는 물론(Nr. 2.2.1) 범죄가해자인 경우에도 위협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집단범죄 또는 계속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아동이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PDV 382 Nr. 2.2.5).⁴⁹⁷⁾

한편, PDV 382 Nr. 2.2에서 청소년청에 신고하는 기준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경찰이 재량으로 위협을 판단한 후 청소년청에 신고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모든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이 청소년청에 신고되는 것은 아니다.⁴⁹⁸⁾ 또한 Bindel-Kögel/Heßler/Münder 실태조사에 의하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청소년청에 이관되는 경우 이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범죄 기준 30일 이내였던 경우가

494) Ostendorf, H., op. cit.(a), § 43 Rn. 8;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74-75.

495)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15, 191.

496) Ibid., p.16, 29.

497) Ibid., p.81.

498) Ibid., p.116.

45.7%, 31-60일이 23.3%, 60일 이상이 31%로 나타났다.⁴⁹⁹⁾ 일반적으로는 약 절반 정도만이 1달 내의 빠른 시간 안에 청소년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및 중범죄에서는 이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중범죄 등에서 청소년청의 빠른 개입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경찰 조사에서 아동의 복지보다는 '범행'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결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⁵⁰⁰⁾ 동 실태조사에서 아동범죄가 청소년청으로 많이 이송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범죄에 대하여 청소년청 이송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 내용이 있어, 아동이 위험에 처한 상황의 판단은 범죄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⁵⁰¹⁾

청소년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청소년청이 최대한 조기에 개입하는 것(사회법전 제8권 제52조 제2항 제1문)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형사절차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부조 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피해자 회복이 이루어지면 불기소의 가능성도 높아지며,⁵⁰²⁾ 특히 16세 미만 피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구금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⁰³⁾ 14세 이상 16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고, 「소년법원법」 제72조에 따라 구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제72조 제1항에서는 “교육에 관한 임시적 명령이나 다른 조치에 의해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속(미결구금)이 선고되고 집행”된다.⁵⁰⁴⁾

정리해 보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아동이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법행위는 분명 아동이 위험상황에 놓여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⁵⁰⁵⁾ 따라서 경찰이 아동의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 아동이 위험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요한 임무이다. 1차적으로 아동을 접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역·구역 전문가로 담당 구역에 대한 도시구획, 구조 등에

499) Ibid., p.114.

500) Ibid., p.114, 117.

501) Ibid., p.117.

502) 위의 <표4-1> 참조.

503)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82.

504) 국회도서관, 소년법원법[독일], 2017, 69면.

505)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82.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도 소년보호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⁵⁰⁶⁾

아동의 위험상황이라 판단되면 경찰은 청소년청(Jugendamt)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한다.⁵⁰⁷⁾ 청소년청으로의 이관은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활용되는 서면은 크게 3종류로, ① ‘보고서’ 또는 형사고소·고발 관련 서류 복사본(고소·고발자, 피해자, 피의자 범행시간, 범행장소, 범행결과, 피해액, 검사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재), ② 앞의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간단한 고소·고발 취지 및 아동 또는 가족의 주소가 기재), ③ ‘최종보고서’(수사결과 기재, 경우에 따라 신문조서의 내용이 기재, 신문과정에서 가족이 동반한 경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인상, 아동의 인지능력 등이 기재될 수 있음)이다.⁵⁰⁸⁾

이 외에도 경찰 수사에서 가정법원의 개입 필요성이 탐지되면,⁵⁰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⁵¹⁰⁾

4) 청소년담당관 및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이 이른바 아동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 “청소년 영역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인 ‘청소년(사건)담당관’(Jugendsachbearbeiter, Jugendbeamte, Jugendbeauftragte)이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경찰관이 투입된다.”⁵¹¹⁾ 사건이 다양하더라도 그들이 만나는 담당수사관은 상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각 지구별로 1-2명의 보호경찰 담당관이 소년사건처리를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⁵¹²⁾

이에 따라 청소년담당관은 소년범에게 적절한 조사 및 처분을 위한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소년범을 직접 만나고 경찰관련 질문에 대해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 외부에서는 소년범에 관련하여 소년복지, 소년보호, 소년검사, 소년법원, 그 밖의 여러 관청과 연락을 취하는 컨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역할을 수행한다.⁵¹³⁾ 경찰 중 주(州) 청소년담당관(Landesjugendbeauftragte)은 각 주의 조직

506) Ibid., p.83.

507) Eisenberg, U., op. cit.(b), § 1 Rn. 6.

508)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15.

509) Eisenberg, U., op. cit.(b), § 1 Rn. 6.

510) Persson, M., op. cit., p.116.

511) PDV 382 Nr. 1.2; DJVV-Journal, 1997, p.6.

512)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75.

구성에 따라 각 주 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의 예방부서 또는 기타 부서에 소속된다.⁵¹⁴⁾

또한 독일에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Schulverbindungsbeamte)를 운용하는 바이에른 주와 같은 사례도 있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2000년부터 지역 내 경찰수사대(Polizeispektion) 전역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으며, 학교 내 문제 및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상담 역할, 교장 및 학부모회와의 연계활동 등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역할을 행한다.⁵¹⁵⁾ 이들은 관할 경찰의 대표자로서 해당 학교와 밀접 접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⁵¹⁶⁾ 그렇지만 실제 아동의 범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전담경찰관보다는 상술한 청소년담당관이 더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 평가

독일의 경찰은 우리나라 법제에서와 달리 아동에 대한 수사 역할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사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인 아동 고유의 특성의 이해 문제 등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외적 조사 필요시에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수사를 위한 PDV 382(청소년업무처리지침)라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형사미성년자 아동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는 수사보다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진단하여 청소년청이나 가정법원 등의 개입을 요청하는 임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 측 행정절차 상 업무과다, 그리고 청소년청에서 경찰 측으로 피드백이 없다는 점 등이 이관업무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어,⁵¹⁷⁾ 경찰 단계에서 복지절차 이관 시 행정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어 실질적으로 아동의 위험을 제거하고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협력기관과의 피드백은 활동의 주요동력이 될 것인데, 앞으로 청소년청과 어떠한 방식으로 피드백할 것인지, 또한 이 피드백을 통해 경찰이 어떠한 이관된

513) Ibid., p.72.

514) Ibid., p.73.

515) 이주락·강욱·최대현·최낙범, 한국형 학교전담경찰관 표준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14, 40-41면.

516) 바이에른 경찰 홈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https://www.polizei.bayern.de/schuetzenvorbeugen/beratung/schule/, 검색일: 2020.9.28.).

517)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3. 나. 1) 사) 참조.

아동 범죄에 대해 추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나. 검찰 단계

아동의 범행은 소추불가한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아동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검사에게 수사종결보고서(Abschlussbericht 900)를 제출하고, 검사는 형사미성년을 이유로 형사절차를 정지하게 된다(「형법」 제19조, 「소년법원법」 제1조 제3항).⁵¹⁸⁾ 이로써 검사는 아동에 대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의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⁵¹⁹⁾ 즉, 검사는 형사미성년자 아동의 범죄에 관련한 수사에서는 특별한 처우나 처분을 하지 않는 소극적 주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어, 인지된 사건은 경찰이 조사를 시작되게 되고, 경찰의 수사내용은 모두 검사에게 이송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160조 제2항) 검사는 경찰이 다루었던 모든 형사미성년자의 범행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⁵²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에게도 아동 범죄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모여 있으므로, 검사는 형사절차 외 아동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부조 절차, 기타 가정법원의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⁵²¹⁾

검사는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로 아동의 위험사항을 인지하여 통보함으로써 이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검사는 아동의 반복된 범행 또는 제3자의 아동 학대 등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청소년청에 신고한다.⁵²²⁾ 특히 검사는 모든 소년법에 대한 절차 중지 시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109조 제1항 2문) 및 감독의무자에게 개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소년법원법 지침(JGGRiJGG) 제1조 2호).”⁵²³⁾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는 경찰이 수행하지만,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아동 범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⁵²⁴⁾ 경찰이 아동의 위험상황에 대해 청소년청에 통보하

518) Ibid., p.115, 191.

519) Ibid., p.191.

520) Ibid.

521) Ibid.

522) Ibid., p.195.

523) Ibid.; Eisenberg, U., op. cit.(b), § 1 Rn. 6.

524)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95.

면, 청소년청은 이 사안에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할지 우선 검토한다.⁵²⁵⁾ 이에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아동 범죄 및 양육권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가 이에 대해 답변하게 되는 것이다.⁵²⁶⁾ 「형사사건의 통보에 관한 명령」(MiStra) 제31호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보호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처분이 필요할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 이 사실은 검사가 법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제22a조, 「소년법원법」 제70조 제1항).⁵²⁷⁾ 또한 동 명령 제35호에서도 전반적인 미성년자, 즉 18세 미만자 보호를 위한 통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18세 미만자)가 특정범죄(형법각칙 제13장 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제35호 (2) Nr. 1), 미성년자(18세 미만자) 보호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아동·청소년 시설 감독청(사회법전 제8권 제45조)에 통지하고(제35호 (2) Nr. 2), 민법 제1666조 및 제1666a조 처분 또는 후견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가정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5호 (2) Nr. 4).

다. 법원단계

1)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상 처우

우리나라에서 저연령 비행소년에게 「소년법」상 임시조치(제18조)가 취해질 수 있고 보호처분(제32조)이 제한적으로⁵²⁸⁾ 부과될 수 있음에 반해, 독일에서는 만 14세 미만 자에게는 「소년법원법」상 법원에서 어떠한 형사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분과 유사하거나 비교될만한 형사절차상의 보호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관찰을 위한 수용(「소년법원법」 제7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14세 이상의 소년범에 해당할 경우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53-154e조

525) Ibid.

526) Ibid., p.196.

527) Ibid., p.204; Anordnung über Mitteilungen in Strafsachen (MiStra) in der ab dem 1. Mai 2019 geltenden Fassung vom 1. Februar 2019.

528) 예를 들어 수감명령, 장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제32조 제4항), 보호처분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보호처분의 종류보다 제한되지 않는 보호처분이 더 많다.

및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다이버전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⁵²⁹⁾ 특히 가해자-피해자-조정, 손해배상 등을 통해 미결구금과 같은 자유박탈적 처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등(「소년법원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원은 소년에 대한 공식적 제재를 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독일에서는 저연령 소년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제상으로는 저연령 소년에게도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될 것이다.

그 외 저연령 비행소년에게 질서위반금 부과 처분 및 강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질서위반행위는 소년법상의 형법위반행위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형법」(StGB) 제19조에 따라 아동에게 질서위반금 또는 질서위반구금을 가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⁵³⁰⁾ 그러나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절차에 따라 위임에 따른 신문을 받을 수 있다.⁵³¹⁾

2) 아동의 복지에 관련된 법원의 절차

범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형사절차상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법원에서 아동 복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련된 사항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시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송될 수 있다.

독일 민법상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권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법적 차원에서 아동의 복리에 대한 보호는 1차적으로 가정법원에 의해 수행된다.⁵³²⁾ 독일 「기본법」 제6조 제2항 2문⁵³³⁾에 따라 가정법원은 국가적 감독기관임과 동시에 부모의 부양·교육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민사법원으로서 14세 미만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으며, 「민법」 제1666조 및 제1666a조에 따른 아동복지절차에서의 결정을 담당한다.⁵³⁴⁾

529) Persson, M., op. cit., p.150.

530) BVerfGE 20, 323; BVerfGE 58I, 159; Eisenberg, U., op. cit.(b), § 1 Rn. 1, Rn. 22.

531) Ibid.; Meier, B.-D., Zwischen Opferschutz und Wahrheitssuche, JZ 1991, p.640; 소년보호 사건 절차에 대하여 Eisenberg, op. cit.(b), § 33-33b Rn. 5, 45 ff.

532) Gernhuber, J., and Coester-Waltjen, D., Familienrecht, 7. Aufl., München: C. H. Beck, 2020, § 62 Rn. 2.

533) 독일 기본법 제6조 (혼인, 가족, 혼인의 출생자) (1)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들의 역할수행에 관하여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

534)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98; Persson, M. op. cit., p.116.

독일 「민법」 제1666조는 자의 복리가 위험한 경우 법원의 개입가능성을 명문화하고 있다.⁵³⁵⁾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건강이나 아동의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부모가 위험을 방지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로는 “1.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조 및 의료복지와 같은 공적 부조를 청구할 것을 명령하는 것, 2. 취학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것, 3. 임시로 또는 불확정기간 동안 가정 혹은 타인의 주거를 이용하는 것, 주거를 기준으로 특정한 범위 내에 체류하는 것, 또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체류 중인 그 밖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4. 자녀와의 면접 또는 교섭을 금지하는 것, 5. 친권 소지자의 의사표시를 대체하는 것, 6.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것” 등이 있다(「민법」 제1666조 제3항).

인적 보호조치의 경우 가정법원은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한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는 그 밖의 공적 지원 방식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민법」 제1666a조 제1항). 즉, 청소년청의 원조는 가정법원의 부모분리 조치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⁵³⁶⁾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소년법」 제32조 제1호 처분인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목적이 ‘감호’인가, ‘복지 및 범죄예방’인가라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신상배려를 위하여 거소지정 시 자유박탈적 거소지정을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독일 「민법」 제1631b조 제1항 제1문).⁵³⁷⁾ 자유박탈적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경우, “자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며, 특히 중한 자신 또는 타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그리고 다른 방법 또는 다른 공적 부조를 통하여 이 위험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허용된다(제1631b조 제1항 제2문).”

535) 조은희, 민법상 자녀복리가 위험한 경우 가정법원의 역할 - 독일민법 제1666조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무 10(1), 2018, 161-162면.

536) 조은희, 앞의 글, 159면.

537) Gernhuber, J., and Coester-Waltjen, D., op. cit., § 7 Rn. 11.

등 조항은 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1666조 및 제1666a조에 의한 결정 외에 아동의 자유박탈적 거소지정이 자의 복지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⁵³⁸⁾

Bindel-Kögel/Heßler/Münder 실태조사(2004)에서는 주로 미성년자의 약물의존이 민법 제1631b조 이용의 주된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우울증, 자살위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교육·심리보호를 위해 이용된다고 한다.⁵³⁹⁾ 일반적으로 이 허가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기간에만 이용되며, 폐쇄적으로 수용된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개방형 주거집단 형태로 변경하여 수용하고 있다.⁵⁴⁰⁾

3) 평가

법원은 아동에 대한 형사절차나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 법제와 가장 큰 차이이다. 또한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강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그에는 주거에 관련된 강제성도 포함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자유박탈적 시설에 거소하게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독일에서도 가정법원이 소년법원과 유사하게 아동에게 명령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아동 및 소년범죄에 대한 법적처분 개선법안, 2001. 4. 12. BT-Drs. 14/3189)이 제기된 바 있다.⁵⁴¹⁾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 처분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유럽에서 아동의 지위는 범죄보다는 복지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소결

이로써 독일에서의 아동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독일에서 범행을 저지른 아동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소기관인 경찰·검사 단계에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하며, 이는

538) 독일 「민법」 제1631b조의 내용에 대하여 Persson, M., op. cit., p.201.

539)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202-203.

540) Ibid.

541) 법안명은 “Gesetz zur Verbesserung der gesetzlichen Maßnahmen gegenüber Kinder- und Jugenddelinquenz”이며 2001년 4월 21일 연방하원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Ibid., p.198.

법원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행정 및 조사 활동을 위해 청소년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PDV 382(경찰 청소년업무처리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복지적 관점에서 가해 아동, 또는 형사책임능력자의 범죄에 가담한 아동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아동일 수 있어, 그러한 경우 청소년청이 개입하여 사회부조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사건 아동을 가장 먼저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제1차기관인 경찰, 또는 경찰의 수사내용을 취득하는 검사가 이러한 청소년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기관이 된다. 때로는 이러한 신고는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사법보호관을 거쳐 청소년청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경찰/검사가 가정법원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다.

청소년청은 아동발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적 처우를 함으로써 아동에 개입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송하기도 한다. 가정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부모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을 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다.

독일의 범죄 아동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결국 형사절차상의 법률인 「소년법원법」, 사회부조법에 해당하는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의 유기적 결합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⁵⁴²⁾ 이러한 절차 흐름을 표로 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⁵⁴³⁾

542) 소년법원법, 사회법전 제8권, 가족법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Meier, B.-D. et al., op. cit.(a), p.85 ff. 참조.

543) 이 표는 본 절의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내용을 필자가 요약·정리한 것이다.

▶▶ <표 4-10> 독일 저연령 소년법에 대한 사법절차 흐름도

수사	기소		사회부조	재판	
경찰	→ 아동발달의 위험 신고		청소년청 (실무담당: 일반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개입	← 아동발달의 위험 신고	소년사법 보호관
수사 중지	→ 수사종결보 고서	검사 불기소			
→					가정법원 아동시설위탁

한편 각 기관의 평가 부분에서 살펴보았듯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별 피드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는 경우 경찰은 청소년청이 어떤 종류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업무의 원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⁵⁴⁴⁾ 독일에서도 연계기관 상호간의 협력의무 또는 협력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저연령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의 중심 기관은 청소년청,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요한 역할 수행자는 일반사회복지사라 볼 수 있다. 범행에 관련하여 아동의 위기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기관은 주로 경찰이며, 따라서 위기상황인 아동에 대한 청소년청 개입을 위한 서류는 주로 경찰에서 청소년청으로 송부되는데, 이 서류 중 형사고발서 또는 보고서 등은 아동이 처한 상황, 부모의 반응,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사회복지사(ASD)가 아동에게 양육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⁵⁴⁵⁾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범행 부분에서 경미범행으로 일반적 수준인지, 피해액을 통해 일반적 태도를 넘어서 수준인지 판별, 사회적 접촉 여부를 통해서 아동이 홀로 범행하였는지, 또는 놀이집단이 있거나 아동

544)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18.

545) Ibid., p.116.

범죄집단이 형성되었는지 판별하게 되며, 범행시간을 통해 학교 등교여부나 야간 활동 여부를 판별하고, 범행장소를 통해서 미래의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또는 하룻길, 쇼핑몰 등에서 범행이 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⁵⁴⁶⁾

이렇게 청소년청이 아동의 비행을 경찰로부터 신고받게 되면, 위의 서류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 보호자, 해당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이웃,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소년에게 어떠한 청소년지원법상의 급부가 필요할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⁵⁴⁷⁾

아동을 넘어서 형사책임자인 청소년에 대하여도 소년법원 제38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청소년청 뿐만 아니라 민간 청소년지원주체가 보호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청은 부모에게 지원기관 목록 등을 교부하여 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아동·청소년보호연합(Bundesarbeitsgemeinschaft Kinder- und Jugendschutz)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⁵⁴⁸⁾

또한 예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청소년청, 경찰, 학교 등은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예방의 주요 자원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주요한 기관이 되는데,⁵⁴⁹⁾ 이 기관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하여, 경찰 청소년담당관은 경찰 외부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담당자로 기능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역시 학교 내 상담, 학교 등에서 교장 및 학부모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 방지 등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⁵⁵⁰⁾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청소년청의 위기아동 지원

가) 아동 복지 관련 법규

독일의 아동 복지 관련법규는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546) Ibid., pp.121-122.

547)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63-64.

548) 연방 아동·청소년보호연합 홈페이지(<https://www.bag-jugendschutz.de/>, 검색일: 2020.6.27.).

549)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81.

550) 바이에른 경찰 홈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https://www.polizei.bayern.de/schuetzenvorbeugen/beratung/schule/>, 검색일: 2020.9.28.)

KJHG)이라 불리는 「사회법전 제8권」이다.⁵⁵¹⁾ 「사회법전 제8권」에서 청소년급부에 대해 다룬 관련 부분은 제2부 청소년지원의 급부 중 제1장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사회사업,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양육상의 보호, 제2장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 제3장 탁아시설 및 아동위탁관리 하의 아동 지원, 제4장 양육지원, 정신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초기성인을 위한 지원, 제3부 청소년지원의 다른 임무 중 제1장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제2장 가정위탁 및 시설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3장 사법절차에서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⁵⁵²⁾

이 중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4장 제1절(양육지원)에 해당하는 제27조 내지 제35조이다.⁵⁵³⁾ 이 부분은 소년 양육에 대한 급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양육 상담(제28조), 사회적 그룹(제29조), 양육·보호보호조인(제30조), 사회교육적 가족 지원(제31조), 일간집단양육(제32조), 양육보호를 위한 전일제(24시간) 위탁보호(제33조), 시설양육 등(제34조), 집중적인 사회교육적 개별보호(제35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민법 중 가족법(Familienrecht) 분야에서도 아동복지의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⁵⁵⁴⁾

나) 경찰에서 청소년청으로의 이관

범행과 관련된 아동은 사회복지행정의 소관이 된다.⁵⁵⁵⁾ 청소년청이 아동의 비행을 경찰로부터 신고받으면, 해당 아동과 법정대리인과 접촉하게 되고, 그 밖의 지역사회

551) 사회법전 8권은 독일의 아동범죄에서 예방적 조치를 위한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억압적 침해처분(구 소년복지법Das Gesetz für Jugendwohlfahrt (JWG) 제55조, 제61조 이하) 폐지 및 그에 대응하는 예방적 행정체계(사회법전 8권 제11조~제41조) 도입, ② 법률상 청구권 확립 (사회법전 8권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이하, 35a조, 39-40조, 41조), ③ 협력권 및 참여권(사회법전 8권, 제5조, 제8조, 제9조, 제36조, 제37조), ④ 정보보호권 명시(사회법전 8권 제61조~제68조). 등이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한다.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46-47.

552) Ibid., p.43 참조. 독일 사회법전 제8권의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사회법전 제8권 - 아동 및 청소년지원(독일), 2020 참조.

553) Fraczek, J., Schwere Straftaten von Kindern: Was passiert mit den Tätern?(<https://web.de/magazine/panorama/schwere-straftaten-kindern-passiert-taetern-31418422>, 검색일: 2020. 6.27.).

554) Fraczek, J., Schwere Straftaten von Kindern: Was passiert mit den Tätern?(<https://web.de/magazine/panorama/schwere-straftaten-kindern-passiert-taetern-31418422>, 검색일: 2020. 6.27.).

555) Persson, op. cit., p.116.

기관인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사), 교육기관 내외의 심리학 전문가, 주변인물(친척, 이웃) 등으로부터도 추가 정보를 제공받고, 통합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어떠한 사회법전 제8권상의 급부를 제공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⁵⁵⁶⁾ 경찰에서 청소년청으로 서류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 등에 관련된 문서작업이나 통계작업 등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⁵⁵⁷⁾

다) 청소년청 및 일반사회보호사의 역할

「사회법전 제8권」 제69조 제1항에 따라 독일 각 주는 주법에 의해 공공 청소년지원 주체를 정하며, 각 주(州)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군(郡)(Kreis)⁵⁵⁸⁾ 및 군에 속하지 않는 자치시(kreisfreie Stadt)에 아동·청소년지원 임무 수행을 위한 청소년청을 설립한다(동법 동조 제3항).

청소년청은 경찰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청 내부에서 사회 기초보장 관련 개별 사안을 다루는 주된 업무자는 일반사회보호사(ASD: Allgemeine Soziale Dienst)이다.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활동하며,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아동 비행에 대하여 아동복지적 개입이 요구될 때 연결고리가 된다.⁵⁵⁹⁾ 일반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일차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경찰 사법기관과 접촉하는 담당자임과 동시에 형식 없는 실질적 상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특히 사회적 집단작업 형식이나 양육 상담, 부모분리 시의 상담 등에서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청소년원조단체나 여타 상담 지원활동을 증대하는 중심 기관이 되기도 한다.⁵⁶⁰⁾

범행의 중대성 여부는 청소년청의 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중범죄에서 일반사회보호사의 개입이 더 적은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범죄의 중대성

556) Bindel-Kögel et al., op. cit., pp.63-64.

557) Ibid., p.119. 이 중 서류 누락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족의 이사, 전담인력 교체 등의 사유인 경우도 있고, 경찰의 신고가 소년사법보호관(Jugendgerichtshilfe)으로 접수되고, 그 곳에서 사안별로 선별해서 일반사회보호사에게 보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Ibid.).

558) 우리나라의 군(郡)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559)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53-54.

560) Rütting/Schone, ASD und Jugendhilfeplanung - Der Allgemeine Sozialdienst als Subjekt und als Gegenstand der Planung kommunaler Jugendhilfe. In: Greese u. a., Allgemeinde Sozialer Dienst. Jenseits von Allmacht und Ohnmacht. 2. Aulf., Münster 1996, 87 ff.(Bindel-Kögel, G. et al., op. cit., p.55에서 재인용)

보다는 가족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⁵⁶¹⁾ 이는 경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상점절도에서 손해액은 크지 않고, 양육 결손이 있는 경우가 드물면 일반사회보호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범행이 적발되고 부모가 이에 대해 대응·반응한 경우 청소년청의 추가 개입은 비례성원칙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⁵⁶²⁾

라) 청소년청의 원조 및 처분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청소년청이 가족과 접촉하면서 상담절차가 시작되고, 사회법전 제8권 제36조에 따라 개별적 원조계획이 수립된다.⁵⁶³⁾ 구체적인 원조방법으로는 사회법전 제8권 제17-35a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 일반지원, 양육지원, 기타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상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상담 및 개별원조계획수립, 실제적 사건상담, 이혼상담(사회법전 제8권 제17조), 학교심리상담사 상담, 약물·알콜중독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지원으로는 개별원조(동법 제18조), 위기상황 아동 보호(동법 제20조), 의료제공 중개, 지역사회 공익집단 원조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양육지원의 방법으로는 양육상담(동법 제28조), 사회집단작업(동법 제29조), 양육원조(동법 제30조), 가족 원조(동법 제31조), 주간집단양육(동법 제32조), 전일양육(동법 제33조), 시설양육(동법 제34조), 개별보호(동법 제35조) 등이, 기타 원조로서 치료 중개(동법 제27조, 제3조), 정신장애 원조(동법 제35a조)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⁵⁶⁴⁾ 이 중 빈번하게 이용되는 급부의 내용은 실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상담 및 이혼상담, 양육원조, 가족원조, 주간집단양육, 시설양육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⁵⁶⁵⁾

한편 「사회법전 제8권」에 따른 청소년원조 책임기관은 공적 기관과 사적 단체로 구분되어, 공적 기관 외 사적 단체인 청소년단체연합 뿐만 아니라, 소년복지단체연합, 교회, 그 외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시민연대, 기타 독립부조기관 등도 동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⁵⁶⁶⁾ 공적 청소년 원조기관과 사적 청소년 원조기관은 파트너관계로 협력하

561)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25.

562) Ibid.

563) Ibid., pp.136-137.

564)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40.

565) 아래 <표 4-11> 참조.

566) Winkler, J., Kap. 3. Kinder- und Jugendhilferecht, in: Schleicher, H., Jugend- und Familienrecht, 15. Aufl., München: C. H. Beck, 2020, p.47.

게 된다.⁵⁶⁷⁾ 예를 들어 양육의 경우 지역사회의 양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부조가 진행된다.

청소년청은 아동 및 부모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⁵⁶⁸⁾ 부모상담은 가장 경한 정도의 적극적 처분이며, 이를 넘어 자유박탈적 처분인 아동·청소년 감호조치(「사회법전 제8권」 제42조)가 가능하다.⁵⁶⁹⁾ 이러한 자유박탈적 처분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제3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구금은 법원의 재판이 없는 경우 늦어도 구금 개시일의 다음날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야 한다(「사회법전 제8권」 제42조 제5항).”⁵⁷⁰⁾ 이와 달리 더 긴 기간동안 자유박탈적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1631b조에 의거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된다.⁵⁷¹⁾ 만약 「사회법전 제8권」상 감호조치가 집행될 경우 13세 이상의 아동은 대부분 보호시설로 이송되며, 주로 24시간 관리형 주거공동체(여러 아동이 한 집에 기거하는 형태)에서 보호되고, 다시 아동복지시설들로 이송할 수도 있다.⁵⁷²⁾

마) 형사절차 및 가정법원 절차에의 협력

소년의 비행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양육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청은 이를 돕고 자녀 발전을 지원하게 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소년 복지를 보장할 의지가 없거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567) Ibid.

568) Persson, M., op. cit., p.116.

569) 아동·청소년 감호조치에 대하여 Trenzcek, T., Inobhutnahme zur Krisenintervention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SGB VIII Online-Handbuch(<https://www.sgbviii.de/s124.html>, 검색일: 2020.6.28.).

570) 국회도서관, 사회법전 제8권 - 아동·청소년지원[독일], 2020, 54면의 번역을 토대로 번역 오류만 수정하였다.

571) Kunkel, P.-C., Kepert, J., and Patter, A.,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7. Aufl., Baden-Baden: Nomos, 2018, § 42 Rn. p.113.

그 밖의 청소년부조기관의 임무에 대하여 Meier, B.-D. et al., op. cit.(b), p. 96.: 독일의 청소년청의 역할에 대해 정리한 한국문헌으로 김지연·김희진,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91면 이하 참조.

572) Trenzcek, T., Inobhutnahme zur Krisenintervention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SGB VIII Online-Handbuch(<https://www.sgbviii.de/s124.html>, 검색일: 2020.6.28.).

된다면 가정법원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민법」 제1666조), 일반사회보호사가 「사회법전 제8권」 제50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경우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상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가정법원을 지원”하며,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⁵⁷³⁾

한편, 「사회법전 제8권」 제52조 [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서의 협력] 조항은 소년법원법상의 대상인 14세 이상자의 소년 또는 젊은 성인자에 대한 청소년지원 급부 여부 등에 대한 협력 내용이어서 형사미성년자인 독일 저연령 비행소년에게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지만,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저연령 비행소년에게는 의미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 동법 제52조는 제1항에서 “청소년청은 「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서 「소년법원법」 제38조 및 제50조 제3항 2문에의 규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⁵⁷⁴⁾ 또한 제2항에서는 “청소년청은 조기에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자에게 청소년 지원의 급부가 고려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 경우에 해당되거나 적합한 급부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제공되었다면 청소년청은 검사 또는 판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서 이 소추예상이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소년법원법」 제45조) 또는 절차중단이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 「소년법원법」 제47조)를 심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또한 제3항에서 “청소년청의 직원 또는 「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2문에 따라 개입하는 승인된 민간 청소년지원 주체는 전체 절차 동안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소년법원법상의 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소년청 및 민간지원주체의 개입을 법규에 명시화하였다.

바) 예방적 조치를 위한 방안

청소년청의 주된 업무는 아동·청소년의 결손을 막고 발전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1차적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 주된 내용은 가정, 학교, 교육, 직업, 여가시간 등에 개입하는 것이다.⁵⁷⁵⁾ 특히 이미 결손이 일어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573)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p.63-64; 법조문 번역은 국회도서관, 사회법전 제8권 - 아동 및 청소년지원[독일], 2020, 74면.

574) 이하 사회법전 제8권 법조문의 번역은 법조문 번역은 국회도서관, 사회법전 제8권 - 아동 및 청소년지원[독일], 2020을 참조하고, 법명 등을 이 보고서의 용어에 맞게 통일하여 수정하였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독일 청소년지원의 실질적 목표이며, 이는 「사회법전 제8권」 제80조 소년지원계획(Jugendhilfeplanung)을 통해 실현된다.⁵⁷⁶⁾

사) 평가

Bindel-Kögel/Heßler/Münder 실태조사(2004)에 따르면 경찰조사 대상이었던 형사미성년자 중 청소년청으로 이관된 아동은 전체 범행 아동의 1/4 내지 1/5 정도에 해당할 뿐이었다.⁵⁷⁷⁾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형사미성년자를 청소년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 청소년담당관은 첫째, 필요성 없음, 둘째, 행정절차상 업무과다, 셋째, 경범죄와 달리 중범죄의 경우 청소년청에의 신고가 의미 없음, 넷째, 청소년청에서의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⁵⁷⁸⁾ 이 중 경찰이 청소년청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신고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점은 뉘른베르크의 '재범경향이 있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경찰 프로젝트(Polizeilich mehrfach auffällige Strafunmündige)'에서의 서류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이다.⁵⁷⁹⁾ 경찰에서 청소년청으로의 정보 이송에서 누락이나 실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뉘른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지적되고 있다.⁵⁸⁰⁾

이러한 비판점은 독일에서도 형사절차와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부조의 관계에서 양 관계를 넘나들며 아동의 사건 전체를 관장하는 담당자가 부재하며, 각 담당자간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상호 피드백 및 전체 담당자의 개입 등은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는 듯하다.

또한 경찰이 아동의 비행을 알려온 경우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 어떻게 개별사안에 관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⁵⁸¹⁾

575)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60.

576) Ibid.

577) Ibid., p.116.

578) Ibid., p.117.

579) Holthusen, B., Projekt: Polizeilich mehrfach auffällige Strafunmündige. Ergebnisbericht für die Fachpraxis, Deutsches Jugendinstitut e. V., 2011, p.23(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jugendkriminalitaet/DJI_Bericht_Strafunmuendige_nuernberg.pdf, 검색일: 2020.6.27.).

580) Ibid., pp.24-25.

581) Ibid., p.63.

도 지적되고 있다. 법적으로 정비된 규정으로는 「사회법전 제8권」 제3장 제50조~제52조에 명시화된 청소년청의 사법절차에의 협력의무 정도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가정법원 절차(제50조) 및 입양절차(제51조)에서의 협조와 상담, 고지 등의 협력에 대한 내용이며,⁵⁸²⁾ 범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청소년청이 취할 수 있는 고유의 원조업무는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동지원과 구분되는 범행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청소년청의 전문적 개입 내용이 발굴되어 명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지역사회 처우의 예: 베를린 시의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상황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마다 별개의 청소년청을 운영한다. 아래에서는 베를린 주를 예로 들어 저연령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구조 및 그 실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 지역사회 자원

저연령 소년 처우의 핵심이 되는 청소년청의 숫자는 주마다 상이하다. 베를린 주는 「사회법전 제8권」 제1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청을 운영하며, 청소년청은 12개의 각 구(Bezirk)별로 나뉘어져 있다. 각 구 내에서도 다시 여러 구획을 나누고, 한 구획내에서도 다시 3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주의 샤르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구(Bezirkamt Charlottenburg-Wilmersdorf)에서는 지역을 5개로 나누고 있고, 그 중 예를 들어 샤르로텐부르크-북(Charlottenburg-Nord) 지역팀 내에서는 다시 3개의 사무실을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⁵⁸³⁾ 사무소의 담당자 성명 및 전화, 연락처가 모두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 중 한 사무소(Standort Mierendorffstr. 24)를 예시로 살펴보면, 업무자는 총 5명으로, 소장 1명, 사무업무 1명, 청소년지원담당 2명, 아동데이케어센터 담당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2개의 사무소에서는 각 9명의 사회교육서비스담당자가 근무한다.⁵⁸⁴⁾

582) Ibid.

583) 베를린의 12개 청소년청의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를린 서비스 포털 - 청소년보호 - 아동 및 청소년 양육보호’(<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8305/>, 검색일: 2020.10.1.)

584) 샤르로텐부르크-북 지역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샤르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Bindel-Kögel/Heßler/Münder 실태조사(2004)에서는 아동범죄에 대하여 경찰에서 청소년청으로의 이관의 구체적 수치가 통계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청으로 보고된 서류를 조사하고, 일반사회복지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주(州) 범죄수사청 4명 인터뷰, 베를린 경찰 청소년담당관 7명에 대한 개별 인터뷰, 검사 10명에 대한 그룹인터뷰, 가정법원 판사 3명에 대한 개별인터뷰, 해당 청소년 11명에 대한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서류조사를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책임이 있게 된 소년범 72명에게 개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⁵⁸⁵⁾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청이 가족과 접촉하게 되면 가족들은 청소년청이 제공하는 급부에 대해 대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2004년 베를린 실태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서면으로 상담을 제공하였을 때 77.7%가 이에 응하였다.⁵⁸⁶⁾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청이 실제 제공한 구체적인 원조방식과 그 건수는 아래와 같다.

▶▶ <표 4-11> 사회법전 제8권에 따른 지원, 상담, 양육원조 실태

(단위: 빈도)

종류	구체적 원조내용	건수
상담	상담 및 개별원조계획수립	186건
	실제 문제 상담	33건
	이혼상담(사회법전 제8권 제17조)	23건
	학교심리상담사 상담	7건
	약물·알콜중독상담	3건
일반지원	개별원조(사회법전 제8권 제18조)	5건
	위기상황아동보호(동법 제20조)	5건
	의료제공 중개	3건
	지역사회 공익집단의 자유로운 원조	9건
양육지원	양육상담(제28조)	10건
	사회집단작업(제29조)	9건
	양육원조(제30조)	30건
	가족원조(제31조)	57건

프 지방청 - 청소년청 - 지역팀 샤프로텐부르크-북'(https://www.berlin.de/ba-charlottenburg-wilmersdorf/verwaltung/aemter/jugendamt/regionalteams/1-charlottenburg-nord/, 검색일: 2020.10.1.)

585)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9.

586) Ibid., p.135.

종류	구체적 원조내용	건수
	주간집단양육(제32조)	23건
	전일양육(제33조)	3건
	시설양육(제34조)	37건
	개별보호(제35조)	4건
기타원조	치료 중개(제27조, 제3조)	3건
	정신장애 원조(제35a조)	7건
	기타	29건
총		515건

출처: Bindel-Kögel, G. et al., op. cit., p.140.

조사기간 중 또한 「사회법전 제8권」에 따라 일반사회보호사가 가정에 개입한 건수는 총 26건(다수 응답가능)으로 자기 신고에 따른 감호 9건, 타인 신고에 따른 감호 4건, 가정법원에 정보제공 8건, 부모의 자녀양육권 박탈이 6건 있었다.⁵⁸⁷⁾

저연령 소년범의 문제를 순수한 복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독일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역시 소년범죄의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 연계가 이루어진다. 베를린 청소년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년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의 움직임은 작은 지역별로 담당부서의 소관사항을 넘어서는 연합적 예방모델, 이른바 지역사회 경영(Quartiersmanagement, neighborhood management)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후된 도시지역 개선사업, 도시 주변부, 지역주민 생활 개선사업 등에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정책적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인 도시발전·경제·보건·사회·학교·소년·스포츠 담당기관 외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주거연합, 임차인자문기구, 자영업자연합, 교회, 학교, 경찰 등이 연합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⁵⁸⁸⁾

나) 지역사회의 아동범죄예방 프로젝트 운영

베를린 주의 청소년·가족재단(Die Jugend- und Familienstiftung)⁵⁸⁹⁾은 1993년 설립된 재단으로 청소년 및 가정 업무를 위한 지원단체이며 이들을 위한 여러 장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⁵⁹⁰⁾ 도시 내 단체들의 교육학적 사회 개입을 강화하고, 여러

587) Ibid., p.142.

588) Ibid., p.62.

589) 베를린 청소년·가족재단(<https://jfsb.de/>, 검색일, 2020.10.20.)

장려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영역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⁵⁹¹⁾ 예를 들어 2020년 프로젝트로 청소년의 밤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프로젝트들이 제공되기도 하였다.⁵⁹²⁾

또한 독일 베를린 주에서 청소년의 범죄예방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로 KICK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젝트이다. 베를린 시내에 1개의 헤드쿼터, 8개의 시설을 운영하며, 그 외 복싱, 아이스하키, 스쿨팀이라는 특수프로젝트 장소도 운영한다.⁵⁹³⁾

KICK 프로젝트는 아직 사회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히 개입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배경으로 하여, 청소년청의 서류행정에 그치지 않고 경찰, 사회복지사 등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의미 있는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형식을 구축하였다.⁵⁹⁴⁾ 청소년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경찰 및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민간 청소년복지지원단체(Freie Träger)의 협력 업무를 통해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의 범죄 및 청소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서로 이해하며 협동하는 것까지도 고려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⁵⁹⁵⁾ 공익유한회사인 ‘스포츠·청소년사회복지회’(GSJ: Gesellschaft für Sport und Jugendsozialarbeit)라는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위 기관이 운영하는 ‘스포츠·청소년사회복지 연합’(VSJ: Verein für Sport und Jugendsozialarbeit e.V.) 및 베를린 주의 청소년 스포츠연합기관으로 약 2000개의 스포츠단체에서 약 240,0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베를린 청소년스포츠’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⁵⁹⁶⁾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협력 기관 중 가장 주된 기관은 사회스포츠기관, 학교, 경찰이고, 그 외 청소년시설, 다이버전 담당자, 청소년복지기

590) 베를린 청소년·가족재단 재단 소개(<https://jfsb.de/stiftung/>, 검색일: 2020.10.20.)

591) 베를린 청소년·가족재단 재단 소개(<https://jfsb.de/stiftung/>, 검색일: 2020.10.20.)

592) 베를린 청소년·가족재단. 2020년 장려 프로젝트(https://jfsb.de/stiftung/foerderprojekte/#anchor_193f3870_Tab-1-2017, 검색일: 2020.10.20.)

593) KICK 프로젝트 위치(<http://www.kick-projekt.de/standorte/>, 검색일: 2020.10.28.)

594) Heitmann, H. and Martens, T., 25 Jahre KICK - Sport gegen Jugenddelinquenz, Hrsg. von GSJ - Gesellschaft für Sport und Jugendsozialarbeit GmbH, 2018, p.16.

595) Ibid., p.19.

596) KICK 프로젝트 운영단체(<https://www.kick-projekt.de/ueber-uns/die-traeger/>, 검색일: 2020.10.28.)

관 등도 파트너 관계로 참여한다.⁵⁹⁷⁾

‘스포츠’는 청소년의 갈등상황에 대한 감정을 다루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이 스포츠를 즐긴다는 점,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내 갈등과 관련된 여러 감정들과 유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활동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⁵⁹⁸⁾ KICK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여가시간 활용, 청소년시설 및 학교 등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기 개입, 다양한 교육 및 사회 트레이닝 제공, 조기화해 관여 등이다.⁵⁹⁹⁾ 예를 들어 사회화 트레이닝 중 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급 그룹별로 또는 스포츠 클럽 별로 3일 이상 세미나로 진행하기도 한다.⁶⁰⁰⁾

3) 뉘른베르크 시의 형사미성년자 재범방지 프로젝트

독일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 시에서는 ‘재범경향이 있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경찰 프로젝트’(Polizeilich mehrfach auffällige Strafunmündige)를 통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서 수회 경찰에 범죄사실이 발각된 아동들이지만 상습범이나 강력범으로 평가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의 서류를 협동하여 분석·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뉘른베르크 청소년청, 미텔프랑켄 경찰청, 독일 청소년연구소의 아동·청소년범죄예방담당부서의 협동으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2008년 가정상황, 이민자배경 여부, 나이, 성별, 이미 행한 범행의 수, 방법, 경중의 정도, 재범위험성 등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29개의 사건 샘플을 선별하여 서류 분석을 실시하였다.⁶⁰¹⁾ 이 때 분석과정에서 기관의 협업 상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 내용은 청소년청의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관련기관은 청소년청으로 누락되거나 시기가 늦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장소·관할 변경으로 인해 정보가 손실되는 점, 적절한 지원방법에 대한 생각이 관계기관마다 서로 상이하다는 점, 형사미성년자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여야 해서 기관간 협업에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이다.⁶⁰²⁾

597) Heitmann, H. and Martens, T., op. cit., p.23, 26.

598) Ibid., p.22.

599) Ibid., p.23.

600) Ibid., p.25.

601) Holthusen, B., op. cit., p.12.

4. 소결

우리 저연령 소년법제와 비교하였을 때 독일의 소년 사법절차제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호처분'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행을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아동복지의 관점에서만 국가가 개입할 뿐이다. 우리 법제에서는 저연령 소년범에게 소년법상 1-10호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이 처분은 '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유제한적 처분이다. 예를 들어 4호처분인 보호관찰에 따라 야간의 출제한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6-7호 처분 시 시설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년법상 1-10호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실무상 처분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와 달리 적어도 아동의 '범죄'에 관하여는 어떠한 강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양국의 형사절차적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어떠한 방법이 아동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더 나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형사미성년자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독일의 방식은 저연령·우범소년을 폐쇄형 시설에서 조사받게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저연령 소년의 범죄를 조기에 아동복지와 위험에 관련시켜 검토하고, 아동의 위험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로 이관하여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관점이 강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한 경찰의 내부지침을 통해 이러한 이관작업을 정형화·공식화하고 있는 점은 우리 법제에서도 참조할 만한 점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청이 범행을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의 아동복지의 주무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연령 소년범의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각 지역사회에 존재하지 않고 민간단체인 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공기관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시 독일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602) Ibid., pp.23-27.

하지만 독일에서도 여전히 경찰과 사법기관, 복지서비스,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전체의 관리를 관장하는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약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4절 | 스웨덴

1. 개관

가. 전반적인 소년법에 대한 처우 이념

1) 소년법의 정의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은 15세이다. 스웨덴에서 소년법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인 1965년 제정된 「소년(특별처우)법」[LUL(1964:67): Youth Offenders (Special Provisions) Act]⁶⁰³⁾ 규정에 의해 15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자가 된다.⁶⁰⁴⁾

스웨덴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5세인 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다.⁶⁰⁵⁾ 이 연령 기준은 한국의 14세보다 높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독일과 비교할 때도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반대의 방향이다. 일견 형사책임연령 기준이 높을수록 덜

603) Andersson, S., National Report of Sweden in the Project "Keeping Youth Away from Crime - Searching for the Best European Practices" Swedish Perspective - April 2014", International Juvenile Justice Observatory(OJJJ) & Providus - Centre for Public Policy, 2014, p.4.

604) Dünkel, F., op. cit., pp.44-45.

605) EU 연합 구성국인 유럽 내에서도 형사책임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유럽청소년범죄 규칙에 따르면 소년법 규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그 나이를 특정하는 경우 그 연령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2008 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Rule 4; Dünkel, F., op. cit., p.43.). 범유럽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럽 평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15세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Ibid., p.70.).

처벌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연령기준이 언제나 처벌을 경감하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는데, 반대로 형사책임연령을 낮게 정하면서 낮은 연령의 소년범에게는 처벌 대신 교육적 제재만을 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⁰⁶⁾ 또한 형사책임의 법적 연령 수준을 통해 소년정의모델 또는 복지모델 중 어떤 모델이 더 처벌적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⁶⁰⁷⁾ 실제, 스웨덴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에서는 앞서 살펴본 독일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접근이 더 느슨해 보이지만, 소년범에 대한 관점에서는 독일보다 형사적으로 더 엄격한 신고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⁶⁰⁸⁾

2) 소년범 처우 이념

스웨덴의 소년범 처우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은 사회복지모델에서 신고전주의(Neoclassicism)로의 변화로, 그리고 2000년대부터 다시 청소년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02년 처음으로 관련법에서 아동 범행에 대한 사회복지의 가치를 명시하였고, 1964년 소년범을 다루는 특별법이 신설되었으나, 1977년부터는 소년범 개인에 대한 처우 필요성에 관계없이 정의의 원칙과 범죄와 처벌 사이의 비례 관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신고전주의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⁶⁰⁹⁾ 1980년에는 소년교도소가 폐쇄되고 일반교도소로 합병되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조되었고, 다만 동시에 교도소 수용 하한 기준을 18세에서 21세로 변경하여 18-20세의 초기성년이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⁶¹⁰⁾ 1999년 다시 청소년 보호가 강조되면서 「소년안전보호법(폐쇄기관처우법)」[LSU(1998:603): Secure Youth Care Act, Act on Closed Institutional Treatment]⁶¹¹⁾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SiS(기관처우 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15-17

606) Dünkel, F., op. cit., p.43.

607) Ibid., p.46.

608) Persson, M., op. cit., p.100.

609) Ibid., pp.97-100.

610) Ibid., p.100.

611) Lightowler, C. and Dearie, C., Case Study: Secure Care in Sweden, Centre for Youth & Criminal Justice, 2016. p.2.(https://strathprints.strath.ac.uk/68198/1/Lightowler_Dearie_CYCJ_2016_secure_care_in_sweden.pdf, 검색일: 2020. 6. 27.)

세 소년범에게 교도소가 아닌 대안적 폐쇄 처우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⁶¹²⁾ 2007년의 소년범 처우에 대한 개정에서는 청소년 재범방지 목적을 위해 그동안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담당해왔던 15-17세 소년범들에 대한 처우 필요가 너무 자의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년보호 및 소년지역사회서비스를 도입하였다.⁶¹³⁾ 현대의 스웨덴의 소년범 처우는 형사사법절차와 아동복지절차의 상이한 두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⁶¹⁴⁾

나. 소년범 형사절차 개관

범행을 저지른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일반형사절차의 특례규정대상이 되고, 이들에게 성인형법의 적용도 가능하다.⁶¹⁵⁾ 18세 이상의 자는 원칙적으로 성인으로 형법상의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 미만이라면 소년범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다.⁶¹⁶⁾ 즉, 만 21세 이전에 범행을 한 초기성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려를 통해 형법상 법정형보다 경미한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⁶¹⁷⁾

다만 소년법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성인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다.⁶¹⁸⁾ 스웨덴에서는 일반 사법시스템에 소년범 절차를 산입시켜서, 판사는 소년범, 초기청년, 성년을 모두 관할하고,⁶¹⁹⁾ 다만 소년범이 대상이 될 경우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⁶²⁰⁾ 선고형 역시 성인 기준으로 부과한 후 소년범 등에 대한 감경을 실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⁶²¹⁾ 이러한 형식 역시 스웨덴의 처우이념이 이른바 '신고전 주의'라고 평가되는 지점이다.⁶²²⁾

15세 이상 21세 미만자에게는 소년구금·보호(youth custody)와 같은 자유박탈적

612) Persson, M., op. cit., p.102.

613) Ibid.

614) Ibid., p.103.

615) Dünkel, F., op. cit., pp.44-45.

616) Ibid.; Papadodimitraki, Y., op. cit., p.2.

617) Papadodimitraki, Y., op. cit., p.4.

618) Andersson, S., op. cit., p.5.; Papadodimitraki, Y., op. cit., p.2.

619) Persson, M., op. cit., p.40.

620) Dünkel, F., op. cit., p.47.

621) Persson, M., op. cit., p.40.

622) Ibid.

처분의 부과가 가능하다.⁶²³⁾ 일반교도소 체계 내에서 25세까지 초기성인 수용자를 담당하는 특별 부서가 소년법을 담당한다.⁶²⁴⁾ 21세 미만자가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성인 교도소와 분리된 시설에 수용된다.⁶²⁵⁾

다. 스웨덴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아래에서는 스웨덴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두 가지 경향을 소개한다. 최대한 구금을 회피하고 대안적 방법을 마련하는 모습,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이른바 ‘제재’의 일종으로 편입시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비록 15세 이상인 형사책임능력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연령 소년법에게는 여전히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연관성 있는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1) 구금 회피 - 다이버전과 폐쇄형 소년처우기관

스웨덴은 형사책임연령을 15세로 높게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복지를 지향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⁶²⁶⁾ 이는 특히 청소년의 구금을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는데,⁶²⁷⁾ 형법전 상으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최고도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정하고 있어(BrB 제5조)⁶²⁸⁾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금이 가능하다.⁶²⁹⁾ 18세 이상 21세 미만 초기성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유가 필요할 때 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금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은 동일하고, 이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구금이 가능하다.⁶³⁰⁾

청소년 구금의 대안으로 스웨덴이 선택한 방식은 다이버전과 폐쇄형 소년보호기관(Closed Youth Care Institution)의 도입이다. 첫째,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623) Papadodimitraki, Y., op. cit., p.2.

624) Dünkel, F., op. cit., p.45; Papadodimitraki, Y., op. cit., p.2. 15세-18세 아동에 대한 특별처우에 대하여 Andersson, S., op. cit., p.8.

625) Persson, M., op. cit., p.138.

626) Andersson, S., op. cit.

627) Dünkel, F., Ibid., p.67.

628) Persson, M., op. cit., p.138.

629) Dünkel, F., op. cit., p.60; Papadodimitraki, Y., op. cit., p.2.

630) Dünkel, F., op. cit., p.67; Papadodimitraki, Y., op. cit., p.2.

주로 복지행정에서 관할하도록 정기적으로 이송시킴으로서 전통적인 복지모델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복지 관청으로 이관시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1999년 다이버전의 한 방식으로 확대된 것이다.⁶³¹⁾ 이들에게는 형벌보다는 사회의 특수한 조치, 보조,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기소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고될 뿐이다.⁶³²⁾ 2008년의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로의 이송은 전체 형사사건의 2/3에 달하였다.⁶³³⁾

둘째, 소년구금의 대안으로 1999년 도입된 폐쇄형 소년보호제도는 소년범에 대한 자유박탈적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최대한 역효과를 축소시키면서도 개인의 범행의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고안되었다.⁶³⁴⁾ 이 제도의 대상자는 18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으로 21세 이전에 평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⁶³⁵⁾ 이 제도는 스웨덴의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할 정부기관인 SiS(기관처우 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의 통제 하에 특별 시설에서 집행되며, 「소년안전보호법」(LSU)⁶³⁶⁾에 따른 체류기간은 단기 14일에서 장기 4년까지이다.⁶³⁷⁾

2) 소년서비스 및 소년보호(Youth Care)

2007년에 있었던 스웨덴 소년사법 개혁에서는 사법부의 통제영역을 복지서비스까지 확장하였고, 이로써 비례성원칙,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적응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⁶³⁸⁾ 당시 개정에서는 청소년에게만 부과하는 제재로서 청소년을 사회복지서비스에 배치하는 제재를 신설하였고, 이는 이러한 제재의 명칭은 ‘소년서비스(Youth Service)’ 및 ‘소년보호(Youth Care)’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⁶³⁹⁾ 예전에는 보조적으로 이용되던 소년법상 처분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독립

631) Dünkel, F., op. cit., p.60, 67.

632) Papadodimitraki, Y., op. cit., p.2.

633) Dünkel, F., op. cit., p.67.

634) Persson, M., op. cit., p.137.

635) Ibid.

636) Lightowler, C. and Dearie, C., Case Study: Secure Care in Sweden, Centre for Youth & Criminal Justice, 2016. p.2.

637) Persson, M., op. cit., p.137.

638) Dünkel, F., op. cit., p.60; Papadodimitraki, Y., op. cit., p.3.

639) Dünkel, F., op. cit.

된 하나의 처분으로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범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부과될 수 있다.⁶⁴⁰⁾ 이는 여전히 소년이 사회복지법[SoL(2001:453): Social Services Act] 또는 「소년특별처우보호법」[LVU(1990:52): the 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s Act]에 따라 청소년이 특별한 돌봄이나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신설된 것이다.⁶⁴¹⁾

소년서비스로는 무급근로(20-150 시간)와 프로그램 활동 또는 교육 수강 등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소년보호제도로는 다양한 형식의 치료로서 복지 당국이 조직하는 상주처우시설 등이 운영된다.⁶⁴²⁾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처우 실태

스웨덴에서 15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이어서 기소대상이 아니고 소년범으로 제재 받지 않으므로, 스웨덴 수사단계에서의 저연령 소년범의 처우실태에 대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⁶⁴³⁾ 그러나 예외적으로 15세 미만 비행소년에 대하여도 수사가 가능할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지켜져야 할 수사단계에서의 특별한 처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구금 가능성

스웨덴 소년법 제31조는 형사미성년자인 15세 미만자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한계와 예외를 설명하고 있는 주요 조문이다. 동법 동조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이 형사범죄의 용의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항상 사회복지국에 알려야 하고, 사회복지국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통하여서만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해당

640) Persson, M., op. cit., p.103.

641) Ministry of Justice Sweden, Fact Sheet - Interventions With Young Offenders, 2006, p.3.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2abd592d47e437fa1372a862b2a988c/interventions-with-young-offenders>, 검색일: 2020. 10.25).

642) Dünkkel, F., op. cit.

643) Andersson, S., op. cit., p.5.

아동에 대한 모든 조치·처분에 대해 책임이 있고 관여하여야 한다.⁶⁴⁴⁾ 이러한 사회복지국에 의한 수사개시는 강압적인 처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처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배경으로 경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국에서 요청하는 것이다.⁶⁴⁵⁾

그러나 2010년 법개정 이후 동법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 또는 15세 이상자가 가담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용의자가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31조에 따른 경찰의 필요적 수사 대상이 된다.⁶⁴⁶⁾ 이러한 법률개정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인격적·재정적 피해보상 원화와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다.⁶⁴⁷⁾ 동 조문의 이러한 예외적 수사규정은 15세 미만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5세 미만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는 범행 중 사라진 물건이나 몰수품이 있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⁶⁴⁸⁾ 하지만 대상 아동이 12세 미만이라면 동법 제31조에 따른 수사 역시 특수한 경우로 다시금 제한되어 실시된다.⁶⁴⁹⁾

그 외에도 15세 미만자에 대한 마약검사 역시 가능하다.⁶⁵⁰⁾ 15세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의 대상인 경우 사진과 지문등록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다만 이는 해당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⁶⁵¹⁾ 15세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체포되지 않지만, 석방 결정 이후 3시간, 또는 인터뷰 종결 이후 3시간 동안 억류될 수 있다.⁶⁵²⁾

2)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금 및 조사방법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조사는 영상녹화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조사시간

644) Andersson, S., op. cit., p.4 f., 6.

645) Ibid., p.5.

646) Ibid., p.4 f., 6; Papadodimitraki, Y., op. cit., pp.3-4.

647) Andersson, S., op. cit., p.7.

648) Ibid.

649) Ibid.; Papadodimitraki, Y., op. cit., pp.3-4.

650) Andersson, S., op. cit., p.7.

651) Ministry of Justice Sweden, op. cit.

652) Papadodimitraki, Y., op. cit., p.3.

및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⁶⁵³⁾ 또한 조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증인인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조사 시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⁶⁵⁴⁾ 법원은 검사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15세 미만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⁶⁵⁵⁾ 일반적으로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될 것이다.⁶⁵⁶⁾

조사 전 아동·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인터뷰 전 사전 미팅을 실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⁵⁷⁾ 예비조사를 위한 청문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배석하여야 하고, 15세 미만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피의자신문에 부모나 후견인, 사회복지서비스 측의 대리인이 동석하여야 한다.⁶⁵⁸⁾ 18세 미만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의 지연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전문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며, 이들은 정규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3년마다 15주 동안 인터뷰 기술·기법 등을 연수받는 등 지속적인 전문과정 교육을 받는 인력이다.⁶⁵⁹⁾ 조사기간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6주 이내에 마무리되고 있다.⁶⁶⁰⁾

아동은 수사 및 재판과정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아동·청소년 전문조사관과 유사하게 각 지역 검찰청에서도 소년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검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청소년을 담당하는 검사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⁶⁶¹⁾

653) Ibid.

654) Ibid.

655) Ministry of Justice Sweden, op. cit., p.3.

656) Ibid.

657) Ibid.

658) Ibid.; Sarnecki, J. and Estrada, F., Juvenile Crime in Sweden, A Trend Report on Criminal Policy, The Develop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tockholm University, Stockholm(Andersson, S., op. cit., p.7에서 재인용).

659) Papadodimitraki, Y., op. cit., p.3.

660) Ibid.

661) Ibid.

나. 사법기관의 처우

형사미성년자는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처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15세 이상 소년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특칙을 간단히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저연령 소년범이 수사단계에서 처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5세 이상 소년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우 내용을 비교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1) 특별판사의 지정

스웨덴에서 소년범은 특별사법절차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재판부의 관할이 되지만, 「소년법」 제25조에 따라 소년법 특별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특별판사에게 소년범에 대한 특별연수를 이수 또는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⁶⁶²⁾

2) 재판절차에서의 특칙

재판절차에서 아동의 진술은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사법절차상 아동의 진술 역시 원칙적으로 공중에 공개되고, 다만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그래피, 납치와 같은 특수범죄의 경우 공중접근 및 비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⁶⁶³⁾

3) 기소, 재판 및 처분의 집행

스웨덴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범은 거의 기소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로 이관되며, 특히 공적·사적 법익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된다.⁶⁶⁴⁾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연령에게, 처분에 앞서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⁶⁶⁵⁾ 이러한 소년 형사절차상 중재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하여 실행하게 된다.⁶⁶⁶⁾ 하지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중재 역시 특수한 이유가 존재할 때만

662) Persson, M., op. cit., p.40, 222.

663) Papadodimitraki, Y., op. cit., p.4.

664) Ibid., p.3.

665) Ibid., p.4.

666) Ibid.; Ministry of Justice Sweden, op. cit., p.3. 관련법은 2002년 발령된 스웨덴의 중재법 [The Mediation Act(2002:445)]이다.

진행될 수 있다.⁶⁶⁷⁾

한편 사법기관은 처분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5세 이상 소년에게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소년보호 및 폐쇄형기관처우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집행은 사회복지서비스 측에서 맡게 되며, 그 감독은 검찰이 담당한다.⁶⁶⁸⁾

3. 저연령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스웨덴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형사미성년자인 아동의 범행에 대한 소년보호에 있어 형사절차상의 처우보다는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12세 미만은 예외적인 조사조차도 손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15세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국에 사건을 이관한다.⁶⁶⁹⁾ 경찰은 아동 및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 중이라도 즉각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요청한다.⁶⁷⁰⁾ 사회복지사, 경찰, 검사 및 기타 관련서비스단체는 형사절차에서 협력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는 것이다.⁶⁷¹⁾ 이렇게 기관 간의 개입과 협력이 일상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에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 및 공식적 절차도 존재한다고 한다.⁶⁷²⁾

경찰은 불가피한 아동에 대한 조사 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형사절차상에서도 조기에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입되어 이들이 예비조사 청문에 배석하고, 15세 미만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도 동석하는 등으로 아동이 형사절차

667) Papadodimitraki, Y., op. cit., p.4; Ministry of Justice Sweden, op. cit., p.3.

668) Persson, M., op. cit., p.223.

669) Andersson, S., op. cit., p.4 f.

670) Ibid., p.2.

671) Ibid., 그러나 무엇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Andersson, S., op. cit., p.2.).

672) Papadodimitraki, Y., op. cit., p.2.

진행 시 겪게 될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⁷³⁾ 또한 형사사법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협력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화된 협력방식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있다.⁶⁷⁴⁾

또한 경찰의 수사 부분에서 언급한 제31조 수사는 사회복지행정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어서,⁶⁷⁵⁾ 그 형식은 수사이지만 목적은 소년범의 궁극적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활동이 사회복지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스웨덴 각 기관의 연계활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 사회복지적 처우절차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5세 미만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이 아동을 관할하며, 사회복지국이 필요적으로 15세 미만자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경찰에서 사회복지행정으로 사건이 필요적으로 이송된다.⁶⁷⁶⁾ 이들의 처우를 관할하는 법은 「소년법」이 아닌 「사회복지법」(SoL: Social Services Act)⁶⁷⁷⁾ 또는 「소년특별처우보호법」(LVU: 1990:52)⁶⁷⁸⁾이다.⁶⁷⁹⁾ 경미 사건의 경우 당사자 소년과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범행의 동기가 된 경제적 문제, 가정 내 갈등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시도된다.⁶⁸⁰⁾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치료, 아래에서 언급할 연락담당관을 배치하고,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할 수도 있다.⁶⁸¹⁾

673) Andersson, S., op. cit., p.7; Papadodimitraki, Y., op. cit., p.3.

674) Ibid.

675) Andersson, S., op. cit., p.7.

676) Andersson, S., op. cit., pp.4-5.

677) 원어: Socialtjänstlag(2001:453).

678) 원어: Lag (1990:52) med särskilda bestämmelser om vård för unga.

679) Andersson, S., op. cit., p.5; Persson, M., op. cit., p.127.

680) Andersson, S., op. cit., p.5.

681) Andersson, S., op. cit., pp.5-6.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연락담당관(Liaison Officer)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년법, 특히 15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담당자가 지정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일 수도 있고, 강제 보호조치의 필수제도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연락담당관을 지정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을 형성할 수 있어,⁶⁸²⁾ 우리 법제의 보호관찰 제도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잠시 언급 하였던 「소년법」 제31조에 따른 필요적 개입이다. 15세 미만 아동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경찰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해야만 경찰의 조사가 시작 될 수 있고, 이 조사는 강제적 조치가 아닌 복지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복지조치는 개인의 범죄원인 제거를 목표로 개인과 부모, 사회복지사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⁶⁸³⁾

2) 사회복지위원회(Barnavardsnämnden)의 역할

스웨덴의 아동에 대한 형사절차 및 사회복지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사회복지위원회이다. 15세 미만 범행을 저지른 아동은 형법 대신 사회복지위원회의 통제 하로 이관된다.⁶⁸⁴⁾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선출위원으로 구성되며, 0-21세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보호를 담당한다.⁶⁸⁵⁾ 사회복지위원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수단으로 충분치 않을 때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조치로 법정후견인에 대한 경고, 아동에 대한 경고, 가정 및 아동 감독, 그리고 가장 강한 조치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⁶⁸⁶⁾

사회복지위원회의 담당 연령은 0-21세까지이므로, 15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682) Ministry of Justice Sweden, op. cit., pp.2-3.

683) Andersson, S., op. cit., pp.5-6.

684) Persson, M., op. cit., p.97.

685) Lightowler, C. and Dearie, C., op. cit., p.4.

686) Persson, M., op. cit., p.97.

년에게 형사처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⁶⁸⁷⁾ 예를 들어 사회복지위원회는 15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년특별처우보호법」[LVU(1990:52)]를 적용하여 법원에 강제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⁶⁸⁸⁾ 이 법률의 적용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하므로 15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소년은 「소년특별처우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복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안전보호법」(LSU)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⁶⁸⁹⁾ 두 종류 모두 폐쇄형 시설 처우이며, 치료 필요성에 관계없이 정기간으로 처우기간이 설정된다. 「소년특별처우보호법」(LVU)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년안전보호법」(LSU)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유죄판결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⁶⁹⁰⁾

3) 기타 지역사회자원의 역할

그 외에도 수사기관은 소년범죄에 특화된 수사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경찰위원회는 소년범죄 수사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소년범 케이스에서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 그 이유, 수사기간 단축을 위한 방법 개발, 소년범피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환경 및 식별,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⁶⁹¹⁾

경찰과 사회복지담당기관 외에도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협력방안을 통해 아동의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⁶⁹²⁾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 개인을 지원하며,⁶⁹³⁾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개입(Community and Professional Engagement)을 통하여 지역 문제해결 파트너십, 시민참여 등의 방법으로 소년범 예방에 힘쓴다.⁶⁹⁴⁾

687) Ibid.

688) Lightowler, C. and Dearie, C., op. cit., p.4.

689) Ibid.

690) Ibid.

691) Andersson, op. cit., p.6.

692) Ibid., p.13.

693) Ibid., p.15 ff.

694) Lightowler, C. and Dearie, C., op. cit., p.6, 27. 이 글에서는 스웨덴 내 소년범 예방 프로젝

또한 지역에는 범죄 발각 후의 처우 근거법인 「소년특별처우보호법」(LVU)의 적용을 받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거주시설(Residential Home)들이 있다.⁶⁹⁵⁾ 이러한 거주시설에서는 개별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그에 걸맞는 처우 또는 치료 계획이 수립되고, 해당 청소년, 부모, 사회복지서비스가 함께 이 계획수립에 참여한다. 평균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보호가 이루어진다.⁶⁹⁶⁾

스웨덴에서의 이러한 치료기관 연계의 특징은 민간지역사회기관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SiS(기관처우 위원회)가 모든 정책, 절차를 결정하여 보호·치료 실시 및 거버넌스를 감독한다.⁶⁹⁷⁾ 이러한 점은 처우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감독 및 자율성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되며, 기관 간의 협력에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평가되고 한다.⁶⁹⁸⁾

4. 소결

스웨덴은 범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독일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상의 별다른 처우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교적 높은 연령인 15세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였으면서도 별도의 처우를 부과하지 않는 점은 독일과 유사하게 우리 법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스웨덴에서는 형사책임능력자인 청소년에 대한 처우에서도 최대한 형법보다는 사회복지적 관점을 접목시킨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트로 Social Action Groups, Information platform - SSPF, Young KRIS Projects, Mentors in Violence Prevention - MVP 등을 들고 있다.

695) 예를 들어 'Rebecka' 홈은 폭력적이고 높은 위험성이 있는 여성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방문기에 대하여 CYCJ, 'Spot The Difference': Sweden International Case Study (<http://www.cycj.org.uk/spot-the-difference-sweden-international-case-study/>, 검색일: 2020.10.20.) 참조.

696)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 홈페이지 - LVU - Assessment and Treatment in Special Residential Homes for Young People, <https://www.stat-inst.se/om-sis/om-webbplatsen/other-languages/the-swedish-national-board-of-institutional-care/> 에서 하위메뉴 LVU - Assessment and Treatment in Special Residential Homes for Young People 로 이동(<https://www.stat-inst.se/om-sis/om-webbplatsen/other-languages/the-swedish-national-board-of-institutional-care/lvu-assessment-and-treatment-in-special-residential-homes-for-young-people/>, 접속일: 2020.10.20.).

697) CYCJ, 'Spot the difference': Sweden International Case Study(<http://www.cycj.org.uk/spot-the-difference-sweden-international-case-study/>, 검색일: 2020.10.20.).

698) Ibid.

도 최후수단성에 입각하여 구금을 최소화하고, 폐쇄형 시설을 최대한 치료에 적합한 시설로 디자인하였다는 점, 사회복지서비스 부과를 청소년에게 부과하는 제재로 고안하였다는 점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형사제재와 보호처분을 확연히 구분하지 않고 제재의 종류에서 사회복지적 처우를 추가하는 스웨덴의 제도는 우리 소년법제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형식과 닮은 점이 있다.

15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담당관(Liaison Officer) 개념 역시 우리의 보호관찰관 제도와 유사해 보인다. 다만 연락담당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소속이라는 점이 우리 보호관찰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이 연락담당관 제도 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지정을 통해 소년의 보호를 위한 처우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소년범 처우에서 손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소년범에 대한 복지적 처우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의 처분과 사회복지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보호적 처분이 병렬적으로 존재하여 그 중 하나가 선택되며, 이러한 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폐쇄형 소년보호제도 역시 국가가 통제하여 관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및 SiS(기관처우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년보호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민간주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 앞의 3.에서 살펴보았듯 국가 주도의 방법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스웨덴의 성과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절 | 일본

이 절에서는 일본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소년사법제도 개관 및 저연령 비행소년의 처우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처분·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자원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한다.

1. 일본의 소년사법 이념 및 소년법 개관

가. 일본 소년사법의 이념

일본에서도 소년이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소년법에 근거한 특별 절차하에서 사건이 처리된다. 이는 소년이 성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고 또한 가소성(可塑性)이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성인과는 다른 처우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소년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22년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에 당시 미국의 소년법원제도 이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소년법이 성립되었다.⁶⁹⁹⁾

일본 소년법⁷⁰⁰⁾은 제1조에서 ‘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비행이 있는 소년에게 성격의 교정 및 환경의 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동시에 ②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②의 부분은 일본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보충·수정하는 것에 그치므로, 제1조의 중심은 ①의 부분에 있다. 따라서 소년의 건전육성을 제창하는 이 규정에는 소년법은 소년이 행한 과거의 비행에 대한 응보로서 소년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이 재차 비행을 하지 않도록 소년을 개선·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⁷⁰¹⁾

이와 같이 일본 소년법에 의한 모든 절차,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처분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소년법에 의거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절차’로서 의미를 가진다.⁷⁰²⁾

699) 川出敏裕「非行少年に対する法的対応システムの現状と課題」『少年非行に対する法的対応』(日工組社会安全研究財団, 2009年) 3頁。

700)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六十八号)。

701) 川出敏裕「非行少年に対する法的対応システムの現状と課題」『少年非行に対する法的対応』(日工組社会安全研究財団, 2009年) 3頁。

702) 川出敏裕「非行少年に対する法的対応システムの現状と課題」『少年非行に対する法的対応』(日工組社会安全研究財団, 2009年) 3頁。

나. 일본 소년법의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성격의 교정 및 환경의 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는 동시에, 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성인범죄자가 주된 대상인 일본 형사소송법⁷⁰³⁾이 “공공의 복지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형벌법령의 적정하고 신속한 적용실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제1조)에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이와 같은 소년법에서의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은 소년이 미성숙하고 가소성이 크다는 소년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되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소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일본에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에 대해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년의 사회 복귀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⁷⁰⁴⁾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주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범죄나 비행의 억제로 이어져 국가나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적인 보호처분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⁷⁰⁵⁾ 일본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 대상소년

일본 소년법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만 20세가 안 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항). 원칙적으로 이 소년연령은 보호처분 및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년연령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2022년 4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연령이 기존 만20세에서 만18세로 변경되지만, 이에 따른 민법상의 행위능력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혼인에 의해 성년이

703) 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三百一十一号).

704) 総務省『少年の非行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総務省, 2007年) 1頁以下.

705) 배상균,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검토-일본 소년원법과 소년감별소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1(1), 2018, 127면.

된 것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일본 민법 제753조)에게도 소년법은 적용된다.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소년으로, ① 범죄소년, ② 촉법소년, ③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소년법 제3조 제1항).

①의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이다(같은 항 제1호).

②의 촉법소년은 14세가 되지 않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다(같은 항 제2호).

③의 우범소년은 우범사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않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범죄성이 있는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수상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가 있고,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죄를 짓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같은 항 제3호).

라. 가정법원의 사건접수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 소년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사법경찰원, 경찰관, 검찰관,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의 송치가 있고, 이외에도 일반인 또는 보호관찰소장에 의한 통고, 가정법원 조사관의 보고에 의한 경우도 있다.⁷⁰⁶⁾

구체적으로 경찰 및 검찰은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일본 소년법 제41조 및 제42조, 이른바 ‘전건송치주의’). 이외에도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일본 소년법 제3조 제2항).

마. 가정법원의 조사

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최적의 처우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706) 裁判所「事件の受理」(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jur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는 가정법원 조사관(동법 제8조 제2항)을 통한 방법과 소년감별소를 통한 조사방법(일본 소년법 제9조)이 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의 명령에 의거하여 가정법원 조사관이 소년의 성격, 평소의 행동, 생육력, 환경 등에 대해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전문 지식·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⁷⁰⁷⁾ 이러한 조사는, 소년이나 보호자, 그 외의 관계자를 가정법원에 불러 면접을 하거나 심리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법원 조사관이 소년의 가정이나 학교 등에도 직접 방문조사를 하기도 하며, 또한 가정법원은 소년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사방법을 실시하기도 한다.⁷⁰⁸⁾ 이러한 조사 중에는 소년의 반성을 통한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면접 지도를 실시하거나, 또는 소년을 지역 미화활동 등에 참가시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도 한다.⁷⁰⁹⁾

보호자에 대해서도 양육 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호책임의 중요성을 자각 시키는 등, 소년의 재사회화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⁷¹⁰⁾ 그리고 이렇게 소년의 비행 내용이나 생활 상황, 가정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나 비행의 원인을 밝히고,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등에 근거하여 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가정법원에게 제출하게 된다.⁷¹¹⁾

한편, 가정법원은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 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송치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관호조치라고 한다. 소년감별소란, 과학적인 검사, 감별의 설비가 있는 법무성 소관의 시설로, 소년의 처분을 적절히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등을 하게 된다. 소년감별소에 수용되는 기간은, 통상 최장 4주간이내 이지만, 일정한 사건으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장 8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호조치에 대해서는 불복제기 제도도 있다.⁷¹²⁾

707) 裁判所 「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tyousa/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08) 裁判所 「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tyousa/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09) 裁判所 「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tyousa/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10) 裁判所 「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tyousa/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11) 裁判所 「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tyousa/index.html, 검색일: 2020.10.29.).

바. 심 판

1) 일반절차

심판은, 조사 등을 통해 소년에게 비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비행의 내용이나 개개의 소년이 당면한 문제점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이다.

소년법 이념에 근거하여 심판 과정 그 자체가, 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능 완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소년에 대해 비행의 중대성이나 자신의 문제점 등을 이해시켜 반성하게 한다.⁷¹³⁾ 다만, 소년은 그 연령이나 성격에 따라 이해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법관은 소년이 알기 쉽게 정중하게 타이르거나 엄하게 꾸짖거나 하여, 비행의 내용이나 소년의 개성에 따른 대응을 통해 심판절차를 진행한다.⁷¹⁴⁾

앞서 언급한 조사, 심판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교육적 조치에 의해 소년에게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소년을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건이며 조사 등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활동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심판을 개시하지 않고 조사만을 실시해 사건을 끝내는 심판불개시 결정도 가능하다.⁷¹⁵⁾ 이와 같이 불처분 결정이나 심판불개시 결정은 모두 심판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선고하기 보다는 심판절차를 통해 얻어진 소년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절차의 주요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 특별절차

시험관찰제도란, 가정법원이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법원 조사가 상당기간 소년의 생활태도를 관찰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제도를 말한다(일본 소년법 제25조 제1항). 가정법원에서는 당해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① 소년의 해당 사건

712) 裁判所 「事件の受理」(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jur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13) 裁判所 「審判」(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inpan/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14) 裁判所 「審判」(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inpan/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15) 裁判所 「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이 보호처분으로 할 개연성이 있을 것, ② 즉각적인 보호관찰 처분이 상당하지 않을 것, ③ 조사관의 관찰에 의해 적절한 최종처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④ 상당기간내에 관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시험관찰 처분이 내려진다.⁷¹⁶⁾ 이러한 시험관찰 기간은 실무상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⁷¹⁷⁾

이러한 시험관찰제도는 주로 2개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①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를 획득하는 기능, ② 소년의 사회내 갱생을 촉진하는 기능이 그러하다.⁷¹⁸⁾ 시험관찰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의 상당수는, 가정법원이 소년을 소년원 송치로 할지, 보호관찰 처분으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이거나 혹은, 일정기간 환경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이다. 따라서 시험관찰 기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통해 가정법원 조사관이 소년의 갱생이 얼마나 진행될지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 소년에게 자신의 생활태도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조언과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⁷¹⁹⁾

시험관찰에는 재택 시험관찰과 보도위탁 시험관찰이 있으며, 재택 시험관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시험관찰처분이 선고되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사관과 면담하게 된다. 한편, 보도위탁 시험관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자택이 아니라 보도위탁처에서 생활하게 된다. 보도위탁처로서는 농가와 사찰, 건설업이나 미용업 및 음식점업 등에서 개인경영을 하는 곳들이 있다. 보도위탁 시험관찰의 경우에는 보도위탁처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의 생활상이 보고되고, 1개월에 1회 정도 조사관이 보도위탁처를 방문 및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⁷²⁰⁾

716) 裁判所「試験観察」(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iken/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17) 馬淵泰至「少年事件Q&A第9回」LIBRA Vol.4 No.6(2004年) 25頁.

718) 平戸ルリ子「非行処遇への福祉的アプローチ—試験観察における調査官とボランティアの働きかけの事例をととして—」社会福祉第27号(1986年) 104頁以下.

719) 馬淵泰至「少年事件Q&A第9回」LIBRA Vol.4 No.6(2004年) 25頁.

720) 裁判所「試験観察」(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iken/index.html, 검색일: 2020.10.29.).

사. 보호처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에는, 보호처분(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송치, 소년원 송치)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18세 미만에 한정함)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선택하는 보호처분이다. 정해진 약속사항을 준수하면서 가정 등에서 생활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사로부터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다.⁷²¹⁾

②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는, 비교적 저연령의 소년에 대해, 개방적인 시설에서의 생활 지도가 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선택하는 보호처분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주로, 비행행위를 하거나 비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등을 입소시켜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⁷²²⁾

③ 소년원 송치는 재비행의 우려가 강하고, 사회내에서의 갱생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보호처분이다. 소년원에서는, 재차 비행을 범하지 않도록, 소년에게 반성에 기반한 인성교육과 아울러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여 교과교육, 직업지도 등 전반적인 지도를 실시한다.⁷²³⁾

한편,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18세 미만에 한정함)는 소년을 아동복지기관의 지도하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에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상담소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하며, 아동복지사에 따른 지도는 물론,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양부모 위탁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도도부현의 전문기관이다.⁷²⁴⁾

721) 裁判所「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22) 裁判所「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23) 裁判所「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724) 裁判所「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아. 추측보도의 금지

일본 소년법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된 소년 또는 소년인 때에 범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해, 소년이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측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제61조).

이는 소년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임은 물론, 소년이 특정됨으로써, 그 후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⁷²⁵⁾ 따라서, 사건이 검찰송치(이른바 역송)되어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실제로 심판이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종료된 후나, 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 시점까지 적용된다.⁷²⁶⁾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및 처우실태

가. 소년법 등에 의한 저연령소년에 대한 절차 및 처우실태

1) 저연령소년의 범위

일본에서 저연령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은 연령이 14세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정의된다(일본 소년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범죄소년(동조 제1항 제1호)과의 구별을 위해 14세 미만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촉법소년의 하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10세 전후가 한계로 되어 있다.

2) 경찰단계에서의 보도(補導)조치 등의 처우와 실태

가) 보도조치

일본 경찰은 '소년의 비행방지 및 보호를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정의되는 (소년)경찰활동을 한다(일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조 제1항).⁷²⁷⁾ 이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년보도(少年補導)'이며, 명확히 법령상

725) 川出敏裕『少年法』(有斐閣, 2015年) 349頁。

726) 川出敏裕『少年法』(有斐閣, 2015年) 349頁。

727) 少年警察活動規則(平成十四年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二十号)。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본 규칙 제3조에서 ‘소년경찰활동의 기본’으로 규정한 내용과 소년경찰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소년보호직원의 역할과 배치에 대한 규정(동 규칙 제2조 제11호, 제12호)에 비추어 보면,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동 규칙 제3조).

- ①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정신으로 대처하고 그 규범의식을 향상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및 주의할 것
- ② 소년의 심리, 생리, 기타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임할 것
- ③ 소년의 성행 및 환경을 깊이 통찰하고 비행 원인을 규명하여 범죄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당 비행을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가장 적절한 처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 ④ 비밀 유지에 유의하며 소년이나 기타 관계자가 비밀이 누출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및 주의할 것
- ⑤ 소년의 비행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충분히 숙지할 것

이러한 일본의 소년경찰활동에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 피해소년, 요보호소년 모두가 보호(補導)의 대상이 되며(일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7조 제1항), 그 조기발견을 우선 목표로서 활동하게 된다(동 규칙 제6조).

이렇게 소년보호(少年補導)에 의해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촉법소년은 경찰에 의한 임의조사(일본 소년법 제6조의2, 일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5조~제26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른바 촉법조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 원인, 동기’, ‘저연령소년의 성격, 행적, 경력, 교육 정도, 환경, 가정 상황, 교우 관계 등’을 조사한다. 또한 촉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저연령소년이나 관계자 등에 대해 임의 호출, 질문, 보고 등 요구를 할 수 있다(일본 소년법 제6조의4).⁷²⁸⁾ 한편, 촉법소년의 혐의로 촉법조사의 대상이 된 저연령소년이나 보호자는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일본 소년법 제6조의3, 일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9조).

2007년 소년법 개정에 의해, 촉법조사에 필요한 경우 물건에 대한 수색압류, 검증, 감정촉탁 등의 강제처분(일본 소년법 제6조의5)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강제처분은 어디까지나 물적 강제조치에 한하며, 경찰관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구속하

728) 鮎川潤 『少年非行一社会はどう処遇しているかー』(左右社, 2014年) 203-204頁.

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로서 아동상담소장에 의한 일시보호는 허용된다.⁷²⁹⁾

나) 처우실태

일본에서 경찰에 의해 소년보도(少年補導)되는 촉법소년 자체는 감소경향에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뚜렷하게 그 경향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11,846명(형법범만 해당)이었으나 2019년에는 6,162명(형법범만 해당)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주요 범죄로는 매년 통계상 절도가 약 60%정도 내외이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폭행 및 상해 등)이 약 15%정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⁷³⁰⁾

▶▶ <표 4-12> 일본 저연령소년(촉법소년) 형법범 죄종별 검거 및 보도(補導) 인원

촉법소년(형법)죄종별	총수(명)	홍악범					조폭범(粗暴犯)	흥기준비집합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절도범	지능범				풍속범	음란행위	기타형법범	점유이탈물형령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사기								횡령	기타						
2019	6,162	72	4	3	29	36	1,001	1	572	330	66	32	3,887	31	27	4	0	187	187	984	236
2018	6,969	61	4	2	32	23	908	0	448	348	71	41	4,685	39	22	16	1	188	188	1,088	300
2014	11,846	76	2	18	44	12	1,429	1	602	675	61	90	7,728	44	28	11	5	192	192	2,377	979
2013	12,592	106	3	17	74	12	1,494	1	636	671	62	124	8,069	64	49	11	4	253	253	2,606	1,083

출처: 警察庁 『令和2年警察白書』(2020年) <https://www.npa.go.jp/hakusyo/r02/data.html>(검색일: 2020.10.29.)

3) 일본 경찰에 의한 아동상담소 통고와 아동상담소장 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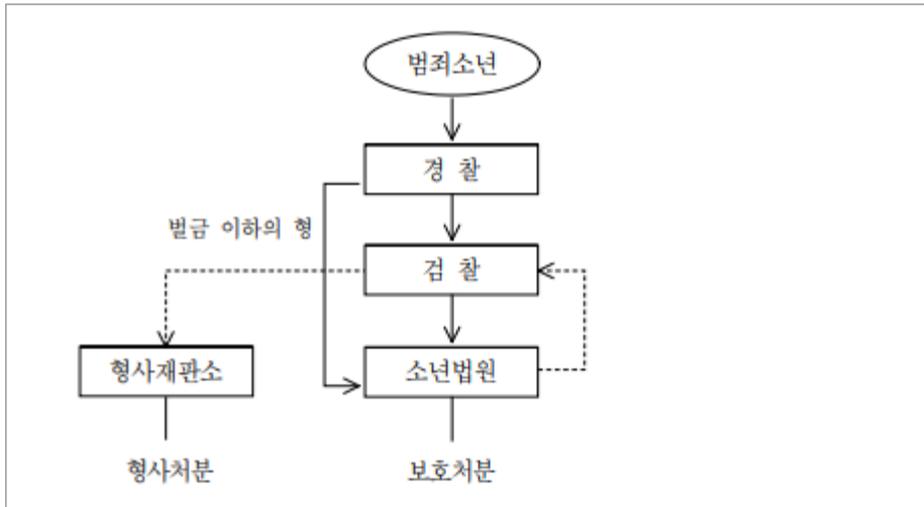
일본 소년법 제6조 제1항은 가정법원에 회부할 소년을 발견한 모든 자에게 '가정법 통고(=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통지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가정법원 선의주의(家庭法院先議主義)라고 한다.⁷³¹⁾

729) 守屋克彦・齊藤豊治(編) 『コンメンタル少年法』(現代人文社、2013年) 144頁。

730) 警察庁 『令和2年警察白書』(2020年) (<https://www.npa.go.jp/hakusyo/r02/data.html>, 검색일: 2020.10.29.)

731) 丸山雅夫 「少年法の理念と現実」信州大学法学論集 第16号(2011年) 174頁。

▶▶ [그림 4-3] 일본식 가정법원선주의(家庭法院先議主義)



출처: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196면.

기본적으로 일본 소년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보호소년은 가정법원에 우선 회부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을 발견한 경찰관은 가정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상담소에 우선 송치 및 통고해야 한다(일본 소년법 제6조의6 제1항, 아동복지법 제25조).⁷³²⁾ 즉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아동상담소장이 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하므로(일본 소년법 제3조 제2항), 경찰은 우선적으로 아동상담소에 통고 및 송치해야 한다. 이를 이른바 아동복지기관 선주의(兒童福祉機關先議主義)라고 한다.⁷³³⁾

732) 우범소년의 경우에도 일본 소년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찰관 또는 보호자가 우범소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 또는 통고하지 않고, 일본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년을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수 있다.

733) 鮎川潤 『少年非行—社会はどう処遇しているか—』(左右社, 2014年) 189頁, 柑本美和 『少年法と兒童福祉法—触法少年の処遇をめぐって—』立教法務研究第9号(2016年) 201頁.

▶▶ [그림 4-4] 일본식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児童福祉機関先議主義)



출처: 片岸法律事務所「14歳未満の少年（触法事件について）」
 (<http://www.toshix.com/0061206syokuhou.html>, 검색일: 2020.10.29.)

특히 일본 소년법에서는 경찰관의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아동상담소 송치요건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의6).

- ① 경찰관이 중대사건(고의치사 사안, 단기 2년 이상 범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동조 제1항 제1호)
 - ②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동항 제2호)
- 이때 경찰관은 조사에 관련된 서류로서 「촉법소년사건송치서」에 「신상조사표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일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로서 아동상담소 통고와 아동상담소장 송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관은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통고절차를 취하고

조사를 마치면 즉시 송치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⁷³⁴⁾ 일본의 소년법과 아동복지법 상의 비행소년처우제도의 협력연계의 하나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4) 일본 가정법원 송치 현황

일본 가정법원심판의 대상소년의 99%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으로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는 1~2%도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⁷³⁵⁾

물론 사법통계나 범죄백서 등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서 저연령소년(촉법소년 및 연소소년)에게 선고되는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아동양호시설 송치와 지사·아동상담소장 송치 처분 인원을 비교·대조해보면 매년 약 2~300여명 내외의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이 이러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⁷³⁶⁾

또한 가정법원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특별절차는 없다. 따라서, '조사관 조사 → (관호조치) → 심판불개시 또는 심판개시 → 불처분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 또는 보호처분'의 절차로 진행된다.⁷³⁷⁾

5) 검찰송치

일본의 가정법원은 범죄소년 가운데,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 또는 심판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송치 결정을 한다(일본 소년법 제20조 제1항).

또한,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사건을 범했을 때, 행위 당시 만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검찰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일본 소년법 제20조 제2항, 이른바 역송).⁷³⁸⁾ 다만, 이러한 만 16세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조사의 결과, 범행동기 및 태양, 범행후의 정황, 소년의 성격, 연령, 환경 및 성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이외의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734) 守屋克彦·斉藤豊治(編) 『コンメンタル少年法』(現代人文社, 2013年) 146頁.

735) 植村立郎 『骨太少年法講義』(法曹会, 2016年) 32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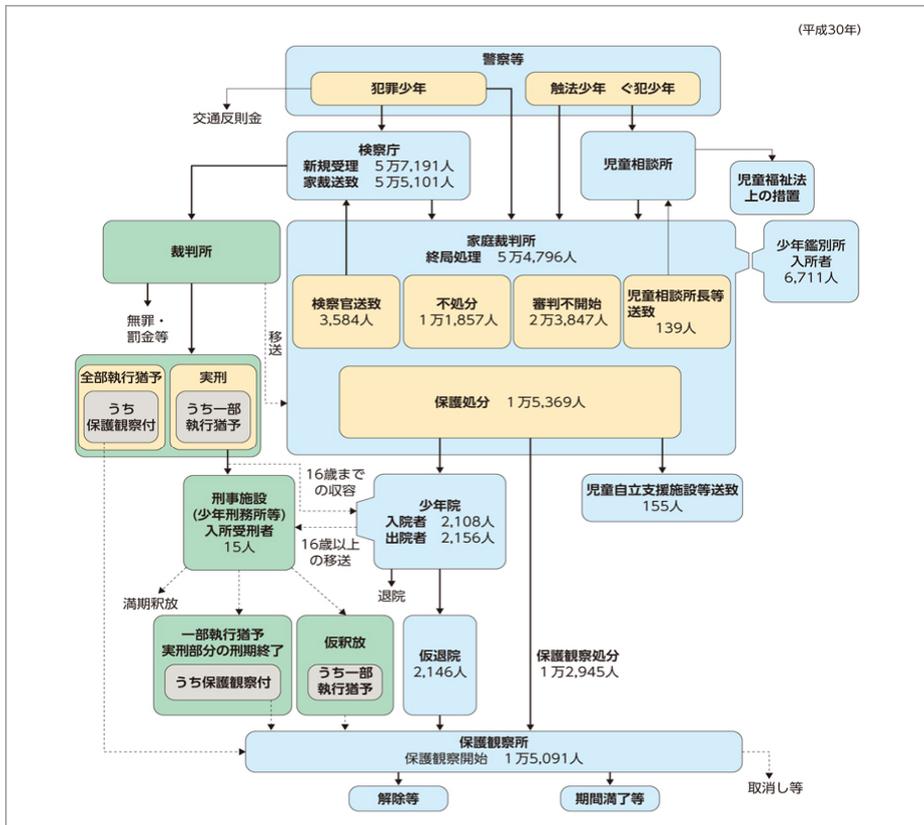
736) 法務省 『令和元年版 犯罪白書』(2019年) (http://haksyos1.moj.go.jp/jp/66/nfm/n66_2_3_2_2_2.html, 검색일: 2020.10.29.).

737) 鮎川潤 『少年非行一社会はどう処遇しているかー』(左右社, 2014年) 204頁.

738) 検察庁 『少年事件について』 (http://www.kensatsu.go.jp/gyoumu/shonen_jiken.htm, 검색일: 2020.10.29.).

한다(동향 단서). 이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형사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소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⁷³⁹⁾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에서 저연령소년범(촉법소년)에 대한 검찰송치결정의 예는 없다.

▶▶ [그림 4-5] 비행소년에 관한 처우현황(2018년 기준)



- 주 1. 검찰통계연보, 사법통계연보, 교정통계연보 및 보호통계연보에 의한 것.
- 2. '검찰청' 인원은 사건단위에 따른 인원임. 예를 들어, 1명이 2회 송치된 경우, 2명으로 계산됨.
- 3. '아동상담소장등송치'는 지사 및 아동상담소장 송치임.
- 4. '아동자립지원시설등송치'는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아동양호시설 송치임.
- 5. '출원자' 인원은, 출원사유가 퇴원 또는 가퇴원인 자에 한함.
- 6. '보호관찰개시' 인원은 보호관찰처분소년 및 소년원 가퇴원자에 한함.

출처: 法務省 『令和元年版 犯罪白書』(2019年)

(http://hakusyo1.moj.go.jp/jp/66/nfm/n66_2_3_2_1_0.html, 검색일: 2020.10.29.).

739) 検察庁 『少年事件について』 (http://www.kensatsu.go.jp/gyoumu/shonen_jiken.htm, 검색일: 2020.10.29.).

나.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상 아동상담소 개요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일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아동 복지 전문기관이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및 정령지정도시 및 중핵도시(우리의 광역시와 유사하다)에 최소 하나 이상의 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모나 지리적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아동상담소 및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⁷⁴⁰⁾ 2020년 현재 73개소의 아동상담소 및 지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아동학대 등 아동보호 상담전용 전화번호 189번은 아동상담소의 전국 공통 다이얼(긴급통보용 전화번호)로 설정되어 있다. 상담전용 전화는 2015년 7월 1일부터 운용이 개시되어 24시간 365일 아동학대 및 육아 등의 상담을 받고 있다.⁷⁴¹⁾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아동, 즉 0세부터 17세인 자(일본 아동복지법 제4조)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양호상담(養護相談), 보건상담(保健相談), 심신장애상담(心身障礙相談), 비행상담(非行相談), 육성상담(育成相談) 등이 있다. 저연령소년(촉법소년)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비행상담이며, 상담과 아동 및 환경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법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⁷⁴²⁾

일본 아동상담소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본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① 아동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상담에 응할 것.
- ②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해, 필요한 조사 및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및 정신보건상 판정을 실시한다.
- ③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해, 전 호의 조사 또는 판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도를

740)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741)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虐待対応ダイヤル「189」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ial_189.html, 검색일: 2020.10.29.).

742)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할 것.

- ④ 아동을 일시보호소(一時保護所)에 보호하고, 그 후 부모에게 보낼지, 아동양호시설 등에 맡길지 여부를 결정한다(일시보호는 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일시 보호를 한다.).

2) 아동상담소장에 의한 아동복지법상 조치

아동상담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상담소 업무내용에 근거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정한 아동상담소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⁷⁴³⁾

특히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2007년 일본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일정 중대사건에 관여한 촉법소년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해당 소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안의 진상규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할 때 함께 발송해야 한다(일본 소년법 제6조의6). 아동상담소는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결정할 때 이들 서류를 참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상담소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경우, 일본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조치이며(동항 제1호), 이에 따라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훈계 또는 서약서 작성(제27조 제1호), 지도(동조 제2호), 시설입소(동조 제3호), 가정법원 송치(동조 제4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후 아동상담소장 등이 처분으로서 가정법원 송치조치를 결정했을 때는 아동상담소 등의 작성서류와 함께 경찰 작성서류도 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과정을 소개하자면, '경찰 등에 의한 상담(통고) → 조사·진단 → 판정 → 일시보호 또는 가정법원 송치 → (일시보호 결정시) 원조 결정'의 과정을 거쳐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진다.

743)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html>, 검색일: 2020.10.29.).

관련하여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는 결국 일시보호 조치, 가정법원 송치가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된다. 아동상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제27조 제3호에 의한 시설 송치로서 전국 58개소의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⁷⁴⁴⁾ 또한 입소 아동의 연령은 14~15세가 가장 많고, 평균 재원 기간은 1년~1.5년이며, 약 80%가 아동상담소 송치이고, 약 20%가 가정법원 송치라고 한다.⁷⁴⁵⁾

다만, 일시보호 조치로서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된다. 왜냐하면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 조치는 일본 아동복지법 제28조 제1항⁷⁴⁶⁾에서 “보호자가 그 아동을 학대하고, 현저하게 감호를 게을리하여, 그 외 보호자에게 감호시키는 것이 현저히 해당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을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부모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 처분을 받게 된다.

3) 아동상담소장에 의한 가정법원 송치

아동상담소장은 상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아동복지법 제27조의 조치로서 가정법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을 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한다(동조 제1항 4호).

구체적 적용예로서 아동상담소 운영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한다.⁷⁴⁷⁾

744) 鮎川潤 『少年非行一社会はどう処遇しているかー』(左右社, 2014年) 190頁.

745) 鮎川潤 『少年非行一社会はどう処遇しているかー』(左右社, 2014年) 199頁.

746) 第二十八条 保護者が、その児童を虐待し、著しくその監護を怠り、その他保護者に監護させることが著しく当該児童の福祉を害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十七条第一項第三号の措置を採ることが児童の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の意に反するときは、都道府県は、次の各号の措置を採ることができる。

一 保護者が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で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の承認を得て、第二十七条第一項第三号の措置を採ること。

二 保護者が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でないときは、その児童を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に引き渡すこと。ただし、その児童を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に引き渡すことが児童の福祉のため不適當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家庭裁判所の承認を得て、第二十七条第一項第三号の措置を採ること。

747)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4章 援助』(<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4.html#07>, 검색일: 2020.10.29.).

- ①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조치에 반대하고, 아동복지법 제28조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 「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14세 이상의 아동자립지원시설 입소아동 등을 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비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비행사실을 인정한 후 적절한 원조를 결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소년법 절차에 따라 사실규명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과 관련하여 경찰이 중대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야 한다(일본 소년법 제6조의7 제1항). 이는 보호소년사건의 정확한 사실 인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우 선택,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제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⁷⁴⁸⁾

단, 이에 대해서는 중대사건을 포함하여 아동상담소장의 판단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일본 소년법 제6조의7 제1항 단서).⁷⁴⁹⁾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절차로서 일본의 경우 소년법상 가정법원 선의주의(또는 전건 송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 소년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보호소년은 가정법원에 우선 회부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을 발견한 경찰관은 가정법원에

748) 守屋克彦·齊藤豊治(編) 『コンメンタール少年法』 (現代人文社, 2013年) 148頁.

749) 이점에 대해 아동복지기관(아동상담소장)에 필요이상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柑本美和「少年法と児童福祉法—触法少年の処遇をめぐる—」 立教法務研究第9号(2016年) 218頁以下).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상담소에 우선 송치 및 통고해야 한다(아동복지기관 선의 주의). 이는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아동상담소장이 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적으로 아동상담소에 통고 및 송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동상담소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경우, 일본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조치이며(동항 제1호), 이에 따라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훈계 또는 서약서 작성(제27조 제1호), 지도(동조 제2호), 시설입소(동조 제3호), 가정법원 송치(동조 제4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경찰 등에 의한 상담(통고) → 조사·진단 → 판정 → 일시보호 또는 가정법원 송치 → (일시보호 결정시) 원조 결정'의 과정을 거쳐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가정법원에서도 '조사관 조사 → (관호조치) → 심판불개시 또는 심판개시 → 불처분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 또는 보호처분'의 과정을 거쳐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아동상담소장 송치 또는 보호처분이 결정된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 지역별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지역아동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적인 면에 배려하는 것과 소년비행에 대한 보호자 책임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지도가 중시되고 있다.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 지사·아동상담소장 송치 처분

가정법원은 조사 또는 심판 결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권한을 가진 도도부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일본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이것을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상담소 송치, 혹은 제18조 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본 소년법 제18조 결정에는 강제적 조치의 허가(동법 제18조 2항)를 수반

하는 경우⁷⁵⁰)와 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통상의 제18조 결정)로 구분된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동상담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기간 및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도의 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⁷⁵¹⁾

그리고 강제조치 중 하나로서 아동상담소 내에 병설되는 일시보호소에 일시보호하는 조치가 있다. 일본 아동복지법 제33조는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일시보호소에 일시보호하거나 경찰서, 복지사무소, 아동복지 시설, 양부모, 기타 아동복지에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적당한 사람(기관, 법인, 사인)에 일시보호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⁵²⁾

이와 같이 당해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만, 아동복지법의 일시보호제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은 물론 사후의 허가도 불필요하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권한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아동보호(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제도로서 흔치 않다.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운용에 있어서 보호자(친권자)의 반발도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중요하다고 한다.⁷⁵³⁾

제18조 결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일본 아동복지법 제4조, 제31조 제2항), 일반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해 이루어지는 예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자료에서는 가정법원 심판 결과 사건발생시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면 모두 제18조 결정(아동상담소 송치)이 선고되었고,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자립지원센터에 약 50%, 아동상담소에 약 40%, 소년원 송치가 약 10% 내외로 나타났다.⁷⁵⁴⁾

일본 아동복지법에는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송치된

750) 이러한 제18조 결정은 보호처분이 아니므로 강제적 조치의 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 항고를 할 수 없지만(最決昭和40(1965)年6月21日刑集19卷4号448頁), 강제적 조치 그 자체에 관해서는 강제적 조치를 실시하는 주체인 도도부현 지역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751)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5章 一時保護』(<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5.html>, 검색일: 2020.10.29.).

752)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5章 一時保護』(<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5.html>, 검색일: 2020.10.29.).

753)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7章 各種機関との連携』(<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7.html#11>, 검색일: 2020.10.29.).

754) 若穂井透・有村大士・塚本恵美 『「触法少年の送致と児童相談所の現状に関する調査」分析結果報告』(全国児童相談所長会、2009年) 100頁.

아동에 대해 아동상담소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그러나 도도부현 지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제18조 결정'에 따른 송치는 아동상담소로 한정되고 있다.⁷⁵⁵⁾

위 규정에 의거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만 송부되므로 아동상담소에서는 이 경우에도 조사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조정하는 등 충분한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⁷⁵⁶⁾

또한 아동상담소에서는 제18조 결정에 의거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을 송치받은 경우에 다른 사례에 비추어 동일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통지해야 한다.⁷⁵⁷⁾ 그리고 아동상담소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상담소 송치의 내용으로서 아동자립지원시설이나 아동양호시설에 입소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통지해야 한다.⁷⁵⁸⁾

이와 같은 아동상담소 송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상담소는 가정법원과 정기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하는 등 충분한 연계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⁷⁵⁹⁾

2) 보호처분

가정법원의 심판결과에 의해 아동상담소장송치에 해당하지 않는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요보호성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진다(일본 소년법 제24조 제1항 본문). 다만, 결정시 만14세가 되지 않은 소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호의 보호처분이 허용된다(동항 단서).

제1호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처우

제2호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송치

755) 若徳井透・有村大士・塚本恵美 「『触法少年の送致と児童相談所の現状に関する調査』分析結果報告」(全国児童相談所長会、2009年) 97頁.

756) 厚生労働省『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7章 各種機関との連携』(<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7.html#11>, 검색일: 2020.10.29.).

757) 厚生労働省『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7章 各種機関との連携』(<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7.html#11>, 검색일: 2020.10.29.).

758) 厚生労働省『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7章 各種機関との連携』(<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7.html#11>, 검색일: 2020.10.29.).

759) 厚生労働省『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7章 各種機関との連携』(<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7.html#11>, 검색일: 2020.10.29.).

제3호 소년원 송치

가정법원이 이처럼 보호처분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년 및 보호자에게 보호 처분의 취지를 적절히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본 소년심판규칙 제35조 제1항).

이러한 가정법원의 결정은 그 보호처분 결정 통지와 함께 가정법원의 조사기록 등의 참고서류가 보호관찰소,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소년원으로 송부 된다(일본 소년심판규칙 제37조의2 제1항).

3) 기타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한 역할분담·연계를 도모하면서 아동 및 가정 등의 상담에 응하고, 아동이 가진 문제 또는 아동의 진정한 요구, 아동이 처한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동과 가정에 가장 효과적인 원조를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고, 그 권리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설치된 행정 기관이다.⁷⁶⁰⁾ 2020년 현재 지소를 포함하여 22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⁷⁶¹⁾

아동상담소 상담원조활동은 아동 모두가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그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그 가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복지이념 및 아동건전육성의 책임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일본 아동복지법 제12조). 이처럼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원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⁷⁶²⁾

아동상담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아동복지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할 것, ② 지역에 동화 및 일체화된 기관일 것, ③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연계가 충분히 도모되어 있을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⁷⁶³⁾

760)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761) 厚生労働省 『全国児童相談所一覧』(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zisouichiran.html, 검색일: 2020.10.29.).
 762)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763)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이처럼 아동상담소는 위 이념에 기반해 아동문제에 대해 일관된 상담원조활동을 펼치고 광역자치단체 등 아동복지 주관기관과도 연계하여 상담원조활동을 종합적으로 기획해 이를 실시하고 있다.⁷⁶⁴⁾

나) 아동양호시설

아동양호시설은 일본 아동복지법 제41조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은 아동, 기타 양호를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이를 양호하고, 아울러 퇴소한 자에 대한 상담, 기타 자립을 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에 615개 시설이 있으며, 약 32,600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다.⁷⁶⁵⁾

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일본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가정환경,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지도 등이 요구되는 아동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소시키거나, 보호자 지도하에 통학하게 하여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학교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그 자립을 지원한다.⁷⁶⁶⁾ 아울러 퇴소한 자에 대한 상담, 기타 자립을 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 56개 시설이 있으며, 약 3,500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다.⁷⁶⁷⁾

764)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765)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 平成28年度 福祉行政報告例 児童福祉』(<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450046&tstat=000001034573&cycle=8&year=20161&month=0&tclass1=000001108815&tclass2=000001108820>, 검색일: 2020.10.29.).

766) 1997년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아동자립지원시설 외의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여 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Shunsuke Takada,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Child Welfare in Japanese Children's Self-reliance Support Facilities, Contemporary Japan Volume 30 Issue 1, 2018, pp.60-77.).

767)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 平成28年度 福祉行政報告例 児童福祉』(<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450046&tstat=000001034573&cycle=8&year=20161&month=0&tclass1=000001108815&tclass2=000001108820>, 검색일: 2020.10.29.).

라) 아동가정지원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일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지역 아동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아동, 모자가정, 기타 가정, 지역주민, 기타의 상담에 대응하고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며, 아울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과의 연락조정을 하고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원조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아동복지 시설에 병설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4. 소 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일본 소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후생노동성에서도 아동상담소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년법상 가정법원 선의주의(또는 전건송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적잖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를 취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아동상담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구성원들을 아동상담 및 지도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우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아동심리사, 의사 및 간호사, 아동복지사, 퇴직 경찰관 및 현직 경찰관, 퇴직 교사 및 현직 교사가 배치되며, 변호사가 배치된 아동상담소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인원구성은 아동상담소의 애초의 목적인 아동학대방지 목적에 기인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소년비행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처우에 있어서 아동상담소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저연령소년(촉법소년)의 처분 중 하나로서 시설입소 처분에 대응하는 시설로, 각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아동복지시설로

서 아동양호시설(일본 아동복지법 제41조), 아동자립지원시설(동법 제44조)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지역아동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저연령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적인 면에서 배려하는 것과 소년비행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보호자에 대한 지도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아동학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중시되고 있다.

제 5 장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제언

전 영 실

제1절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가. 경찰단계

1) 조사 개선방안

첫째,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단계에서의 저연령소년 조사에 있어서 이들의 처우에 필요한 내용, 이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질문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연령소년의 환경조사에 대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판사와의 자문에서도 저연령소년에 대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 자체의 특성보다는 환경조사 부분이 더 필요하며, 이러한 항목이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행성예측조사에서 환경조사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판사2). 저연령일수록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을 고려한다면 환경조사서와 비행성예측조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저연령소년의 발달적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 전문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발달 장애, 경계성 장애가 비행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가 개입을 통한 저연령소년의 발달적 특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⁷⁶⁸⁾ 그리고

768) 앞에서 보았듯이 법원단계에서의 조사에서는 정서적 문제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진

발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행성예측조사의 경우 저연령소년의 어휘력과 이해력 등을 고려한 조사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성예측조사의 경우 중고생 연령대와 동일한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단축형을 활용하기도 한다. 단축형의 경우 일반 비행성예측조사표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면서 문항 수만 줄인 것이다. 따라서 저연령소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면접대상인 저연령소년의 경우 비행성예측조사가 문항수가 많고 복잡하였다고 하였으며,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단어 밑에 뜻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즉 비행성예측조사의 경우 저연령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용어와 문항수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⁶⁹⁾

셋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성예측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필요한 지원이나 법원에서 조기 판단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심리사가 작성하는 조사자료가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내용을 일부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판사4). 이와 더불어 비행성예측조사를 담당하는 범죄심리사가 아이와 보호자의 태도를 가능한 상세히 묘사해 준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소년조사관2).

넷째, 저연령소년의 학대피해 여부에 대한 필수적 파악 및 개입이 필요하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학대피해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대 피해가 비행과 관련될 수 있다.⁷⁷⁰⁾ 따라서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대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전국 경찰서에는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단 및 상담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는 초기 형사사법접촉 단계에서 하나의 필수 확인사항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연계 등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69) 참고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보면, 초4이하/초5이상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모두에서 대상자의 이해력을 고려한 대체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초4이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질문이 더 많다(여성가족부, 앞의 글, 460-464면). 이는 조사대상자의 발달단계와 이해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70) 이아영·유서구, 앞의 글; 이아영, 앞의 글; 김영미, 앞의 글; 송민영·박현선, 앞의 글.

Officer)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⁷⁷¹⁾. 학대예방경찰관은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사례전문위원회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46조의 2), 경찰서별로는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하여 피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⁷⁷²⁾ 이렇듯 학대예방경찰관은 지역사회자원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대예방경찰관을 활용한 아동학대 파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경찰조사 혹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에서 학대피해 징후가 있거나 학대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학대예방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대피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임이나 학대의 피해가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학대피해가 비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학대피해여부를 필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연령소년의 발달수준이나 이해력, 심리적 안정감 등을 배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조사대상이었던 저연령소년의 경우 경찰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경찰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경찰조사내용이나 질문내용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년사법체계에서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충분히 구현되어야 한다.⁷⁷³⁾ 이와 관련하여 아동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지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소년사법체계 모든 과정에서 유용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⁷⁷⁴⁾ 저연령소년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들의 언어, 정신적 성숙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⁷⁷⁵⁾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연령소년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아닌 신뢰관계

771) 경찰청, 2019 경찰백서, 2019, 135면.

772)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113면.

77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p.5-6.

774) Ibid., p.18.

775) Papadodimitraki, Y., op. cit., p.3.

인이 보다 조사에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가 동반되더라도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 위축감,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2) 경찰단계 처우 개선방안

첫째, 저연령소년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절차에 대한 설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아동학대 수사에 있어서는 피해아동 특수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아동학대 수사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였다.⁷⁷⁶⁾ 저연령소년의 경우 피해나 가해에 관계없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매뉴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대상 선도프로그램 및 상담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 및 보호자 상담은 저연령소년에게 교육 및 심리적 안정효과, 보호자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었던 저연령소년의 경우 개별적 수준의 선도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자의 경우도 상담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이해, 양육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경찰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단계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중고생 연령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상담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개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⁷⁷⁷⁾ 경찰단계에서 저연령소년의 인원이 적다는 점, 개별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연령소년에 대한 개별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776)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115면.

777) Lochman, et al., op. cit., pp.728-735.

것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보호자 상담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저연령소년대상 회복적 사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재통합을 보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⁷⁷⁸⁾ 꿈키움센터 실무가와와 자문에서도 저연령소년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진심 어린 사과,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인 저연령소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경찰, 법원 등을 거쳐 처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자 및 동네 주민들로부터의 낙인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했던 일반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저연령소년의 경우 한 번 낙인찍히면 아이에게도 상처가 되며, 초등→중등으로 가더라도 이미 선입견이나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중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운영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저연령소년과 보호자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이 필요한 저연령소년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자원과의 연계 속에서 위기 청소년 선도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취약한 저연령 비행소년 파악 및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이 필요한 저연령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역사회자원에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실무가들에 의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등과의 연계는 잘 되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 경제적 지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지원은 경찰서별 상황, 혹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따라 연계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⁷⁷⁹⁾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의 개입⁷⁸⁰⁾은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연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연령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드림스타트, 지자체 희망복지팀,

77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24.

779) Berti, C., and Pivetti, M, op. cit., p.24; Jackson et al., op. cit., p.134.

780) 김은주, 앞의 글, 110면.

정신건강센터 등) 연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찰 대상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내에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⁷⁸¹⁾ 이 연구의 자문대상이 된 경찰의 경우 저연령소년 조사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경찰4).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경찰이 아동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 청소년 영역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인 '청소년(사건)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경찰관이 투입되었다. 또한 사건이 다양하더라도 그들이 만나는 담당수사관은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각 지구별로 1-2명의 보호경찰 담당관이 소년사건처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도 아동에 대한 경찰조사의 대부분은 전문조사관이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3년마다 1주 동안 인터뷰 기술과 기법 연수 등 지속적인 전문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연령소년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처음 접촉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서 저연령소년의 특성 및 이들에 대한 면담기법 등을 다루는 교육, 저연령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대응과 관련된 성공적인 사례공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이 소년업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210조; 소년업무규칙 제3조). 이외에 경찰이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기관, 그리고 연계해야 하는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아동의 위험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로 이관하여 연계하고 있었다. 즉 독일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경찰의 내부지침을 통해 이러한 이관작업을 정형화·공식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찰 지침에도 이러한 연계기관 목록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8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24.

나. 법원단계

1) 조사 개선방안

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단계에서의 조사로는 저연령소년과 보호자가 법원에 방문하여 소년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경우, 법원에서 연계한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 혹은 상담을 받는 경우, 혹은 꿈키움센터나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보호자 조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저연령소년 혼자서 조사장소에 가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호자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생계문제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관들에 동반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법원 등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저연령소년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아이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찾아가는 조사는 가정환경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자문을 받은 판사의 경우 저연령일수록 가정적 요인 등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현장에 찾아가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판사1). 따라서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조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분전 교육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전 교육은 불처분이나 1호처분이 예상되는 저연령소년을 대상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아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목록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청(아동과 청소년지원 임무)이 부모에게 지원기관 목록 등을 교부하여 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사회 지원기관의 목록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소년조사관 교육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소년조사관의 경우 소년 조사관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년조사관대상 자문을 통해 파악한 의견을 보면, 소년에 대한 조사 및 처우에 있어서 복지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년조사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다 공고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는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의 역할이 조사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발굴 및 연계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가치관과 기준에 입각한 조사업무, 복지적 측면에서의 자원발굴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소년조사관 조사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년조사관의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조사관 조사는 저연령소년에 대해 주로 많이 활용되며, 소년조사관 조사에 대한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의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년조사관의 인력이 많지 않은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현재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만 소년조사관 조사가 가능하며, 지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울 등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조사와 겸임을 하고 있는데 소년조사만 하는 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저연령소년과 이들의 비행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회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이들에게 최적의 처분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연령소년 및 이들의 비행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진단과 처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연령 비행소년은 다른 연령대 비행소년에 비해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문을 받은 아동학 교수는 저연령소년에 대해서 특히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저연령소년의 경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례, 부모가 문제가 있는 사례, 지능이 낮은 사례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문제행동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개별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사례적 접근은 저연령소년의 특성, 이들의 비행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저연령소년 중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원단계 처우 개선방안

첫째, 분류심사원 위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초범/재범, 우범

소년별, 연령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별도로 분리수용되고, 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환경도 청소년기가 아닌 어린 소년들에게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연령소년의 경우 가능한 단기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면접대상인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 초등학생에게 5주간 위탁은 너무 길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직 자아가 확고하지 않은 저연령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에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류심사원 위탁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최단기로 할 필요가 있다.⁷⁸²⁾

둘째, 임시조치가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소년법상 임시조치로는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설 위탁, 병원 등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이 가능하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시조치의 대부분은 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도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주거불안정, 지속적 비행 등)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며, 쉼터 등에 위탁되기도 하였다. 현재 분류심사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비행경력을 가진 소년들이 함께 위탁되어 있고, 저연령소년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분류심사원(분류심사원 기능대행 소년원)은 전국에 총7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⁷⁸³⁾ 저연령소년의 경우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내 수용되는 것과 더불어 거주지에서 멀리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처우를 통한 진단, 위탁 처우가 효과적이라고 볼 때 이들에게 적합한 위탁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단계 심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판시 저연령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인은 법률전문가와 심리전문가인 보조인이 있으며, 이들의 역할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변호사는 청소년심리 교육 등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지, 소년의 권리 옹호, 소년사법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782) 유엔의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 가능한 단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 cit., p.21.).

783)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2020, 594면.

한다고 제시된다.⁷⁸⁴⁾ 즉 현재 보조인의 역할이 이러한 방향에서 강화되고,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과 보호자의 경우 재판이 무서웠다는 의견이 많았고, 재판과정에서의 말(처분내용 등)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저연령시기에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이 시기의 재판이 무서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적 관점에서 보조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저연령시기에 분류심사원에서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의하면, 국선보조인이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도움이 아닌 소년과의 라포형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연령소년의 경우 비행이 심각하거나 복잡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인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 역할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연령소년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국선보조인보다 심리상담전문가 등을 보조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⁸⁵⁾

다. 처분단계

1) 소년보호처분 개선방안

첫째, 1호처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 위탁자원의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1호처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1호처분시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보호력이 약할 경우 위탁보호위원 위탁, 안정적 주거도 필요한 경우 신병인수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인수위탁자원의 발굴 및 연계가 중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저연령소년과 보호자, 저연령시기에 위탁보호위원

784) 신동주, 앞의 글, 71면.

785) 국선보조인은 첫째, 변호사·공익법무관·사법연수생, 둘째,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에서 선정한다(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1항).

위탁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위탁보호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많지 않은 저연령소년에게 친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지해 줌으로써 이들의 긍정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특성별로 이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탁보호위원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저연령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가정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학 교수의 자문에 의하면, 위탁가정(Foster Care)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연령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위탁가정 부모가 받는 상처도 케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모자조모임, 부모교육 등)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는 전임위탁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며칠 동안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위탁가정 발굴을 통한 소규모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2호처분인 수강명령 대상 연령을 하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소년법상 수강명령은 만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상당수는 수강명령을 받지 못한다. 대신 처분전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조사 등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은 의식이 고착되지 않은 저연령소년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수강명령에서의 상담 등이 병행된다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강명령은 현재 보호관찰소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저연령소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기관에서 담당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연령소년 특성에 맞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집행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지, 현장출장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적으로 적지만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지지와 격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면담시간은 10-2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관찰관의 담당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일상생활 파악만 한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한다는 생각만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심층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과 보호자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좋은 얘기를 해 주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저연령소년에 대해 단순히 비행억제가 아닌 긍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출석의 경우 거주지와 거리, 교통문제 등으로 보호자가 같이 와야 될 상황이 많은데, 이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는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 출석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나 비행청소년과 접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현장출장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서 보면, 먼저 6호처분의 경우 저연령소년의 연령대가 있는 소규모 시설로의 위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자문을 받은 6호시설 실무가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시설적응이 보다 어려우며, 저연령소년에 적합한 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6호시설 실무가도 6학년 2학기 학생을 위탁받은 적이 있지만, 그 보다 더 어린 소년은 중고생 연령대와 정서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6호시설에 있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나 별도 학과 교육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이들 연령대에 맞는 시설이 있다면 저연령소년 연령대에 맞는 환경과 학과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6호시설이 소규모화 된다면 지역별로 시설이 있어서 시설 내 수용을 하더라도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중고생연령대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이 거의 없으며, 처우를 종료한 이후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주지 근처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 뉴욕시의 'Close to Home'은 가정법원이 가정 밖 배치가 필요한 소년(7-15세)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에 가까운 거주식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소년들이 소그룹 가정에서 치료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⁷⁸⁶⁾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연령소년의 심리적 안정,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문제가 있는 소년 등을 위탁하는 의료재활소년원 등への 위탁도

786) NYC Children, Close to Home(<https://www1.nyc.gov/site/acs/justice/close-home.page>, 검색일: 2020.10.3.).

저연령소년을 별도 분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재활소년원 실무가 자문에 의하면, 가족의 지지가 이들의 재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연령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판사2).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의 보호자들 중 보호자교육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13사례 중 6사례였다. 보호자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특히 양육방식, 아이에 대한 이해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자교육의 경우 청소년기 보호자가 다수를 이루어서 청소년기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연령소년의 특성에 대해 알려 주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자교육은 6시간/8시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6호처분 시설의 경우 1박 2일 가족캠프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보호자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양육방법 교육, 저연령소년의 특성 및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개별상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보호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특화시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호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 된 청소년보호자의 경우 보호자교육명령을 여러 번 유사한 내용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보호자교육명령이 자녀나 보호자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필요한 내용

첫째, 저연령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법원에 오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판사3, 4).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도 아이들의 경우 주워서 쓴 것은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저연령소년의 경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라포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라포형성의 시간을 가진 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판사3).

둘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개별상담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인 저연령소년 보호자 12명 중 6명의 경우는 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상담 및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개별상담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자원과의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개별상담의 결과를 보호자에게 피드백을 해준다면 보호자의 양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심층면접대상자들의 경우도 저연령시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상담이 필요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자존감이 공격성, 비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⁸⁷⁾ 또한 이 연구에서 자문을 해 준 보호관찰관, 의료재활소년원 실무가 등도 저연령소년의 경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개별상담은 먼저 이들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지와 격려를 통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상담은 피해경험이 있는 저연령소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자문을 해 준 소년원교사에 의하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중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는 피해자-가해자 중첩유형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대상이었던 저연령소년 중에는 가정폭력 목격으로 상처받고 밖으로 돌다가 비행선배를 접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저연령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친구들과로부터의 놀림, 따돌림이나 괴롭힘 피해, 주변 어른, 지역아동센터 형들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경험은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처가 분노나 다른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상담을 통해 피해경험이 있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치유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87) 윤우석, 앞의 글; 전신현, 앞의 글.

셋째, 체험활동 등의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인 저연령소년 보호자의 경우 체험활동, 활발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 다른 보호자와 저연령소년의 경우도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에서 친사회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신체적 활동인 복싱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적 성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등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도 사회화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한 범죄예방 프로젝트인 KICK 프로젝트의 경우 스포츠를 매개체로 해서 다양한 교육 및 사회적 훈련, 조기화해 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체험활동과 다른 처우요소를 결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 중 ADHD가 있는 경우는 13사례 중 4사례였다.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16사례 중 4사례는 ADHD나 우울증 등이 있었다. 즉, ADHD 등의 문제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 중 한 사례의 경우 저연령시기에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ADHD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ADHD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 저연령소년에 대해 조기개입을 한다면 이들의 학교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정서적 문제 파악 및 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 된 저연령소년들 중 비행또래와 교제하는 경우는 주로 가정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에서 외로워하다가 다른 형들이 잘해주고, 지지해 주니까 같이 어울리게 된 경우, 부모불화 이후 밖으로 다니면서 SNS 등으로 비행친구들을 만난 경우, 부모의 방임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형들과 어울리게 된 경우, 보호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비행선배들과 어울리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면접대상이 된 청소년들의 경우도 초등학교 시기에 비행선배를 만났다고 말한 경우가 5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보호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출한 후 비행선배들을 만났다는 사례, 누군가 옆에 있기를 바래서 비행선배들을 만났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렇듯 저연령시기의 가정 내 문제는 비행

또래들과의 접촉으로 이끌 수 있고, 이는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한 올바른 양육방식 교육, 부모문제(역할스트레스 등)에 대한 상담⁷⁸⁸,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경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과 더불어 부모-자녀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저연령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다양한 처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판사와의 자문에서도 저연령소년의 스펙트럼이 넓고 어릴수록 개별적 처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경찰, 법원단계에서 다양한 조사(진단 및 상담포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저연령소년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처분이 내려질 경우 1호처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처우의 다양화 방안으로 먼저 지역사회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하는 처분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자원간 연계가 많은 편인데 이를 법원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협의체에 위탁하는 처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연계 처분은 지역사회에서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국가가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하는 감시체계는 필요할 수 있다(판사2).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는 2007년 소년사법 개혁으로 청소년에게만 부과하는 제재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배치하는 제재를 신설하였고, 이는 ‘소년서비스(Youth Service)’ 및 ‘소년보호(Youth Care)’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처분이 이전에는 보조적으로 활용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독립된 하나의 처분으로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부과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내 처우,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감독 형식의 처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설 내 처우의 경우 폐쇄형 시설과 개방형 시설의 연계를 활용한 처분도

78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저연령소년의 비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황성현, 앞의 글; Lucero et al., op., cit).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였던 청소년의 경우 저연령시기에 6호시설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저연령시기의 가족과의 분리, 집단생활, 자유의 박탈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자유박탈적 거소지정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폐쇄적으로 수용된 일정기간 이후 개방형 주거집단 행태로 변경하여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저연령소년에 대한 시설처분이 필요할 경우 폐쇄형과 개방형 연계 처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박탈이 가능한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곱째,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먼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사자료는 기관 간에 공유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의 경우도 한 번 조사를 받으면 조사자료가 소년사법체계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판사2).⁷⁸⁹⁾ 저연령소년일수록 조사시간, 조사시 질문에 대한 어려움 및 심리적 부담 등으로 중복 조사가 더 부정적일 수 있다. 또한 조사자료가 공유되어 활용될 경우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기관인 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 소년원간에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법무부 기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원, 법무부 기관 간에 소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소년사법과 아동복지(아동보호)간에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효과적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대피해가 비행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이 되었던 저연령소년의 경우 학대피해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저연령시기에 학대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특히 저연령시기에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피해가 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

789) 이와 더불어서 조사양식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즉, 조사서 양식이 통일될 경우 각 수사단계 업무를 분할함으로써 중복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안문희, 앞의 책, 172면).

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뉴햄프셔, 뉴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및 버몬트주의 경우 아동 복지 및 소년 사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단일 자동화 정보 시스템이 있어 아동복지와 소년사법체계 간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애리조나,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몬태나, 유타, 워싱턴 및 위스콘신 주에서는 아동복지 자동화 데이터체계와 소년사법 자동화 데이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타 체계에서 특정 역할을 가진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주거나 정보요청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⁷⁹⁰⁾⁷⁹¹⁾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복지와 소년사법체계 간에 정보공유(우선적으로 애리조나주 등의 형태로)가 이루어지고, 협업체계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여기서는 경찰, 법원, 처분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역사회 연계·협력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경찰단계에서 필요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분야 전문가, 발달장애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연령소년의 경우 발달장애 등이 비행과 관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조기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측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저연령소년 대상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790) Fromknecht, A., Systems Integratio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2014.6.,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3(http://www.ncjj.org/pdf/JJGPS%20StateScan/Systems_Integration_State_Scan_2014_3.pdf, 검색일: 2020.10.14.).

791) 또한 미국의 경우 아동복지와 소년사법체계에 포함된(과거 또는 현재) 소년을 의미하는 이중-지위(Dual-status) 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데이터 공유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공식적·비공식적 기관 간 협력, 위원회 운영, 법령, 법원 규칙 등을 활용하고 있다(ibid., pp.3-4.).

아직 저연령소년에 특화된 선도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데, 이들이 수적으로 적지만 조기개입은 교육과 상담을 통한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저연령소년의 특성별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연령소년에 대한 낙인을 지양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사범은 경찰단계에서 초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복적 사범 프로그램을 잘 이끌 수 있는 외부전문가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는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단계에서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위클래스)와는 체계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저연령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를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지자체 희망복지팀 등과의 정보공유 및 체계적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면 첫째, 법원과 지자체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법원차원에서 판사, 교육청, 경찰서,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위탁보호위원, 위탁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교환을 통한 보호처분 집행을 위해 소년보호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8조 제1항). 소년조사관과의 자문에 의하면, 이 협의회를 통해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역의 외부자원 활용에 대한 논의, 서비스 균질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년보호협의회에 지자체 담당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할 일차적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원 소년조사관이 자원발굴 및 연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처분을 할 수 있는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적 개입을 위한 자원연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연계할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를 토대로 한 치료, 혹은 이들에 대한 지지와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나 소년조사관 자문에 의하면, 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을 해 줄 기관들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발굴해서 늘리고 있다. 또한 외곽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저연령 소년의 경우 처음 재판받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아동학 전문가,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국선보조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저연령소년에게 맞는 소규모 가정형태의 임시조치 위탁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상의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문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전문위탁과 법원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분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⁹²⁾ 첫째, 1호처분시 보호자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2호-10호의 경우는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모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앞서 보았듯이 저연령소년의 경우 1호처분이 많이 내려지는데, 1호처분 대상자의 보호자교육을 담당할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1호처분이 예상될 때 이루어지는 처분전교육은 소년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두시간 집단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외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 이외의 곳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는 저연령소년을 위한 신병인수위탁 자원이 발굴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이 확대된다면 저연령소년에게 특화된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연령소년의 경우 중고생 연령대와 문화가 다르며, 이들에게 맞는 시설 환경,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정이외의 곳에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내 처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연령소년에게 적합한 사회 내 시설 자원이 발굴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

792)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저연령소년의 지역 유대가 강화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받을 수 있을 것이다(신한미, 앞의 글, 25면).

지금까지 각 단계별 지역사회연계·협력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를 보면, 저연령소년이 경찰→법원→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분절적이다. 각 단계별로 해당 소년을 조사하고 처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혹은 처분이후까지) 저연령소년을 일관되게 돌봐주는 기관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아동 복지, 소년사법, 조기 보호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ACS(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가,⁷⁹³⁾ 소년비행자(7-15세)에 대한 'Close to Home'의 전후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⁷⁹⁴⁾ 즉, ACS는 가정법원이 거주식 배치를 결정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소년의 필요에 적합한 배치를 결정한다.⁷⁹⁵⁾ 또한 배치가 결정된 후에는 ACS가 소년 및 가족, Close to Home 담당자, 소년에게 배정된 ACS의 배치 및 상근 전문가(Placement and Permanency Specialist, PPS)와 모임을 가지며, 여기서 배치결정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⁷⁹⁶⁾ 배치기간은 개별 소년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평균 6,7개월이다. ACS는 소년이 거주식 배치가 되자마자 시설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소년의 처우목표,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담당자와도 협력한다.⁷⁹⁷⁾ 거주식 배치를 마친 소년은 평균 4-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소년 및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가족 참여 및 가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PPS 담당자는 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⁷⁹⁸⁾ 이러한 ACS의 소년사법체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에 대한 감독은 소년사법프로그램 및 지원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and Services)에서 감독하고 있다.⁷⁹⁹⁾ 이는 지역기관이 소년사법체계에 있는 저연령소년에 대하여 조사부터 처분, 처분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연령소년에 대해

793) NYC Children, About ACS(<https://www1.nyc.gov/site/acs/about/about.page>, 검색일: 2020.10.3.).

794) NYC Children, Juvenile Justice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https://www1.nyc.gov/site/acs/justice/juvenile-justice-process.page>, 검색일: 2020.10.3.).

795) NYC Children, Placement Process(<https://www1.nyc.gov/site/acs/justice/placement-process.page>, 검색일: 2020.10.3.).

796) Ibid.

797) Ibid.

798) Ibid.

799) Ibid.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제2절 |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소년 지원방안

이 연구에서의 초점은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와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연령소년의 경우 복지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때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소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첫째, 복지적 개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는 각각 청소년청과 사회복지위원회가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각 지방당국의 YOT(Youth Offending Team)가 비행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소년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하여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전건 아동상담소(아동복지법에 의거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아동복지 전문기관)로 송치하여 아동상담소에서 조사 및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상담소가 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만 가정법원에 송치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저연령소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지역기관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지역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이 비행과 관련될 수 있다.⁸⁰⁰⁾ 이 연구의 자문대상인 한 저연령소년 담당보호관찰관의 경우 대상소년이 먹기 위한 절도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연령시기에 형사사법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지금까지의 처분에서 좋았던 경험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라고

800) Jackson, D.B., et al., op. cit., p.134.

하였다. 그리고 저연령시기의 보호관찰에서 좋았던 것은 쌀과 라면을 보내준 것이라고 하였으며, 저연령시기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음식의 문제도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복지적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저연령소년과 가족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지원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안전망의 경우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연령소년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필수연계기관 등에서 볼 때 청소년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드림스타트의 경우 취약계층 12세 이하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담당하지만, 취약계층 소년에 한정되고 있다. 두 지원체계에서 취약계층 가정의 9-12세는 교집합 부분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이외에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춘 기관 간 연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원 및 자원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10-12세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성공으로 자아개념을 정의한다.⁸⁰¹⁾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소속감은 저연령 소년의 비행에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⁰²⁾ 또한 아동학 교수들과의 자문에 의하면, 저연령일수록 학교가 중요하며,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은 중고생과 달리 책임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먼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적응을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인 저연령소년 사례 중 몇 사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또한 학교결석이 많은 사례가 3사례, 지각이 많은 사례가 2사례였다. 결석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는 경우, 늦잠을 자고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였다. 심층면접 대상인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결석이 많았던 사례가 16사례 중 7사례였다. 또한 저연령시기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생활 적응이라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

801) Portland State University, op. cit., p.1.

802) Lucero, J. L., et al., op. cit., pp.165-173.

고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등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담당교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자원연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면접대상 저연령소년들 중에도 위클래스 상담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다. 위클래스를 통한 상담과 필요한 경우 외부 자원연계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외부전문가 개입)을 적절히 활용해서 저연령소년의 관계회복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낙인방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⁸⁰³⁾

넷째, 10세 미만 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10세 미만이 문제가 있을 경우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되기도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가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놀이치료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117로 접수된 10세 미만의 사례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연계한 경우도 있었다(경찰).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는 10세 미만 아동이 계속 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호자가 양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린 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세 미만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간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가의 경우 위기 상황시 상담사 1급이 슈퍼비전을 계속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양질의 지역사회 자원 확보와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803)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초등용, 2020(<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8005&ctgCd=209>, 검색일: 2020.11.20.)).

1. 국내문헌

경찰청 홈페이지,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회복적 경찰활동 및 제도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2.jsp>, 검색
일: 2020.10.3.)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2020년 회복적 경찰활
동 전국 시행(130개 경찰서)-경찰서와 전문기관간 1:1 협업체계 구축, 협력치
안 구현-, 2020.4.17.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0420085932697&q_tab=&q_searchKeyTy=lngtCn__1002&q_searchVal=%ED%9A%8C%EB%B3%B5%EC%A0%81%20%EA%B2%BD%EC%B0%B0%ED%99%9C%EB%8F%99&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검색일: 2020.10.3.).

경찰청, 2019 경찰백서, 2019.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0.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초등용, 2020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8005&ctgCd=209>, 검색일: 2020.11.20.).

국회도서관,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독일], 2020.

국회도서관, 소년법원법[독일], 2017.

기광도,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1,
5-30면.

김병욱의원 블로그, '김병욱의원, 초·중·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설치율 65.5%, 전라
북도 31.4%로 가장 낮아', 보도자료 2020.10.4.(<https://blog.naver.com/ilungkim/222106271968>, 검색일: 2020.11.11.).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는

- 문, 2016.
-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189-210면.
- 김성돈·강지명,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와의 관계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2.
- 김은주, 초등학생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인터넷게임중독이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 초등교육연구 28(3), 2015, 95-122면.
- 김지연·김희진,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최수정,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 김향곤,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자료집, 2019.1.11., 대한변호사협회, 2019, 75-86면.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지역드림스타트 안내(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4_01_01.asp, 검색일: 2020.10.20.).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지원과정(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검색일: 2020.10.20.).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지원대상(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2_01.asp, 검색일: 2020.10.20.).
- 박선영, 소년사범에 대한 중간처우 확대방안, 소년보호연구 31(1), 2018, 71-103면.
- 배상균,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검토-일본 소년원법과 소년감별소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1(1), 2018, 125-156면.
- 배화옥·강지영,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6(1), 2016, 5-29면.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한국보호관찰 30년사, 2019.
- 법무부, 2020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2020.
-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내부자료, 2020.
-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2020.
-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2020.

-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 2020.
- 보건복지부, 2019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58452, 검색일: 2020.10.13.).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20(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58413, 검색일: 2020.10.1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2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알림(2019.12.31. 기준)-2020 아동복지시설 현황(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9667, 검색일: 2020.10.13.).
-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운영실무, 2014.
- 서정아·박선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2016.
- 소병훈의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 28,283건, 2020.9.29.(<https://blog.naver.com/sotongsa/222102877307>, 검색일: 2020.11.4.).
-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 149-173면.
- 송민영·박현선,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2017, 195-215면.
- 송현중·노혜련, 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20), 2012, 307-335면.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업무현황, 내부자료, 2020.6.
- 신동주,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자료집, 2019.1.11., 대한변호사협회, 2019, 51-74면.

- 신재현·김상운, 초등학교 학생의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2015, 227-235면.
- 신한미,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재판 절차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내부자료, 2018, 1-33면.
- 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위기지원사업(청소년안전망)(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166, 검색일: 2020.11.18.).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위기지원사업(청소년안전망)(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 검색일: 2020.11.18.).
-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2020.
- 윤우석, 초등학생 비행에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행위의 차별적 영향-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한국범죄심리연구 6(1), 2010, 175-205면.
- 이승현·박선영,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 이승현·박성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 이정미·이지연·장진이, 초등학생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2012, 93-113면.
- 이주락·강욱·최대현·최낙범, 한국형 학교전담경찰관 표준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4.
- 이진국·오영근, 가정법원의 촉법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2017.
- 임선아, 아동학대 피해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015, 85-108면.
- 전신현, 학교적응의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초, 중, 고 세학년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7, 2019, 73-97면.
- 조은정,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2014, 103-126면.
- 조은희, 민법상 자녀복리가 위험한 경우 가정법원의 역할 - 독일민법 제1666조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무 10(1), 2018, 149-176면.

- 최정규·강정은·김수정·박보희·전미아·정병수·현소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19(2), 2008.
63-92면.
- 한영선·김성곤·서석교, 저연령 비행청소년 치우모형 개발 연구-촉법소년의 개별처우
를 중심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9, 1-44면.
- 황성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012, 23-43면.
- Wee홈페이지, 사업소개(<http://www.wee.go.kr/home/intro/intro01001v.php>, 검색
일: 2020. 11.11.).
- Wee홈페이지, 수행조직(<http://www.wee.go.kr/home/intro/intro02001v.php>, 검색
일: 2020.11.11.).

2. 국외문헌

1) 영미문헌

- 101st General Assembly, State of Illinois 2019 and 2020 SB1357
(http://custom.statenet.com/public/resources.cgi?id=ID:bill:IL2019000S1357&ciq=ncsl53&client_md=03ba3e0f3d9fe63156cdae711a9c6022&mode=current_text, 검색일: 2020.7.22.).
- 2019 Montana Legislature Senate Bill NO. 262 (http://custom.statenet.com/public/resources.cgi?id=ID:bill:MT2019000S262&ciq=ncsl53&client_md=896fc4c515a1f2cfc562f8b48f83abf6&mode=current_text, 검색일: 2020.7.22.).
- 80th Oregon Legislative Assembly—2019 Regular Session, Enrolled Senate Bill
1008, p.5(<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1008>, 검색일: 2020.6.26.).
- Abam, Ruddy Sirri-Aknowi, Early Childhood Community Intervention: Preventing
Neighborhood Factors of Crime and Delinquency,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Law & Society Annual Conference, 2015.

Action for Children, Fostering in the North(<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how-we-can-help/our-local-services/find-our-services-near-you/fostering-in-the-north/>, 검색일: 2020.10.11).

Action for Children, Our Work in England(<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our-work-and-impact/our-work-around-the-uk/our-work-in-england/>, 검색일: 2020.10.11).

Andersson, S., National Report of Sweden in the Project “Keeping Youth Away from Crime - Searching for the Best European Practices” Swedish Perspective - April 2014”, (<http://www.oijj.org/en/keeping-youth-away-from-crime-results>, 검색일: 2020.6.27.).

Berti, C., and Pivetti, M., Childhood Economic Disadvantage and Antisocial Behavior: Intervening Factors and Pathway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7, 2019, pp.120-126.

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About us Program(www.bbbs.org/, 검색일: 2020.8.18.).

Big Lottery Fund, Malachi Case Study, pp.1-2(<https://cdn.catch-22.org.uk/wp-content/uploads/2017/04/Malachi-Early-Intervention-and-Family-Support-Programme.pdf>, 검색일: 2020.10.10.).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Blueprints Program Search Example 1(<https://www.blueprintsprograms.org/blueprints-search-example-1/>, 검색일: 2020.9.23.).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LifeSkills Training (LST) (<https://www.blueprintsprograms.org/programs/5999999/lifeskills-training-lst/>, 검색일: 2020.9.23.).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Providing a Registry of Experimentally Proven Programs(<https://www.blueprintsprograms.org/>, 검색일: 2020.9.23.).

Bristol Drugs Project, Family Support(<https://www.bdp.org.uk/family-support>, 검색일: 2020.10.12.).

Bristol Drugs Project, Youth Work(<https://www.bdp.org.uk/youth-work>, 검색일: 2020.10.12.).

- Bristol.gov.uk, Stepping Up programme(<https://www.bristol.gov.uk/mayor/stepping-up-programme>, 검색일: 2020.10.12.).
- Buck, K. A., and Dix, T., Parenting and Naturally Occurring Declines in the Antisocial Behavio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Process Model.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6(3), 2014, pp.257-277.
- Burke, J. D., Mulvey, E. P., and Schubert, C. A.,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Service Use among First-tim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2), 2015, pp.3774-3781.
- Calcasieu Parish Police Jury, LA, Fins Division(<https://www.calcasieuparish.gov/services/juvenile-justice-services/programs-department/fins-division>, 검색일: 2020.9.16.).
- Calcasieu Parish Police Jury, LA, Fins Families in need of Services(<https://www.calcasieuparish.gov/services/juvenile-justice-services/programs-department/fins-families-in-need-of-services>, 검색일: 2020.9.13.).
- Childcare,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https://www.childcare.gov/consumer-education/head-start-and-early-head-start>, 검색일: 2020.7.17.).
- Colorado General Assembly, SB19-108 Juvenile Justice Reform, 2019, pp.5-8 (https://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2019a_108_signed.pdf, 검색일: 2020.6.22.).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2007(<http://www.refworld.org/docid/4670fca12.html>, 검색일: 2020.6.30.).
- Community Children's Health Partnership(CCHP), Young People's Substance Misuse(<http://cchp.nhs.uk/cchp/explore-cchp/young-peoples-substance-misuse>, 검색일: 2020.10.12.).
- Community-Based Impact Report 2019.(<https://bbbsu.org/wp-content/uploads/2020/07/Community-Based-V4.pdf>, 검색일: 2020.10.21.).
- CORE Professional Services, P.A.(<https://coreprofessionalservices.com/index.html>, 검색일: 2020.10.22.).
- Curtis, C. and Norgate, R., An Evaluation of the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curriculum at Key Stage 1.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3(1), 2007, pp.33-44.

- Deinstitutionalization of Status Offenders (DSO) Facts and Resources, 2011.
-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Status Offenders Literature Review.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5.
- Dünkel, F., Juvenile Justice Systems in Europe-Reform Developments between Justice, Welfare and 'New Punitiveness', *Kriminologijos Studijos* 10, 2014, pp.31-76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1040931_Juvenile_Justice_Systems_in_Europe_-_Reform_developments_between_justice_welfare_and_%27new_punitiveness%271, 검색일: 2020.10.10.).
-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About the Programme
(<https://guidebook.eif.org.uk/programme/strengthening-families-programme-10-14#about-the-programme>, 검색일 2020.10.13.).
-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EIF Evidence Standards(<https://guidebook.eif.org.uk/eif-evidence-standards>, 검색일: 2020.10.13.).
-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me 10-14
(<https://guidebook.eif.org.uk/programme/strengthening-families-programme-10-14>, 검색일: 2020.10.13.).
- Fifth Judicial District Court, Families in Need of Services(FINDS)(<http://www.5jdc.us/fins.php>, 검색일: 2020.9.15.).
- Findlaw, Juvenile Court Procedure, 2019.2.8.(<https://criminal.findlaw.com/juvenile-justice/juvenile-court-procedure.html>, 검색일: 2020.6.18.).
- Findlaw, Police Questioning of Minors, 2019.2.14.(<https://criminal.findlaw.com/juvenile-justice/police-questioning-of-minors.html>, 검색일: 2020.9.13.).
- Findlaw, Types of Criminal Sentences(<https://criminal.findlaw.com/criminal-procedure/types-of-sentences.html>, 검색일:2020.6.18.).
- Fromknecht, A., Systems Integratio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 2014.6,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p.1-4(http://www.ncjj.org/pdf/JJGPS%20StateScan/Systems_Integration_State_Scan_2014_3.pdf, 검색일: 2020. 10.14).

- General Assembly of North Carolina Session 2019, Senate Bill DRS35175-MV-114
Short Title: Raise the Age Modifications.(<https://webservices.ncleg.gov/ViewBillDocument/2019/2104/0/DRS35175-MV-114>, 검색일: 2020.6.26.).
- Garces, E., Thomas, D., and Currie, J., Longer term effects of Head Star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merican Economic Review, 2/2000(<http://www.econ.ucla.edu/people/papers/Currie/Currie139.pdf>, 검색일: 2020.8.18.).
- Head Start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Early Head Start Programs(<https://eclkc.ohs.acf.hhs.gov/programs/article/early-head-start-programs>, 검색일: 2020.8.18.).
- Head Start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Head Start Act (<https://eclkc.ohs.acf.hhs.gov/policy/head-start-act>, 검색일:2020.7.19.).
- Holfeld, B., and Leadbeater, B. J., The Interrelated Effects of Traditional and Cybervictimization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Symptom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64(2), 2018, pp.220-247.
- Hollander, A and Tärnfalk, M., Juvenile Crime and the Justice System in Sweden, 2017.2.26.(<https://lawexplores.com/juvenile-crime-and-the-justice-system-in-sweden/>, 검색일: 2020.11.17.).
- Huang, Chien-Chung, Vikse, J. H., Lu, S and Yi, S., Children's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Early Delinquency, *Journal of Family Violence* 30, 2015, pp.953-965.
- Jackson, D.B., Newsome, J., Vaughn, M.G., and Johnson, K.R., Considering the Role of Food Insecurity in Low Self-control and Early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6, 2018, pp.127-139.
- J. D. B. v. NORTH CAROLINA(2011) No. 9-11121 Argued: March 23, 2011 Decided: June 16, 2011.
- Johnson, D. L., "EARLY CHILDHOOD PROGRAMS The Houston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 Project, Disseminating a Viable Program for Enhancing At-Risk Families",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vol. 7, Issue 1, 1990.

- Johnson, D. L.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 Follow-up Project: Child Behavior Problem Result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7(4), 2006, pp.391-407.
- Johnson, D. L., and Walker, T., A Follow-up Evaluation of the Houston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5(3), 1991, pp.226-236.
- Juan, Shao-Chiu., Washington, H. M., and Kurlychek, M.C., Breaking the Intergenerational Cycle: Partner Violence, Child-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5(5-6), 2017, pp.1158-1181.
- Law and Parents, The Role of the Youth Offending Team(<http://www.lawandparents.co.uk/role-youth-offending-team.html>, 검색일: 2020.10.21.).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LII, *Parens Patriae*(https://www.law.cornell.edu/wex/parens_patriae, 검색일: 2020.9.12.).
- Lightowler, C. and Dearie, C., Case Study: Secure Care in Sweden, Centre for Youth & Criminal Justice, 2016. (https://strathprints.strath.ac.uk/68198/1/Lightowler_Dearie_CYCJ_2016_secure_care_in_sweden.pdf, 검색일: 2020. 6. 27.)
- Lochman, J. E., Dishion, T. J., Powell, N. P., Boxmeyer, C. L., Qu, L., and Sallee, M., Evidence-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for Preadolescent Aggressive Children: One-year Outcomes Following Randomization to Group versus Individual Delive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3(4), 2015, pp.728-735.
- Louisiana Families In Need of Services Association, Inc., Committed to Providing Services to Families in Need(<http://lafins.org/>, 검색일: 2020.9.17.).
- Louisiana Families In Need of Services Association, Inc., REGINS(<http://lafins.org/regions.html>, 검색일: 2020.9.17.).
- Lucero, J. L., Barrett, C., and Jensen, H.,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School Factors Related to Early Delinquency, *Children & Schools* 37(3), 2015, pp.165-173.
- Malachi, About Us(<https://www.malachi.org.uk/>, 검색일: 2020.10.10.).

- Malachi, Malachi Kids(<https://www.malachi.org.uk/services/young-kids>, 검색일: 2020.10.10.).
- Malachi, Malachi Professionals(<https://www.malachi.org.uk/services/professionals>, 검색일: 2020.10.10.).
- Malachi, Malachi Teens(<https://www.malachi.org.uk/services/young-teens>, 검색일: 2020.10.10.).
- Malachi in Staffordshire(<https://www.malachi.org.uk/services/malachi-in-staffordshire>, 검색일: 2020.10.10.).
- MBK(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About mbka (<https://www.obama.org/mbka2/about-mbka/>, 검색일: 2020.7.13.).
- MBK(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Our Work(<https://www.obama.org/mbka2/our-work/>, 검색일: 2020.7.30.).
- MBK(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Reading at Grade Level by Third Grade(<https://www.obama.org/reading-grade-level/>, 검색일: 2020.7.30.).
-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Youth Conditional Cautions, Crime & Disorder Act 1998, 2013(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43443/9780108512179.pdf 2013/3, p. 3., 검색일: 2020.10.17.).
- Ministry of Justice Sweden, Fact Sheet - Interventions With Young Offenders, 2006, pp.1-4.(<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2abd592d47e437fa1372a862b2a988c/interventions-with-young-offenders>, 검색일: 2020.10.25).
- Monahan, K.C., Steinberg, L., and Piquero, A. R., Juvenile Justice Policy and Practi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44(1), 2015, pp.577-619.
- Multisystemic Therapy, Multisystemic Therapy (MST)(<http://www.mstuk.org/about/about-2>, 검색일: 2020.10.16.).
- Multisystemic Therapy, Multisystemic Therapy (MST)(<http://www.mstuk.org/multisystemic-therapy-mst>, 검색일: 2020.10.16.).
- Multisystemic Therapy, Nine Principles (<http://www.mstuk.org/about/about-1>,

검색일: 2020.10.16.).

National Institut of Justice, Program Profile: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MPP)
(<https://www.crimesolutions.gov/ProgramDetails.aspx?ID=247>, 검색일:
2020.7.13.).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on), Juvenile Justice 2019 Year-End
Report(<https://www.ncsl.org/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juvenile-justice-2019-year-end-report.aspx>, 검색일: 2020.6.22.).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About the New York State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http://www.nysed.gov/mbk/about-new-york-state-my-brothers-keeper-initiative>, 검색일: 2020.7.14.).

Newton, N. C., and Bussey, K., The Age of Reason: An Examin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Involved in Delinquent Behaviour, 2012, pp.1-14
(<https://bpspsychub.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1111/j.2044-8333.2010.02004.x>, 검색일: 2020.11.1.).

NYC Children, About ACS(<https://www1.nyc.gov/site/acs/about/about.page>, 검색
일: 2020.10.3).

NYC Children, Close to Home(<https://www1.nyc.gov/site/acs/justice/close-home.page>, 검색일: 2020.10.3.).

NYC Children, Juvenile Justice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1.nyc.gov/site/acs/justice/juvenile-justice-process.page>, 검색
일: 2020.10.3.).

NYC Children, Placement Process(<https://www1.nyc.gov/site/acs/justice/placement-process.page>, 검색일: 2020.10.3.).

NYC Children, Support(<https://www1.nyc.gov/site/acs/justice/support.page>, 검색
일: 2020.10.3.).

O'Brien, P., Juvenile Justice Done Wrong, and How to Do It Right(<https://obriensolicitors.com.au/juvenile-justice-done-wrong-done-right-scandinavia/>,
검색일: 2020.6.20.).

Office of Head Start, Head Start Services(<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검색일: 2020.8.17.).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court blend

- ed sentencing offense and minimum age criteria, 2015(https://www.ojjdp.gov/ojstatbb/structure_process/qa04113.asp?qaDate=2015, 검색일: 2020.6.18.).
- OJJDP, Easy Access to the Census of Juveniles in Residential Placement(http://www.ojjdp.gov/ojstatbb/ezacjrp/asp/Offense_Adj.asp 검색일: 2020.7.3.).
- OJJDP, Easy Access to the Census of Juveniles in Residential Placement: 1997-2017 (<https://www.ojjdp.gov/ojstatbb/ezacjrp/asp/display.asp>, 검색일: 2020.11.16.).
- Papadodimitraki, Y.,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ACR) Comparative Analysis-International Profile Sweden, Centre for Youth & Criminal Justice 2016.3, pp.1-6.(<https://cycj.org.uk/wp-content/uploads/2016/03/MACR-International-Profile-Sweden.pdf>, 검색일: 2020. 4. 1).
- Action for Children, About us(<https://parents.actionforchildren.org.uk/about/>, 검색일: 2020.10.12.).
- Parks, G.,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ctober 2000.
-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OST Note Number 577, 2018.6.(<https://dera.ioe.ac.uk//31884/>, 검색일: 2020.10.10.).
- Persson, M., Caught in the Middle?: Young Offenders in the Swedish and German Juvenile Criminal Justice Systems. Lund University, 2017.
- Piotrowska, P. J., Stride, C. B., Croft, S. E., and Rowe, R., Socioeconomic Status and Antisocial Behaviour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5, 2015, pp.47-55.
- Portland State University, Early Adolescence(10-12 years old) Developmental Milestones, pp.1-2(<http://www.cwpsalem.pdx.edu/assets/early1.pdf>, 검색일: 2020.8.31.).
- Prevention Solutions, Midwestern Prevention Project(<https://preventionsolutions.edc.org/services/resources/midwestern-prevention-project>, 검색일: 2020.

7.11.).

- Respect, CAPVA Child and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and Abuse (<https://www.respect.uk.net/pages/114-capva>, 검색일: 2020.10.14.).
- Respect, Face-to-Face Training(<https://www.respect.uk.net/pages/66-face-to-face-training>, 검색일: 2020.10.14.).
- Respect, Project(<https://www.respect.uk.net/pages/32-projects>, 검색일: 2020.10.14.).
- Respect, RYPP Respect Young People's Programme(<https://www.respect.uk.net/pages/115-rypp>, 검색일: 2020.10.14.).
- Respect, Training, Implementation and Services(<https://www.respect.uk.net/pages/117-training-implementation-and-services>, 검색일: 2020.10.14.).
- Richards, K., What makes Juvenile Offenders Different from Adult Offenders?,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409,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1, pp.1-7.
- Savignac, J., Families, Youth and Delinquency: The State of Knowledge, and Family-based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Research Report: 2009-1,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re(NCPC), 2009. (<https://www.publicsafety.gc.ca/cnt/rsrscs/pblctns/fmls-yth-dlnqnc/fmls-yth-dlnqnc-eng.pdf>, 검색일: 2020. 10.14).
- Schweinhart, L. J., Barnes, H. V., and Weikart, D. P.,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Monographs of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No. 10.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1993.
- Scott, E. S., Children are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s and Justice Policy,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11(1): 2013, pp.71-105.
- Sentencing Council, Sentencing Children and Young People(<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magistrates-court/item/sentencing-children-and-young-people/#Section%20six:%20Available%20sentences>, 검색일: 2020.10.20.).
- Singh, A., and Kiran, U. V., Effect of Single Parent Family on Child Delinq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3(9), 2014, pp.866-868.

- Social Programs That Work, Perry Preschool Project(<https://evidencebasedprograms.org/programs/perry-preschool-project/>, 검색일: 2020.7.16.).
- State of Michigan 100th Legislature Regular Session of 2019, Enrolled Senate Bill No. 102(<http://www.legislature.mi.gov/documents/2019-2020/publicact/pdf/2019-PA-0097.pdf>, 검색일: 2020.6.23.).
- Stearns County Attorney, Extended Jurisdiction Juvenile (EJJ) Designation, (<https://www.stearnscountymn.gov/382/Extended-Jurisdiction-Juvenile-EJJ-Desig>, 검색일: 2020.10.11.).
-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Court Process(<https://www.stearnscountymn.gov/288/Juvenile-Court-Process>, 검색일: 2020.09.12.).
-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Diversion Program(<https://www.stearnscountymn.gov/261/Juvenile-Diversion-Program>, 검색일: 2020.10.11.).
- Stearns County Attorney, Juvenile Supervision Sex Offender Program(<https://www.stearnscountymn.gov/1179/Juvenile-Supervision>, 검색일: 2020.10.11.).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Youth Crime(<https://www.cps.gov.uk/crime-info/youth-crime>, 검색일: 2020.10.18.).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Youth Offenders(<https://www.cps.gov.uk/legal-guidance/youth-offenders>, 검색일: 2020.10.19).
-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2014/02/27(<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2/27/remarks-president-my-brothers-keeper-initiative>, 검색일: 2020.7.13.).
- The Young Foundation, 18 Services Preventing Youth Offending(<https://www.youngfoundation.org/youth-education/realising-ambition-case-studies/>, 검색일: 2020.10.10.).
- The Young Foundation, Realing Ambition(<https://www.youngfoundation.org/projects/realising-ambition/>, 검색일: 2020.10.24.).
- U.S. News, “9-Year-Old Charged With Murder in 5 Illinois Fire Deaths”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19-10-08/9-year-old-to-face-5-murder-charges-in-deadly-illinois-fire>, 검색일: 2020.6.18.).
- UK GOV,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https://www.gov.uk/age-of-criminal-res>

- possibility, 검색일: 2020.10.17.).
- UK GOV, What Happens If a Child under 10 Breaks the Law?(<https://www.gov.uk/child-under-10-breaks-law>, 검색일: 2020.10.17.).
- UK GOV, What Happens If Your Child Gets in Trouble with the Police(<https://www.gov.uk/if-my-child-gets-in-trouble-with-police>, 검색일: 2020.10.17.).
- UK GOV, 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what-these-programmes-are-and-how-they-work>, 검색일: 2020.10.21.).
- UK GOV,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검색일: 2020.10.21.).
- UK Legislation, Crime (Sentences) Act 1997(<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7/43/contents>, 검색일: 2020.7.16.).
- UK Legislation, Crime and Disorder Act 1998(<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ZA>, 검색일: 2020.10.17.).
- US Legal, Juvenile Blended Sentencing Law and Legal Definition(<https://definitions.uslegal.com/j/juvenile-blended-sentencing/>, 검색일: 2020.6.18.).
- Weijers, I.,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Continental Europe has a Solid Rational Base. *Northern Ireland Legal Quarterly* 67, 2016, pp.301-310.
- Young, S., Greer, B., and Church, R., Juvenile Delinquency, Welfare, Justice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A Global Perspective, *BJPsych Bulletin* 41(1), 2017, pp.21-29.
- Your Path to Government Benefits,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https://www.benefits.gov/benefit/616>, 검색일: 2020.8.18.).
-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Business Plan 2020/21(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84764/YJB_Business_Plan_2020-21.pdf, 검색일: 2020.10.7.).
- Youth.GOV, Perry Preschool Project(<https://youth.gov/content/perry-preschool-project>, 검색일: 2020.7.16.).
- Zagar, R. J., Busch, K. G., and Hughes, J. R., Empirical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and Best Treatments: Where Do We Go From Here?.
Psychological Reports 104(1), 2009, pp. 279-308.

Zajac, K., Randall, J., and Swenson, C.C., Multisystemic Therapy for Externalizing Youth, 2015.(<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75575/>,
검색일: 2020.10.16.).

2) 독일문헌

Bindel-Kögel, G., Heßler, M. and Münder, J., Kinderdelinquenz Zwischen Polizei und Jugendamt, Münster: LIT Verlag, 2004.

Bundeskriminalamt(Hrsg.),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republik Deutschland Jahrbuch 2019 Band 3 Tatverdächtige, Wiesbaden, 2020.

Düinkel, F., Juvenile Justice Systems in Europe – Reform Developments Between Justice, Welfare and ‘New Punitiveness’, Kriminologijos Studijos, 10, 2014, pp.31-76(<https://www.journals.vu.lt/kriminologijos-studijos/article/view/3676>, 검색일: 2020.6.27.).

Eisenberg, U., Zur rechtsstellung von Kindern im polizeilichen Ermittlungsverfahren, in: StV1989(a), pp. 554-556.

Eisenberg, U., Jugendgerichtsgesetz. 20., neu bearb. Aufl., München: C. H. Beck, 2018(b).

Gernhuber, J. and Coester-Waltjen, D., Familienrecht, 7. Aufl., München: C. H. Beck, 2020.

Heitmann, H. and Martens, T., 25 Jahre KICK – Sport gegen Jugenddelinquenz, Hrsg. von GSJ - Gesellschaft für Sport und Jugendsozialarbeit GmbH, 2018(https://www.kick-projekt.de/files/2020/05/KICK_broschuere_gesamt.pdf, 검색일: 2020.6.27.).

Holthusen, B., Projekt: Polizeilich mehrfach auffällige Strafunmündige. Ergebnisbericht für die Fachpraxis, Deutsches Jugendinstitut e. V., 2011(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jugendkriminalitaet/DJI_Bericht_Strafunmuendige_nuernberg.pdf, 검색일: 2020.6.27.).

KICK 프로젝트 운영단체(<https://www.kick-projekt.de/ueber-uns/die-traeger/>, 검색

색일: 2020.10.28.)

KICK 프로젝트 위치 (<http://www.kick-projekt.de/standorte/>, 검색일: 2020.10.28.)

Kunkel, P.-C., Kepert, J., and Patter, A.,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7. Aufl., Baden-Baden: Nomos, 2018.

Meier, B.-D., Rössner, D. and Schöch, H., Jugendstrafrecht. 2. Aufl., München: C. H. Beck, 2007.

Meier, B.-D., Zwischen Opferschutz und Wahrheitssuche, JZ 1991, 638 ff.

Ostendorf, H., Jugendgerichtsgesetz. 7. Aufl., Baden-Baden: Nomos, 2007(a).

Polizeiliche Dienstvorschrift (PDV) 382 Bearbeitung von Jugendsachen (Ausgabe 1996), in: DVJJ-Journal, 1997, pp. 5-21.

Schleicher, H., Jugend- und Familienrecht, 15. Aufl., München: C. H. Beck, 2020

Trenczek, T., Inobhutnahme zur Krisenintervention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SGB VIII Online-Handbuch (<https://www.sgbviii.de/s124.html>, 검색일: 2020.6.28.).

Winkler, J., Kap. 3. Kinder- und Jugendhilferecht, in: Schleicher, H., Jugend- und Familienrecht, 15. Aufl., München: C. H. Beck, 2020.

3) 독일 및 스웨덴문헌-기타 자료

Anordnung über Mitteilungen in Strafsachen (MiStra) in der ab dem 1. Mai 2019 geltenden Fassung vom 1. Februar 2019(http://www.verwaltungsvorschriften-im-internet.de/bsvwvbund_27032019_RB414313R2122019.htm, 검색일: 2020.10.20.).

CYCJ, 'Spot the difference': Sweden International Case Study(<http://www.cycj.org.uk/spot-the-difference-sweden-international-case-study/>, 검색일: 2020.10.20.).

Fraczek, J., Schwere Straftaten von Kindern: Was passiert mit den Tätern? (<https://web.de/magazine/panorama/schwere-straftaten-kindern-passiert-taetern-31418422>, 검색일: 2020.6.27.)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 홈페이지 - LVU - Assessment and Treatment in Special Residential Homes for Young People, <https://w>

- ww.stat-inst.se/om-sis/om-webbplatsen/other-languages/the-swedish-national-board-of-institutional-care/ 에서 하위메뉴 LVU - Assessment and Treatment in Special Residential Homes for Young People로 이동 (<https://www.stat-inst.se/om-sis/om-webbplatsen/other-languages/the-swedish-national-board-of-institutional-care/lvu-assessment-and-treatment-in-special-residential-homes-for-young-people/>, 검색일: 2020.10.20.).
- KICK 프로젝트 운영단체(<https://www.kick-projekt.de/ueber-uns/die-traeger/>, 검색일: 2020.10.28.).
- KICK 프로젝트 위치 (<http://www.kick-projekt.de/standorte/>, 검색일: 2020.10.28.).
- 바이에른 경찰 홈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 (<https://www.polizei.bayern.de/schuetzenvorbeugen/beratung/schule/>, 검색일: 2020.9.28.).
- 베를린 서비스 포털 - 청소년보호 - 아동 및 청소년 양육보호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8305/>, 검색일: 2020.10.01.).
- 베를린 청소년·가족재단 재단 소개 (<https://jfsb.de/stiftung/>, 검색일: 2020.10.20.).
- 베를린 청소년·가족재단. 2020년 장려 프로젝트 (https://jfsb.de/stiftung/foerderprojekte/#anchor_193f3870_Tab-1-2017, 검색일: 2020.10.20.).
- 샤르로텐부르트-북 청소년청 지역팀 정보: '샤르로텐부르트-빌머스도르프 지방청 - 청소년청 - 지역팀 샤르로텐부르크-북' (<https://www.berlin.de/ba-charlottenburg-wilmersdorf/verwaltung/aemter/jugendamt/regionalteams/1-charlottenburg-nord/>, 검색일: 2020.10.1.).
- 연방 아동·청소년보호연합 홈페이지(<https://www.bag-jugendschutz.de/>, 검색일: 2020.6.27.).

4) 일본문헌-단행본

- 鮎川潤 『少年非行－社会はどう処遇しているか－』(左右社、2014年)
- 植村立郎 『骨未成年法講義』(法曹会、2016年)
- 川出敏裕 『少年法』(有斐閣、2015年)
- 警察庁 『令和2年警察白書』(2020年)
- (<https://www.npa.go.jp/hakusyo/r02/data.html>, 검색일: 2020.10.29.).

総務省 『少年の非行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総務省、2007年)

法務省 『令和元年版 犯罪白書』(2019年)

若穂井透・有村大士・塚本恵美 『「触法少年の送致と児童相談所の現状に関する調査」 分析結果報告』(全国児童相談所長会、2009年)

守屋克彦・斎藤豊治(編) 『コンメンタール少年法』(現代人文社、2013年)

5) 일본문헌-논문

柑本美和 「少年法と児童福祉法—触法少年の処遇をめぐって—」 立教法務研究第9号 (2016年)

川出敏裕 「非行少年に対する法的対応システムの現状と課題」 『少年非行に対する法的対応』 (日工組社会安全研究財団、2009年)

馬淵泰至 「少年事件Q&A第9回」LIBRA Vol.4 No.6 (2004年)

丸山雅夫 「少年法の理念と現実」信州大学法学論集 第16号 (2011年)

Shunsuke Takada,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Child Welfare in Japanese Children's Self-reliance Support Facilities, Contemporary Japan Volume 30 Issue 1, 2018.

6) 일본문헌-웹사이트

片岸法律事務所 『14歳未満の少年(触法事件について)』

(<http://www.toshix.com/0061206syokuhou.html>, 검색일: 2020.10.29.).

検察庁 『少年事件について』(http://www.kensatsu.go.jp/gyoumu/shonen_jiken.htm, 검색일: 2020.10.29.).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html>, 검색일: 2020.10.29.).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1章 児童相談所の概要』 (<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1.html>, 검색일: 2020.10.29.).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4章 援助』 (<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4.html#07>, 검색일: 2020.10.29.).

厚生労働省 『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5章 一時保護』 (<https://www.mhlw.go.jp/bunya/>

- kodomo/dv19/01-05.html, 검색일: 2020.10.29.).
- 厚生労働省『児童相談所運営指針 第7章 各種機関との連携』(<https://www.mhlw.go.jp/bunya/kodomo/dv19/01-07.html#11>, 검색일: 2020.10.29.).
- 厚生労働省『児童相談所虐待対応ダイヤル「189」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ial_189.html, 검색일: 2020.10.29.).
- 厚生労働省『全国児童相談所一覧』(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zisouichiran.html, 검색일: 2020.10.29.).
- 厚生労働省『福祉行政報告例 / 平成28年度 福祉行政報告例 児童福祉』(<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450046&tstat=000001034573&cycle=8&year=20161&month=0&tclass1=000001108815&tclass2=000001108820>, 검색일: 2020.10.29.).
- 裁判所「事件の受理」(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jur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 裁判所「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tyousa/index.html, 검색일: 2020.10.29.).
- 裁判所「審判」(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inpan/index.html, 검색일: 2020.10.29.).
- 裁判所「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 裁判所「試験観察」(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iken/index.html, 검색일: 2020.10.29.).
- 裁判所「処分の種類」(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syonen/syonen_syurui/index.html, 검색일: 2020.10.29.).

3. 관련문헌

- 최선경, 소년보호사건의 새로운 절차에서 조사관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회, 2011.3.28.

배화옥, 아동과 복지, 서울: 신정출판사, 2010.

Brunner, R. and Dölling, D., Jugendgerichtsgesetz, 11. Aufl., Berlin: de Gruyter, 2002, § 1 Rn. 13.

Crawford, Adam.,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Politics, Policies and Practices, Longman, Harlow, 1998.

Fionda, Julia., Devils and Angels – Youth Policy and Youth Crime. Oxford: Hart Publishing, 2005.

Forsyth, C.J., Asmus, G., Forsyth, Y.A., Stokes, B.R., and Mayne, M., Child Delinquents: Examining the Market for Criminal Futures, Deviant Behavior 32(5), 2011, pp.441-450.

Janson, Carl-Gunnar, Youth Justice in Sweden, Chicago Journals, 2004, pp.391-441.

Holmberg, S., “Pafoljder for Unga-ett System med tva Svarforenliga Principer.” Nordisk Tidskrift for Kriminalvidenskab 2007, pp.444-446.

Rütting/Schone, ASD und Jugendhilfeplanung – Der Allgemeine Sozialdienst als Subjekt und als Gegenstand der Planung kommunaler Jugendhilfe, In: Greese u. a., Allgemeinde Sozialer Diesnt. Jenseits von Allmacht und Ohnmacht. 2. Aulf., Münster 1996, 87 ff.

Sarnecki, J. and Estrada, F., Juvenile Crime in Sweden, A Trend Report on Criminal Policy, The Develop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tockholm University, Stockholm.

Taylor, C.,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London, 2016.

Youth Justice Legal Centre: Which Court.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Jeon, Youngsil·Kim, Hyekyung·Joo, Hyunkyong·Bae, Sangkyun

1. Purposes and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how child delinquents (offenders younger than 13 years of age) are handled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or example, the police, the court, and protective disposition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them. Based on findings, it suggests effective measures for preventing those very young delinquents from recommitting offenses and supporting pro-social development of them.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analyzed official statistical data to understand the trend and current status of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Specifically, it looked into data of the police to get insight into the trend of child delinquents who were sent to the juvenile department. At the same time, it reviewed data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decided by the court and the internal data of the Ministry of Justice on the status of child delinquent who were entered probation or sent to youth detention centers.

Second, this study collected opinions and advice of professionals working at stages of juvenile justice system, such as, law enforcement (the police), decisions by the court (judges, juvenile investigators, workers at 'Youth Dream Up Centers', members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and dispositions (probation officers, child welfare facility workers, teachers at juvenile detention centers). It also inspected opinions of practitioners on the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at each stage of delinquency case processing, the status of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Lastly, it interviewed and asked opinions of community-based practitioners on improvement measures for handling these very young offenders at the community level.

Thir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on not only child delinquents but also their guardians to get information on their experiences and attitude associated with the juvenile justice system. Considering access to child delinquents, survey was conducted on those on probation or inmates of a juvenile reformatory.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on child delinquents on probation or with juvenile justice system experience, such as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or tried by the juvenile court at the age of between 10 and 12 years, and their parents or guardians.

2.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his paper looked into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by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cases involving those very young offenders are classified into two: the content of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methods. Regarding to contents of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into child delinquents generally begins with the environment survey like other older juvenile delinquents. The environment survey mainly focuses o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or behavior. The younger a child delinquent is, the m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him or her. For this reason,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family or educational environmental survey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Risk assessment is conducted with the consent of the child delinquent himself or herself and their legal guardians. The weakness of the survey is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young children to answer certain ques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 questionnaire is generally focused on youth and the number of questions is so many (344 questions).

In this regard, depending on the police station, the shortened question form

(136 questions) is used, however, the shortened version only contains less number of questions. It is needed to develop new survey which suitable for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mental development of young child delinquents. As for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a guardian, but a professional or an expert with a guardian will need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of very young offenders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feel psychological stability.

When it comes to the disciplinary program carried out at the police level, some of those child delinquents had to attend the disciplinary program with juveniles (over 13 but less than 19 years of age) as the number of young child offender is relatively small or they only got personal counseling. Some police stations carried out a part of the disciplinary program only for child delinquents while most of them did not run the disciplinary program for them separately.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by the police since 2019. According to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managing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nswered that child delinquents were prioritized. The police replied that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with external experts are aimed at helping child delinquents to recover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ies and surroundings as well as preventing them from reoffending. Their parents and legal guardians showed high level of satisfaction for those activities.

Third, when looking at the opinions of child delinquents and their guardians on the treatment at the police level, most of those young offenders and guardians showed a positive attitude and said that the police treated them well. Only handful of respondents said that child delinquents were scared of police officers, so they were daunted and could not answer properly. About the attitudes of those child delinquents toward the police, large number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scared, which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 attitude of police officers to them, their first experience of being questioned by the police made them feel scared. In other words, it implied that police investigations might be scary from the perspective of very young children.

Regarding the content of investigation, those very young delinquent felt difficult

understanding what the police officer asked and said. For example, child delinquents, who underwent risk assessment, answer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words in the risk assessment. This could be said that words and contents of questions that would be understandable by those young offenders. Regarding the disciplinary program by the police, some said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them while others did not. Among those who answered the disciplinary program was helpful, two children attended the program together even though the program was provided individually. Those attendees also answered that they shared necessary information. This showed that an individual approach might be effective.

Next is how the court handles child delinquents.

First, the investigation by the court included pre-disposition education, education by juvenile investigators, expert assessment and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by the Youth Dream Up Center and the probation office. Among them, pre-disposition education and education by juvenile investigators were provided by juvenile investigators, and those education programs were mainly targeting at child delinquents. Pre-disposition education was provided for guardians and child delinquents for whom none protective disposition order or Disposition No.1 (to consign a juvenile concerned of the care and custody of his/her guardian or any person who can provide protection for the juvenile in substitution for the guardian) was expected as a possible decision of the court. The education was about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nd understanding of adolescence. With this education, they could learn about juvenile justice and, for guardians, it would be helpful in raising children.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ounseling or support organizations to guardians where they could get help even after the education program.

Investigation by the juvenile investigator was also carried out into child delinquents and their guardians. Juvenile investigators, who majored in juvenile related fields, investigated case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child delinquents and provided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ose children as well as their

guardian. Investigation by the juvenile investigators could help to underst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amily backgrounds as well as child delinquents themselves and to take appropriate dispositions based on findings. However, considering shortage of juvenile investigators, only small number of child delinquents were investigated by them. In addition, if a child delinquent had an emotional problem, or he or she was suspected an intellectual or developmental disability, he or she was required to get professional diagnosis or counseling.

In-court counseling was generally provided 12 times within 3 months, and in the case of child delinquents, this was used to improve their behavior and inclination of act. Under the current juvenile law, the order to attend a program was rendered to juveniles over the age of 12, most child delinquents between 10 to 11 years old were not the subject of the order. Taking account into the current law, positive changes for children and guardians were being pursued through counseling with strong educational purposes for those very young offenders. Furthermore, counseling by the Dream Up Center was conducted for 3 days, and some centers had developed and operated designated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ndings of pre-disposition investigations by the probation office on child delinquents were usually referred by judges, but in certain cases they were not used at all. Unlike the police, investigations by the court were conducted on not only child delinquents but also their guardians. One of advantages of investigation by the court was that it helps in-depth grasp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customized counseling. In line with investigation, education was provided.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of pre-disposition investigation by the court that only small number of child delinquents were covered due to difficulties in finding and linking with juvenile investigators or experts. Lack of financial support was also another problem.

Second, when it comes to temporary measures, few cases of child delinquents were entrusted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Judges said that in principle, child delinquents would not be sent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Those delinquents with no certain dwelling, however, were entrusted to

the center. The consignment of a classification reviewer could have positive effects in that it enabled detailed diagnosis and disposition through in-depth investigation and education on those child delinquen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sing classification reviewer also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attitudes and behaviors through education during the period. However, for child delinquents, what pointed out as problems were restriction of freedom caused by being accommodated in juvenile facilities, psychological instability due to moving to a facility far from the place where they lived, and the fact that they were not separated from older juveniles. On the other hand, some child delinquents are entrusted to shelters rather tha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but child delinquents were rarely sent to shelters. Against this backdrop,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and link community resources that could temporarily take care of those child delinquents.

Third, the opinions of child delinquents and guardians on treatment by the court we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investigation, the very young offenders and their guardians showed positive stance on investigation by the juvenile investigator. They answered that the juvenile investigator paid attention to what they said, explained well, and selected right words that those young delinquent could understand. They also answered positively to counseling by Youth Dream Up Center. However, some sai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nform in detail about the psycholog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were not adolescents and what could do and should not do at that age.

Next, opinions on the experience of entrusting classification auditors were examined. First of all, only one child delinquent positively responded to entrusting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The respondent explained that personality education provided by the center was helpful. Others pointed out problems of entrusting to the center, such as restriction of freedom, regular life, and long referral period. For juveniles with experience of being entrusted to the classification reviewers at a very young age or adolescence, what were good for them were education, treatment, meeting with older juveniles,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On the other hand, they answered what were hard for them were

cut off from outside, regular life, and relationship with others in the facility and teacher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 would be tough for juveniles at the middle school age.

Considering these findings, it would be needed to diversify temporary measures for child delinquents.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early education, it was needed to provide education an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development at the classification. Lastly, about the trial, most of the child delinquents said they were afraid of being tried in court. Even some of their guardians answered that it was a terrified experience to attend the court with their children. Some juveniles also answered that they were so scared to attend court for the first time at the very young age, however, they were accustomed to being tried and no more being afraid as hearings continued.

As to whether they understood the content of the disposition by the court at the time of the trial, not only child delinquents but their guardians did not well know it. Regarding the disposition by the court, many respondents said that it would be helpful to explain what the disposition meant. Meanwhile, those, who had experience of being entrusted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or knew other juveniles delinquents, were aware of the disposition.

Protective disposition on child delinquen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majority cases, disposition no.1 (no physical transfer) was rendered by the court. According to juvenile court judges, if the offense was minor or the guardian showed willingness to take care of the child delinquent concerned, treatment of child delinquents was entrusted to the guardian. If the child delinquent was so young and his or her guardian was trustworthy, the court tended to render disposition no.1. When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guardian would not be able to properly take care of the child delinquent, they were usually entrusted to juvenile facilities or institutions to take care of, supervise and protect, and educate them. In fact, physical transfer was rarely rendered by the court as there were not enough facilities to take care of those delinquents (for shelters,

only juveniles at certain ages could stay).

Second, as the order to attend programs was for juvenile delinquents above 12 years of age or older, it was rarely decided for younger ones. Judges answered that when ordering to attend programs for child delinquents,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take an individual customized approach and provide by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Third, for probation, since 2016, around 100 child delinquents less than 12 years of age had been ordered. As of August, 2020, when the survey was conducted, 19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received probation order. In fact, there was no specific guideline on probation of child delinquents. Frontline worker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juvenile delinquency pointed out necessary measures for probation of children such as selecting easy words to help them understand, questions of their ordinary life (inquiries about friend for juveniles in middle or high school ages), more counseling with their guardians. They also recommended guardians to accompany child delinquents when they attend probation office so that they could ensure safety of those child delinquents and understand what they felt and what their problems were. Those workers and professionals said that it would be better to visit in person those delinquents to know their problems and assess them correctly. To promote effectiveness of probation for child delinquents, it would need to strengthen professional training 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face-to-face talk skill. In line with that, information on local or community resources they could use should be provided.

Fourth, 27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entrusted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 for the care and custody, as of the end of 2019 following the court order of disposition no.6. Workers at child welfare institutions said that no rooms were allotted only for child delinquents or no special programs for them. However, they said that classes were arrang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educational level for curriculum education. They suggested alternative facilities for those child delinquents considering their age and characteristics.

Fifth, with regard to transferring a juvenile to the Juvenile Reformatory, 4 child delinquents (under 12 years old) were entrusted to a hospital, a sanatorium or

a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as of August, 2020. According to a practitioners, the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operated programs based on their intelligence level. They pointed out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separate education programs for young child delinquents and those program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ir developmental stages.

Looking at the status of disposition no.8 to no.10 for child delinquents, from 2015 to September 2020, the number of children got disposition no. 8, no. 9, and no. 10 were two, three and one respectively. As the statistical data were about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the age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might be included.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extremely rare to transfer child delinquents, who were subject to this study, to the Juvenile Reformatory. It was true that juvenile reformatories had no separate programs, education, or facilities for very young offenders because it was unusual to transfer the young offender to those facilities.

Sixth, when it comes to education for guardians, it could be provided through pre-disposition education when child delinquents concerned received no protective disposition or disposition no.1. For other dispositions, education for guardians was often provided by institutions in charge of enforcing dispositions in line with education for delinquents. Judges explained that the younger the child delinquents were, the more order to education for guardian were decided.

Seventh, child delinquents and guardians said that disposition helped them to face and deal with problems of those children. However, when those child delinquents concerned did not understand the consequences (dispositions) of their actions at a young age, they were emotionally hurt during going through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When it comes to education for parents or guardians, education on parenting or child rearing, or grasping typical behaviors of children was helpful. They added that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should be provided.

Lastly, the status of cooperation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 local community and treatment in the local community were examined. At the police stage, systematic resource linkage was carried out in relation to investigation

with experts and disciplinary programs. In particular, if child abuse was suspected or financial support or counseling deemed necessary, children concerned were linked to related institutions. At the court stage, local community resources were us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expert assessment or counseling), and efforts were made to find and link resources that could take temporary measures for child delinquents.

Nonetheless, welfare intervention was not actively provided. In the disposition stage, when disposition no.1 was rendered, resources to transfer child delinquents were used while institutions in community were utilized so as to enforce the order to attend programs. With regard to probation, special crime prevention committee or connection to counseling were used.

In terms of treatment in the local community, integrated support for child delinquents was provided through Dream Start (for vulnerable groups under 12 years old) and youth safety nets (9 to 24 years old). However, in the former case, if subject child delinquent satisfied the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group, they could receive support, while in the latter case, they were linked to institutions not for young children but for juveniles, which was pointed out as limitations. Besides those kind of support, consignment for protection, mental health support, or counseling services were provid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The problem, however, was that only small number of child delinquent were able to receive support and at the same time active links with criminal justice agencies had not been established.

3. Policy suggestions

Possible improvement measures for treatment at the police stag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for improvement measur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what needed are development of an investigation tool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delinquents,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m and connection with experts for this purpose, and development of delinquency risk

assessment of child delinquents questionnaire considering their comprehension level of vocabulary. Moreover, it is required to check out whether child abuse is suspected, if so, proper intervention should be made.

Seco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reatment include the development of a response manual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delinquent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y are victims or offenders), revitalization of disciplinary programs and counseling for them as well as their guardians, promotion of restorative judicial programs, and active use of school police officers. It is also recommended to strengthen resource linkage, systematic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police.

Next, is about treatment at the court stage. First, suggestions are visiting in person to child delinquent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providing information to guardians during pre-disposal education, education of juvenile investigators and expansion of manpower, and utilization of expert case meetings. Second, to improve treatment at the court stage, what needed is to discover resources in community which could be used for temporary treatment and to actively use assistance in the trial stage from a welfare point of view.

Finally, as for improvement measures at the disposal stage, first, for consignment of child delinquent to a guardian as a disposition no.1, it is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on local community resources that can be helpful during the consignment period, to assign consignment protection committee for child delinquents whose guardians are not able to provide proper protection and to figure out and link resources to transfer their custody. Second is early education for child delinquents. To this end, the subject ages of order to attend programs should be lowered. Third, development of probation method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stages of the very young offenders. Fourth, those child delinquents should be placed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s or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near their home by making those institutions smaller in size. Last suggestion is to develop various caregiver education programs that specialize in the needs of individual caregivers.

35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Besides, recommendations include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t the police, court, and disposition stage and to improve treatment in the local community.

연구총서 20-A-0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한인섭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89908-73-7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